

정책보고서 2021-088

발간등록번호
11-1092000-000101-01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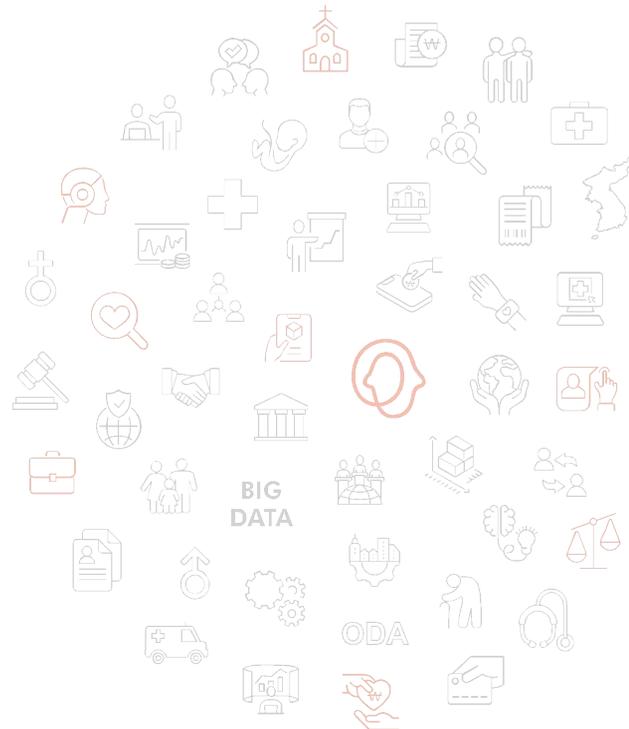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

김성아

노현주·김문길·곽윤경·임덕영·신영규·함선유·송치호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치호	University of Washington 박사후연구원
	노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국무조정실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1.9.28.)한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실태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요 약	1
제1부 서론	27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1
제2절 연구의 관점과 내용	35
제2부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41
제2장 취약계층 청년 개념과 유형화	43
제1절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를 위한 접근과 원칙	45
제2절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47
제3절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규모 추정	66
제3장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실태 분석	79
제1절 인적 속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특성	81
제2절 관계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특성	87
제3절 일자리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특성	99
제4절 경제력 수준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특성	109
제5절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공적 지원 현황	115

제3부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127
제4장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해외 사례	129
제1절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	131
제2절 핀란드의 사회적 배제 청년 지원	159
제3절 영연방과 유럽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대처 전략	173
제5장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삶과 정책 수요	197
제1절 자료 수집 개요	199
제2절 고립(은둔) 전 삶	200
제3절 고립(은둔)하는 삶	207
제4절 탈고립(은둔)을 위한 당사자의 욕구와 성공·저해 요인	212
제5절 탈고립(은둔)을 위한 정책 수요	220
제6장 국내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실태와 방안	229
제1절 민간 영역의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실태	231
제2절 지자체의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실태	253
제3절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263
제4부 정책 제언	291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93
제1절 취약계층 청년 지원 방향	295
제2절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298
제3절 취약계층 청년 지원 기반 구축 방안	303



참고문헌	315
부록	331
[부록 1] 영국의 외로움 대처전략	331
[부록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	341

표 목차

〈요약 표 1-1〉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추정 규모	3
〈요약 표 1-2〉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지원제도 현황	4
〈요약 표 1-3〉 고립(은둔)의 계기	9
〈요약 표 1-4〉 은둔, 고립, 외로움의 키워드별 조례 및 조례안	17
〈요약 표 1-5〉 지자체별 자치법규에 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내용	18
〈요약 표 1-6〉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정책 수요 및 공급 적합성 평가	25
〈표 1-1〉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초점집단면접 개요	39
〈표 2-1〉 가구 소득 수준별 19~34세 경제적 부양 청년 가구원	69
〈표 2-2〉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추정 규모	78
〈표 3-1〉 장애 청년의 인구학적 특성	82
〈표 3-2〉 2015년 활동제한청년의 혼인상태	83
〈표 3-3〉 2015년 활동제한청년의 경제활동	83
〈표 3-4〉 2015년 활동제한청년의 사회단체 활동	84
〈표 3-5〉 2015년 이주배경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5
〈표 3-6〉 2015년 이주배경청년의 혼인상태	85
〈표 3-7〉 2015년 이주배경청년의 경제활동	86
〈표 3-8〉 2015년 이주배경청년의 사회단체 활동	87
〈표 3-9〉 19~34세 청년 중 경제적 부양 청년 비중	87
〈표 3-10〉 2019년 경제적 부양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0
〈표 3-11〉 2019년 경제적 부양 청년의 경제적 특성	92
〈표 3-12〉 2018년 한부모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3
〈표 3-13〉 2018년 한부모 청년의 경제적 특성	94
〈표 3-14〉 2018년 한부모 청년의 사회적 지지체계	95
〈표 3-15〉 2018년 한부모 청년의 자살생각	96
〈표 3-16〉 2019년 고립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7
〈표 3-17〉 2019년 고립 청년의 경제적 특성	98
〈표 3-18〉 2019년 고립 청년의 삶의 만족과 사회 신뢰	98
〈표 3-19〉 2021년 니트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0
〈표 3-20〉 2021년 가구 특성별 니트 비율	101
〈표 3-21〉 2021년 장기/비자발적 실업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2
〈표 3-22〉 2021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장기/비자발적 실업 청년 비율	102



〈표 3-23〉 2021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장기/비자발적 실업 청년 비율	103
〈표 3-24〉 2021년 가구 특성별 장기/비자발적 실업 청년의 비율	103
〈표 3-25〉 2021년 저임금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4
〈표 3-26〉 2021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저임금 청년 비율	105
〈표 3-27〉 2021년 가구 특성별 저임금 청년 비율	105
〈표 3-28〉 2021년 불안정 고용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6
〈표 3-29〉 2021년 가구 특성별 불안정 고용 청년의 비율	107
〈표 3-30〉 2021년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7
〈표 3-31〉 2021년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8
〈표 3-32〉 2021년 가구 특성별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의 비율	109
〈표 3-33〉 2020년 저소득 빈곤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10
〈표 3-34〉 2020년 저소득 빈곤 청년의 경제적 특성	111
〈표 3-35〉 2020년 부채 부담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13
〈표 3-36〉 2020년 부채 부담 청년의 경제적 특성	114
〈표 4-1〉 히키코모리 관련 개념의 변화	134
〈표 4-2〉 히키코모리 정의	135
〈표 4-3〉 전국 규모 일본의 히키코모리 실태조사 개요 (2015년 및 2018년)	137
〈표 4-4〉 히키코모리 실태조사에서의 조작적 정의(2015년 및 2018년 조사 공통)	138
〈표 4-5〉 히키코모리 실태조사에서의 히키코모리 친화군의 조작적 정의 문항(2015년 조사)	139
〈표 4-6〉 15~39세 히키코모리 규모 추계(2015년 조사)	140
〈표 4-7〉 40~64세 히키코모리 규모 추계(2018년 조사)	140
〈표 4-8〉 히키코모리 성별 특징(2015년 조사·2018년 조사)	141
〈표 4-9〉 히키코모리 성별 특징(2015년 조사·2018년 조사)	141
〈표 4-10〉 히키코모리 동거자 수(2015년 조사·2018년 조사)	142
〈표 4-11〉 히키코모리 주생계자(2015년 조사·2018년 조사)	142
〈표 4-12〉 히키코모리 주관적 생활수준(2015년 조사·2018년 조사)	143
〈표 4-13〉 히키코모리 기간 (2018년 조사)	144
〈표 4-14〉 히키코모리의 현재 직업 및 취학상태	144
〈표 4-15〉 처음 히키코모리 상태가 된 연령(2015년 조사·2018년 조사)	145
〈표 4-16〉 히키코모리가 된 계기 상위 항목(2015년 조사·2018년 조사)	145
〈표 4-17〉 2022년도 예산요구에서의 '히키코모리 지원' 관련 시책 예산안	147

〈표 4-18〉 히키코모리 지원을 빙자한 사기 사례	152
〈표 4-19〉 히키코모리 관련 스쿨 카운셀러 및 스쿨 소셜워커 활용사업 개요	153
〈표 4-20〉 성인(16세 이상)에 대한 외로움 측정도구	183
〈표 4-21〉 외로움·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 2021-22년 예산안	190
〈표 4-22〉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외로움 대처를 위한 개입 계획들	193
〈표 5-1〉 당사자 FGI 참가자 특성	200
〈표 5-2〉 부모 FGI 참가자 및 자녀 특성	200
〈표 5-3〉 고립(은둔)의 계기	201
〈표 6-1〉 2020~2021년 청년재단 체인지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현황	237
〈표 6-2〉 2021년 리커버리센터 지원사업	239
〈표 6-3〉 2021년 이아당 심리상담센터 지원사업	240
〈표 6-4〉 2021년 스탠드랩 지원사업	241
〈표 6-5〉 일 경험 지원사업	241
〈표 6-6〉 체인지업 지원사업을 위한 청년재단 및 운영기관 재정 흐름	242
〈표 6-7〉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발굴기관별 역할	248
〈표 6-8〉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지원 인프라	251
〈표 6-9〉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지원 기반 조성	252
〈표 6-10〉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사회적 인식 확산 노력	252
〈표 6-11〉 은둔, 고립, 외로움의 키워드별 조례 및 조례안	255
〈표 6-12〉 자치 조례 및 조례안 내 사회적 고립 청년 정의(예시)	256
〈표 6-13〉 지자체 자치법규 내 은둔형 외톨이 정의	257
〈표 6-14〉 자치법규에 의한 사회적 고립 관련 지원 내용	258
〈표 6-15〉 지자체별 자치법규에 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내용	259
〈표 6-16〉 2022~2026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전략별 추진과제 개요	262
〈표 6-17〉 사회적 고립(은둔) 발생 원인 및 관련 부처	271
〈표 6-18〉 주요 조례 및 동료 지원 프로그램 사례	273
〈표 6-19〉 사회적 탈고립 전문 지원팀 구성(안)	278
〈표 6-20〉 고립(은둔) 청년 지원 수행체계 비교	279
〈표 6-21〉 고립(은둔) 청년의 복합 욕구 범주 및 관련 지원 프로그램(안)	282
〈표 6-22〉 현행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강의 분야	283
〈표 6-23〉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	286



〈표 6-24〉 단계별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도입 방안	287
〈표 7-1〉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정책 수요 및 공급 정합성 평가	301
〈표 7-2〉 취약계층 청년 식별문항(안)	304
〈표 7-3〉 「청년 삶 실태조사」 미래설계 문항(연구진안)	310
〈표 7-4〉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지원 법률	312
〈부록 표 1-1〉 외로움 대처전략 이행을 위한 영국 정부의 60가지 신 정책공약	331
〈부록 표 2-1〉 지방자치단체 조례 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 내용	341

그림 목차

[요약 그림 1-1]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개념도(안)	2
[요약 그림 1-2] 고립(은둔) 청년의 삶과 정책 수요 파악 단계	8
[요약 그림 1-3] 청년재단 체인지업 지원사업 추진절차	14
[요약 그림 1-4]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맞춤형 지원 구조	16
[요약 그림 1-5] 2022~2026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비전과 추진전략	19
[요약 그림 1-6]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프레임(안)	21
[그림 1-1] 공평 vs. 공정	31
[그림 1-2] 주요 법률 및 조례에 의한 청년 연령 기준	36
[그림 2-1]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개념도(안)	46
[그림 2-2] 인적 속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48
[그림 2-3] 관계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50
[그림 2-4] 일자리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58
[그림 2-5] 경제력 수준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63
[그림 2-6] 통계청 사회조사의 사회적 관계망 문항	71
[그림 2-7]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부채 문항	76
[그림 4-1]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체제도	149
[그림 4-2] 아동·청년육성지원법에 근거한 지원 체제	150
[그림 4-3] 핀란드 닛트 청년 규모 추이(%)	161
[그림 4-4] 중학교 졸업 직후 학업 중단 핀란드 청년 규모	162
[그림 4-5] 핀란드 아웃리치 청년사업 사례 수(명)	163
[그림 4-6] 핀란드 지방정부별 청년워크숍 활동 제공 현황	165
[그림 4-7] 핀란드아웃리치청년사업·워크숍활동연합회의 아웃리치 청년사업 핸드북(2018년)	166
[그림 4-8] 반타(Vantaa)의 청년워크숍 건물	170
[그림 4-9] 반타(Vantaa)의 청년워크숍 활동 모습	170
[그림 4-10] 핀란드 전국 아웃리치 청년사업 담당자 연락처 검색 홈페이지	172
[그림 5-1] 고립(은둔) 청년의 삶과 정책 수요 파악 단계	199
[그림 6-1] 2018~2020년 청년재단 체인지업 지원사업 추진 과정	232
[그림 6-2] 청년재단 체인지업 지원사업 추진절차	233
[그림 6-3] 청년재단 체인지업 지원사업 지원내용	235
[그림 6-4] 청년재단 체인지업 지원사업 추진체계	236
[그림 6-5] K2인터내셔널코리아 지원사업	238



[그림 6-6] 2021년 공감인 지원사업	240
[그림 6-7] 서울시 지역기반 사각지대 고립 청년 지원기관 및 범위	243
[그림 6-8] 서울시 지역기반 사각지대 고립 청년 참여자 유형	245
[그림 6-9] 서울시 지역기반 사각지대 고립 청년 지원사업 지원 체계	246
[그림 6-10]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발굴 체계	247
[그림 6-11]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맞춤형 지원 구조	249
[그림 6-12]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구조	249
[그림 6-13]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밀착지원 사례관리 프로세스	250
[그림 6-14]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지원 성과	251
[그림 6-15]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지원사업 체계	253
[그림 6-16] 2022~2026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비전과 추진전략	262
[그림 6-17] 사회적 고립 인구의 규모와 삶의 만족	264
[그림 6-18] 고립 청년과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신문기사량 추이	266
[그림 6-19] 정책 대상으로서의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범위	267
[그림 6-20]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프레임(안)	271
[그림 6-21]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발굴체계 연구진안	275
[그림 6-22]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277
[그림 6-22]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달체계(연구진 제안)	280
[그림 6-23] 2021년 기준 전국 청년활동공간 현황	280
[그림 6-24] 고용노동부의 구직단념청년(니트) 지원사업	284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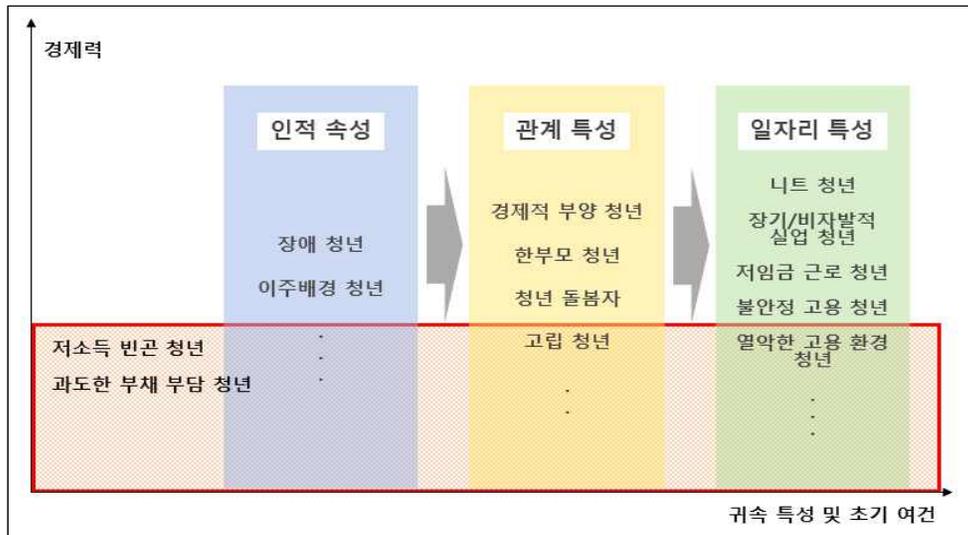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취약계층 청년은 현 세대 청년 중에서도 인적·환경적 여건의 결핍 혹은 부족으로 인하여 이행기 과업을 수행하기에 복합적인 곤란을 경험하고 있음.
 -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빈익빈 부익부로 체감되고 있음.
 - 공평한 지원은 차이를 두지 않고 지원하여 애초의 차이를 보정하기에 한계가 있는 데에 반해, 공정한 지원은 차이를 고려해 취약한 집단에 지원을 집중하여 결국 모두가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임.
-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청년기본법」을 시행하면서 취약계층 청년을 식별하고 지원을 집중하여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할 것을 명시함.
- 기본계획상 그리고 시행계획상 명시된 취약계층 청년은 기능부처별 분절적 접근 방식으로 다루는 바람에, 취약계층 청년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와 지원이 부족함.
- 취약계층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서 식별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틈을 메우는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취약계층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이들의 삶 전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을 식별하고, 둘째, 특히 생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공적 지원이 부재한 핵심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셋째, 향후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근거 기반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에 있음.

2. 취약계층 청년 개념과 유형별 실태

- 독립하는 삶을 준비하는 이행기 청년 중 취약계층은 생애 과업을 달성하기에 인적 속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 경제력 수준의 여건이 결핍되거나 충분하지 않은 집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대상자로서의 취약계층 청년의 인적 속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에 의한 취약성은 그 자체로 취약하다기보다 경제력 수준과 상호작용하여 청년의 이행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됨.
 - 공적 지원의 목적이 인적 속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에 의해 취약한 상황에 처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생애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적인 지지체계와 노력을 통해 스스로 극복하는 자발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의 원칙은 첫째,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낙인감을 유발하지 않되 개별 사례의 특수성에 대해 충분히 포용적이어야 하고, 둘째, 정책 공급 측면에서 대상자를 식별하고 범주화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시대적으로 시의성 있고, 넷째, 일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요약 그림 1-1]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개념도(안)



자료: 저자 작성

□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취약계층 청년 유형과 추정 규모는 다음 표와 같음.

〈요약 표 1-1〉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추정 규모

취약계층 청년 유형		추정 규모 (천명, %)	조작적 정의	자료원	
인적 속성	장애 청년	156 (1.4)	등록장애 청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20.12.)	
		181 (1.7)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청년	2015년 인구총조사(표본)	
	이주배경 청년	100 (0.9)	출생지가 북한 또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2015년 인구총조사(표본)	
		 	다문화 가족 자녀	-	
관계 특성	청년 부양자	경제적 부양 청년	285 (2.6)	가구주나 배우자가 아닌데, 본인의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가구 총 경상소득의 75% 이상인 청년	제15차 한국복지패널 (2019년 기준)
		한부모청년	158 (1.5)	한부모가정의 부모인 청년	2020년 인구총조사(전수)
		청년돌봄자	 	돌봄이 필요한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구원을 돌보고 있는 청년	-
	고립 청년	339 (3.1)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	
일자리 특성	미취업 청년	니트 청년	1,969 (19.4)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 훈련 상태에 있지도 않은 청년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장기/ 비자발적 실업 청년	453 (4.5)	장기실업자 또는 비자발적 실업 청년	
	취업 청년	저임금 근로 청년	1,039 (10.9)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청년	
		불안정 고용 청년	1,290 (12.7)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임시, 일용 종사자와 1인 자영업 종사자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	790 (7.8)	주 50시간 초과 근로청년과 불완전취업(단시간 근로) 청년	
경제력 수준	저소득 빈곤 청년	842 (7.8)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중위 50% 미만인 저소득 빈곤 가구의 청년 가구원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기준)	
	과도한 부채 부담 청년	 	경제력 대비 본인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부담이 과도한 청년	-	

주: 청년 인구 대비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비율은 (1) 자료원이 인구총조사 및 행정자료인 경우 인구총조사의 모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2) 자료원이 인구총조사가 아닌 경우 각 자료원에 의한 시점 기준 비율을 산출한 인구총조사에 의한 모수를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함. (2)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함.

자료: 저자 작성

4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관련 공적 지원제도 현황은 다음과 같음.

〈요약 표 1-2〉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지원제도 현황

취약계층 청년 유형		관련 지원제도	대상자 포괄성	접근성	
인적 속성	장애 청년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지원	지원	있음 (주민센터 등)	
		-	일부 지원		
	이주배경 청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등	일부 지원	부분적 (재외동포재단, 하나센터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하여 24세까지 지원	일부 지원	제한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관계 특성	청년 부양자	경제적 부양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근로소득 공제	일부 지원	있음 (주민센터 등)
		한부모청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지원	있음 (한부모가족지원 센터)
		청년돌봄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한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가사간병방문지원,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의료비 지원 등	일부 지원	제한적
	고립 청년		-	없음	없음
	일자리 특성	미취업 청년	니트 청년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3)」 등	지원
장기/ 비자발적 실업 청년					
취업 청년		저임금 근로 청년			
		불안정 고용 청년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					
경제력 수준	저소득 빈곤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등	일부 지원	있음 (주민센터 등)	
	과도한 부채 부담 청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득 수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지원 등	일부 지원	없음	

자료: 저자 작성

3.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해외 사례

가.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

- 일본의 히키코모리는 ‘부등교’ 개념에서 시작하여 학령기를 벗어난 연령대에 고립이 장기화되는 현상을 나타낸 개념으로, 최근에는 청년 뿐 아니라 학령기에서 중장년까지의 전 연령대를 포괄하는 고독·고립한 상태를 의미함.
- 정신장애·질환, 이지메, 니트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 특성과 중첩된 개념이기도 하며, 본래 장애는 제외하고 있으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최근에는 포괄적 지원이 강조되고 있기도 함.
- 히키코모리 정책은 후생노동성이 관할 부서로 기본적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수립하고, 실제 지원은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가 창구 역할을 함.
-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예산은 국고보조-지자체보조 등 비율이 규정되어 있고 지역지원센터 역할도 규정되어 있음.
- 지역지원센터는 쉼 곳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하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함.
- 다양한 부처 간 히키코모리 지원 정책 연계를 위하여 관계부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내각부(아동청년지원), 소비자청(고독고립 소비자지원), 문부과학성(부등교아동학생), 농림수산성(농-복 연계대책) 등 타 관계부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그 외 후생노동성 내에서도 ‘마음건강 사업’ 및 ‘청년 취업지원’ 사업과도 상시적 연계를 하고 있음.

나. 핀란드의 사회적 배제 청년 지원

- 핀란드는 고립되어 있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청년 (socially excluded young people)’에 포함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핀란드 정부는 사회 배제 청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년의 사회적 배제 예방을 목표로 시행되는 아웃리치 청년사업(outreach youth work)은 “교육·훈련 또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동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29세 미만의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며(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of Finland, 2021; Into, 2021a), 이 범주에 공공서비스에 접근하지 않는 은둔 청년이 포함됨.
- 핀란드는 지방정부와 민간조직인 청년워크숍을 중심으로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사회 배제 청년을 찾아 통합적인 서비스와 훈련을 제공함.
 - 핀란드는 1993년 보건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에 독립적인 예산과 서비스 기획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역량이 강화되었음.
 - 청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조직이 사회 배제 위험이 높은 청년의 정보를 공유하여 이를 아웃리치 청년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사회 배제 청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함.
 - 아웃리치 청년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청년 대부분은 해당 지역의 청년워크숍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안내받거나 사회 참여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강함.
- 다양한 교육기관과 핀란드아웃리치청년사업·워크숍활동연합회는 자율적으로 아웃리치 청년사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역량 증진을 위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제공함.

다. 영연방과 유럽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대처 전략

- 영국 및 호주의 영연방 국가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전체 연령층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해소 전략과 정책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고 있음.
- 영국에서는 2018년 1월 고독부 장관 신설 이후 정부의 외로움 대처 전략, 정책, 그리고 그 성과를 고려할 때, 영국 정부는 청년을 포함한 전체연령층에 대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외로움 측정도구를 활용한 양적 평가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 평가를 병행하고 있음.
- 호주는 아직까지 영국처럼 고독부 장관은 없지만 최근 빅토리아 주 또는 호주 연방정부 차원의 외로움 책임 장관을 신설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존재함 (Office of Fiona Patten, 2018.10.2.; Wahlquist, 2018.10.18.; Purcell, 2021.2.25.).
 - 호주에서는 호주심리학협회(APS)와 비영리기관들이 호주 정부와 협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을 포함한 시민 전체의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에서도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전체연령층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해소 정책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고 있음.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아직까지 영국이나 일본처럼 고독부 장관을 두고 있지 않지만, 최근 회원국 각국의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적 담론의 확산 수준에 따라 외로움 책임 장관을 신설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존재함(Baarck et al., 2021, p.49; Publications of the Finnish Government [PFG], 2019, pp.8-10).
 - 예컨대, 핀란드는 2019년 사나 마린(Sanna Marin) 정부가 '통합적이고 역량 있는 핀란드(Inclusive and Competent Finland)'라는 슬로건 하에 청소년과 청년들의 외로움에 대한 행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PFG, 2019, pp.8-10).

- 또한 독일과 스웨덴은 외로움 대처 정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고, 일정 정도 공론화도 진행 중임(Baarck et al., 2021, p.49).
 - 독일에서 외로움 책임 장관 임명 아이디어는 널리 논의되고 있고, 지방 정부들도 외로움담당관을 임명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Baarck et al., 2021, p.49).
 - 스웨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노인의 외로움과 그 개입전략(도시 계획, 교통, 문화, 영리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공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음(Baarck et al., 2021, p.49).
- 즉, 유럽연합(EU)은 각국 정부와 협력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계획을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을 포함한 시민 전체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전략, 개입, 실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음.

4.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삶과 정책 수요

- 고립(은둔) 청년의 탈고립(은둔)의 삶 특성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고립 청년 8명과 은둔 청년 6명, 그리고 은둔 자녀를 둔 부모 2명과의 FGI를 수행하였음.
- 이들에 대해 고립(은둔)의 계기와 고립(은둔) 중 경험, 탈고립(은둔)의 계기와 고립(은둔)을 벗어나는 데에 성공적인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함.

[요약 그림 1-2] 고립(은둔) 청년의 삶과 정책 수요 파악 단계



자료: 저자 작성

- 사회적 고립 혹은 은둔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은 개인적 요인과 학교, 경제활동 등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실패의 경험을 누적하고 소속감을 상실하면서도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재하여 결국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보임.

〈요약 표 1-3〉 고립(은둔)의 계기

구분	내용
개인적 요인	심리 정서적 요인, 아동기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 판정 등
학교 부적응	이사, 왕따 등 학교생활의 부적응, 학업 스트레스, 대학에서 적응의 어려움
이행과정	대학 입시실패, 대학교에서의 적응 문제, 취업 실패
군대 부적응	폭력 피해, 부적응 등
역기능적 가족	부모의 갈등, 이혼, 가정불화, 가정폭력 등
가족 돌봄 부담	가족 돌봄 부담을 책임지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물리적 기회 박탈
경제적 문제	저소득 빈곤과 생계유지 부담
사회적 지지체계 부재	지지를 받을 만한 이들의 부재하거나 상실
소속감 상실	대학 진학이나 취업 실패로 공식적인 소속감 상실

자료: 저자 작성

- 고립(은둔) 상태를 한 번에 벗어나기보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잠시 은둔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은둔 상태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세미 고립(은둔)’ 상태에 머물러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방이나 독립된 주거 등 가족과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기도 함.
- 고립(은둔) 청년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신의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고, 수면 패턴도 불규칙함, 샤워도 잘 하지 않음. 잠을 많이 자는 등 주로 집안에서 불규칙한 생활을 함.
- 집안에서 가족과 대화는 물론 같이 식사하려고 하지도 않거나, 친구 등 지인과의 만남을 최소화하거나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을 친구가 마땅히 없는 경우도 있음.
- 한정된 공간, 주로 본인의 방에서 지내다 보니 체력 관리가 어렵고, 체중관리도 잘 되지 않음.
- 반복적인 실패와 좌절감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무기력한 증상을 보임. 우울증, 불안에 대한 수준이 높고, 극단적인 선택 시도하기도 함.

- 은둔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 또한 이전에 접하지 못한 특이한 개념 및 현상이
라, 자녀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림.
 - 자녀의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되면서,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도 많은 노력
과 시간이 소요됨. 한동안은 주변 가족 및 지인에게 거의 말도 하지 못하고, 부
부가 속으로 끙끙 앓음.
 - 이런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녀의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도와주려는 태
도가 아닌 무관심 혹은 비협조적인 태도는 기존의 불편한 부부 관계를 더욱 악
화시키거나, 심지어는 이혼으로 귀결되기도 하는 등 고립(은둔) 자녀를 둔 가
족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됨.

- 당사자와 가족들은 고립(은둔) 상태에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음.
 -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과 의지를 뚫고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
이 걸리고 많은 좌절을 겪기도 함.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했던 경험에 대
한 상처로 인해 주저하기도 함.

- 고립(은둔)을 벗어난 계기는 여러 세월 다양한 요인들이 쌓여서 작용함.
 - 특정 사건으로 인해, 생활패턴의 변화가 찾아오기도 하고, 나이에 대한 압박과
다른 사람들처럼 소득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고립(은둔) 상태를
벗어나려고 시도함.
 -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되는 등 공공에 의한 지
원을 받아 은둔을 벗어나기도 함.

- 당사자들은 고립(은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상담센터나 정신의학과에 방문하거
나 취업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병행하였음.
 -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간지원기관의 존재를 접하게 되고, 고립(은둔) 민간단체
에서 제공하는 공동생활이나 관계형성 등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방밖으로
한 발짝 나아가려고 노력함.

-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주변인에게 털어놓으며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통해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낌.
- 그럼에도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개인적으로 노력하지만 방법을 알지 못하고 가족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체계가 부재하여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함.
 - 탈은둔을 위한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기도 하지만 치료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거나 부모가 통제하여 시도를 저지당하기도 함.
 - 고립(은둔) 기간 동안 너무 빨리 변해버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실패 경험을 재생산하기도 하며,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움.
 - 결국 갖은 용기를 내서 방 밖으로, 집 밖으로 나왔으나, 사회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집 안, 특히, 방 안이 안전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은둔 생활로 접어들.
 - 또한 취업을 위한 면접 시, 경력 및 이력의 공백 발생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이러한 공백이 취업시장에서 장애물로 작용함.
- 은둔 상태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안 해 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노력을 총동원함.
 -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에 가는 등 주변의 자원을 모두 활용하고, 민간단체(예를 들어, K2인터내셔널코리아)를 알게 됨에 따라, 여기서 알게 된 부모 모임에 참여하며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함께 공감과 지지를 받게 됨.
- 탈고립(은둔)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립(은둔) 기간별, 수준 및 상태별, 그리고 연령별로 다양하고도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고립(은둔) 청년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편해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되, 언제든 고립(은둔) 밖에 벗어나고자 할 때는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 고립(은둔) 청년의 외로움과 동시에 과거에 겪은 여러 상처와 실패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을 통제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함.

- 고립(은둔) 청년은 장기간 고립(은둔)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여러 취약성이 있음. 하여, 사회에 나가기 전, 이들을 위한 대인관계 및 사회성을 회복 및 향상할 수 있는 맞춤 지원이 필요함.

- 10대 성장기에 고립(은둔)을 시작하는 이들은 불규칙한 생활,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인하여, 신체발달 및 성장이 아주 더디거나 어렵거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체 발달의 지원 또한 필요함.
- 일반 청년과 달리, 고립(은둔) 청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일 경험 프로그램을 따로 분리해서 개설할 필요가 있음.
 - 일반청년과 달리 고립(은둔) 청년은 고립 기간 경력에 있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일반청년과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하여, 이들의 공백 기간을 상쇄할 만한 경력을 형성하고, 사회에 나갈 때 대인관계 등 사회성을 배양하기 위한 수련 기회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일자리 사업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고립(은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규직과 같은 일자리 경험뿐 아니라 파트타임 일자리와 같이 단시간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이 필요
- 청년 법정 연령의 나이에 속한 자들만이, 고립(은둔)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함. 그 외 지원이 필요로 한 이들은, 몇 살 차이로 인해 나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원 자격에서 원천 봉쇄되기도 하므로 고립(은둔) 경험이 발현되는 청년의 연령대를 중심으로 연령 연속성을 확보해야 함.
- 지원받고 있는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하지만, 내년에 지속되지 않거나, 사업이 중간에 중단 혹은 종료되는 등,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함. 그나마 얻은 지지체계를 재 상실하는 경험일 수 있으므로 고립(은둔) 프로그램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 고립(은둔) 청년을 둔 부모와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보제공 창구,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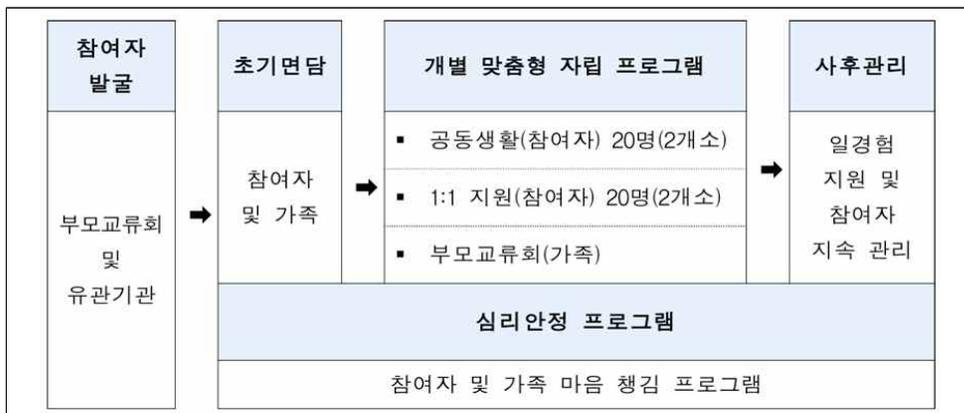
- 제도적 여건으로서는 기존 지원 및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함.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당사자가 이를 아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주변인이나 센터 등을 통해 알게 됨. 하여, 직접 당사자에게 찾아가거나 당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 통로 마련이 필요함.
- 고립(은둔) 청년 발굴에 집중해야 함. 고립(은둔) 청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들을 식별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작업임. 향후 이를 위한 다양한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 공공에서 제공하는 무료 혹은 저렴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부모들은 자녀의 상태 호전을 위하여, 갖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지만, 때로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비용적 측면이 부담이 되어 선뜻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 공공에서 제공하는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관련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와 복잡한 조건들이 지원 체계로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또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은 제한된 예산과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관계의 단절은 경제력과 무관한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므로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대상자로 포괄할 필요가 있음.
 - 정부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은 중복 수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비교하며 선택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함. 이런 인지적 제한은,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사업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함.
- 차등적 경제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데, 고립(은둔) 청년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탈고립(은둔)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경제적 지원이 은둔 청년의 은둔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와 그들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

5. 국내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실태와 방안

가. 민간 영역의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실태

- 청년재단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에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어 2016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 목적) 은둔형 외톨이 성향의 고립된 청년들에게 새로운 관계 맺음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 대상) 사회적이음 및 자립이 어려워 고립된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 청년으로, 6개월 이상 가족 외 인간관계 및 사회접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존감 및 의욕 결여 등으로 고립된 상태로서 고용 및 복지 등 사회적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지원 내용) 참여자 발굴부터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두고 초기 면담과 공동생활 및 1:1 지원, 부모 지원 등 개별 맞춤형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사후관리를 통해 사례를 추적 관리함.

[요약 그림 1-3] 청년재단 체인지업 지원사업 추진절차



자료: 청년재단. (2020.12.13.).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내부자료)

-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에 법적 근거를 두어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민간기관으로,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2020년 7월부터 지역 기반 고립 청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목적)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 청년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의 사회진입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에 대해 상태와 욕구에 따라 대상을 범주화하고, 종합적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각지대 없는 청년의 사회진입을 지원하며, 특히 청년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기반 지원사업을 기획하였음.
-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사각지대 고립 청년으로 다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사회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거나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여 사회로의 이행을 포기한 청년
 -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이거나 진로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 개인의 기질 및 부정적 경험으로 집단과 조직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 가족 등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거나 사회적인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청년
- (지원내용) 고립 청년의 유형을 고려하여 자기탐색, 관계형성과 소그룹의 관계기술 재학습, 자기계발과 진로재탐색의 진로 역량 강화, 일머리 교육과 기초교육 등 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사례관리, 진로컨설팅, 심리정서 지원 등의 개별 맞춤 지원을 제공함.
- 이 지원체계에 따른 고립 청년 지원은 물리적인 공간에 머무르며 은둔하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제한적임.

[요약 그림 1-4]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맞춤형 지원 구조



자료: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0).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연구보고. p.45.

나. 지자체의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실태

□ 은둔, 고립, 외로움 등 사회적 관계 단절 현상이 사회문제로 환원되면서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2019년 10월에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음.

○ “사회적 고립가구”와 “사회적 고립”은 주로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나 상태로 정의됨.

○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6개 조례 모두에서 대상자로서의 은둔형 외톨이를 연령 구분이 없이 ①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②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③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 있어 ④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와 광주 동구, 서울 은평구, 광주 남구의 조례에서는 ⑤ 일정 기간 이상의 시간적 범위도 함께 제한하고 있음.

〈요약 표 1-4〉 은둔, 고립, 외로움의 키워드별 조례 및 조례안

키워드	사도	시·군·구	조례 명칭
은둔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282호, 2019. 10. 15., 제정)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453호, 2021. 3. 24., 제정)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427호, 2021. 7. 14., 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450호, 2021. 9. 30., 제정)
	전라남도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전라남도조례 제5392호, 2021. 9. 30., 제정)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326호, 2021. 11. 4., 제정)
고립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 10월 14일 발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21호, 2020. 10. 2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04호, 2021. 5. 20., 제정)
외로움	부산광역시	-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5925호, 2019. 5. 29., 제정)
	강원도	횡성군	「횡성군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강원도횡성군조례 제2519호, 2020. 12. 30., 제정)

주: 고독사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자치조례는 검색 결과에서 제외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은둔/ 고립/ 외로움 검색결과. <https://www.law.go.kr/LSW/main.html> 에서 2021.12.12. 인출.

- 자치법규에 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내용을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직업 훈련 및 취업 관련 지원, 상담 및 활력 조성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18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요약 표 1-5〉 지자체별 자치법규에 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내용

시·도	시·군·구	기본 계획 수립	실태 조사	위원회 설치 ¹⁾	지원 센터 설치	직업훈련 및 취업 관련 지원 ²⁾	평생교육 지원	상담 및 활력 조성 등 ³⁾	기타 지원 ⁴⁾	부모 지원
광주광역시	-	○	○	○	○	○	○	○	○	○
광주광역시	동구	○	○	○	-	○	○	○	○	○
부산광역시	-	○	○	○	-	○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	○	-	○	○	○
전라남도	-	○		-	-	○	-	○	○	○
광주광역시	남구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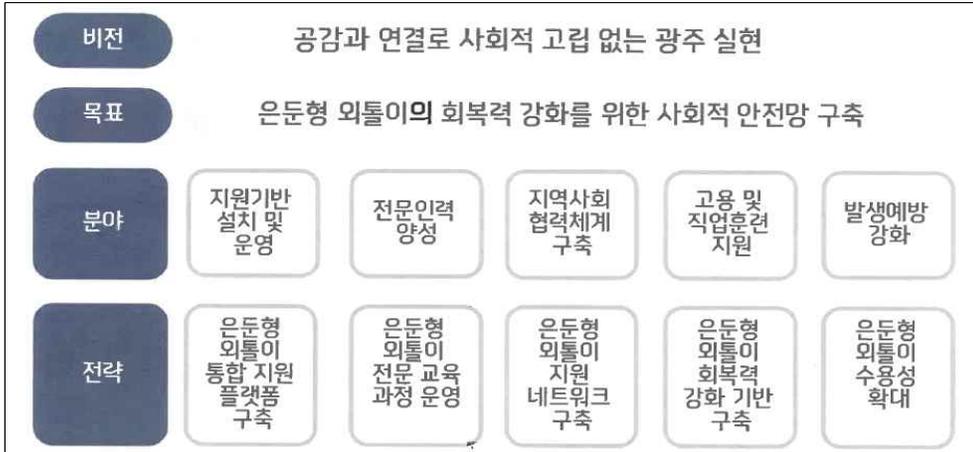
- 주: 1) 위원회 설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은둔형 외톨이 지원 위원회 등에 해당함.
 2) 직업 훈련 및 취업 관련 지원은 직업 적성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취업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에 해당함.
 3) 상담 및 활력조성 등 지원은 심리 상담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자조모임,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 서비스 지원, 활력 조성 프로그램 등에 해당함.
 4) 기타 지원은 은둔형 외톨이 발굴, 조사, 연구 사업, 복지서비스 개발,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업,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해당함.
 자료: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할축진 조례」(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450호, 2021. 9. 30., 제정)
 2)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282호, 2019. 10. 15., 제정)
 3)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할축진 조례」(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326호, 2021. 11. 4., 제정)
 4)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453호, 2021. 3. 24., 제정)
 5)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427호, 2021. 7. 14., 제정)
 6)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전라남도조례 제5392호, 2021. 9. 30., 제정)

□ 광주광역시에서는 조례에 의해 2020년에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2022~2026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은 “공감과 연결로 사회적 고립 없는 광주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함.

- 조례에 근거를 두어, 지원 내용의 분야를 지원기반 설치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발생 예방 강화로 구성하였음.

[요약 그림 1-5] 2022~2026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비전과 추진전략



자료: 광주광역시. (2021.12.9.).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2~'26)(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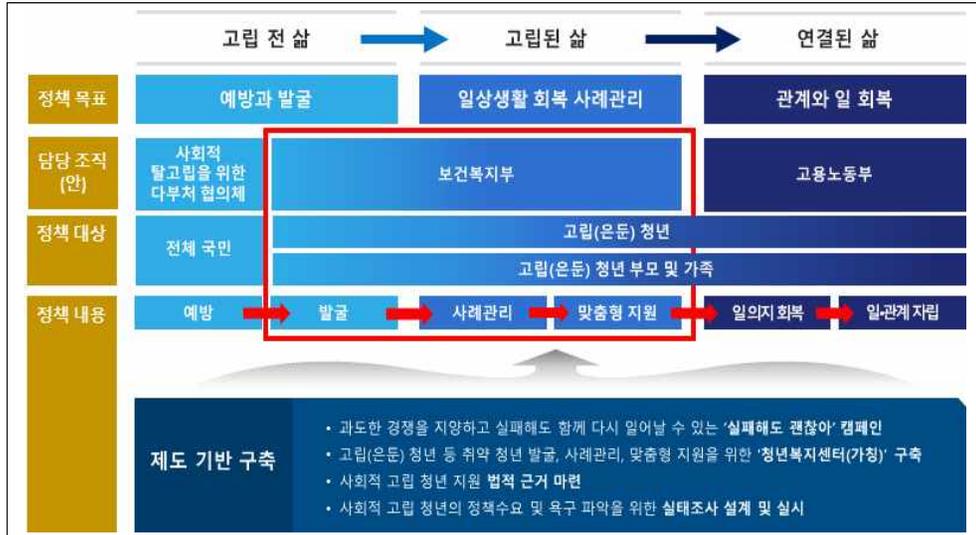
다.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방에 있거나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랬던 게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인생의 많은 굴곡들이 있어요... 누구나 고립될 시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재단 “도란도란 라운드 테이블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한 시간’” 참여자]

- 이 연구에서 현세대 19~34세 사회적 고립 청년은 전체 청년의 약 3.1%(약 34만 명)로 추산한 바 있음.
- 여기에서 ‘고립 청년’은 ① 비동거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타인과의 교류가 부재하고 ② 생활, 경제적, 정서적 곤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년으로 정의함.
- 사회관계의 단절은 사적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곤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결핍되어 있다면 공적 체계가 개입해야 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공적 영역의 지원은 부재함.
- 청년이 고립 혹은 은둔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일상생활과 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입구와 경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함.

- 고립 청년 한 명 한 명이 경험한 은둔의 원인과 실패의 경험,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와 탈고립에의 의지 차이를 고려해 인내심을 갖고 개별 사례를 입체적으로 파악, 필요한 지원을 매칭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접근이 유효함.
 - 은둔은 생애 한 시점에서 경험하는 에피소드로서,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은둔형 외톨이’로서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심리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은둔 청년이 문을 열고 방을 벗어나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한 지역 중심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임.
- (지원 방안 체계(안)) 결국 사회적 고립 청년이 은둔 생활로부터 탈출해 사회로 재진입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당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① 고립 전에는 예방과 발굴을, ② 발굴한 고립 청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내에서 초기상담을 통해 상태를 판정하고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일상생활을 관리함으로써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결국 ③ 관계와 일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세심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립 청년의 탈고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④ 기반으로 고립 전 실패의 경험을 극복할 수 있고 은둔 경험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고립 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 사례관리,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를 구축하며, 관련 법제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고립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통해 근거 기반 정책 발굴이 필요함.

[요약 그림 1-6]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프레임(안)



주: 저자 작성

6. 정책 제언

□ 취약계층 청년 지원 방향

○ 취약계층 청년의 복합 욕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청년기에 발현되는 취약성에 주목한다면 청소년기 경험에 의한 원인에 주목하기보다 취약한 현재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약한 청년이 곤란을 경험하는 삶의 영역이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유형의 중복과 집중 지원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개별법보다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바람직함.

○ 사전적 잠재적 사각지대 예방

- 공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된 이후에는 주기적인 성과 평가와 개선 방안 도출을 통한 미세 조정(fine-tuning)이 가능하지만 대대적인 개편은 사실상 비현실적이므로, 계획 단계에서 중장기적 비전에 따른 단계적 실현 방안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약계층 청년 또한 청년이라는 점에서 청년 일반에 대한 지원체계와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의 법적 연령은 19~34세이지만, 취약한 생애 경험은 연령 분절적이지 않음. 다시 말해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잠정적으로 연령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미래세대로서의 청년 접근성 확보

- 청년이 동네 혹은 온라인 및 읍·면·동 혹은 시·군·구 단위의 지역 내에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함.
- 청년이 곤란을 겪을 때 공적 지원을 받는 것은 권리로서 합당한 동시에 당사자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와 취약 청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 취약한 청년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고 진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동시에 필요한 지원을 검색하고 인지하고 신청하기에도 한계가 있음.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매칭하고 정책 용어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 당사자 중심의 지원 실효성 확보 및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 형성 유인

- 공적 지원은 무엇보다 당사자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어야 함. 동시에 취약계층 청년이 어려움을 겪는 고유한 취약 경험과 삶의 영역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이 전체 체계를 관리하되 유연한 접근이 가능한 민간 지원 서비스 시장 형성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단순한 지원 서비스 제공을 넘어 대상자 발굴과 실태조사 지원, 캠페인 수행, 대상자 일 경험처 지원 등을 내용으로 “취약 청년과 함께 하는 민·관 협의체”를 고려할 수 있음.

□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 여기에서는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정책 수요와 대상자 포괄성을 중심으로 관

런 지원제도의 정책 공급을 <요약 표1-6>과 같이 분류하였음.

- 첫째, 취약계층 청년에게 필요하고 청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장’ 영역은 사업 수행 실적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존재하고 청년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청년의 이용 정도가 낮은 ‘가려진 정책’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를 확인함.
- 셋째, 존재하지만 정책 설계에 의해 청년이 배제되거나 부분적으로 포괄하는 ‘부분 사각지대’는 해당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공적 지원의 법적 근거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제도에 의한 대상자 포괄성을 확대할 수 있는 종합 지원 패키지를 도출해야 함.
- 넷째, 취약계층 청년에게 필요하지만 비어 있는 ‘완전 사각지대’는 새롭게 발견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을 공적 체계에서 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야 함.

□ 취약계층 청년 지원 기반 구축 방안

○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대상자 규모 추정 및 새로운 유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는 실태조사(e.g. 「청년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첫째,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규모 및 추세를 추정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에 의하여 2022년 실시 예정인 “청년 삶 실태조사”에 포함할 수 있는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식별 문항 세트를 활용할 수 있음.
- 둘째,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수용성 변화 등에 따라 시의성 있는 새로운 취약계층 유형을 발견하거나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이 일반 청년에 비해 취약한 삶의 영역과 취약성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음. 하지만 고유한 취약 경험을 확인하거나 지원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실태 파악은 어려움.

24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 셋째,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취약한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가 상이한 바, 대상자를 표적하는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함.

□ 청년 친화적 전달체계 구축

- ① 공적 지원체계로 청년이 진입할 수 있는 입구(gateway)로 전달체계를 구축 하되, ② 취약계층 청년 지원 전문인력이 ③ 청년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에서 ④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법적 근거 마련

- 생애주기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노인복지법」 등이 있는데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바, 합리적 취약계층 청년 지원 정책의 도구로서 국가의 역할과 실천전략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요약 표 1-6>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정책 수요 및 공급 적합성 평가

취약계층 청년 유형		정책 수요			정책 공급			수요 대비 공급 적합성 평가	
		추정 규모 (천명, %)	조작적 정의	자료원	지원제도	대상자 포괄성	접근성		
인적 속성 *	장애 청년	156 (1.4)	등록장애 청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20.12.)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지원	지원	있음 (주민센터 등)	부분 사각지대	
		181 (1.7)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청년	2015년 인구총조사(표본)	-	일부 지원			
	이주배경 청년	100 (0.9)	출생지가 북한 또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재한동포 및 재외동포 제외)	2015년 인구총조사(표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등	일부 지원	부분적 (재외동포재단, 하나센터 등)	부분 사각지대	
		X	다문화 가족 자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하여 24세까지 지원	일부 지원	제한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부분 사각지대	
관계 특성 *	경제적 부양 청년	285 (2.6)	가구주나 배우자가 아닌데, 본인의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가구 총 경상소득의 75% 이상인 청년	제15차 한국복지패널 (20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근로소득 공제	일부 지원	있음 (주민센터 등)	부분 사각지대	
		청년 부양자	한부모청년	158 (1.5)	한부모가정의 부모인 청년	2020년 인구총조사(전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지원	있음 (한부모가족지원 센터)
	청년돌봄자	X	돌봄이 필요한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구원을 돌보고 있는 청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한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가사간병방문지원,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의료비 지원 등	일부 지원	제한적	부분 사각지대 & 가려진 정책	
	고립 청년	339 (3.1)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	-	없음	없음	완전 사각지대	

26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취약계층 청년 유형			정책 수요			정책 공급			수요 대비 공급 정합성 평가
			추정 규모 (천명, %)	조작적 정의	자료원	지원제도	대상자 포괄성	접근성	
일자리 특성 *	미취업 청년	니트 청년	1,969 (19.4)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 훈련 상태에 있지도 않은 청년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3)」 등	지원	있음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등)	보장
		장기/ 비자발적 실업 청년	453 (4.5)	장기실업자 또는 비자발적 실업 청년					
	취업 청년	저임금 근로 청년	1,039 (10.9)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청년					
		불안정 고용 청년	1,290 (12.7)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임시, 일용 종사자와 1인 자영업 종사자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	790 (7.8)	주 50시간 초과 근로청년과 불완전취업(단시간 근로) 청년					
경제력 수준	저소득 빈곤 청년	842 (7.8)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중위 50% 미만인 저소득 빈곤 가구의 청년 가구원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등	일부 지원	있음 (주민센터 등)	부분 사각지대	
	과도한 부채 부담 청년	X	경제력 대비 본인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부담이 과도한 청년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득 수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지원 등	일부 지원	없음	부분 사각지대 & 가려진 정책	

주: *표시한 인적 속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은 경제력 수준과 상호작용하여 공적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청년 인구 대비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비율은 (1) 자료원이 인구총조사 및 행정자료인 경우 인구총조사의 모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2) 자료원이 인구총조사가 아닌 경우 각 자료원에 의한 시점 기준 비율을 산출한 인구총조사에 의한 모수를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함. (2)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함. 정책 공급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수준을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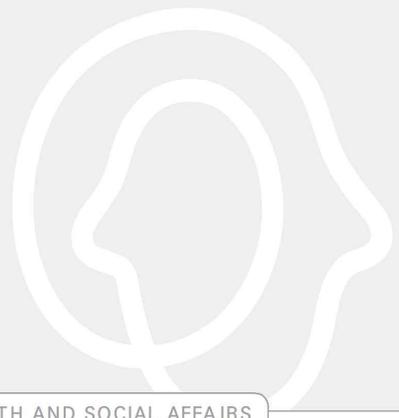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키워드 : 청년, 취약한 삶 경험, 공적 지원의 대상자 포괄성,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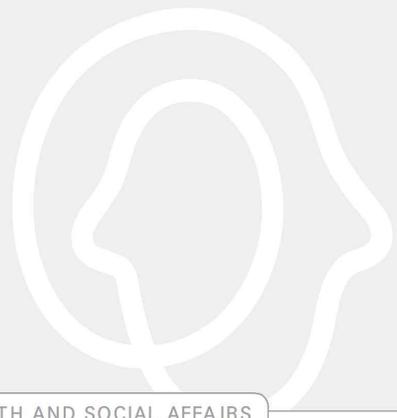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부

서론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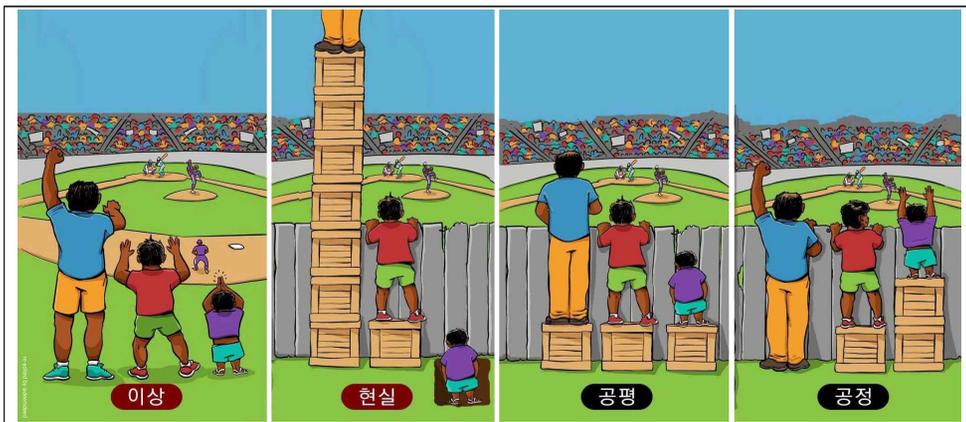
제2절 연구 관점과 내용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취약계층 청년은 현세대 청년 중에서도 인적·환경적 여건의 결핍 혹은 부족으로 인하여 이행기 과업을 수행하기에 복합적인 곤란을 경험하고 있음.
-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빈익빈 부익부로 체감되고 있음.
- 공평한 지원은 차이를 두지 않고 지원하여 애초의 차이를 보정하기에 한계가 있는 데에 반해, 공정한 지원은 차이를 고려해 취약한 집단에 지원을 집중하여 결국 모두가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임.

[그림 1-1] 공평 vs. 공정



자료: '공평 공정'을 검색어로 한 인터넷 검색자료

-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회적 재난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충격에 더 취약한 집단이 존재하는 등(김성아, 2021) 코로나19 확산은 청년 중에서도 취약계층 청년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은 1961년 도입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를 통해 여성과 소수인종 등 미국 내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진 집단을 소수자로 정의하고,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우대함으로써 누구나 바라는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해왔음.

○ 미국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의한 소수자 할당제의 역차별성에 대한 논쟁이 존재했고 일부 주에서 위헌 판정과 적극적 확대가 양립했음(김지영, 2017).

-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조치로 대학에 입학한 소수자의 장기적 생산성이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Holzer, 2007) 등 귀속 특성에 의한 격차가 완화되는 제도 효과가 누적됨.

○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시행과 그간 축적된 효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한국은 정책 공급처에 따라 다소 산발적임.

- 결국 한국의 취약계층 청년의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공급되는 정책을 구조화하여 출발선에서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청년기본법」을 시행하면서 취약계층 청년을 식별하고 지원을 집중하여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할 것을 명시함.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과 청년정책 시행계획(2021)에서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 확대’에 대해 명시함.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위기청년, 청년한부모, 이주배경), 청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청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사업을 구체화함.
-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는 보호종료아동, 가출 청년, 청년 1인 가구, 청년 장애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청년으로 봄.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 취약계층 청년 예산 비중은 약 3%(0.8조 원)이며, 21년도 시행계획 과제 중 취약계층 청년 대상 정책과제 비중은 약 7%(25개)에 불과함.

○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2021.8.26.)에서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서는 청년 간 격차 해소를 추진 방향의 하나로 제시하며, 청년 세대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로 함.

- 이행기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와 교육, 복지, 문화 등 여건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다부처 사업을 구체화하였음.

○ 기본계획상 그리고 시행계획상 명시된 취약계층 청년은 기능부처별 분절적 접근 방식으로 다루는 바람에, 취약계층 청년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와 지원이 부족함.

- 일부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설정한 ‘취약 청년’에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정세정 외, 2021; 권수빈, 2020).
- 국내에서는 정책 대상자로서 원 가구로부터 독립하는 이행기에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청년의 특성을 반영하는 취약계층 청년의 정체성에 대해 공유된 이해가 부족함.

□ 취약계층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서 식별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틈을 메우는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

○ 기존 선행연구는 청년 빈곤, 소득 등의 특정 분야에 주로 초점을 맞춤. 이로 인해 취약계층 청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어려움.

- 김문길 외(2015)는 일하는 청년의 사례에 주목하였고, 김태완과 최준영(2017)은 소득을 중심으로 청년 빈곤 문제에 접근하였음.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로 정책 공급 중심의 접근이 존재하였고, 청년과 같은 특정한 수요를 가지는 인구집단에 주목하지 못했음.

○ 최근 소수의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

- 김문길 외(2020)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취약계층 청년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실증 분석하여,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 영역에서 취약한 청년을 식별하였음. 그 결과 청년 집단에서 경제력이나 고용의 빈곤이 드러나는 10년 전과 비교해 최근 취약계층 청년은 전반적인 영역에서 중복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 청년 식별과 집중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

□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취약계층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이들의 삶 전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을 식별하고, 둘째, 특히 생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공적 지원이 부재한 핵심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셋째, 향후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근거 기반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에 있음.

○ 첫째, 취약계층 청년 개념 및 기준 정립과 체계적 유형화

- 취약계층 청년 삶 실태와 공적 지원 비교

- 둘째, 핵심 취약계층 청년 지원 방안 도출
 - 핵심 취약계층 청년 대상 국내외 지원 사례 검토
 - 핵심 취약계층 청년의 삶 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
 - 핵심 취약계층 청년 지원방안 제안
- 셋째, 취약계층 청년 지원 정책 방향 제안
 -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및 핵심 취약계층 청년 지원 방안 등 근거 기반 정책 방향 제안

제2절 연구의 관점과 내용

1. 연구의 범위와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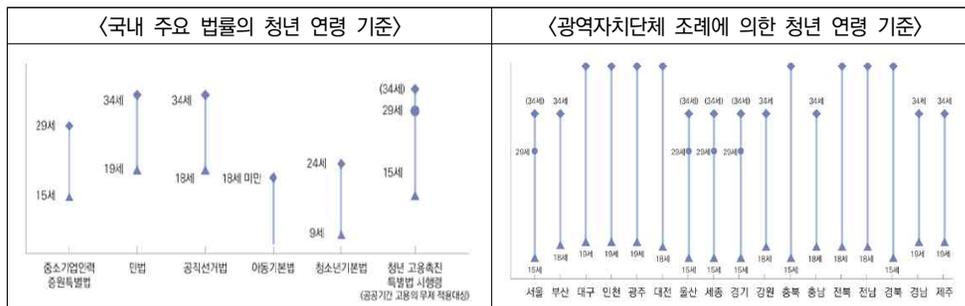
가. 청년에 대한 이 연구의 조작적 정의와 청년정책

- 김문길 외(2021)는 청년을 생애주기 상에서 ‘학교를 졸업하고(교육) 정규직으로 취업해(경제활동) 주택을 마련하고(주거) 가족을 형성하는(관계) 전통적인 이행의 과정’을 완수하기를 기대 받는 연령대로 보면서도, 현세대 청년은 과거 기성세대의 경험을 자신의 미래상으로 참고하기 어려운 복잡다기하고도 지연된 이행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음.
- 이 연구에서는 과거에 청년이었던 기성세대의 시선에서 청년의 삶을 바라보기 보다 실제로 현세대 청년이 살아가는 삶에서의 고유한 경험과 어려움에 주목 하되 주변 환경에 반응하기보다 성장을 주도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함.
- 「청년기본법」제3조(정의)에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 하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다루는 관련 법률과 광역자치단체 단위 조례에서는 관점과 지원 내용 등에 따라 청년 연령을 [그림 1-2]과 같이 정의하는 등, 정책 대상자로서 청년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부재함.

○ 더욱이 대상자로서 청년은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청년 당사자는 자신의 삶에서 영유아·아동·청소년기부터 청년기를 거쳐 중·장년기와 노년기 까지 학술적인 연령 구분에 의해 분절적이기 보다 연속적인 경험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연령을 기준으로 현세대 청년을 식별하되 그들의 고유한 경험은 연령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함.

[그림 1-2] 주요 법률 및 조례에 의한 청년 연령 기준



주: 2019년 11월 기준임.

자료: 변금선. (2021). 청년의 삶,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 「청년기본법」제3조(정의)에서 청년정책은 제2조(기본이념)에 의해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임.

○ 이에 정부는 2021~2025년의 시간적 범위에 대하여 2020년 12월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기본계획에서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를 비전으로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및 문화, 참여 및 권리의 영역에서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자 관계부처의 관련 사업을 망라하였음.

- 그리고 “청년세대 격차 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2021년 8월에 발표하여 일자리 중심의 경제활동인구로서 청년을 바라보던 과거의 경직된 관점에서 벗어나 청년의 다차원적·실질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틈을 메우고자 하였음.
- 그럼에도 보호종료청년, 청년 한부모, 이주배경 청년, 청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청년, 가출 청년, 청년 1인 가구 등 이슈가 되는 현상에 대응하여 취약한 경험을 하고 있는 청년을 나열하고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며, 자연스럽게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도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은 2021년 3월에,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 원강화 방안」은 2021년 7월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발표되는 등의 성과를 보였지만,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등장하여 소관부처가 불명확한 취약 청년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잔존함.

나. 취약계층 청년 당사자의 삶 실태와 공적 지원의 정합성 비교 평가

- 이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① 취약한 삶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삶의 영역에 대한 ② 공적 지원의 대상자 포괄성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현행 취약계층 청년 정책을 유형화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자 함.
- 단, 공적 지원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이번 연구의 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2021년 7월에 지원강화 대책이 발표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이번 연구 논의의 범위에서 제외함.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에게 필요하고 청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① 보장”되는 정책 영역을 확인하거나,
 - 취약계층 청년에게 필요하고 청년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청년의 이용

정도가 낮은 영역을 “② 가려진 정책”으로 분류하여 기존 정책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거나,

- 취약계층 청년에게 필요하지만, 정책 설계에 의해 청년이 배제되거나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영역을 “③ 정책적 부분 사각지대”로 분류하여 기존 정책이 청년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거나,
- 취약계층 청년에게 필요하지만 비어 있는 정책 영역을 “④ 정책적 완전 사각지대”로 발굴하여 신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음.
- 상기의 정책 적합성 구분은 배타적이지 않고 중복될 수 있음.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공적 지원의 포괄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는 정책적 부분 사각지대이지만 다른 일부는 가려진 정책일 수도 있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첫째, 취약계층 청년 개념 및 기준 정립과 체계적 유형화

- 청년과 취약계층을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청년 연령집단을 포괄하며 전국 대표성을 가지는 2차 자료를 양적 분석하여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규모 추정 및 삶 실태 파악
-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전문가 자문 수행

□ 둘째, 핵심 취약계층 청년 지원 방안 도출

- 사회적 고립(은둔)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사회적 고립 및 은둔 경험을 갖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경험이 있는 현장 실무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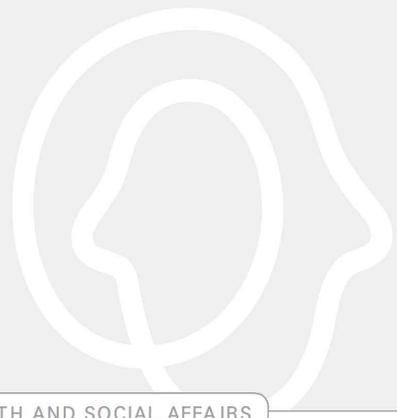
〈표 1-1〉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초점집단면접 개요

구분	대상	일정 및 장소	
당사자	고립청년	2021.11.24.(수) 오후, 서울	
	은둔청년	2021.11.25.(목) 오전, 서울	
가족	은둔청년 가족	2021.11.26.(금) 오후, 화상회의	
실무자	고립(은둔) 청년 지원 경험이 있는 현장 실무자	광주 청년활동지원센터	2021.10.28.(목) 오후, 세종
		청년재단 체인지업 지원사업	2021.10.29.(금) 오후, 서울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청년이음센터	2021.11.10.(수) 오전, 서울
		K2인터내셔널코리아	2021.11.10.(수) 오후, 서울
		광주전남연구원	2021.12.9.(목) 오후, 광주
전문가	고립(은둔) 청년 관련 전문가	구직단념청년	2021.10.29.(금) 오전, 세종
		고립 청년	2021.12.14.(화) 오후, 세종
		은둔형 외톨이	2021.12.13.(월) 오전, 화상회의

자료: 저자 작성

□ 셋째, 취약계층 청년 지원 정책 방향 제안

-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및 핵심 취약계층 청년 지원 방안에 대한 재검토
- 취약계층 청년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 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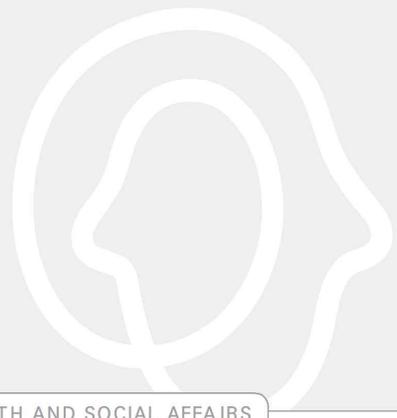


제2부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제2장 취약계층 청년 개념과 유형화

제3장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실태



제2장

취약계층 청년 개념과 유형화

제1절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를 위한 접근과 원칙

제2절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제3절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규모 추정

제 2 장 취약계층 청년 개념과 유형화

제1절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를 위한 접근과 원칙

1.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를 위한 접근

- 정책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인적 속성과 일자리 특성, 그리고 경제력 수준 등에 의해 유형화하고 있음(이준섭, 이진국, 2012; 방하남, 강신욱, 2012).
 - 이준섭과 이진국(2012)은 차별금지 및 적극적 우대조치를 위한 법제 정비를 목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일자리 특성과 인적 속성을 기준으로 정의했음.
 - 방하남과 강신욱(2012)은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대상자 식별의 관점에서 적절한 사회적 보호가 없으면 미래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였음.
- 여기에서는 취약계층 유형화를 위해 인적 속성과 일자리 특성에 관계 특성을 더하여 아래와 같이 취약계층 청년 유형의 특성 및 규모를 검토함.
 - 인적 속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은 건강 문제, 특히 장애가 있는 청년이나 이주배경 청년 등이 해당할 수 있음.
 - 관계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은 특정한 부양 부담이 가중된 경제적 부양 청년, 한부모 청년, (조)부모나 가구원 등을 돌보는 청년돌봄자와 사회적 관계가 부재한 고립 청년 등이 해당할 수 있음.
 - 일자리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은 취약한 고용을 유지하는 비정형 근로 청년이나 특수고용형태 근로 청년, 단시간 근로 청년,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청년이나 고용 밖의 실업 청년, 니트(NEET) 청년 등이 해당할 수 있음.
 - 경제력 수준에 의한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 등 저소득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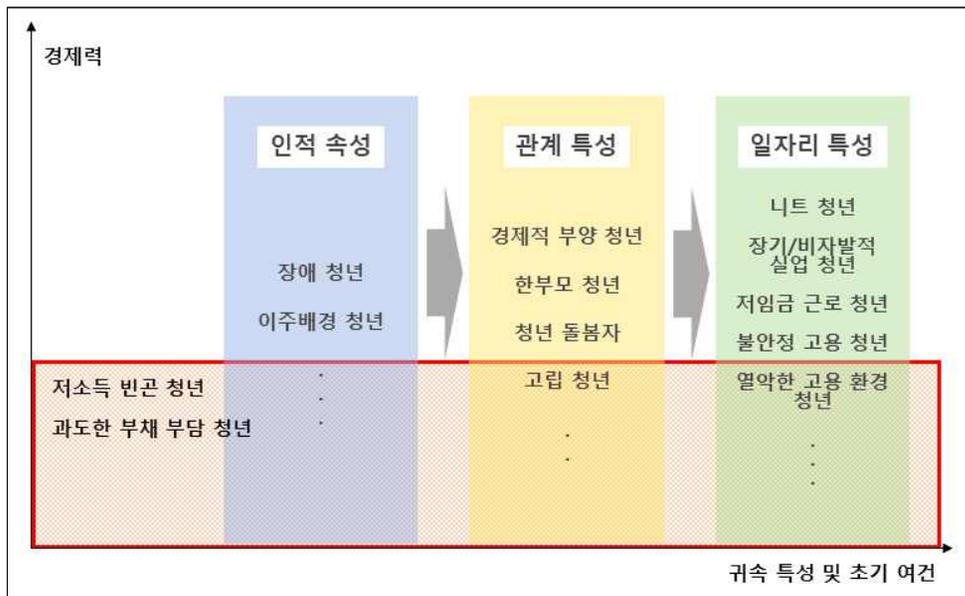
과도한 부채가 있는 청년 등이 해당할 수 있음.

○ 정책 대상자로서의 취약계층 청년의 인적 속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에 의한 취약성은 그 자체로 취약하다기보다 경제력 수준과 상호작용하여 청년의 이행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됨.

- 공적 지원의 목적이 인적 속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에 의해 취약한 상황에 처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생애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적인 지지체계와 노력을 통해 스스로 극복하는 자발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종합하면, 독립하는 삶을 준비하는 이행기 청년 중 취약계층은 생애 과업을 달성하기에 인적 속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 경제력 수준의 여건이 결핍되거나 충분하지 않은 집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그림 2-1]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개념도(안)



자료: 저자 작성

2.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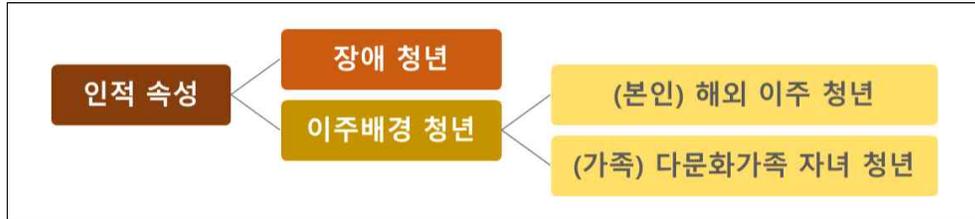
- 이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을 식별하기 위해 인적 속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 경제력 수준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유형을 유형화하고, 조작적 정의에 의해 규모를 추정함.
-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및 조작적 정의를 정교화하고,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원을 활용해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의 규모를 추정함.
 -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는 정책 대상자로서의 취약계층 청년을 식별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음. 하지만 청년 당사자를 소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새로운 차별을 양산할 위험을 유의해야 함.
- 이런 맥락에서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의 원칙은
 - 첫째,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낙인감을 유발하지 않되 개별 사례의 특수성에 대해 충분히 포용적이어야 하고,
 - 둘째, 정책 공급 측면에서 대상자를 식별하고 범주화할 수 있어야 하며,
 - 셋째, 시대적으로 시의성 있고,
 - 넷째, 일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제2절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1. 인적 속성

- 인적 속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함.
 - 첫 번째는 장애가 있는 청년이고, 두 번째는 본인 혹은 원가족이 이주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으로서 해외에서 이주해온 청년과 다문화가족 자녀 청년을 포함함.

[그림 2-2] 인적 속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자료: 저자 작성

가. 장애 청년

-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비준한 바 있는 UN의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조(목적)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이 있어 타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충분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United Nations, 2012.8.).
- 우리나라에서 장애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장애’ 검색 결과, 2021.12.7.).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서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나 내부기관의 장애를 포함하는 신체적 장애나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 구체화되며, 대통령령에 의한 장애의 종류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됨.
- 그러므로 장애를 가진 청년은 협의의 개념으로서 국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19~34세 청년부터 광의의 개념으로서 충분한 사회생활을 하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 제약이 있는 19~34세 청년으로 설정할 수 있음.

나. 이주배경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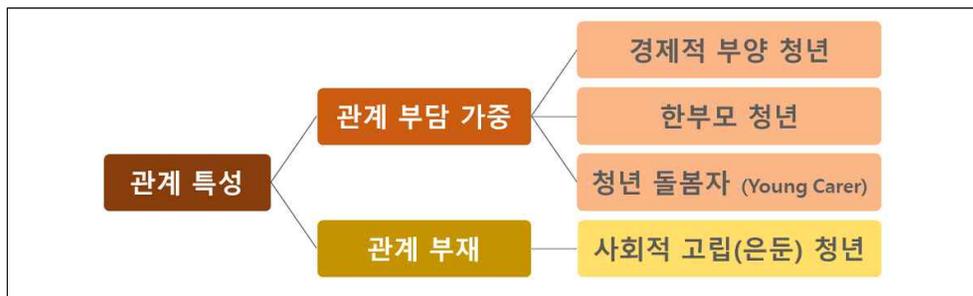
- 이주배경 청년, 즉 본인이나 원가족이 이주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은 경제적 자립, 주거 자립, 관계 자립 등 청년기에 기대되는 생애 과업과 함께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하는 추가 과업을 수행해야 함.
- 이주배경 청년은 크게 본인이 이주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와 원가족이 이주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양계민, 정윤미, 장운선(2021, pp.15-17)는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을 본인의 출생지와 부모의 국적에 따라, 해외 및 북한 출생자와 부모 중 한 명이 상이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로 정의하였음.
- 본인이 이주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은 출생지가 국내가 아니거나,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해외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임.
 - 이주배경이 한국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추가 과업을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유학 등 이주배경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원가족의 경제력 등 취약성을 보완할 사적 기제가 작동할 가능성이 존재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정의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다문화가족'을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이주배경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에 의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연령대를 제한하고 있어, 「청년 기본법」에 의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령대 범위와 상이함.

2. 관계 특성

□ 관계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함.

- 첫 번째는 특정한 유형의 관계 부담이 가중된 유형으로, 가구의 경제적 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 자녀를 양육하되 홀로 부담을 지는 한부모 청년, 그리고 가구 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 돌봄자(Young Carer) 등임.
- 두 번째는 관계가 부재하거나 결핍된 유형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임.

[그림 2-3] 관계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자료: 저자 작성

가. 경제적 부양 청년

□ 이른바 정상가정으로 불리던 가구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고, 그중에서도 남성 가구주가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계부양자(Breadwinner)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정되었음.

- 하지만 가구의 생계 부담을 청년 가구원이 지는 경우, 가족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자신의 삶을 후순위로 미루게 되며 결국 청년기의 이행기 과업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에서 청년기에 청년은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교육 및 노동 등의 이행기 과업을 수행함.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소

비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등 자신의 생애 전반 경제력을 축적하게 됨.

- 그동안 가계 부담을 지는 취약성을 가지는 청년에 대해서는 사례를 단편적으로 발견하는 데에 제한되어 있었음.
- 여기에서는 본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과의 가계 유지를 위해 가구 소득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경제적 부양 부담을 지는 청년 가구원을 경제적 부양 청년으로 간주함.
 - 단, 분가가구를 형성한 청년 가구주와 배우자는 제외하여, 가구주와의 관계가(손)자녀이거나(손)자녀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하여 고려할 수 있음.

나. 한부모 청년

- 한부모 가족은 이혼, 별거,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임(국립국어원 우리말샘, ‘한부모 가족’ 검색 결과, 2021.12.7.).
- 양부모 가족의 경우 경제활동과 자녀 돌봄의 부담을 부부가 공유하며 서로 지지체제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한부모 가족의 부모는 경제활동과 자녀 돌봄의 부담을 1명이 전담하며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배우자가 부재하여 가족 내 관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정의)에서 한부모를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사실혼 관계를 제외한 미혼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김문길 외(2020, pp.439-449)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장애인, 노인 가구와 함께 한부모 가구의 추가 비용을 계상하는 등,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추가 돌봄 부담을 고려하기도 하였음.
- 여기에서는 한부모 청년을 한부모가족의 부모인 19~34세 청년으로 정의할 수 있음.

다. 청년 돌봄자

□ 청년 돌봄자는 영케어러(Young Carer)를 번역한 말임.

○ 영케어러는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돌보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 바 있음.

- 영국에서 영케어러는 장애, 질병, 정신건강 문제, 약물 및 알콜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진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이나 친지를 돌보아야 하는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이고(NHS 홈페이지, 2021.12.13.), 이들은 학령기에 있는 대상자이므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자조모임을 형성하여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함.
- 호주에서는 돌봄인정법(Care Recognition Act)을 2010년에 제정하였고, 영케어러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나 친지를 돌보는 25세 미만 초기 청년까지 포괄함(Carer gateway 홈페이지, 2021.12.13.). 호주 사회서비스부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판단할 성인의 조력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공식적인 돌봄 지원과 재정 지원, 돌봄자 자신에 대한 돌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있음.
 - 호주 보건복지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에서는 25세 미만 돌봄자를 272,200명으로 추계하였음(AIHW, 2017, p.3)
- 캐나다에서는 영케어러협회(Young Caregivers Association)가 구성되어 있고, 2012년 기준 캐나다 전역에 1백 25만 명의 15~24세 영케어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Young Caregivers Association 홈페이지, 2021.12.13.).
- 일본에서는 사이타마현의 케어러 지원조례에서 영케어러를 고령,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친족, 친구 그 외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무상으로 간병, 간호, 일상생활상의 보살핌이나 다른 지원을 제공하는 케어러 중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였음.¹⁾

1) 埼玉県 홈페이지, 埼玉県ケアラー支援条例. <https://www.pref.saitama.lg.jp/a0609/chiikihoukatukea/jourei.html> 에서 2021.12.13. 인출.

- 교육, 노동, 주거 등 이행기 과업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이 가족 돌봄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돌봄 부담뿐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함. 더욱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생계부양자일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고, 가족 안팎에서 갈등을 경험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함.
 - 청년 돌봄자는 신체,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책임을 맡는 19~34세 청년으로 정의할 수 있음.

라.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 타인과의 관계가 부재하거나 결핍된 상태인 고립(isolation)은 고독(solitude), 외로움(loneliness) 등의 용어와 관련되며,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서구 국가들에서 어떤 특정 시점에 외로움 경험 비율은 성인의 20~40%, 강한 또는 지속적인 외로움 경험 비율도 성인의 5~7%로 추정됨(Friends for Good[FFG], 2019, p.7; Luo, Hawkey, Waite, Cacioppo, 2012, p.907).
 - 또한 연령별 외로움 출현율의 분포는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U자형으로 알려져 있음(Achterbergh et al., 2020, p.2; Laskaard, Friis, Shevlin, 2016, p.1373).
- 한편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1인 가구의 급증과도 관련이 있음(이명진, 2019, p.16).
- 유사어로서 외로움은 '동료애의 결핍 또는 상실로 (인한) 주관적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감정'으로 정의됨(Perlman and Peplau, 1998; HM Government, 2018, p.18).
- 또한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들이 본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감정'으로도 정의될 수 있음(Lim, Rodebaugh, Zyphur, Gleeson 2016, p.1).

- 한편 외로움은 인간이 가진 사회적 관계의 양·질,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사회적 관계의 양·질, 이 2가지가 불일치할 때 발생함(Perlman and Peplau, 1998; HM Government, 2018, p.18).
- 감정적인 경험으로서 외로움과 고독은 관계의 물리적 단절로서의 고립이라는 용어와 개념상 구별될 필요가 있음(HM Government, 2018, p.18).
- 외로움은 종종 고립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지만, 개념상 서로 다름(HM Government, 2018, p.18). 어떤 사람은 외로움 없이 고립을 느끼지만, 역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고립은 없지만 외로움을 느낌(HM Government, 2018, p.18).
- 유사하게 외로움은 개념상 고독과도 다름(HM Government, 2018, p.18). 외로움과 고독의 개념적 차이는 외로움은 대체로 환영받지 못하는 감정인 반면 고독은 어떤 이들에게는 향유되고 환영받는 감정임(HM Government, 2018, p.18).
-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고립의 개념적 차이는 외로움이나 고독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으로써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반면 고립은 관찰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음(HM Government, 2018, p.18).
- 한편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은 ‘타인과의 관계의 부재 또는 아주 작은 숫자의 의미 있는 관계로 한정되는 객관적 어감’을 가진 단어임(Baarck et al., 2021, p.7).
- 임상심리학의 관점에서 사회적 고립은 전통적으로 개입을 위한 표적화된 기준 또는 몇 가지 심리적 장애의 증상으로 간주해왔음(Coplan, Bowker, Nelson, 2021, p.5).
- 하지만 사회적 고립과 복지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할 때, 최근 학자들은 사회적 고립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경로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적 요인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Coplan et al., 2021, p.5).

- 사회적 고립은 ‘은둔형 외톨이’를 의미하는 일본어 히키코모리의 번역어로도 쓰임(Wong & Li, 2021, p.378; 정교진, 2020.4.2.).
 - 히키코모리는 Teo, Stufflebam, Kato(2014)의 연구에서 학술적으로 도입된 용어로, 일본에서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여 집 밖의 활동을 제한하여 방과 같은 자신의 공간에 머무르는 청년들을 지칭함(Teo et al., 2014; Wong & Li, 2021, p.378).
 - 히키코모리 현상은 세계화와 도시화와 관련이 있고, 그 현상은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대한민국)과 나아가 고소득국가에서 많은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Wong & Li, 2021, p.378).

-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18~29세를 ‘떠오르는 성인기(emerging adulthood)’로 개념화하는 인간발달이론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Nelson & Millett, 2021, p.146).
 - 이 시기는 ‘아동기(adolescence)’와 ‘성인기(adulthood)’의 중간에 위치하고, 이 시기의 특징은 한 개인이 부모로부터 독립(거주지 독립 또는 경제적 독립 또는 둘 다를 성취한 상태)하여 그 선택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주체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력을 높여 가려고 함(Nelson & Millett, 2021, p.146).
 - 하지만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쉽지 않음.
 - 첫째, 사회적 고립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임. 예컨대, 일본의 히키코모리는 ‘6개월 이상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는 청년’으로 정의되는 반면 한국의 사회적 고립 청년은 ‘3개월 이상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는 청년’으로 정의되기도 함(정교진, 2020.4.2.).
 - 둘째, 국가 간 정책 비교연구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이란 용어와 상호교환적 또는 비교 가능한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치밀한 검토가 부족하기 때문임. 예컨대, 서구 복지국가에서 청년층의 사회적 복지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라는 단어가 있음(Wong & Li, 2021, p.379).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에서 NEET 상태에 있는 청년(18~24세)의 비율은 평균 14.3%임(Wong & Li, 2021, p.379). 반면 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NEET 상태로 분류될 수 있는 청년(20~34세)의 비율은 평균 16.5%임(Wong & Li, 2021, p.379).

□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고립 청년은 타인과의 유의미한 관계가 단절된 청년으로 볼 수 있음. 이때 관계는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와 감정을 나누는 교류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포함함.

○ 은둔 청년은 타인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단절하고 일정 기간 이상 제한된 공간에 머무르는 은둔형 외톨이인 청년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은 사회적 고립의 연속적인 스펙트럼에서 극단적인 형태라고 분류할 수 있음.

3. 일자리 특성

□ 청년기는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로, 일은 단순히 생계를 이어나가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술을 쌓고 훈련을 이어나가면서 향후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줌.

○ 학교를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청년의 이행 시점과 경로는 이후 생애 노동시장 내 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Chacaltana, Elder, Lee, 2019).

- 특히 우리나라에서 첫 일자리는 다음 일자리로의 디딤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임시직으로 첫 일자리를 시작할 경우 계속해서 임시직에 머무르게 됨(남재량, 2008; OECD, 2015).

- 이에 청년들은 제한적인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해 학교 졸업 이후 추가적인 인적자본에의 투자를 통하여 노동시장 참여를 늦추는 양상이 나타남(김유빈, 최충, 2017).
-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적인 실업 상태이거나 교육기관을 다니지도, 취업하지도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니트(NEET) 청년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양상임.
- 청년층은 일하더라도 근로 연령층에서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종사하는 비중 역시 높음(ILO, 2020),
 - 낮은 질의 일자리는 그 자체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요한 법적, 사회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커리어의 발전과 훈련의 기회를 제한받으면서 생애 노동의 기회에도 영향을 미침(ILO, 2020).
 - 일하고 있는 이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기 위한 ILO의 괜찮은 일자리 지표(decent work indicator)나 OECD의 일자리 질 프레임워크(job quality framework) 등이 이뤄진 바 있음.
 - 일자리 질은 한 가지 지표로 요약될 수 없으며, 다면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구자 또는 기관에 따라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 다만, 일자리 질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항목으로는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 그리고 극단적으로 긴 노동시간이나 불완전 고용 상태, 일자리 관련 제도적 보호 여부 등이 있음.
- 이처럼 노동시장 안팎에서 그려지는 청년의 일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년의 일자리 특성을 크게 미취업청년과 취업청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 미취업 청년의 경우 니트와 실업 기간, 실업의 원인에 따라, 취업 청년의 경우 OECD의 일자리 질 프레임워크를 따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관계, 장시간 근로와 불완전 고용, 주요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제외 여부를 토대로 취약 청년을 분류하였음.

[그림 2-4] 일자리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자료: 저자 작성

가. 니트 청년

- 정규교육 과정을 마쳤으나, 일이나 훈련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니트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는 전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면서 주요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 청년 니트의 문제는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이자, 노동시장으로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로 일이나 교육을 통하여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쌓지 못하는 상태임을 의미함.
- 청년 니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EU나 OECD, ILO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청년 니트에 대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2018).
- 청년 니트는 세부적으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 니트와 비경제활동인구인 비활동 니트로 구분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니트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활동 니트의 규모가 크다는 특징을 나타냄.
- OECD 정의에 따른 우리나라의 니트 규모는 19.0%로, OECD 가입국의 평균 (12.8%)에 비하여 6.2%포인트가 높게 나타남(김규혜, 이승윤, 박성준, 2020).
 -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사교육의 비중이 높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사교육 기관에 다니는 청년들을 제외하여 니트 규모를 추정하더라도 16.3%가 니트로 분류됨.

- 한국의 니트는 고학력 니트의 비중이 높으며, 현재 노동시장 내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활동 니트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김종욱, 2017).
 - 전체 니트 인구 중 3분의 1 가량이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구직 니트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임.
 - 비구직 니트는 당장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서 경제활동 참여 자체를 유보하면서 추가적인 인적자본 축적 등을 이어나가고 있거나(시험 준비 등), 노동시장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고 판단하여 경제활동 참여 의지 자체가 줄어든 경우로 추측될 수 있음(김종욱, 2017).
 - 한국에서는 전체 니트 중 고학력자의 비율이 32.5%로 OECD 평균의 16.5%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양상을 나타내며, 이 같은 고학력자 니트는 이미 인적자본 축적에 많은 양의 자본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훈련 및 교육 훈련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의 여지가 크지 않음.

나. 장기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청년

- 실업은 어느 연령에서나 소득과 건강, 가족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심각한 충격을 주지만, 청년의 경우 특히 실업의 경험자체가 상처 효과로 남아 생애 노동시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Bell and Blanchflower, 2011; Fergusson and Yeates, 2021).
- 물론 청년기는 직장을 탐색하거나 직무 경험으로 여러 일자리를 경험하는 탐색기로 실직이 빈번하다는 특징을 지니며(박성준, 2005), 실제 첫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2개월로 짧음(통계청, 2021.7.20),
- 따라서 현재 실업 상태가 이직을 통한 노동시장 탐색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실업 여부로 취약 청년을 구분하기는 어려움.
- 다만, 실업의 보다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서 청년 실업자들 중에서도 더 취약한 특성을 나타내는 이들을 구분할 수 있음.

- 실업은 크게 일자리를 잃는 실업으로의 유입 요인과 일자리를 구하는 데 실패하는 실업으로부터의 이탈 요인으로 결정됨(남재량, 이철인 2012).
 - 이 두 요인 중, 실업으로의 유입에 따른 문제는 실업 기간은 짧으나 반복적으로 실업을 경험하는 이들로 대표될 수 있으며, 실업으로부터의 탈출, 즉, 구직 실패의 문제는 장기 실업자로 대표될 수 있음.
- 통상 장기 실업문제가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남재량과 이철인(2012)은 두 요인이 모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 두 요인의 영향이 청년들 중 하위 집단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음.
 - 실직의 횟수와 누적 실업 기간이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본 신동균(2004)의 연구는 여성의 경우 실직의 횟수가, 남성은 실직의 기간이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 변화 역시 고졸 이하의 저학력, 여성 청년들의 경우 실직의 요인이, 대졸 이상 고학력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지연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남(함선유, 발간 예정).
- 현재 우리나라 직접 일자리 정책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을 분류하여 공표하고 있음.
- 취업 취약계층 분류 대부분 저소득층, 장애 여부 등 개인의 계층적, 인적 속성에 따른 분류인데, 유일한 노동시장 요인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중인 이들을 취업 취약계층으로 구분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장기 실업뿐만 아니라 실업으로의 유입 요인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비자발적 원인에 따른 실업 청년을 취업 청년으로 분류함.

다. 저임금 청년

- 취업 소득을 통하여 적절한 임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저임금 문제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는 워킹푸어(working poor) 문제로 이어지게 됨 (ILO, 2020).

○ 임금은 평균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그 분포 역시 개인적인 삶과 전반적인 웰빙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짐. 평균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 정해진 상황에서 삶의 만족도는 더 평등한 분포에서 높아짐(Cazes, Hijzen, Saint-Martin, 2015).

- 이에 OECD의 일자리의 질 프레임워크에서는 한 사회의 임금 수준과 임금 불평등 수준을 지수화하여 임금 측면에서의 일자리 질을 파악하고 있음.

- 이러한 분류는 한 사회의 불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는 용이하지만, 개인의 측면에서 취약한 청년의 범주를 구분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음.

○ ILO의 팬찮은 일자리 질 지표에서도 중요 지표 중 하나로 불충분한 임금을 나타내는 노동자들의 규모를 측정하고 있음(Anker, Chernyshev, Egger, Mehran, 2003).

□ 본 연구에서는 저임금 청년들을 일자리가 취약한 청년들로 구분하고, 단순히 절대적인 빈곤선 아래의 청년층을 취약계층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소득 수준과 분포를 고려하여 상대적인 빈곤선을 미치지 못하는 청년을 취약청년으로 구분하였음.

라. 불안정 고용 청년

□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실업의 위험이 높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을 때 개인의 삶의 질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됨(Cazes, Hijzen, Saint-Martin, 2015).

○ 전형적인 고용관계는 종신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단일한 고용주에게서 직접 업무지시를 받는 형태를 나타내며 이러한 고용관계 하에서 사회보험과 연금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음.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다양한 비전형적 노동관계가 나타났으며, 기존과 다른 형태의 고용관계에 따른 불안정성이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됨(김영아, Bonneuil, 2019)

- 유럽 사회조사나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 등에서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삶의 질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꼽고 있음(Green, 2009).

○ 한편, 높은 실업 위험을 경험하더라도 실업 보험과 같이 실업에 따른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있을 경우 실업의 위험에 따른 불안정성 수준은 다소 보완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OECD의 일자리 질 프레임워크에서는 계량모형을 통하여 각 국가의 일자리를 잃을 확률과 고용보험 제도를 통하여 실업에 대한 임금 보전 수준을 고려한 일자리 안정성 지표를 공표하고 있음(Cazes, Hijzen, Saint-Martin, 2015).

○ ILO의 괜찮은 일자리 지표는 1년 이하의 근속기간을 나타내는 일자리나, 임시직 일자리 등을 살펴보고 있음(Anker et al., 2003).

□ 청년층의 일자리 특성에 따른 취약계층을 구분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고용 형태가 정규적인 형태를 나타내지 않는 청년들을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취약청년으로 보았음. 더불어 이 같은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고용보험을 일자리를 통하여 보장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마. 열악한 근로환경의 청년

□ 근로환경과 관련한 항목은 일자리의 비임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괜찮은 일자리는 단순히 좋은 임금을 받고, 안정적인 고용 조건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이나 일의 내용이나 훈련의 기회를 포함하는 근로환경이 중요함.

○ OECD의 일자리 질 프레임워크는 근로환경을 일자리 요구 수준과 일자리에서 개인이 가진 자원 수준을 토대로 일자리의 압박(job strain)을 측정하고 있음(Cazes, Hijzen, Saint-Martin, 2015).

- 여기서 일자리의 높은 요구는 시간적 압박과 물리적 건강 위험 요소를 일자리의 요구 요소로 보고, 일의 자율성이 낮거나, 훈련의 기회가 적은 상황,

일자리나 동료에 대한 관계의 측면을 일자리의 자원으로 보았음.

- 이러한 방식은 일자리의 다면적인 특성을 포괄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으로 구분해내기에 명시적이지 않음.

○ ILO에서는 위험한 근로환경 등을 괜찮은 일자리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자 10만 명당 산재 비율(fatal injury rate)이나, 노동 감독관 수, 직업적 산재보험 범위와 과도한 노동시간 등을 포함하고 있음(Anker et al., 2003).

□ 이처럼 ILO와 OECD의 지표에서 모두 노동시간 관련 위험을 포함하고 있음.

○ 노동시간 관련에서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와 노동시간이 충분치 않은 불완전 고용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가늠해보고자 함.

4. 경제력 수준

□ 경제력은 개인의 전인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물리적 여건임. 여기에서는 경제력 수준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에 대해 유량(flow)으로서의 소득과 저장(stock)으로서의 자산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함.

○ 첫 번째는 소득의 관점에서 저소득 빈곤 가구의 가구주 혹은 가구원인 청년이고, 두 번째는 자산의 관점에서 본인이 채무자인 부채 부담을 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자산이 부재한 수준을 넘어 음(-)의 자산을 가지는 청년임.

[그림 2-5] 경제력 수준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자료: 저자 작성

가. 저소득 빈곤 청년

-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빈곤’은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운’ 상태로 정의함. 특히 경제력, 소득이 매우 낮은 상태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빈곤’ 검색 결과, 2021.12.7.).
 - 빈곤은 생활수준의 절대적인 질을 저하시키고 생(生)의 선택지를 제한하여 청년으로 하여금 현재의 결핍뿐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제약함.
 - 경제적으로 빈곤한 청년은 건강, 사회문화적 자본, 고용, 교육 등 다차원적인 삶의 빈곤으로부터 더욱 취약함(김문길 외, 2020).
- OECD에서는 소득을 가구원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가구소득이 전체 인구의 중위 가구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가구원을 빈곤한 것으로 정의하고, 전체 인구 대비 빈곤한 가구원의 수를 빈곤율로 계산함.²⁾
 - 이는 전체 인구의 소득을 동일선상에 두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인구를 고려하는 상대적 빈곤 접근임.
 -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소득분배지표를 발표하는 통계청에서도 ‘상대적 빈곤율’을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 상대적 빈곤선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로 정의하고 수치를 발표함.³⁾
 -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에 의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지출, 공적이전소득 및 공적이전지출을 고려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의 루트 값으로 균등화한 소득 값을 활용함.
 - 저소득 빈곤 청년은 생계를 공유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19~34세 가구원으로 정의할 수 있음.

2) OECD. (2021). Poverty rate (indicator). Retrieved December 12, 2021, from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3) e-나라지표. (2021a). 상대적 빈곤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56> 에서 2021.12.12. 인출.

-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에 사적이전 지출을 감한 시장소득과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경상소득, 경상 소득에 공적이전지출을 감한 처분가능소득을 균등화하여 선택하되, 소득의 범주에 따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상이할 수 있음.

나. 과도한 부채 부담 청년

- 2020년 들어 다시금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2021.4. 29.)」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등의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
- 가계부채는 소비 대비 소득의 부족분을 보완하여 단기 및 장기 소비를 증가시키지만(황진영, 이선호, 2015), 비가역적인 소비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출한 이후에는 부채 상환능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학자금이나 주거 및 기타 대출이 많을수록 첫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낮고 구직기간이 짧아(이용호, 이원익, 2020), 부채 부담이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여력을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과도한 부채가 청년의 우울감을 높이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의 부채는 부채 총량의 크기와 무관하게 존재 자체가 청년을 우울하게 함(하랑경, 심혜원, 김강희, 박신아, 2020).
- 부채가 있는 청년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상환 부담을 지고 있는 부채가 있는 19~34세 청년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그러나 부채는 소득이나 자산 등과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공유하는 것으로, 가구원 개인 단위의 부채 부담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음.
 - 예를 들어, 하랑경 외(2020)은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이용하며 분가한 청년가구의 부채에 주목하여, 분가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은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음.
 - 더욱이 기존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부채는 학자금 등을 포함한 금융부

채나 주택과 관련된 대출 및 보증금, 신용카드 대출 및 할부 등 미결제 잔액 등 공식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종류에 국한되어 있어, 비공식적인 대출이나 휴대폰 등 내구재를 되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발생하는 부채는 확인되지 않음.

- 예를 들어, 이용호와 이원익(2020) 또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를 활용하면서, 본인의 부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자금 부채와 주거 및 기타 부채 여부 및 총액을 다루었으나 여전히 비공식적인 부채를 포함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제3절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규모 추정

1. 인적 속성

가. 장애 청년

- 협의의 개념에 의한 장애 청년으로서 등록 장애 청년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매년 12월 기준 등록 장애인의 현황인 「등록장애인현황」을 자료원으로 함.
 - 이 자료는 청년 모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인구총조사에 의한 해당 시점 청년 인구를 기준으로 19~34세 청년 중 등록 장애 청년의 비율을 계산함.
 - 이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 청년은 2020년 12월 기준 155,543명으로, 전체 청년 중 1.4%에 해당함.
- 광의의 개념에 의한 장애 청년으로서 활동제약 청년은 인구총조사(표본) 원자료를 분석하여 규모를 추정함.
 - 활동제약은 인구총조사(표본) 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한하며, ① 시각장애로 인한 활동제약, ② 청각장애로 인한 활동장애, ③ 언어장애로 인한 활동제약, ④ 치매로 인한 활동제약, ⑤ 중풍으로 인한 활동제약, ⑥ 걷기, 계단 오르기, 들고 운반하기 등 육체적 활동제약, ⑦ 지적·자폐성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

⑧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활동제약, ⑨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제약, ⑩ 웃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 안 돌아다니기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제약, ⑪ 장보기(쇼핑), 병원가기, 집 밖 돌아다니기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제약, ⑫ 16세 이상인 경우 취업활동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제약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함.

○ 이에 해당하는 19~34세 활동장애 청년은 2015년 기준 180,794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당시 19~34세 청년의 1.7%에 해당함.

나. 이주배경 청년

□ 본인이 해외에서 출생한 이주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은 인구총조사(표본) 원자료를 분석하여 규모를 추정함.

○ 인구총조사(표본) 자료에서는 출생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북한 또는 외국’에서 출생하였으며, 국적이 ‘외국’이 아닌 ‘대한민국’인 19~34세 인구를 이주배경 청년으로 정의함.

○ 2015년 인구총조사(표본) 인구자료에서 이에 해당하는 이주배경 청년은 2020년 기준 100,459명으로, 전체 청년 중 0.9%에 해당함.

□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부모가 이주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은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원이 부재한 상황임.

○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법적 근거를 두고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이주배경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은 만 9세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대상자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청년기본법」에 의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의 연령대를 포함하지 못함.

○ 이는 추후 부모의 이주배경을 갖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청년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를 의미함.

2. 관계 특성

가. 경제적 부양 청년

- 여기에서는 경제적 부양 청년을 본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과의 가계 유지를 위해 가구 소득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경제적 부양 부담을 지는 청년 가구원으로 정의하였음. 단, 분가가구를 형성한 청년 가구주와 배우자는 제외하여, 가구주와의 관계가 (손)자녀이거나 (손)자녀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하였음.
- 이 정의에 따라 경제적 부양 청년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단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소득분배지표를 생산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원 단위의 소득을 조사하고 있지만,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 한국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컨소시엄으로 생산하고 있는 패널자료로 가구와 가구원의 소득 자료를 공개함.
 -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횡단면의 전국 대표성이 있는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구원 단위 소득을 이용할 수 있는 자료원임.
- 자료를 이용해 경제적 부양 청년을 조작적 정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가구 경제력 수준과 청년 가구원 개인의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가구 소득의 측정 단위임.
 - 첫째, 가구 경제력 수준은 청년 가구원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율 기여하고 있더라도 청년 가구원 이외 가구원의 소득 수준 또한 높은 고소득 가구인 경우 취약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규범적인 한계가 존재함.
 - 둘째, 청년 가구원 개인의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다양한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음. 이를테면, 청년 가구원 개인 소득의 점유율이 가구소득의 절반(50%)을 초과하거나, 2/3(66.7%)를 초과하거나, 3/4(75%)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으나 실증적 근거에 의해 합의된 비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규범적인 판단이 필요함.

- 셋째, 가구 소득의 측정 단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에 사적이전지출을 감한 시장소득과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경상소득, 그리고 경상소득에 공적이전지출을 감한 처분가능소득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가구소득으로서 을 고려하기로 함.
- <표 2-1>은 가구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가구 경제력 수준을 전체 집단, 중위소득 대비 50%, 60%, 75%, 100% 미만으로 설정했을 때, 19~34세 청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재산소득의 합이 가구 경상소득의 50%, 60%, 75%, 90%를 초과하는 청년의 전체 청년 대비 비율임.

<표 2-1> 가구 소득 수준별 19~34세 경제적 부양 청년 가구원

(단위: %)

구분	19~34세 청년 가구원의 경제적 부양 비율				
	50% 초과	60% 초과	75% 초과	90% 초과	
전체	8.2	4.9	2.6	0.6	
균등화한 중위소득 대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	13.7	9.8	5.3	0.4
	60% 미만	13.8	9.8	5.6	1.3
	75% 미만	17.7	12.5	8.8	1.8
	100% 미만	12.1	8.0	5.3	0.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15차 원자료 저자 분석

- 상기 표에서 전체 가구를 중심으로 19~34세 청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재산소득의 합이 가구 경상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경제적 부양 청년은 2019년 기준 전체 청년 인구 대비 2.6%로, 인구총조사에 의한 모수를 가정하면 285,462명임.

나. 한부모 청년

- 한부모 청년은 인구총조사(전수) 원자료를 분석하여 규모를 추정함.
- 가구 자료에서 세대구성이 '부+미혼자녀'이거나 '모+미혼자녀'이고, 가구주와의 관계가 '가구주'이며, 만 나이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정의하였음.
- 2020년 인구총조사(전수) 인구자료에서 이에 해당하는 한부모 청년은 2020년 기준 157,897명으로, 전체 청년 중 1.5%에 해당함.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그 중에서도 20~34세 미혼부모는 전국 7,784명임.⁴⁾

다. 청년 돌봄자

- 이 연구에서 청년 돌봄자는 신체,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책임을 맡는 19~34세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국내 자료에서는 돌봄 책임을 맡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식별 문항이 있어서 청년 돌봄자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상황임.
- 이는 향후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에 대한 돌봄 책임을 맡고 있는 가구원을 식별하여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필요를 의미함.

라. 고립(은둔) 청년

- 앞서 고립, 외로움, 고독, 은둔 등 관계와 관련된 유사한 개념의 쓰임을 검토하며 정서적 경험으로서의 외로움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구분하고, 사회적 고립을 타인과의 유의미한 관계와 지지체계가 부재하거나 결핍된 상태로 보았음.
- 고립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청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제한된 공간에 은둔하고 있는 상태에 집중하고자 함.
- 사회적 고립은 동거하는 가족 이외 타인과의 유의미한 관계가 부재하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결핍된 상태로 조작적 정의할 수 있음.
-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2년 주기로 조사 모듈을 달리하여 전국 약 19,000 표본 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이 중에서 관계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는 '사회참여' 모듈은 홀수 해에 조사되고 있음.

4) 통계청. (2021a). 인구총조사: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 - 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I1601&conn_path=I3 에서 2021.9.16. 인출.

○ 이전에는 사회적 지지체계 문항만을 조사하여 관계 부재의 측면을 고려한 고립 청년 규모를 측정할 수 없었으나, 2019년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람 이외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문항을 신설하였으므로 관계와 지지체계 부재의 측면에서 고립 청년 규모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여기에 활용되는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지지체계에 대해서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생활의 곤란,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하는 경제적 곤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정서적 곤란 상황에서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 ② 관계에 대해서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가족 또는 친척과 업무상 접촉을 제외한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 중 교류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고립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추정 결과, 19~34세 고립 청년은 338,961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청년 인구의 3.1%임.

[그림 2-6] 통계청 사회조사의 사회적 관계망 문항

사회적 관계망	
<p>26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몇 명 있으십니까?</p>	<p>26-1 귀하는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루 평균 몇 명의 사람과 교류하십니까? (교류는 전화, 우편, 대면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의사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p>
<p>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① 있다 ()명 ② 없다</p> <p>2.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① 있다 ()명 ② 없다</p> <p>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① 있다 ()명 ② 없다</p>	<p>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① 있다 ()명 ② 없다</p> <p>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① 있다 ()명 ② 없다</p>
<p>참고 26항의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에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포함됩니다. 단, 가사 도우미 등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 사회 복지 단체의 자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6-1항의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에 영업 등 업무상으로 만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p>	

자료: 통계청. (2019). 2019년 사회조사표(가구원). <https://www.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101018>. p.8 에서 2021.9.16. 인출.

○ 윤철경과 서보람(2020)은 취미활동을 하거나 편의점 등을 이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었으며 이 상태의 원인

이 장애나 임신, 출산이 아닌 경우를 은둔형 외톨이라고 정의하여 이들의 규모를 추정한 바 있음.

- 이 정의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적용해보면, 2017년 19~34세 은둔형 외톨이는 0.84%로 92,524명, 2018년 은둔형 외톨이는 0.46%로 50,434명으로 추산됨.
- 단, 2017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유효표본이 15~40세(1977~2002년 출생자) 범위에서 2,714명이고 19~34세는 1,681명에 불과하고, 2018년에는 14~40세(1978~2004년 출생자) 범위에서 3,133명이고 19~34세는 1,927명에 불과하여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음.
- 결국 은둔 청년은 스스로 외출하거나 외부인이나 특히 가족과의 접촉이 어렵다는 점에서 전국 단위의 서베이조사에서 목표 표본 집단에 포함되더라도 조사 성공률이 현저히 낮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19~34세 인구 규모를 충분히 포괄하는 대규모 조사에서 식별 문항을 통해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일자리 특성

가. 니트 청년

□ 니트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으며,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의 정의는 연구마다 다소 상이함.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교육기관 이외에도 취업 및 진학을 위한 사교육 기관에 통학하는 경우, 이를 니트로 정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음 (김기현 외, 2018).

- 비공식 교육기관에 통학하고 있는 경우 외에도 가사나 혼인상태에 있는 이들을 니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시도도 있었음.
- 이 같은 세부 분류에 따라 니트의 규모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못하고 소속이 없는 상태에 놓

인 청년을 가늠하고자 하는 만큼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사교육 기관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통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니트 규모를 추정함.

- 세부적으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현재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평소활동상태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제외하고, 현재 교육 수학 상태가 재학이나 휴학 중인 경우를 제외함.
- 추정 결과, 19~34세 니트 청년은 1,969,009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청년 인구의 19.4%임.

나. 장기실업 및 비자발적 실업 청년

- 본 연구에서 장기실업은 현재 실업자 중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장기 실업으로 보았으며, 비자발적 실업 청년의 경우 이직 사유가 직장의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인 경우를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았음.
- 구체적으로 장기실업청년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 “직장(일)을 구하기 위하여 구직 활동을 얼마동안 계속 해왔습니까?” 문항의 응답을 활용하여 6개월 이상 구직자를 장기 실업청년으로 분류함.
- 비자발적 실업청년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 “이전 직장(일)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인 경우를 비자발적인 실직으로 보았음.
- 추정 결과, 19~34세 장기 및 비자발적 실업 청년은 453,196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청년 인구의 4.5%임.

다. 저임금 근로 청년

- 저임금 청년은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를 저임금 청년으로 구분함.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부가조사 자료 중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세금 공제 전) 월 평균 임금 또는 보수는 얼마였습니까?”라는 문항을 토대로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계산한 중위 값의 3분의 2 이하의 임금을 나타내는 임금근로자를 저임금 청년으로 구분함.
- 추정 결과, 19~34세 저임금 근로 청년은 1,103,983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청년 인구의 10.9%임.

라. 불안정 고용 청년

-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 형태가 상용직이 아닌 경우, 즉. 임시직과 일용직을 불안정 고용으로 보았으며, 고용 형태와 더불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불안정 고용으로 구분하였음.
-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불안정 고용 청년으로 구분함.
- 추정 결과, 19~34세 불안정 고용 청년은 1,290,020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청년 인구의 12.7%임.

마.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

- 열악한 고용환경 청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초장시간이거나 단시간인 경우를 열악한 고용환경에 있다고 보았음.
- 총 근로시간이 주당 5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장시간 근로자로 보았음.
- 불완전 취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이들 중 “지난주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의 다른 일도 하고 싶음,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음이라고 응답하고, “지난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

(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에 “있었다”고 응답한 이들로 구분함.

- 추정 결과, 19~34세 열악한 고용 환경의 청년은 790,120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청년 인구의 7.8%임.

4. 경제력 수준

가. 저소득 빈곤 청년

- 저소득 빈곤 청년의 규모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소득분배지표를 생산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따라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균등화한 가구의 처분가능 소득이 중위 처분가능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빈곤한 가구로 정의하고, 빈곤 가구의 가구원인 청년의 비율 저소득 빈곤 청년으로 계상함.
- 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저소득 빈곤 청년은 842,466명으로 전체 청년의 7.8% 수준임.

나. 과도한 부채 부담 청년

-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 중 상당수는 가구의 소비나 자산, 부채를 가구 단위로 조사하고 있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구의 소비나 자산, 부채는 가구원 기준으로 조사하지만, 가구 단위의 총액을 공개함. 즉, 가구원이 상환 부담을 지고 있는 부채 수준을 식별할 수 있는 조사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 더욱이 국내 조사자료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채의 종류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담보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외상 및 할부 구입에 따른 미결제 잔액, 빌린 돈이나 껌돈, 연금형 부채 등에 국한하여, 최근 청년들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진 내구재에 의한 비공식적인 부채 등은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76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그림 2-7]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부채 문항

19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담보대출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 가구원의 모든 대출을 건별로 써넣음

가구원 번호	대출 기관	대출 형태	상환 방법	대출 용도	최초 대출금액	대출시점(연도)		가치중요 시 점 (연도)	담보대출 잔액 (2020. 3. 31. 기준)	금리조건	원금상환액 연간 총액(2019. 1. 1.~12. 31.)	이자지급액
						최초	만기					
1					억 만원				억 만원	① 변동 ② 고정	억 만원	만원
2					억 만원				억 만원	① 변동 ② 고정	억 만원	만원
3					억 만원				억 만원	① 변동 ② 고정	억 만원	만원
4					억 만원				억 만원	① 변동 ② 고정	억 만원	만원
5					억 만원				억 만원	① 변동 ② 고정	억 만원	만원

대출 기관 은행(농협은행과 수협은행 포함) 저축은행 단위 농협·수협·신협 비은행금융기관(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보험회사 대부업체
 여신 전문기관(캐피탈 등) 각종 공제회(연금공단, 교원공제회 등) 기타()

담보 형태 거주주택 거주주택 이외 주택 주택 이외 부동산 예금·적금·보험·펀드·채권 기타(전세권, 자동차 등)

상환 방법 만기 일시 원금 분할 원리금 균등 분할 원금/원리금 분할+일부 만기 기타

대출 용도 거주주택 구입 거주주택 이외 주택 구입 주택 이외 부동산 구입 전세·월세 보증금 금융자산투자 부채 상환
 사업자금(사업용 자산구입 및 운용자금 포함) 교육비 생활비 기타()

20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 가구원의 모든 대출을 건별로 써넣음

가구원 번호	대출 기관	대출종류	상환 방법	대출 용도	최초 대출금액 또는 대출한도액	대출시점(연도)		가치중요 시 점 (연도)	신용대출 잔액 (2020. 3. 31. 기준)	금리조건	원금상환액 연간 총액(2019. 1. 1.~12. 31.)	이자지급액
						최초	만기					
1		① 신용대출 ② 마이너스통장			억 만원				억 만원	① 변동 ② 고정	억 만원	만원
2		① 신용대출 ② 마이너스통장			억 만원				억 만원	① 변동 ② 고정	억 만원	만원
3		① 신용대출 ② 마이너스통장			억 만원				억 만원	① 변동 ② 고정	억 만원	만원
4		① 신용대출 ② 마이너스통장			억 만원				억 만원	① 변동 ② 고정	억 만원	만원
5		① 신용대출 ② 마이너스통장			억 만원				억 만원	① 변동 ② 고정	억 만원	만원
6		① 신용대출 ② 마이너스통장			억 만원				억 만원	① 변동 ② 고정	억 만원	만원

대출 기관 은행(농협은행과 수협은행 포함) 저축은행 단위 농협·수협·신협 비은행금융기관(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보험회사 대부업체
 여신 전문기관(캐피탈 등) 각종 공제회(연금공단, 교원공제회 등) 기타()

상환 방법 만기 일시 원금 분할 원리금 균등 분할 원금/원리금 분할+일부 만기 기타

대출 용도 거주주택 구입 거주주택 이외 주택 구입 주택 이외 부동산 구입 전세·월세 보증금 금융자산투자 부채 상환
 사업자금(사업용 자산구입 및 운용자금 포함) 교육비 생활비 기타()

21 신용카드 관련 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 가구원의 모든 대출을 전보로 써넣음
 ※ 신용카드 관련 대출 후 연체금은 '신용카드 대출잔액'에 합산하여 써넣음

♣ 신용카드 관련 대출
 ※ 카드론: 신용카드 회사 또는 신용카드회사와 업무 제휴를 맺은 은행에서 카드 회원들 대상으로 신용도와 이용 실적에 따라 대출을 해 주는 상품
 ※ 대환대출: 신용카드회사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의 연체금을 장기 대출로 전환하여 연체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갚아 나가게 하는 대출

가구원 번호	대출종류	대출 용도	신용카드 대출잔액 (2020. 3. 31. 기준)		원금상환액		이자지급액	
			연간 총액(2019. 1. 1.~12. 31.)	연간 총액(2019. 1. 1.~12. 31.)	연간 총액(2019. 1. 1.~12. 31.)			
1	① 현금서비스 ② 카드론 ③ 대환대출		□□□□□□□□	□□□□□□□□	□□□□□□□□	□□□□□□□□	□□□□□□□□	□□□□□□□□
2	① 현금서비스 ② 카드론 ③ 대환대출		□□□□□□□□	□□□□□□□□	□□□□□□□□	□□□□□□□□	□□□□□□□□	□□□□□□□□
3	① 현금서비스 ② 카드론 ③ 대환대출		□□□□□□□□	□□□□□□□□	□□□□□□□□	□□□□□□□□	□□□□□□□□	□□□□□□□□

대출 용도 거주주택 구입 거주주택 이외 주택 구입 주택 이외 부동산 구입 전세·월세 보증금 금융자산투자 부채 상환
 사업자금(사업용 자산구입 및 운용자금 포함) 교육비 생활비 생필비 기타()

22 외상 및 할부 구입에 따른 미결제 잔액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 신용카드: 2개월 이상 할부 구매한 미결제 잔액만 써넣음. 단, 일시불은 제외
 ※ 할부금융: 금융리스를 포함하여 구입하고, 사용료만 지불하는 운용리스(렌트)는 포함하지 않음
 ※ 자동차 등 자산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 금융사가 대금을 대신 납부하고 구매자가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
 ※ 외상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이외를 써넣음

가구원 번호	용도	구분	미결제 잔액 (2020. 3. 31. 기준)		연간 총액 (2019. 1. 1.~12. 31.)	
1	① 가계용 ② 사업용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input type="checkbox"/> 할부금융 <input type="checkbox"/> 외상	□□□□□□□□	□□□□□□□□	□□□□□□□□	□□□□□□□□
2	① 가계용 ② 사업용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input type="checkbox"/> 할부금융 <input type="checkbox"/> 외상	□□□□□□□□	□□□□□□□□	□□□□□□□□	□□□□□□□□
3	① 가계용 ② 사업용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input type="checkbox"/> 할부금융 <input type="checkbox"/> 외상	□□□□□□□□	□□□□□□□□	□□□□□□□□	□□□□□□□□

23 개인, 직장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갚돈을 탄 후 낼 돈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 빌린 돈: 가구원이 아닌 가족, 친척, 친구 등 개인이나 직장에서 직접 빌린 돈의 잔액을 써넣음
 ※ 낼 갚돈: 2020년 4월 이후 '갚돈을 탄 후 낼 돈'만을 써넣음

가구원 번호	대출 용도	구분	빌린 돈, 낼 갚돈 (2020. 3. 31. 기준)		연간 총 상환액 (2019. 1. 1.~12. 31.)	
1		<input type="checkbox"/> 빌린 돈 <input type="checkbox"/> 낼 갚돈	□□□□□□□□	□□□□□□□□	□□□□□□□□	□□□□□□□□
2		<input type="checkbox"/> 빌린 돈 <input type="checkbox"/> 낼 갚돈	□□□□□□□□	□□□□□□□□	□□□□□□□□	□□□□□□□□
3		<input type="checkbox"/> 빌린 돈 <input type="checkbox"/> 낼 갚돈	□□□□□□□□	□□□□□□□□	□□□□□□□□	□□□□□□□□

대출 용도 거주주택 구입 거주주택 이외 주택 구입 주택 이외 부동산 구입 전세·월세 보증금 금융자산투자 부채 상환
 사업자금(사업용 자산구입 및 운용자금 포함) 교육비 생활비 생필비 기타()

24 연금형 부채가 있습니까?

있음 없음

※ 연금형 부채는 '받은 돈'만 해당됨
 ※ 연금형 부채(주택연금, 농지연금): 주택 또는 농지를 담보로 일정기간 또는 생존기간에 매월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원리금 상환은 일정기간 후 또는 사후에 담보물을 처분하여 갖는 연금제도

가구원 번호	구분	2020년 3월에 받은 돈		받은 연수
1	<input type="checkbox"/> 주택연금 <input type="checkbox"/> 농지연금	□□□□□□□□	□□□□□□□□	□□□□□□□□
2	<input type="checkbox"/> 주택연금 <input type="checkbox"/> 농지연금	□□□□□□□□	□□□□□□□□	□□□□□□□□

자료: 통계청, (2021b).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https://www.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930001>. pp.15-18.에서 2021.9.16.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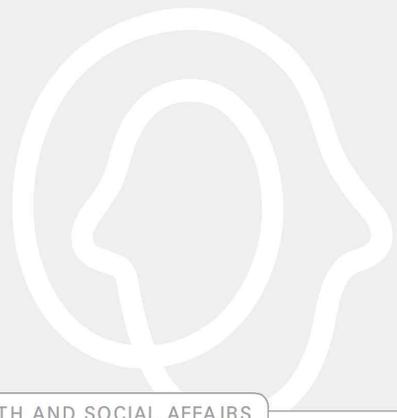
□ 상기 방식에 의해 추정된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규모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2〉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추정 규모

취약계층 청년 유형		추정 규모 (천명, %)	조작적 정의	자료원	
인적 속성	장애 청년	156 (1.4)	등록장애 청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20.12.)	
		181 (1.7)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청년	2015년 인구총조사(표본)	
	이주배경 청년	100 (0.9)	출생지가 북한 또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2015년 인구총조사(표본)	
		XXXX	다문화 가족 자녀	-	
관계 특성	청년 부양자	경제적 부양 청년	285 (2.6)	가구주나 배우자가 아닌데, 본인의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가구 총 경상소득의 75% 이상인 청년	제15차 한국복지패널 (2019년 기준)
		한부모청년	158 (1.5)	한부모 가정의 부모인 청년	2020년 인구총조사(전수)
		청년돌봄자	XXXX	돌봄이 필요한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구원을 돌보고 있는 청년	-
	고립 청년	339 (3.1)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	
일자리 특성	미취업 청년	니트 청년	1,969 (19.4)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 훈련 상태에 있지도 않은 청년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장기/ 비자발적 실업 청년	453 (4.5)	장기실업자 또는 비자발적 실업 청년	
	취업 청년	저임금 근로 청년	1,039 (10.9)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청년	
		불안정 고용 청년	1,290 (12.7)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임시, 일용 종사자와 1인 자영업 종사자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	790 (7.8)	주 50시간 초과 근로청년과 불완전취업(단시간 근로) 청년	
경제력 수준	저소득 빈곤 청년	842 (7.8)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중위 50% 미만인 저소득 빈곤 가구의 청년 가구원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기준)	
	과도한 부채 부담 청년	XXXX	경제력 대비 본인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부담이 과도한 청년	-	

주: 청년 인구 대비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비율은 (1) 자료원이 인구총조사 및 행정자료인 경우 인구총조사의 모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2) 자료원이 인구총조사가 아닌 경우 각 자료원에 의한 시점 기준 비율을 산출한 인구총조사에 의한 모수를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함. (2)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함.

자료: 저자 작성



제3장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실태 분석

- 제1절 인적 속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특성
- 제2절 관계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특성
- 제3절 일자리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특성
- 제4절 경제력 수준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특성
- 제5절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공적 지원 현황

제 3 장 취업계층 청년 유형별 실태 분석

-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제2장에서 논의한 취업계층 청년 유형별 실태와 관련 공적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제1~4절에서는 인적 속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 경제력 수준에 의한 유형별 취업계층 청년의 실태와 취업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자료를 활용해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등을 검토함.
 - 단, 이 연구에서 시도한 취업계층 청년 유형화를 적용할 수 있는 분석자료 이용가능성 제약의 범위 내에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형별 자료원을 활용하므로 실태의 범위 및 시점이 상이함.
 - 청년은 분석자료 시점을 기준으로 19~34세인 자료 함.
- 제5절에서는 취업계층 청년 유형별 관련 공적 지원의 현황을 대상자 포괄성 및 접근성을 중심으로 검토함.

제1절 인적 속성에 의한 취업계층 청년 특성

1. 장애 청년

- 여기에서 장애 청년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청년과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활동제약을 경험하는 청년으로 구분하고 있음.
- 등록장애청년의 인구학적 특성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 등록 현황”을 통해 확인하였고, 활동제약청년의 인구학적 특성은 2015년 기준 인구총조사(표본) 원자료를 분석하여 확인하였음.
- 등록장애청년 중 65.4%가 남성이고, 34.6%는 여성임.

- 활동제약청년 중 62.2%가 남성이고 37.8%가 여성으로 나타나, 등록장애 청년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음.
- 연령집단으로 구분하면, 등록장애청년 중 19~24세 청년은 35.3%, 25~29세 청년은 32.5%, 30~34세 청년은 32.1%임.
- 활동제약청년 중 19~24세 청년은 38.6%, 25~29세 청년은 27.2%, 30~34세 청년은 34.2%로, 등록장애청년에 비해 19~24세 초기 청년과 30~34세 후기 청년의 비율이 다소 높음.

〈표 3-1〉 장애 청년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구분		등록장애청년 (2020년)	활동제약청년 (2015년)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65.4	62.2
	여성	34.6	37.8
연령집단	19~24세	35.3	38.6
	25~29세	32.5	27.2
	30~34세	32.1	34.2

주: 활동장애청년의 특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1) (등록장애청년) 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등록현황(2020년 12월 말 기준) 원자료 저자 분석

2) (활동장애청년) 통계청. (2016).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원자료 저자 분석

- 다음 표는 활동제약청년의 혼인상태임. 전체 활동제약 청년의 82.2%가 미혼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2.1%, 사별한 경우는 4.3%임.
- 연령집단별로는 19~24세 초기 청년 중 미혼이 88.2%, 배우자 있음이 4.2%, 사별이 6.9%이고, 25~29세 중기 청년 중 미혼은 86.8%, 배우자 있음이 8.9%, 사별이 3.4%임.
- 30~34세 후기 청년 중 미혼이 71.7%, 배우자 있음이 23.6%, 사별이 2.1%로 나타나 연령이 30대로 높아지면서 결혼하는 비율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2〉 2015년 활동제약청년의 혼인상태

(단위: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전체		100.0	100.0	100.0	100.0
혼인상태	미혼	88.2	86.8	71.7	82.2
	배우자 있음	4.2	8.9	23.6	12.1
	사별	6.9	3.4	2.1	4.3
	이혼	0.7	0.9	2.6	1.4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6).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원자료 저자 분석

□ 활동제약청년 중 일하지 않은 경우가 69.3%로 가장 많고, 주로 일한 경우가 26.0%, 틈틈이 일한 경우가 3.5% 순임.

○ 연령집단별로 19~24세 초기 청년의 79.1%, 25~29세 중기 청년의 66.7%, 30~34세 후기 청년의 60.2%가 일하지 않았고, 19~24세 초기 청년의 15.4%, 25~29세 중기 청년의 28.7%, 30~34세 후기 청년의 35.7%가 주로 일하여 연령이 높아지면서 경제활동을 개시함.

- 틈틈이 일한 경우는 19~24세 초기 청년의 4.8%, 25~29세 중기 청년의 3.4%, 30~34세 후기 청년의 2.2%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감소함.

○ 활동제약청년 중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청년의 비중은 27.2%로 가장 많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각각 1.5%, 1.3% 정도임.

〈표 3-3〉 2015년 활동제약청년의 경제활동

(단위: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전체		100.0	100.0	100.0	100.0
경제활동상태	주로 일하였음	15.4	28.7	35.7	26.0
	틈틈이 일하였음	4.8	3.4	2.2	3.5
	일시휴직	0.7	1.2	2.0	1.3
	일하지 않았음	79.1	66.7	60.2	69.3
종사상 지위 ²⁾	임금근로자	19.3	29.9	34.1	27.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5	1.4	2.7	1.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1	0.5	1.3	0.6
	무급가족종사자	0.9	1.4	1.7	1.3

주: 1) 가중치를 적용함.

2) 종사상 지위는 경제활동상태가 '주로 일하였'거나 '틈틈이 일하였'거나 '일시휴직'인 자에 한함.

자료: 통계청. (2016).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원자료 저자 분석

□ <표 3-4>는 활동제약청년의 사회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단체 활동 여부를 파악한 결과임.

○ 2015년 인구총조사(표본)에서 사회활동은 ① 사회분야 단체(환경, 봉사, 인권 단체 등), ② 경제분야 단체(노동조합, 직업단체 등), ③ 문화분야 단체(취미, 스포츠 등), ④ 정치분야 단체(정당활동 등), ⑤ 종교분야 단체, ⑥ 지역단체(아파트 주민단체 등), ⑦ 친목단체(동창회, 향우회 등), ⑧ 교육단체(학부모, 교사단체 등), ⑨ 기타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이 중 1개 이상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사회단체 활동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 활동제약청년 중 82.3%가 사회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17.7%는 참여하는 사회단체 활동이 있음.

- 연령집단별로 참여하는 사회단체 활동이 있는 활동제약청년의 비중이 19~24세 14.6%, 25~29세 18.7%, 30~34세 20.4%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함.

<표 3-4> 2015년 활동제약청년의 사회단체 활동

(단위: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전체		100.0	100.0	100.0	100.0
사회단체 활동	없음	85.4	81.3	79.6	82.3
	있음	14.6	18.7	20.4	17.7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6).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원자료 저자 분석

2. 이주배경 청년

□ 여기에서 이주배경청년은 해외 혹은 북한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015년 인구총조사(표본) 원자료를 분석하여 실태를 파악함.

○ 이주배경청년 중 남성의 비중은 42.7%이고 여성은 57.3%임.

○ 연령집단별로는 19~24세 초기 청년이 29.4%, 25~29세 중기 청년이 35.1%, 30~34세 후기 청년이 35.6%로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의 청년이 20대 초반 청년에 비해 다소 많음.

〈표 3-5〉 2015년 이주배경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100.0
성별	남성	42.7
	여성	57.3
연령집단	19~24세	29.4
	25~29세	35.1
	30~34세	35.6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6).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원자료 저자 분석

□ 이주배경청년 중 미혼인 청년은 71.6%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7.2%, 이혼은 0.8%, 사별은 0.3%임.

○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19~24세 청년의 89.3%가 미혼이고 배우자가 있는 청년은 9.7%임.

- 25~29세 청년 중 79.0%가 미혼이고 배우자가 있는 청년은 20.3%임.

- 30~34세 청년 중 49.7%가 미혼이고 배우자가 있는 청년은 48.5%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

〈표 3-6〉 2015년 이주배경청년의 혼인상태

(단위: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전체		100.0	100.0	100.0	100.0
혼인상태	미혼	89.3	79.0	49.7	71.6
	배우자 있음	9.7	20.3	48.5	27.2
	사별	0.7	0.2	0.2	0.3
	이혼	0.2	0.5	1.7	0.8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6).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원자료 저자 분석

□ 이주배경청년 중에서는 주로 일한 경우가 46.6%로 가장 많고, 일하지 않은 경우는 45.8% 수준임. 틈틈이 일한 경우는 6.1%로 나타남.

- 연령집단별로 19~24세 초기 청년의 71.5%, 25~29세 중기 청년의 39.7%, 30~34세 후기 청년의 30.5%가 일하지 않았고, 19~24세 초기 청년의 18.0%, 25~29세 중기 청년의 54.0%, 30~34세 후기 청년의 62.9%가 주로 일하여 20대 후반부터 연령이 높아지면서 경제활동을 개시함.
 - 틈틈이 일한 경우는 19~24세 초기 청년의 9.9%, 25~29세 중기 청년의 4.9%, 30~34세 후기 청년의 4.2%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감소함.
- 이주배경청년 중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청년의 비중은 47.5%로 가장 많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3.6%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1.8%, 1.3% 정도임.

〈표 3-7〉 2015년 이주배경청년의 경제활동

(단위: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전체		100.0	100.0	100.0	100.0
경제활동상태	주로 일하였음	18.0	54.0	62.9	46.6
	틈틈이 일하였음	9.9	4.9	4.2	6.1
	일시휴직	0.5	1.5	2.4	1.5
	일하지 않았음	71.5	39.7	30.5	45.8
종사상 지위 ²⁾	임금근로자	25.3	54.5	58.9	47.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4	3.0	6.0	3.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4	1.4	3.3	1.8
	무급가족 종사자	1.4	1.4	1.3	1.3

주: 1) 가중치를 적용함.

2) 종사상 지위는 경제활동상태가 '주로 일하였'거나 '틈틈이 일하였'거나 '일시휴직'인 자에 한함.

자료: 통계청. (2016).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원자료 저자 분석

- 2015년 인구총조사(표본) 원자료를 활용한 이주배경청년 사회단체 활동 참여의 조작적 정의는 활동제약청년과 같음.
 - 이주배경청년 중 27.0%가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연령집단별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 활동이 있는 비중이 19~24세 22.5%, 25~29세 28.3%, 30~34세 29.3%로 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함.

〈표 3-8〉 2015년 이주배경청년의 사회단체 활동

(단위: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전체		100.0	100.0	100.0	100.0
사회단체 활동	없음	77.5	71.7	70.7	73.0
	있음	22.5	28.3	29.3	27.0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6).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원자료 저자 분석

제2절 관계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특성

1. 경제적 부양 청년

□ 경제적 부양 청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한국복지패널 15차 자료를 활용하였음. 2020년 한국복지패널 15차 자료의 조사 시점은 2019년임.

□ 경제적 부양 청년은 가구 소득 내 개인 소득의 비중이 75% 이상인 청년으로 정의 하되, 가구주와 관계를 기준으로 가구주의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했음. 청년 가구주와 배우자는 제외함.

○ 가구 소득은 가구 내 경상소득이며, 개인 소득은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을 합한 값임.

○ 분석자료의 19~34세 청년 1,871명 중 경제적 부양 청년은 46명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3-9〉 19~34세 청년 중 경제적 부양 청년 비중

(단위: %)

구분	경제적 부양 청년	비 경제적 부양 청년	전체
경제적 부양 청년 비율	2.6	97.4	100.0

주: 1)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함.

2) 19~34세 청년 1,871명 중 46명이 경제적 부양 청년에 해당함.

3) 2019년 기준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15차 원자료 저자 분석

□ 경제적 부양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집단, 혼인상태, 교육 수준, 수도권 거주 여부, 동거 여부 등을 살펴보고자 함.

○ 성별의 경우 경제적 부양 청년 내 남성 비중은 79.3%, 여성 비중은 20.7%임.

- 비 경제적 부양 청년의 경우 남성은 52.6%, 여성은 47.4%인 것과 달리, 경제적 부양 청년은 남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연령집단은 19~24세, 25~29세, 30~34세로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경제적 부양 청년은 19~24세의 비중이 15.4%, 25~29세의 비중이 20.5% 그리고 30~34세의 비중이 64.1%로 연령이 높을수록 비중이 증가했으며, 특히 30~34세 집단의 비율이 집단 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비 경제적 부양 청년의 경우 19~24세의 비중이 38.1%, 25~29세 비중이 33.2%, 30~34세의 비중이 28.8%로 나이가 많을수록 비중이 감소했지만, 그 감소 차가 크지는 않았음.

○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대학교 중퇴,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했음.

- 중학교 졸업 이하는 최종학력이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인 경우임(고등학교 재학 포함). 대학교 재학의 경우 전문대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이 해당하며, 대학교 중퇴는 전문대 및 대학교를 휴학, 중퇴, 수료한 경우임. 대학교 졸업 이상은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진학하거나 졸업한 청년으로 분류함.
- 경제적 부양 청년과 비 경제적 부양 청년의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경제적 부양 청년의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6.0%, 고등학교 졸업 19.5%, 대학교 재학 3.8%, 대학교 중퇴 14.8%, 대학교 졸업 이상 56.0%임.
 - 비 경제적 부양 청년의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1.8%, 고등학교 졸업 16.6%, 대학교 재학 19.4%, 대학교 중퇴 12.7%, 대학교 졸업 이상 49.6%임.
- 두 집단 모두 교육 수준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경제적 부양 청년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전체 집단 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혼인 상태에서 미혼(미혼모 포함), 배우자 있음으로 구분하고 사별, 이혼, 별거는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했음.
 - 경제적 부양 청년은 미혼인 경우가 92.9%로 대부분이 미혼인 상태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7.2%에 불과함.
 - 비 경제적 청년의 경우 미혼인 경우가 83.2%로 가장 높았지만, 경제적 부양 청년집단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었음. 또한 배우자 있음은 16.3%, 사별, 이혼, 별거인 경우도 0.4%로 나타남.
- 수도권 거주 여부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와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함.
 - 경제적 부양 청년집단에서는 수도권 거주 비율이 32.5%, 비수도권 거주 비율이 67.5%로 비수도권 거주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반면 비 경제적 부양 청년집단의 경우 수도권 거주 비율이 54.5%, 비수도권 거주 비율이 45.6%으로 수도권 비중이 더 높았음.
- 동거 여부는 같이 살고 있음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음으로 나누었으며, 같이 살지 않는 경우는 지방 근무, 해외 근무, 학업, 입원, 요양,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가출, 분가, 사망, 기타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함.
 - 두 집단 모두 같이 살고 있는 경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다만 경제적 부양 청년 내 동거 비중이 95.5%, 비 경제적 부양 청년의 동거 비중이 90.1%로 경제적 부양 청년 집단의 동거 비중이 더 높았음.
- 전반적으로 경제적 부양 청년집단 내 남성의 비중이 높았으며, 30~34세 연령 집단이 절반을 차지했음. 교육수준에서는 경제적 부양 청년집단 내 절반 이상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갖고 있음. 또한 경제적 부양 청년 대부분이 미혼인 상태이며, 주로 비수도권에 거주하며, 원가족과 함께 사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원가족과 동거하는 청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청년의 개인 소득이 가족의 주 수입원이기에 따로 거주하며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10〉 2019년 경제적 부양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경제적 부양 청년	비 경제적 부양 청년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79.3	52.6
	여성	20.7	47.4
연령집단	19~24세	15.4	38.1
	25~29세	20.5	33.2
	30~34세	64.1	28.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0	1.8
	고졸	19.5	16.6
	대학교 재학	3.8	19.4
	대학교 중퇴	14.8	12.7
	대학교 졸업 이상	56.0	49.6
혼인상태	미혼(미혼모 포함)	92.9	83.2
	배우자 있음	7.2	16.3
	사별, 이혼, 별거	-	0.4
수도권 거주 여부	수도권	32.5	54.5
	비수도권	67.5	45.6
동거 부여	같이 살고 있지 않음	4.5	9.9
	같이 살고 있음	95.5	90.1

주: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15차 원자료 저자 분석

□ 경제적 부양 청년의 경제적 특성으로 경제활동 상태, 주거 점유 형태,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살펴보고자 함.

○ 경제활동 상태는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대한 것으로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실업·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했음.

- 임시·일용근로자에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도 포함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원자료의 분류항목 중 고용주가 이에 해당함.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했음.

- 경제적 부양 청년은 실업·비경제활동 상태가 8.5% 가장 낮았으며, 상용근로자가 58.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9.3%, 임시·일용근로자가 13.6% 순으로 높았음.

- 이와 달리 비 경제적 부양 청년은 실업·비경제활동 상태가 40.3%로 가장 높았고, 상용근로자 34.8, 임시·일용근로자 22.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6% 순으로 나타났음.

○ 주거 점유 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비가구원 명의 주택 등 기타로 나누었음. 월세의 경우 보증부 월세와 사글세에 해당하며, 비가구원 명의 주택 등의 기타에는 무상 관사, 사택 등이 포함됨.

- 두 집단 모두 자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다만 경제적 부양 청년의 경우 73.7%가 자가인 경우였으며, 비가구원 명의 주택 등 기타는 12.7%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경제적 부양 청년집단 내 월세, 전세 비중은 각각 7.4%, 6.3%로 낮은 수준임.
- 비 경제적 부양 청년의 경우 자가가 55.8%이며, 그다음으로 월세가 21.6%로 높았음. 또한 전세가 18.0%를 차지했으며, 비가구원 명의 주택 등 기타인 경우는 4.6%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음.

○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로는 2019년 기준 1년 동안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을 묻는 문항 중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음.

- 여기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더불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종교(시민)단체 등의 민간기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함.
 - 생계비 지원의 경우 사회보험 소득과 보육료 지원비, 노인교통비 등 용도가 한정된 지원은 제외함.
 - 의료비 지원은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하되,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제외하며,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개인적 관계에 의한 지원도 해당하지 않음.
- 생계비 지원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비 경제적 부양 청년 집단의 이용률이 31.0%로, 경제적 부양 청년 집단의 이용률인 28.4%보다 더 높게 나타남.
- 반면, 의료비 지원 이용 여부에서는 경제적 부양 청년 집단의 이용률이 38.7%로, 비 경제적 부양 청년 집단의 이용률 22.5%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비 경제적 부양 청년보다 경제적 부양 청년 중 근로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절반 이상이 상용 근로자였음. 그리고 주거 점유 형태는 자가의 비율이 높았으며, 월세와 전세의 비중이 낮았음. 복지서비스 중 생계비 지원의 경우 비 경제적 부양 청년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의료비 지원 이용률은 높게 나타남.

-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양 청년의 특성상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또한 근로자기이에 생계비 지원 요건 중 소득 수준 제한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낮은 생계비 지원 이용률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 주거 점유 형태 중 자가 비율이 높은 결과도 높은 동거 비율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11〉 2019년 경제적 부양 청년의 경제적 특성

(단위: %)

구분		경제적 부양 청년	비 경제적 부양 청년	
전체		100.0	100.0	
경제활동상태	상용근로자	58.6	34.8	
	임시·일용근로자	13.6	22.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0.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19.3	1.9	
	실업·비경제활동인구	8.5	40.3	
주거 점유 형태	자가	73.7	55.8	
	전세	6.3	18.0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7.4	21.6	
	비가구원 명의 주택 등 기타	12.7	4.6	
복지서비스 이용	생계비 지원	지원받은 적 있음	28.4	31.0
		지원받은 적 없음	71.6	69.0
	의료비 지원	지원받은 적 있음	38.7	22.5
		지원받은 적 없음	61.3	77.5

주: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15차 원자료 저자 분석

2. 한부모 청년

- 한부모 청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제2장에서 통계청 인구총조사(전수) 원자료를 활용한 바 있으나 이 자료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여기에서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함.
-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실태조사 등)에 의하여 3년 주기로 수행하는 조사이므로, 최근 원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음.
-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에서 19~34세 한부모 청년은 192명임.
- 한부모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주목하면, 남성이 11.3%, 여성이 88.7%로 여성이 다수임.
- 19~24세 초기 청년은 13.9%, 25~29세 중기 청년은 23.6%, 30~34세 후기 청년은 62.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짐.
- 교육수준은 고졸이 56.8%로 가장 많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28.4%임. 중졸 이하가 9.7%로 다음 수준이고, 대학교 중퇴가 3.6%, 대학교 재학이 1.5%임.
- 한부모 청년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중은 58.8%이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중은 41.2%임.

〈표 3-12〉 2018년 한부모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100.0
성별	남성	11.3
	여성	88.7
연령집단	19~24세	13.9
	25~29세	23.6
	30~34세	62.5

94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구분		비율
교육수준	중졸 이하	9.7
	고졸	56.8
	대학교 재학	1.5
	대학교 중퇴	3.6
	대학교 졸업 이상	28.4
수도권 거주여부	수도권	58.8
	비수도권	41.2

주: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한부모 청년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의 36.8%가 미취업 상태이고 상용근로자가 33.5%, 임시근로자가 19.2%, 일용근로자가 5.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주거 점유형태는 월세가 27.4%로 가장 많고, 공공임대가 25.6%로 다음 순임. 무상 등 기타가 19.6%, 자가 16.8%, 전세가 10.7%로 전반적으로 주거 점유 형태가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정부에 의한 소득지원 형태는 전체의 36.1%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으로 분류되고, 42.1%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을 받고 있음. 나머지 21.8%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어 전체의 2/3 정도가 정부에 의한 소득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3-13〉 2018년 한부모 청년의 경제적 특성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100.0
경제활동상태	상용근로자	33.5
	임시근로자	19.2
	일용근로자	5.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6
	무급가족종사자	0.5
	미취업	36.8

구분		비율
주거 점유형태	자가	16.8
	전세	10.7
	월세	27.4
	공공임대	25.6
	무상 등 기타	19.6
정부에 의한 소득지원 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42.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1.8
	일반	36.1

주: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다음은 한부모 청년의 사회적 지지체계로 집안일, 돈, 몸이 아프거나 긴급한 일,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에게 긴급한 일, 생활에 필요한 일이나 조언에 대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두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 전체 한부모 청년 중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회적 지지체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3%로 다수이나, 4.7%는 지지체계가 부재하여 고립된 것으로 나타남.

〈표 3-14〉 2018년 한부모 청년의 사회적 지지체계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100.0
사회적 지지체계	있음	95.3
	없음	4.7

주: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한부모 청년이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자해하는 생각들”을 한 자살생각 경험을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65.3%로 전체의 2/3 정도의 다수임.

○ 하지만 여러 날 동안 했다는 응답이 23.7%로 나타나고, 일주일 이상 했거나 거의 매일 했다는 심각한 상황 또한 약 10% 정도로 적지 않으므로 상당수의 한

부모 청년이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3-15〉 2018년 한부모 청년의 자살생각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100.0
자살생각	전혀 아니다	65.3
	여러 날 동안	23.7
	일주일 이상	7.2
	거의 매일	3.9

주: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3. 고립 청년

□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은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 이외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생활, 경제,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으로, 사회적 관계가 결핍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임.

○ 고립된 청년 중 남성이 62.7%, 여성이 37.3%로 비고립 청년 중 남성의 비율 50.9%, 여성 49.1%과 비교하면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고립된 청년의 연령집단은 19~24세가 28.9%, 25~29세가 37.4%, 30~34세가 33.8%로 나타나 비고립된 청년에 비해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 청년의 비중이 다소 높음.

○ 고립된 청년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2.1%, 고졸이 28.3%, 대학교 재학이 15.0%, 대학교 휴학, 중퇴, 수료가 13.6%, 대학교 졸업 이상이 40.9%로 비고립 청년에 비해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청년의 비중이 다소 낮아 상대적으로 저학력 청년이나 공적 체계로서의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청년이 고립될 개연성을 시사함.

○ 고립된 청년 중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61.9%,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38.2%로 나타나, 비고립 청년에 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중이 다소 높음.

〈표 3-16〉 2019년 고립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고립 청년	비고립 청년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62.7	50.9
	여성	37.3	49.1
연령집단	19~24세	28.9	35.5
	25~29세	37.4	33.4
	30~34세	33.8	31.1
교육수준	중졸 이하	2.1	0.8
	고졸	28.3	17.6
	대학교 재학	15.0	20.0
	대학교 휴학/중퇴/수료	13.6	10.6
	대학교 졸업 이상	40.9	51.0
수도권 거주여부	수도권	61.9	52.9
	비수도권	38.2	47.1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9b). 2019년 사회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고립된 청년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제활동상태별로는 고립된 청년 중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가 44.6%, 상용 근로자가 36.1%, 임시근로자가 10.6%, 일용근로자가 3.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3.0%로 나타나, 비고립 청년에 비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실업했거나 비경제활동인구인 청년의 비중이 다소 높음.
- 고립된 청년의 주거 점유형태는 월세가 45.1%, 전세가 37.0%, 자가 9.4%, 무상 등 기타가 8.6%로 나타나 비고립 청년에 비해 전세의 비중이 다소 높음.
- 계층의식은 고립된 청년 중 하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57.9%로 가장 많고, 중층이 39.4%, 상층이 2.6%로 나타나, 중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62.1%로 가장 많은 비고립 청년과 달리 자신의 계층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표 3-17〉 2019년 고립 청년의 경제적 특성

(단위: %)

구분		고립 청년	비고립 청년
전체		100.0	100.0
경제활동상태	상용근로자	36.1	41.6
	임시근로자	10.6	11.1
	일용근로자	3.8	4.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1	1.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0	3.1
	무급가족종사자	0.8	0.8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44.6	37.9
주거 점유형태	자가	9.4	16.7
	전세	37.0	25.1
	월세	45.1	52.0
	무상 등 기타	8.6	6.2
계층의식	상층	2.6	2.2
	중층	39.4	62.1
	하층	57.9	35.8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9b). 2019년 사회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고립된 청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주목하여, 삶의 만족 수준과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을 확인하였음.

○ 고립된 청년의 삶의 만족은 3.3점으로 비고립 청년의 3.5점에 비해 0.2점 낮은 수준이고, 사회에 대한 신뢰도 2.2점으로 비고립 청년에 비해 0.2점 낮음.

〈표 3-18〉 2019년 고립 청년의 삶의 만족과 사회 신뢰

(단위: 점)

구분		고립 청년	비고립 청년
삶의 만족	평균	3.3	3.5
	(표준편차)	(1.18)	(1.00)
사회 신뢰	평균	2.2	2.4
	(표준편차)	(0.71)	(0.66)

주: 1) 삶의 만족은 매우 만족한다(1점)부터 매우 불만족한다(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역코딩한 후 산출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음.

2) 사회 신뢰는 매우 믿을 수 있다(1점)부터 전혀 믿을 수 없다(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역코딩한 후 산출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 수준이 높음.

3)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9b). 2019년 사회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제3절 일자리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특성

-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았음.
- 더불어 가구특성별로 취약청년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가구 특성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 조사의 23차(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자료원의 조사 문항과시점 등이 다르므로 세부 지표의 비율 등은 상이할 수 있음.

1. 니트 청년

- 현재 학교, 학원 등 비공식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학교에 통학 또는 재학 중이 아니거나 취업 중도 아닌 니트 청년은性別로는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음.
- 니트로 구분된 청년 중 57.3%는 여성이었으며, 42.7%는 남성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5~29세 니트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반면, 여성의 경우 30~34세 니트의 비율이 가장 높아 니트 내에서도 남녀에 따라 이질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 25~29세 니트는 전체 니트의 39.5%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남성이 20.1%, 여성이 19.3%로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기는 하였으나, 남녀가 비슷한 규모임.
 - 니트 청년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데에는 주로 30대를 넘어선 여성 청년들이 육아 등 가족적 이유로 니트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표 3-19〉 2021년 니트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전문대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전문대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전체	100.0	42.7	26.8	16.0	57.3	31.7	25.6	
연령집단	19~24세	21.4	10.3	9.7	0.6	11.1	7.0	4.1
	25~29세	39.5	20.1	10.4	9.8	19.3	10.7	8.6
	30~34세	39.1	12.2	6.7	5.6	26.9	13.9	12.9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21c).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고용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다음으로 니트 청년의 가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되는 가구에 속한 청년들의 니트 비율을 살펴보았음.

○ 가구의 경제 수준이 낮은 청년들의 니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빈곤층에 속한 청년들의 경우 42.6%가 니트로 나타난 반면, 중위소득 50% 이상 150% 이하인 중간 소득자는 23.9%, 중위소득 150% 이상의 상위 소득자는 14.9%가 니트로 나타나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상태를 보더라도, 가구의 경제 상태가 좋은 집단에서는 니트 비율이 18.6%로 나타난 반면, 어렵다고 응답한 가구에서는 30.3%로 높은 니트 비율을 나타냄.

- 다만, 이러한 결과는 가구의 소득이 본인의 소득을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이 미취업 중이기 때문에 가구 소득이 낮을 가능성이 있음.

○ 가구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 보다는 다인가구에서 니트 비율이 높았음.

〈표 3-20〉 2021년 가구 특성별 니트 비율

(단위: %)

구분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주관적 경제상태			가구규모		
	50%미만	50%이상 150%미만	150%이상	나쁨	보통	좋음	1인 가구	다인 가구	
전체	42.6	23.9	14.9	30.3	20.8	18.6	10.8	25.9	
연령집단	19~24세	29.8	18.0	8.2	22.6	14.6	6.1	6.9	17.8
	25~29세	47.1	26.9	23.8	37.4	23.8	28.4	10.3	32.3
	30~34세	60.1	27.2	10.3	35.9	23.2	19.0	12.5	29.8

- 주: 1) 지난해 가구의 총소득을 가구원 수 균등화하고 개인 단위에서 가중치를 적용하여 중위소득을 계산함.
 2) 주관적 경제상태는 “___님 님의 현재 경제상태는 어떠십니까?”라는 문항에 “매우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는 편이다”는 좋음으로, “보통이다”는 보통, “조금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는 나쁨으로 분류하였음.
 3)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20).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2. 장기/비자발적 실업 청년

- 현재 6개월 이상 장기실업 상태이거나,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전 직장을 그만둔 실업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유사하였으나,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이상인 청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장기 실업 또는 비자발적 실업 청년 중 여성의 경우 19~24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남성 청년의 경우 25~29세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이는 남성 청년들의 경우 19~24세 사이에 주로 군 입대 등으로 표본에서 이탈한 이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임.
- 〈표 3-22〉의 각 집단별 장기/비자발적 실업 청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그리고 각 집단별로 모두 유사한 비율을 나타냄.

〈표 3-21〉 2021년 장기/비자발적 실업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남성		여성	여성		
			전문대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전문대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전체	100.0	49.7	22.0	27.7	50.3	21.8	28.4	
연령집단	19~24세	36.5	15.0	7.7	7.3	21.5	7.9	13.7
	25~29세	39.9	23.2	9.2	13.9	16.7	8.4	8.2
	30~34세	23.6	11.5	5.1	6.4	12.1	5.5	6.5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21c).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고용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3-22〉 2021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장기/비자발적 실업 청년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남성		여성	여성		
			전문대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전문대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전체	4.5	4.4	3.9	4.8	4.5	4.7	4.4	
연령집단	19~24세	5.2	4.7	4.9	4.5	5.6	5.1	5.9
	25~29세	5.0	5.4	4.2	6.7	4.4	5.3	3.8
	30~34세	3.2	3.0	2.8	3.2	3.5	3.6	3.4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21c).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고용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지표를 세부적으로 장기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 청년의 경우 여성 청년보다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다소 높고, 여성 청년의 경우 남성 청년보다 비자발적 실업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장기/비자발적 실업 청년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대체로 비슷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취약성의 양상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23〉 2021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장기/비자발적 실업 청년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전문대졸 이하		여성	대학재학 이상	
			전문대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전문대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장기 실업	0.6	0.9	0.7	1.0	0.4	0.6	0.3
비자발적 실업	4.0	3.7	3.3	4.2	4.2	4.2	4.2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21c).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고용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가구특성별 장기/비자발적 청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역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취약 청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구형태별로는 1인 가구에 비하여 다인 가구 청년들의 장기/비자발적 실업 비율이 높았음.

- 이는 1인 가구가 되는 조건, 즉, 독립의 조건이 경제적인 자립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해 가능한 결과임.

〈표 3-24〉 2021년 가구 특성별 장기/비자발적 실업 청년의 비율

(단위: %)

구분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주관적 경제상태			가구규모	
		50%미만	50%이상 150%미만	150%이상	나쁨	보통	좋음	1인 가구	다인 가구
전체		7.3	4.8	4.1	7.0	4.2	1.5	2.1	5.3
연령집단	19~24세	6.2	4.0	1.7	6.5	2.0	-	2.5	3.8
	25~29세	8.8	6.4	7.0	9.4	6.1	3.7	1.7	8.0
	30~34세	6.8	3.8	2.8	4.6	4.0	-	2.5	4.2

주: 1) 지난해 가구의 총소득을 가구원 수 균등화하고 개인 단위에서 가중치를 적용하여 중위소득을 계산함.

2) 주관적 경제상태는 “__님 님의 현재 경제상태는 어떠십니까?”라는 문항에 “매우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는 편이다”는 좋음으로, “보통이다”는 보통, “조금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는 나쁨으로 분류하였음.

3)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20).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3. 저임금 근로 청년

□ 다음으로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청년 중에서 중위임금의 2/3 가량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 청년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37.0%, 여성은 63.0%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4세 청년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30~34세 청년은 17.7%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주로 19~24세에 있는 여성 청년들이 시간당 임금이 작고, 동시에 근로시간도 짧은 저임금 일자리에 일함에 따른 결과로 보임.

○ 다만, 여기서 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이 아닌 월 임금액이므로 자발적인 사유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청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즉, 저임금 근로 청년이 임금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불완전 취업과 같은 고용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결과일 수도 있음.

〈표 3-25〉 2021년 저임금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전문대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전문대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전체	100.0	37.0	17.9	19.1	63.0	28.3	34.7	
연령집단	19~24세	55.6	18.7	7.2	11.5	36.9	13.3	23.6
	25~29세	26.7	12.4	6.9	5.6	14.2	8.5	5.7
	30~34세	17.7	5.8	3.8	2.0	11.9	6.5	5.4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21c).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고용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저임금 청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25~29세, 30~34세 청년일지라도 여성 청년들은 남성 청년들에 비하여 저임금 근로자인 비율이 상당히 높음.

○ 특히 25세를 넘어선 여성청년들 중, 전문대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여성 청년들의 저임금 비율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나타내는 여성 청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동일한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같은 연령대의 남성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 이는 여성 청년들, 특히 저학력의 여성 청년들이 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일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함.

〈표 3-26〉 2021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저임금 청년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전문대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전문대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전체		10.9	7.9	7.8	8.1	13.9	14.8	13.2
연령집단	19~24세	19.2	14.2	11.2	17.1	23.3	21.0	24.8
	25~29세	8.1	7.1	7.7	6.5	9.2	13.1	6.4
	30~34세	5.9	3.7	5.1	2.4	8.4	10.3	6.9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21c).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고용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저임금 청년은 비율 역시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여건이 좋은 집단과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가구 규모 특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청년이라 할지라도 다인 가구 청년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비율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나타나, 니트 청년 또는 실업 청년의 양상과는 상이하게 나타났음.

〈표 3-27〉 2021년 가구 특성별 저임금 청년 비율

(단위: %)

구분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주관적 경제상태			가구규모	
		50%미만	50%이상 150%미만	150%이상	나쁨	보통	좋음	1인 가구	다인 가구
전체		15.2	8.6	3.3	10.3	7.4	3.8	8.0	8.1
연령집단	19~24세	12.9	10.2	5.5	10.8	9.2	4.3	14.6	9.3
	25~29세	19.1	8.8	2.4	10.0	8.2	3.9	7.9	8.4
	30~34세	13.2	6.3	1.9	9.7	4.7	3.1	6.2	5.9

주: 1) 지난해 가구의 총소득을 가구원 수 균등화하고 개인 단위에서 가중치를 적용하여 중위소득을 계산함.

2) 주관적 경제상태는 “___님 님의 현재 경제상태는 어떠십니까?”라는 문항에 “매우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는 편이다”는 좋음으로, “보통이다”는 보통, “조금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는 나쁨으로 분류하였음.

3)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20).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4. 불안정 고용 청년

- 임시 또는 일용직에 임금근로자로 종사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나타내는 비정형 고용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음.
- 연령과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전히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예상되는 19~24세 청년층의 경우 대학 재학 이상의 청년들이 전문대졸 이하인 저학력 청년들에 비하여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그러나 대학재학 이상인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을 진출하는 25세 이후에서는 대학 재학 이상 청년들의 경우 비정형 청년의 비율이 줄어들어 전문대졸 이하 청년의 절반가량에 불과하여,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내 취약성의 양상이 두드러짐.

〈표 3-28〉 2021년 불안정 고용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전문대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전문대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전체	100.0	45.7	26.2	19.5	54.3	24.6	29.7	
연령집단	19~24세	42.7	14.9	5.6	9.3	27.8	9.2	18.6
	25~29세	28.4	14.6	10.4	4.2	13.7	8.1	5.6
	30~34세	28.9	16.2	10.1	6.1	12.7	7.2	5.5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21c).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고용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가구 특성별로 불안정 고용 청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여기서도 가구소득에 따른 취약성의 편차가 확인되었음.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청년의 경우 불안정 고용 형태를 나타내는 비율이 3.7%에 불과하였으나,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10.1%를 기록하였음.

〈표 3-29〉 2021년 가구 특성별 불안정 고용 청년의 비율

(단위: %)

구분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주관적 경제상태			가구규모		
	50%미만	50%이상 150%미만	150%이상	나쁨	보통	좋음	1인 가구	다인 가구	
전체	10.1	5.2	3.7	7.6	4.7	1.4	6.0	5.3	
연령집단	19~24세	11.0	7.1	3.9	8.7	6.1	2.2	10.1	6.8
	25~29세	12.9	4.4	4.2	7.7	4.7	1.6	5.8	5.2
	30~34세	4.1	3.7	2.8	5.2	3.3	-	5.1	3.2

- 주: 1) 지난해 가구의 총소득을 가구원 수 균등화하고 개인 단위에서 가중치를 적용하여 중위소득을 계산함.
 2) 주관적 경제상태는 “___님 님 님의 현재 경제상태는 어떠십니까?”라는 문항에 “매우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는 편이다”는 좋음으로, “보통이다”는 보통, “조금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는 나쁨으로 분류하였음.
 3)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20).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5.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

□ 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주 36시간 이하로 일하며 추가취업의사가 있는 청년을 나타내는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열악한 고용환경에 있는 청년들 중 남성청년, 그 중에서도 30~34세 청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다만 이러한 양상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음에 주의해야 함.

〈표 3-30〉 2021년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남성		여성	여성		
			전문대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전문대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전체	100.0	63.4	39.6	23.8	36.6	20.0	16.6	
연령집단	19~24세	18.7	8.2	6.2	2.0	10.4	6.1	4.3
	25~29세	37.4	23.9	16.8	7.2	13.5	8.1	5.5
	30~34세	43.9	31.2	16.6	14.6	12.7	5.8	6.8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21c).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고용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열악한 고용 환경에 있는 청년을 장시간 근로 청년과 불완전 취업 청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장시간 근로청년의 경우 남성이 71.1%로 여성의 28.9%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반면, 주 36시간 이하로 일하며 시간 관련 추가 취업의사가 있는 청년의 경우 여성이 55.5%로 남성 44.5%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남.

- 이는 남성 청년의 경우 주로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고, 여성 청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완전 취업에 노출되는 비율이 다소 높음을 의미함.

〈표 3-31〉 2021년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남성		여성	여성	
			전문대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전문대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장시간 근로	100.0	71.1	45.9	25.2	28.9	18.1	10.8
불완전 취업	100.0	44.5	24.1	20.4	55.5	24.6	30.9

주: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21c).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고용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열악한 고용 환경의 청년 전체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장시간 근로와 불완전 취업이 각각 상반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장시간 근로의 경우 주로 상위 소득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며, 불완전 취업⁵⁾ 청년의 경우 주로 하위 소득 가구에서 나타남.

- 이는 근로시간과 소득 수준이 비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시간 근로자들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환경이나, 소득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단시간 근로자들의 경우 소득 수준 자체가 낮을 가능성이 있음.

5) 한국노동패널의 문항 구성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일치하지 않음으로 주의가 필요함.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36시간 이하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간관련 추가 취업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있으나, 한국노동패널에서는 해당 문항이 없어 36시간 이하 취업자 중에서 현재 일자리를 “비자발적인 이유로”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를 불완전 취업으로 보았음.

- 이러한 맥락에서 가구소득이 청년 본인의 소득을 포함하므로, 본인의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에서 가구의 소득 역시 높을 수 있음.
- 한편, 가구규모별 특성을 살펴보면, 장시간 근로는 주로 1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불완전 취업의 경우 주로 다인가구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장시간 근로로 높은 개인의 소득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가구의 자립, 또는 자립의 유지를 위하여 장시간 근로할 수 있다는 점과 연관지어 볼 수 있음. 다만, 청년층에서 1인가구의 의미는 연령별로 다를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요함.

〈표 3-32〉 2021년 가구 특성별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의 비율

(단위: %)

구분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주관적 경제상태			가구규모	
	50%미만	50%이상 150%미만	150%이상	나쁨	보통	좋음	1인 가구	다인 가구
전체	5.0	5.5	5.8	5.4	5.6	5.8	7.6	5.2
장시간 근로	2.1	4.2	5.2	3.5	4.4	5.8	6.7	3.8
불완전 취업	2.9	1.4	0.6	1.9	1.2	-	0.9	1.4

주: 1) 지난 해 가구의 총소득을 가구원수 균등화하고 개인단위에서 가중치를 적용하여 중위소득을 계산함.
 2) 주관적 경제상태는 “__님 님의 현재 경제상태는 어떠십니까?”라는 문항에 “매우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는 편이다”는 좋음으로, “보통이다”는 보통, “조금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는 나쁨으로 분류하였음.
 3)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20).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제4절 경제력 수준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특성

1. 저소득 빈곤 청년

□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 가구의 가구원인 청년이 가지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및 가구원 원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함.

○ 저소득 빈곤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에 따라 남성은 46.9%이

고 여성은 53.1%로 비빈곤 청년의 성별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저소득 빈곤 청년의 연령집단은 19~24세가 51.1%, 25~29세가 22.9%, 30~34세가 26.0%로 비빈곤 청년에 비해 초기 청년의 비중이 다소 높음. 20대 후반 이후 가구원으로서 청년이 경제활동을 개시하여 가구 소득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음.
- 혼인상태별로 저소득 빈곤 청년 중 76.5%가 미혼이고 22.2%는 배우자가 있으며 1.3%는 이혼이나 사별하였음. 비빈곤 청년에 비해 미혼 청년의 비중이 다소 낮고 유배우 청년과 이혼 및 사별 청년의 비중이 다소 높음.
- 저소득 빈곤 청년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31.9%로 가장 높고, 대학교 재학이 28.8%, 고졸이 25.2%, 대학교 중퇴가 10.1%, 중졸 이하가 4.0%의 순으로 나타남. 비빈곤 청년에 비해 저소득 빈곤 청년 중 대학교 졸업 이상 청년의 비중이 15.5%p 낮았는데, 이는 연령집단의 분포 특성의 영향일 수 있음.
- 저소득 빈곤 청년 중 49.2%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비수도권 거주 청년은 50.8%임. 차이는 크지 않으나 비빈곤 청년의 51.6%가 수도권에 거주함.

<표 3-33> 2020년 저소득 빈곤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빈곤 청년	비빈곤 청년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46.9	47.7
	여성	53.1	52.4
연령집단	19~24세	51.1	44.1
	25~29세	22.9	31.1
	30~34세	26.0	24.8
혼인상태	미혼	76.5	84.3
	유배우	22.2	15.4
	이혼 및 사별	1.3	0.4
교육수준	중졸 이하	4.0	0.6
	고졸	25.2	15.6
	대학교 재학	28.8	27.3
	대학교 중퇴	10.1	9.2
	대학교 졸업 이상	31.9	47.4
수도권 거주여부	수도권	49.2	51.6
	비수도권	50.8	48.4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20).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가구원) 원자료 저자 분석

- 저소득 빈곤 청년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67.3%로 전체의 2/3 정도임. 상용근로자가 14.6%,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13.6%의 순으로 나타남.
- 비빈곤 청년 중에서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그 수치는 55.2%로 일하지 않는 저소득 빈곤 청년의 비율에 비해서는 12.1%p 낮은 수준임. 반면,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32.4%로 저소득 빈곤 청년에 비해 17.8%p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임.
- 저소득 빈곤 청년의 주거 점유형태는 자가 42.5%로 가장 많고, 월세가 37.5%, 전세가 14.3%임. 비빈곤 청년의 주거 점유형태별 순위는 저소득 빈곤 청년과 같으나, 자가의 비중이 67.5%로 25.0%p 높고 월세의 비중이 14.9%로 22.6%p 낮아 상대적으로 주거 점유형태가 안정적임.

〈표 3-34〉 2020년 저소득 빈곤 청년의 경제적 특성

(단위: %)

구분		빈곤 청년	비빈곤 청년
전체		100.0	100.0
경제활동상태	상용근로자	14.6	32.4
	임시·일용근로자	13.6	8.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3	0.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2	1.6
	무급가족종사자	1.0	0.8
	기타 종사자	0.9	0.9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67.3	55.2
주거 점유형태	자가	42.5	67.5
	전세	14.3	14.6
	월세	37.5	14.9
	무상 등 기타	5.7	3.0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21.5	1.2
	비수급	78.5	98.8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20).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가구원) 원자료 저자 분석

2. 과도한 부채 부담 청년

□ 제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과도한 부채 상환 부담을 지는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유형화하는 기존의 시도나 상환 부담을 기준으로 부채 실태를 파악하는 실태 조사는 존재하지 않았음.

○ 가계부채비율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로 측정한 시도는 있으나⁶⁾, 이는 가구 단위의 부채 부담에 대한 접근이지 부채의 명목과 무관하게 청년 개인의 상환 부담을 고려한 것은 아님.

○ 따라서 현재 여건에서 제2장에서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는 청년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청년의 부채 부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시도라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청년 본인 명의 부채가 개인 단위 연간 처분가능소득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부채 부담이 과도한 것으로 조작적 정의함.

-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가구원, 부채의 원자료를 활용하면, 2019년 기준 명의 기준 부채가 있는 개인은 전체의 25.4%, 평균 부채는 8,193만원, 개인 단위 연간 처분가능소득은 1,861만원임.
- 19~34세 중 부채가 있는 청년은 12.3%이고, 이들의 평균 부채는 4,748만원, 개인 단위 연간 처분가능소득은 1,230만원임.
- 이는 19~34세 청년의 4.2%이고, 2019년 인구총조사에 의한 19~34세 청년을 모수로 하면, 약 456,336명임.

□ 다음 <표 3-35>는 청년 본인 명의 부채가 연간 처분가능소득의 3배를 초과하여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는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 부채 부담 청년과 비교한 결과임.

○ 부채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의 52.1%는 남성이고 47.9%는 여성임. 비 부채 부담 청년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음.

6) e-나라지표. (2021b). 가계부채비율(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54> 에서 2021.12.2. 인출.

- 부채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 중 19~24세는 15.3%, 25~29세는 21.4%, 30~34세는 63.3%로 연령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은 비 부채 부담 청년과 달리 부채 부담 청년은 연령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아져, 30대 초반 집단은 전체의 약 2/3 정도임.
- 부채 부담을 지는 청년 중 64.2%는 배우자가 있고, 미혼은 35.1%, 이혼 및 사별한 경우는 0.8%임. 비 부채 부담 청년 중 미혼의 비중이 85.7%인 것과 비교하면, 결혼한 청년의 부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보임.
- 교육수준별로 부채 부담을 지는 청년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중은 60.0%이고 고졸은 22.2%임. 비 부채 부담 청년과 비교해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비중이 높아 교육을 종료한 경우 부채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보임.
- 부채 부담을 지는 청년 중 58.4%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 비 부채 부담 청년의 5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35〉 2020년 부채 부담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부채 부담 청년	비 부채 부담 청년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52.1	47.4
	여성	47.9	52.6
연령집단	19~24세	15.3	46.0
	25~29세	21.4	30.8
	30~34세	63.3	23.2
혼인상태	미혼	35.1	85.7
	유배우	64.2	13.9
	이혼 및 사별	0.8	0.4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	0.9
	고졸	22.2	16.1
	대학교 재학	9.9	28.2
	대학교 중퇴	6.9	9.3
	대학교 졸업 이상	60.0	45.5
수도권 거주여부	수도권	58.4	51.1
	비수도권	41.6	48.9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20).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가구원) 원자료 저자 분석

□ <표 3-36>은 부채 부담을 지는 청년의 경제적 특성을 비 부채 부담 청년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임.

- 부채 부담을 지는 청년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48.7%로 약 절반 정도이고,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는 36.0%,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5.4%임. 비 부채 부담 청년에 비해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17.6%p 높은 것임.
- 부채 부담을 지는 청년의 주거 점유형태를 보면, 전체의 45.5%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고, 전세는 35.2%, 월세는 16.6% 수준임. 비 부채 부담 청년과 비교하면, 자가의 비중이 20.8%p 낮고 전세의 비중이 21.5%p 높음.
- 부채 부담을 지는 청년 중 2.8%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어 비 부채 부담 청년의 2.9%와 유사함.
-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하는 빈곤 여부를 살펴보면, 부채 부담을 지는 청년의 15.1%가 빈곤하여 비 부채 부담 청년 8.0%의 약 2배 정도에 이룸.

<표 3-36> 2020년 부채 부담 청년의 경제적 특성

(단위: %)

구분		부채 부담 청년	비 부채 부담 청년
전체		100.0	100.0
경제활동상태	상용근로자	48.7	30.1
	임시·일용근로자	5.4	9.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0	0.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8	1.6
	무급가족종사자	2.6	0.8
	기타 종사자	1.6	0.9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36.0	57.1
주거 점유형태	자가	45.5	66.3
	전세	35.2	13.7
	월세	16.6	16.8
	무상 등 기타	2.6	3.3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2.8	2.9
	비수급	97.2	97.1
빈곤 여부 (중위소득 50% 미만)	빈곤	15.1	8.0
	비빈곤	84.9	92.0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20).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가구원) 원자료 저자 분석

제5절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공적 지원 현황

- 공공정책에 의한 지원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대상자 포괄성, 지원 적절성, 접근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대상자 포괄성은 필요로 하는 인구 집단이 정책적 사각지대 없이 해당 공적 지원의 범위 내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평가임.
 - 지원 적절성은 생애 취약한 경험을 하는 인구 집단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충분히 받는지에 대한 평가임.
 - 접근성은 잠재적 대상자가 필요한 공적 지원을 장애물 없이 실제로 신청하고 받는지에 대한 평가임.
- 여기에서는 연구 범위의 한계로 인하여 대상자 포괄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관련 주요 공적 지원 현황을 평가하되, 해당 지원을 제공하는 전달체계에의 접근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므로, 지원 수준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제외함.
- 또한 여기에서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부처 차원의 공적 지원을 중심으로 검토함. 지역에 따른 지원 내용의 편차를 통제하기 위한 것임.
- 청년정책으로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및 2021년 4월에 발표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과제별 시행계획)”과 같은 해 8월에 발표된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3월에 발표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포괄하는 공적 지원을 검토함.

1. 인적 속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가. 장애 청년

- 「장애인복지법」제1조(목적)에 의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지원함.
- 법률에 의해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의한 구분 없이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수당지급 등을 지원함.
 - 이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법률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에 한하므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자는 지원 범위에 포괄되지 않음.
- 법률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두고,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에 의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고 있음.
 - 법률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에 의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관련 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사업 등을 수행함.
 - 법률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및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상담원,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 등록 신청 접수 및 처리, 장애인연금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등의 업무는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가 담당함.
- 법률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음.

나. 이주배경 청년

- 이주배경청년은 본인의 출생지와 국적뿐 아니라 원가족의 출생지 및 국적 등의 여건에 의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함.
 - 제2장에서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에 있어 본인의 출생지가 북한 또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으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나, 국내에서 출생하여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청년이나 다문화 가족 자녀 청년과 같이 본인의 출생지와 국적이 한국이나 원가족의 출생지 혹은 국적이 외국인 청년 등은 누락되어 있음.

- 이주배경청년의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북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에 의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함.
 - 법률에 의한 지원은 제2조(정의)에 의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에 의하여 구분하지 않음.
 - 이들에 대해서는 교육, 정착금, 주거, 직업훈련 및 취·창업 등 정착을 지원함.
 - 법률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 법률의 소관부처는 통일부임.

-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함.
 -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망명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세대주에 대해 국내 정착과 정착금을 지원하

거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동포 및 동반가족에 대해 영구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국에 소요되는 항공운임 및 초기 정착비, 생활 시설 운영비, 주거 등을 지원함.

- 이 경우 연령에 의한 구분을 명시하지 않음.
- 「재외동포재단법」에 법적근거를 두는 재외동포재단에서 국적과 무관하게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혈통을 지닌 사람에 대해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는 국가보훈처이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재외동포재단법」의 소관부처는 외교부임.

□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원가족이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음. 이들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자녀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면서, 특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의해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함.

- 이들에 대해서는 국내 적응을 위하여 교육이나 언어 지원, 그리고 가정폭력이나 의료 및 건강관리 등을 지원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의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한국어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에 의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은 사실상 결혼이민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음.
 - 그런데 이 법에 의한 지원 범위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에 의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은 대상자로 포괄되지 않음.
- 두 법률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임.

2. 관계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가. 경제적 부양 청년

- 제2장에서 가구의 생계 부담을 지는 청년 가구원을 경제적 부양 청년으로 보고, 청년의 관점에서 등장한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 유형으로 제안한 바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존재하지는 않음.
- 제한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출 시 가구원 중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이나 24세 이하 수급권자, 아동시설을 퇴소하거나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 청년, 사회복지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등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근로 및 사업소득 일부를 공제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22, pp.105-107).
 - 구체적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급여 보장수준인 법률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30% 대비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생계급여로 보충하고 있는데, 일하는 청년 가구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공제함으로써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범위가 조건적 일뿐더러 수급자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양 청년에 대한 대상자 포괄성은 지극히 제한적임.
 - 법률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임.

나. 한부모청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부 또는 모가 세대원을 부양하며 18세 미만 혹은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과 자립을 지원하도록 함.
- 법률에 의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의 학용품비 등의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생활

안정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아동교육, 의료서비스, 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대여할 수 있음. 직업능력개발이나 고용지원, 국민주택 우선 분양 등의 지원을 제공함.

-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특별 지원 이외 연령 구분을 하지 않음.
- 법률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의해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을 설치·운영함.
- 법률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임.

다. 청년돌봄자(Young Carer, 영케어러)

- 청년돌봄자는 영케어러(Young Carer)를 번역한 말로, 제2장에서는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갖는 청(소)년으로 보았음.
 -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돌봄을 부담을 책임지는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등장하였고 정책대상자로서의 정의나 실태가 부재한 상황임.
- 하지만 돌봄과 관련된 공적 지원을 이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고령자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이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노인’은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므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이외의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는 대상자 범위에서 제외됨.
 - 예를 들어, 청년돌봄자로서의 삶을 소개한 조기현(2019, pp.31-42)은 아

버지와 2인 가구였는데, 본인이 20세일 때 아버지가 쓰러져 간병을 시작했음. 하지만 만 24세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대 보증인이 될 수 없었고, 50대인 아버지가 알코올성 치매⁷⁾로 진단받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범위에서 제외됨. 결국 아버지에 대한 돌봄 부담과 의료비 및 간병비, 2인 가구의 생계비 부담을 20대 청년기에 부담해야 했음.

- 법률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함.
 - 지원서비스는 법률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함.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서비스 대상자를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 범위가 아닌 만 65세 미만으로 하고 있지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 중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 법정보호세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법률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가사·간병서비스는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에 의해 등록된 제공기관에 의해 지원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에 미치지 않는 빈곤층이어야 하며, 신규 신청할 경우 수급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이 충족해야 함.
 - 두 법률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원은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 관할함.

7) 알코올성 치매의 상병코드는 F107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노인성 질병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라. 고립 청년

- 제2장에서 고립 청년은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지지체계가 부재한 경우로 조작적 정의한 바 있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서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로 정의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법률의 소관은 보건복지부임.
 - 그러나 고독사는 고립의 최종 단계로 볼 수 있으며,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기 전 고립된 상황을 탐지하거나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지원은 비어 있는 상황이며, 전문 지원기관 또한 부재함.

3. 일자리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가. 미취업 청년: 니트 청년, 장기/비자발적 실업 청년

- 일자리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공적 지원은 2021년 3월에 발표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과 같이 종합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취업여부를 고려해 살펴보면, 니트 청년과 장기/비자발적 실업 청년은 미취업 청년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은 또한 일자리 총량 확대를 위한 지원과 구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다분야 일자리 총량 확대를 위한 공적 지원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의 세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해외 취업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는 반면, 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소관함.

○ 여기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 지원을 중심으로 검토함.

□ 미취업 청년의 구직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적 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음.

○ 이 제도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 기준과 취업 경험의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단, 근로능력이나 구직의사가 없거나 학교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결혼이민자,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및 저소득 중장년 등에게도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의 고용센터를 통해 직영하거나 민간위탁한 취업지원기관을 통해 운영함.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에서는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신설하였고, 같은 해 8월에 발표된 「청년특별대책」에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 이 사업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함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컨설팅, 진로 및 직업상담 등을 제공함.

-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하여 구직활동 및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지역의 청년센터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구직의사가 있는 19~34세 청년을 대상자 범위로 포괄하고 있고, 취업의욕이 저하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청년에 대한 대상자 포괄성을 확보함.

나. 취업 청년: 저임금 근로 청년, 불안정 고용 청년,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

- 일자리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중 저임금 근로 청년, 불안정 고용 청년,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은 미취업 청년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임금 수준이 낮은 청년에 대해서는 자산형성이나 주거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득 및 삶의 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빈곤 청년과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자인 경우 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해 금융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업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지원하는 등 자산형성을 지원함.
 - 주거비에 대해서는 청년 주택 및 기숙사 확대,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및 주거급여 분리 지급(「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세자금대출” 지원(「청년특별대책(‘21.8.)」) 등을 통해 지출 부담을 경감함.
 - 직업훈련에 필요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공무원이나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소소득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필요한 누구나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훈련비를 지원받아 관련된 지출 부담을 경감함.
- 불안정 고용 청년에 대한 공적 지원의 예로, 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과 2021년 8월에 발표된 「청년특별대책」 등을 통해 배달기사나 대리기사 등 고용안정성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직종 종사자에 대해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함.
 - 또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 등에서는 정규직 등 청년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게 세액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 적용을 연장하고, R&D 정부지원금을 제공할 시 청년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 기업으로 하여금 청년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인함.

-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에서는 일하는 청년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21~)」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였음.
- 방문판매원이나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또한 확대하고자 하였음.
-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하여 규정을 신설하거나 거점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 근로여건이 열악한 사업장 단속을 강화하는 등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4. 경제력 수준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가. 저소득 빈곤 청년

-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확인한 수급자의 경제력 수준과 필요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종류로 하고 있음.
- 이때 법률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에 의해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및 공적이전소득의 실제소득에서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 지출요인을 감안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에서 기초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소득의 재산환산액을 합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함.
 -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에는 생계급여를, 40% 이하일 때에는 의료급여를, 46% 이하일 때에는 주거급여를, 50% 이하일 때에는 교육급여를 지원함.
- 법률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자 신청을 접수하고, 선정·관리함.

- 제2장에서 조작적 정의한 저소득 빈곤 청년은 균등화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인 청년이었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 범위는 저소득 빈곤 청년을 포괄하기에 제한적임.

나. 부채 부담 청년

- 제2장에서 주목한 과도한 부채 상황 부담을 지는 청년은 전통적인 취약계층 청년이라기보다 새롭게 등장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음.
- 전국 대표성을 가지는 실태조사 또한 부채의 명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청년의 상환 부담이나 비공식적인 부채 종류 및 실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들의 규모나 취약성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교육비에 한하여,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에 의하여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장학금은 저소득 가구나 다자녀가구 등 가구의 소득 수준과 경제적 부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상환의무는 없음.
 - 학자금 지원은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확인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와 비교하여 결정함.
- 특히 대학 학자금 대출에 한해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법률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의하여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고,
 - 특히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학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활용함.
- 두 법률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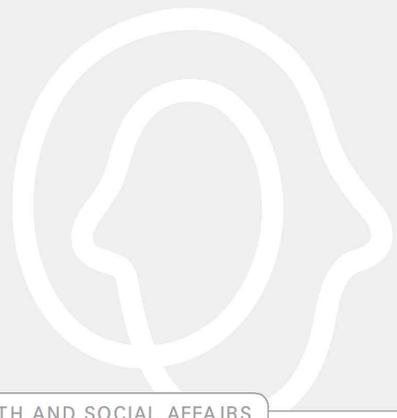
제3부

핵심 취약계층 청년 지원 방안: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제4장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해외 사례

제5장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삶과 정책 수요

제6장 국내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실태와 방안



제4장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해외 사례

제1절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

제2절 핀란드의 사회적 배제 청년 지원

제3절 영연방과 유럽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대처 전략

제4장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해외 사례

제1절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

1. 히키코모리 개념의 형성

- 히키코모리는 2000년대 이후 등장하였으며, 그 이전의 ‘부등교’ ‘이지메’ ‘니트’ 등 사회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개념들과의 연관을 맺으며 구축되어온 개념임(村澤和多里, 2017).
 - 히키코모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념뿐 아니라 다른 취약성을 나타내는 개념과 함께 역사적 경과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음.
- 아동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는 개념 중 가장 먼저 확산된 것은 ‘부등교’로, 교육 의무화 및 중등교육의 일반화와 함께 심리적 문제에서 다루어지다 점차 획일화된 교육 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원인에 대한 인식도 변화해왔음.
 - ‘부등교’는 1950년대 후반 초등교육 일반화와 더불어 학교 공포증(school Phobia) 으로 모친과의 ‘불안장애’로 주목을 받은 이후, 1970년대까지 초등학생이 중심 대상으로 주로 개인의 심리적 문제의 일환으로 인식되었음.
 - 1970년대 중반부터는 중학생의 부등교도 문제시 되면서 그 배경에 ‘학가축화’에 의한 부모의 ‘과보호’나 ‘가정 내 폭력’ 등 가족 문제로 다루어졌음.
 - 다른 한편, 학교교육의 학력주의 등에 의한 스트레스에 대한 방위반응으로도 이해되면서 정신질환이나 개인 원인론에 반대하는 담론도 확산되어 감.
 - 1980년대에는 ‘부등교’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언론 평론에 대한 부모 및 관련 단체 항의 운동 등을 계기로 등교거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 1995년에는 문부성이 부등교에 대한 대책으로서 임상심리사 등을 학교 상

답사로 파견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후생성에서도 ‘히키코모리 부등교 아동복지대책 모델사업’을 개시하였음(厚生省, 1991).

□ ‘부등교’는 ‘특별한 이유 없는 무기력에 따른 부등교의 증가’, ‘이지메와의 관련성’, ‘아동 문제의 청년 문제로의 장기화(村澤和多里, 2017)’ 등 양상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개념들이 파생하여 등장함.

○ 먼저 ‘특별한 이유 없는 무기력’의 문제로, 당시까지 부등교 원인은 아동이 학교를 쉬는 것에 대한 강한 내적 갈등 상태가 전제가 되었으나, 80년대 후반부터 갈등 자체를 아예 경험하지 않는 무기력, 무관심형 부등교가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이루어짐(文部省, 1996).

- 이는 후에 ‘니트’와 ‘히키코모리’ 간 관련성으로 발전해 나감.

○ 다음 ‘이지메’ 문제와의 관련성으로, 80년대 후반부터 부등교 원인으로 ‘이지메’라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였음(森田洋司, 2010).

- 특히 이지메 피해에 대한 영향으로 심신장애 및 부등교가 광범위하게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이루어지는 등 이지메와 부등교와의 관련성이 강하게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아동 문제의 청년 문제로의 장기화’⁸⁾로, 부등교는 학령기에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이 아동이 청년이 되어도 사회에 나오지 않은 상태가 되는 ‘부등교 그 이후’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村澤和多里, 2017).

- 청년이 된 수많은 부등교 아동들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요청되었음.

□ 히키코모리 개념은 1990년대 후반부터 부등교의 장기화의 의미에서 시작하였으며, 그 후 광범위한 정신장애 등에 의한 은둔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해가며, ‘니트’를 논할 때 ‘무기력’ 특징이 강조되어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 1990년대 후반에 ‘히키코모리’는 주로 부등교에 기인하면서, 고령화 및 장기

8) 村澤和多里(2017)은 이를 ‘부등교 이후의 문제’라 표현하고 있음.

화에 따라 부등교와는 다른 문제성을 띠는 현상으로 정의되기 시작함.

- 예를 들어 塩倉裕(2000)는 히키코모리를 ‘부등교를 하고 있는 아동들 중 일부가 계속 집 안에 틀어박혀 있는 현상’과 ‘부등교인 채로 고등학교 연령을 끝낸 아동들이 사회에 나오지 않은 채 계속 틀어박혀 있는 현상’을 구별하며, 石川良子(2007)는 전자를 ‘부등교 중인 히키코모리’, 후자를 ‘부등교 그 이후의 히키코모리’로 정의하였음.

○ 그 이후 히키코모리에 대한 전국 조사와 정부의 대응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히키코모리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그 개념의 외연도 부등교 등에 얽매이지 않고 확대되기에 이르렀음.

- 또한 히키코모리의 원인도 심리적인 문제에서 점차 정신의학적 ‘장애’를 배경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사회성 장애)가 주목을 받게 되는 등 히키코모리의 원인도 다양하게 파악되기에 이르렀음.

□ 2000년대에 들어서 히키코모리 청년에 대해 논할 때 ‘니트’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였음.

○ 여기서 ‘니트’란 취업뿐 아니라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덧붙여 ‘노동할 의사(의욕)’가 없는 청년이 포함되어, 사회참여 의욕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파악되는 ‘히키코모리’도 니트의 일환으로 파악되기에 이르렀음(村澤和多里, 2017).

□ 최근에는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고독 및 고립의 문제의 확산과 더불어 ‘히키코모리’를 청년 고유의 문제라는 인식보다는 전 연령대에 걸친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중장년 히키코모리 조사를 실시하여 히키코모리 고령화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후생노동성뿐만 아니라 히키코모리 관련 다부처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히키코모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2019년에 발생한 두 살인사건(가와사키시 노보리토오리마 살인사건과 전 농수성 사무차관의 장남 살인사건⁹⁾)이 모두 중장년 히키코모리와의

관련성으로 이해¹⁰⁾되면서, 중장년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표 4-1〉 히키코모리 관련 개념의 변화

구분	주요대상	주요 개념 및 문제	원인 및 정책 대응
1950년대 후반~1970년대 전반	초등 학생	- 학교 공포증 - 등교거부행동	- (원인) 유아기에서 학동기로의 이행 실패 및 분리불안 - (대응) 주로 정신의학
197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	중학생	- 부등교 - 부등교 학생의 가정 내 폭력	- (원인) 가정 내 과보호 및 분리불안 vs 획일적 학교 교육 - (대응) 주로 정신의학 vs 프리스쿨(대안학교) 설립
1990년대 후반 ~	청년기로 확대	- 부등교 - 이지메 - 부등교하던 아동의 청년기 진입	- (원인) 이지메로 인한 부등교 현상, 무기력형 부등교 증가, 부등교 아동의 청년기 진입 - (대응) 문부성: 임상심리사 등 파견제도 개시; 후생성: 부등교아동복지대책 모델 사업 등, 정부사업 실시
		- 히키코모리	- (배경)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 중 '학령기'는 부등교, 학령기를 끝낸 청년은 '히키코모리'로 개념 구분하기 시작하며 연령대 확대 - (원인) 개인, 가족, 사회 3영역의 악순환(히키코모리 시스템)론이 정착, 가정환경이나 양육태도로 환원하는 관점은 퇴조, 히키코모리 원인론보다 히키코모리가 계속되는 이유로 논의로 초점 이동, 발달장애 연관성 대두 - (대응) 다양한 조사실시, 정신보건적 치료 및 지원, 발달특성에 따른 심리요법 및 취업 지원 등
2000년대 중반	청년기	- 니트	- (배경) 히키코모리를 포함한 니트 개념에 '노동의욕 없음', '사회참가 부족'이 강조되면서, 히키코모리는 사회참가 의욕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결여'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화 - (대응) 취업의욕 환기 및 취업 훈련 등 강화
2010년대	중장년기도 포함, 확대	- 히키코모리 개념 확대	- (배경) 히키코모리 장기화 및 다양화, 중장년 히키코모리 피해/가해 사건 발생 - (대응) 중장년을 포함한 다부처간 연계를 강화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자료: 저자 작성

9) 2019년 5월 28일 가와사키시 보행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가해자가 통학 중이던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무차별 습격하여 2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는 18명 발생하였음. 가해자는 50대로 1998년 경부터 히키코모리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짐. 이 사건 이후 3일 후인 6월 1일에는 전 농수산부 사무차관(76세)이 히키코모리 상태인 장남(44세)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장남은 중학교때 이지메를 당한 이후 가정 폭력을 휘둘렀고 대학 입학 후에는 게임에 몰두하는 히키코모리 상태였으며 전 차관은 3일 전 가와사키시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장남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살인 동기로 알려졌다.

10) 후생노동성 장관은 '안이하게 히키코모리와 연계시키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하였고(根本匠, 2018), 히키코모리 당사자 단체인 '일반사단법인 히키코모리 UX 회의'도 히키코모리와 살인사건을 안이하게 연계하여 보도하는 것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음(一般社団法人ひきこもりUX会議, 2019.5.31.).

2. 히키코모리의 실태: 2015년 및 2018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가. 히키코모리 개념 정의

- 앞서 살펴보았듯이 히키코모리는 1990년대 후반 부등교 (및 이지메), 2000년대 중반 니트 등과 더불어 구축되어 온 개념으로 구체적 정의는 실태조사 실시와 더불어 구체화되어 갔음.
-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는 다양한 정의들이 제시되었음.
- 2010년 이후부터는 차츰 내각부(内閣府)나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정의가 정착되어 감.
 - 내각부(内閣府, 2010)에서는 실태조사 설문문항의 응답을 통해 히키코모리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齊藤万比古 외(2010)의 정의는 최근 발간된 후생노동백서(2018)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을 정도로 주류적인 정의로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서 사회참가(의무교육을 포함한 취학, 비상근을 포함한 취업, 가정 외 교류 등)를 회피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대부분 가정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정의하되, ‘원칙적으로 조현병의 양성 혹은 음성(陰性) 증상에 바탕을 둔 히키코모리 상태와는 다른 비정신병성 현상으로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확정진단이 이루어지기 전 조현병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낮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이라 기술하고 있음.

〈표 4-2〉 히키코모리 정의

자료	정의
齋藤環 (1998)	20대 후반까지 문제화되며, 6개월 이상 자택에서 히키코모리 상태가 지속되며, 기타 정신장애가 그 첫 번째 원인이라 생각하기 힘든 상태
厚生労働省 (2003)	(1) 자택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2) 취학·취업 등 사회참가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며 (3) 이상의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상태 (4) 다만, 조현병 등 정신병 영역의 질환 혹은 중등도 이상의 정신지체(IQ55-60)인 자는 제외하며 (5) 취학,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 이외의 타자(친구 등)과 친밀한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자는 제외함

자료	정의
小山明日香 등 (2006)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으며 가족 이외의 사람과 교류를 거의하지 않은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어 자택에 히키코모리 사태로 있는' 상태로 '때때로는 장보기 등으로 외출하는 경우'도 포함함
東京都 (2008)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참가가 좁아지며 취업이나 취학 등 자택 이외 생활 공간을 장기간에 걸쳐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대략 15세부터 34세까지의 자
内閣府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키코모리 군': '취미와 관련된 용무가 있을 때에만 외출한다' '근처 편의점에는 외출한다', '자기 방에서는 나오지만 집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자신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상의 사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다고 응답한 자 중,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로 '조현병 또는 신체적 질병', '임신'을 선택한 자와 자택에서 일이나 출산, 육아를 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자 - '준 히키코모리 군': '히키코모리 군' 중 '취미와 관련된 용무가 있을 때에만 외출한다'라 응답한 자 - '협의를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의 친화성' 항목('히키코모리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한다', '집이나 자기 방에서 은둔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기분이 상한 일이 있을 때에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 '이유가 있으면 집이나 내 방에서 히키코모리 상태가 되어도 어쩔 수 없다')에 대해 모두 '그렇다'라고 응답하던지 3개 이상의 항목에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1개 항목에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자
齊藤万比古 등(2010), 厚生労働省 (2018)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서 사회참가(의무교육을 포함한 취학, 비상근을 포함한 취업, 가정 외 교류 등)를 회피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대부분 가정에 머물러 있는 상태', 또한 '원칙적으로 조현병의 양성 혹은 음성 증상에 바탕을 둔 히키코모리 상태와는 다른 비정신병성 현상으로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확정 진단이 이루어지기 전 조현병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낮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이라 기술하고 있음

자료: 村澤和多里. (2017). 「ひきこもり」概念の成立過程について—不登校との関係を中心に—. 札幌学院大学人文社会学紀要, 102, p.123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히키코모리 관련 실태조사 개요

□ 히키코모리에 대한 대표적인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는 2015년 '청년 생활에 관한 조사(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와 2018년 '생활상황에 관한 조사(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라고 할 수 있음.¹¹⁾

○ 2015년 '청년 생활에 관한 조사'는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만 15세~만 39세의 청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히키코모리 규모, 히키코모리 계기, 필요한 지원 내용을 조사할 목적으로 실시되었음.

- 이에 앞서 2009년에도 '청년의 의식에 관한 조사(히키코모리에 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 바도 있음(内閣府, 2010).

○ 2018년 '생활상황에 관한 조사'는 히키코모리의 장기화 경향에 따라 전국의

11) 内閣府. (2016). 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 内閣府. (2019).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 참고

만 40~64세까지의 중장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히키코모리 상태의 기간, 계기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실시되었음.

- 아래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작된 한국에 참조가 될 수 있어 2015년 조사 및 2018년 조사의 특징을 조사항목까지 포함하여 소개함.

〈표 4-3〉 전국 규모 일본의 히키코모리 실태조사 개요 (2015년 및 2018년)

구분	2015년 조사	2018년 조사
조사 목적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2010년 시행)에 서는 아동 및 청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원인 규명 및 지원 방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연구를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17조), 히키코모리 상태의 청년을 개별 관계기관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전국 조사 실시	히키코모리 장기화에 따라 40세 이상 히키코모리 규모 등을 조사하여 예방 및 대응 정책 검토를 위한 기초 데이터 생산
조사 대상	전국 만15세~만39세인 자 본인 (5천명) 및 동거하는 성인 가족 *유효응답: 본인 3,115명, 동거인 2,897명	전국 만40세~만64세 본인 및 동거하는 성인 5천명 *유효응답: 본인 3,248명, 동거인 2,812명
조사 방법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지를 두고 가고 회수하는 방식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지를 두고 가고 회수하는 방식
조사 항목	(본인) (1) 기본적 속성(Q1~Q8) (2)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Q9~Q12) (3) 취업에 관한 사항(Q13~Q17) (4) 평상시 활동에 관한 사항(Q18~Q19) (5) 히키코모리 상태에 관한 사항(Q20~Q23) (6) 상담기관에 관한 사항(Q24~Q26) (7) 히키코모리 상태에서 회복 관련 사항(Q27~Q31) (8) 자신에게 들어맞는 사항(Q32~Q34) (9) 가족 상황(Q35) (10) 고민 상담에 관한 사항(Q36~Q37)	(본인) (1) 기본적 속성(Q1~Q8) (2)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Q9~Q10) (3) 지금까지의 경험(Q11) (4) 취업·취학 등에 관한 사항(Q12~Q16) (5) 평상시 활동에 관한 사항(Q17~Q18) (6) 히키코모리 상태에 관한 사항(Q19~Q23) (7) 상담기관에 관한 사항 (Q24~Q29) (8) 히키코모리 상태에서 회복 관련 사항(Q30~Q34) (9) 자신에게 들어맞는 사항(Q35~Q37) (10) 가족 상황(Q38) (11) 고민 상담에 관한 사항(Q39~Q40) (12)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Q41) (13) 현재나 장래의 불안(Q42)
	(동거자) (1) 대상자 기본적 속성(Q1~Q5) (2) 대상자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Q6~Q7) (3) 대상자의 취업에 관한 사항(Q8) (4) 대상자의 히키코모리 상태에 관한 사항(Q9~Q11) (5) 상담기관에 관한 사항(Q12~Q14) (6) 대상자의 히키코모리 상태로부터의 회복 관련 사항(Q15~Q17) (7) 자유의견(Q18)	(동거자) (1) 대상자 기본적 속성(Q1~Q5) (2) 대상자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Q6~Q7) (3) 대상자의 취업·취학 등에 관한 사항(Q8) (4) 대상자의 히키코모리 상태에 관한 사항(Q9~Q12) (5) 상담기관에 관한 사항(Q13~Q17) (6) 대상자의 히키코모리 상태로부터의 회복 관련 사항(Q18~Q21) (7) 지원 방식에 관한 의견(Q22) (8) 대상자에 관한 현재나 장래의 불안(Q23)

자료: 内閣府. (2016). 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 内閣府. (2019).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히키코모리의 조작적 정의로서 2015년 및 2018년 모두 공통된 ‘광의의 히키코모리’ 개념을 활용하며 2015년 조사에서는 ‘히키코모리 친화군’ 개념도 분석에 포함하였음.

○ 2015년 및 2018년 조사에서 히키코모리 정의는 동일하였으며, 외출 빈도와 지속 기간에 대한 응답을 통해 일차적으로 히키코모리를 규정하였음.

- 외출하는 목적 및 집과 자기 방에서 나오는 여부를 통해 준 히키코모리, 협의의 히키코모리, 광의의 히키코모리로 규정하였음.
- 또한 가족이외의 사람과 자주 대화를 하거나, 현재 상태가 된 원인이 신체적 질병인 경우, 자택에서 일을 하는 자유업·자영업이거나 가사일, 육아나 돌봄·간호를 하는 경우, 임신 및 출산인 경우는 히키코모리에서 제외함.

〈표 4-4〉 히키코모리 실태조사에서의 조작적 정의(2015년 및 2018년 조사 공통)

<p>(히키코모리 정의) 보통 어느 정도 외출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래의 ①~④ 에 해당하는 자로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6개월 이상이라 응답한 사람 ① 취미나 불일이 있을 때에만 외출한다 (준 히키코모리 군) ② 근처 편의점에는 간다 (협의의 히키코모리 군) ③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협의의 히키코모리 군) ④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협의의 히키코모리 군) ①~④ (광의의 히키코모리 군)</p> <hr/> <p>(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히키코모리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 ‘현재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질병’이라 선택하고 자유기술란에 신체적 질병을 기입한 자 나.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자 ① ‘당신의 현재 취업·취학 등 상황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일하고 있다’ 또는 ‘자영업·자유업’을 선택한 자 ② ‘보통 자택에 있을 때 자주 하는 모든 것에 ○을 표기 하시오’라는 질문에 ‘일을 한다’를 선택한 자 ③ ‘현재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기타’를 선택하고 자유기술란에 자택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입한 자 다. 아래의 ①~③의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6개월간 가족 이외의 사람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자주 대화한다’ 혹은 ‘때때로 대화한다’를 선택한 자 ① ‘당신의 현재 취업·취학 등 상황에 대해 응답해주세요’라는 질문에 ‘전업주부(主婦)·주부(主夫)’ 혹은 ‘가사도움’을 선택한 자 ② ‘보통 자택에 있을 때 자주 하는 모든 것에 ○을 표기 하시오’라는 질문에 ‘가사일을 한다’, ‘육아를 한다’ 혹은 ‘돌봄·간호를 한다’를 선택한 자 ③ ‘현재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임신하였다’ 또는 ‘돌봄·간호를 맡게 되었다’를 선택한 자, 또는 ‘기타’를 선택하고 자유기술란에 출산·육아를 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입한 자</p>
--

자료: 内閣府. (2019).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 <https://www8.cao.go.jp/youth/kenkyu/life/h30/pdf/s2.pdf> 에서 2021.10.10. 인출.

○ 2015년 조사에서는 히키코모리 상태에 공감, 이해할 수 있으며, 비슷한 상태가 되면 히키코모리 상태가 되고 싶다고 응답한 자를 ‘히키코모리 친화군’으로 개념화하였음.

- 아래의 질문에 모두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 ‘광의의 히키코모리’를 제외한 응답자로 규정하였음.

〈표 4-5〉 히키코모리 실태조사에서의 히키코모리 친화군의 조작적 정의 문항(2015년 조사)

<p>Q. 다음 항목에 대하여, 귀하에게 해당하는 숫자에 ○를 해주세요.(○는 각 항목별 하나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이나 자신의 방에서 히키코모리 상태로 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의 기분을 알 수 있다.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그렇지 않다. · 당신도 집이나 자신의 방에서 히키코모리 상태로 있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그렇지 않다 · 불쾌한 일이 있을 때 밖에 나가고 싶지 않게 된다.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그렇지 않다 · 이유가 있다면 집이나 자신의 방에서 히키코모리로 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그렇지 않다
--

자료: 内閣府. (2016). 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 <https://www8.cao.go.jp/youth/kenkyu/hikikomori/h27/pdf/teigi.pdf>. p.11. 에서 2021.10.10. 인출.

다. 실태조사 주요 결과

□ (청년 히키코모리 규모추계) 15~39세 히키코모리는 약 54.1만명으로 추계됨 (2015년 조사).

○ 이 중 준 히키코모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36.5만명, 협의의 히키코모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17.6만 명으로 추계되었음.

140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표 4-6〉 15~39세 히키코모리 규모 추계(2015년 조사)

구분	해당 인구 (명)	유효회수 수에서 접하는 비율(%)	전국 추계 수 (만 명)	히키코모리 규정 및 규모
평상시에는 집에 있지만 취미에 관한 용 무가 있을 때에만 외출한다	33	1.06	36.5	준(準) 히키코모리 군 36.5만 명
평상시에는 집에 있지만 근처 편의점 등 에는 외출한다	11	0.35	12.1	협회의 히키코모리 군 17.6만 명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에서는 나오지 않 거나 거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5	0.16	5.5	협회의 히키코모리 군 17.6만 명
합계	49	1.57	54.1	광의의 히키코모리 군 54.1만 명

자료: 厚生労働省. (2021). 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各府省の取組について. 第1回 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関係府省横
断会議 資料2(2021.6.29.). <https://www.mhlw.go.jp/content/12000000/000808501.pdf>. p.38. 에서
2021.10.10. 인출.

□ (중장년 히키코모리 규모추계) 40세~64세 히키코모리는 약 61.3만 명으로 추계
됨(2018년 조사).

○ 이 중 준 히키코모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24.8만 명, 협회의 히키코모리에 해당
하는 사람은 36.5만 명으로 추계되었음.

〈표 4-7〉 40~64세 히키코모리 규모 추계(2018년 조사)

구분	해당 인수(명)	유효회수 수에서 접하는 비율(%)	전국 추계 수 (만 명)	히키코모리 규정 및 규모
평상시에는 집에 있지만 취미에 관한 용무 가 있을 때에만 외출한다	19	0.58	24.8	준(準) 히키코모리 군 24.8만 명
평상시에는 집에 있지만 근처 편의점 등에 는 외출한다	21	0.65	27.4	협회의 히키코모리 군 36.5만 명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에서는 나오지 않 거나 거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7	0.22	9.1	
합계	47	1.45	61.3	광의의 히키코모리 군 61.3만 명

자료: 厚生労働省. (2021). 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各府省の取組について. 第1回 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関係府省横
断会議 資料2(2021.6.29.). <https://www.mhlw.go.jp/content/12000000/000808501.pdf>. p.38. 에서
2021.10.10. 인출.

□ (성별) 중장년 히키코모리 및 청년 히키코모리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비
율을 차지함.

○ 남성비율 기준으로 중장년 76.6%, 청년 63.3%임.

〈표 4-8〉 히키코모리 성별 특징(2015년 조사·2018년 조사)

(단위: %)

조사 연도	히키코모리특성	남성	여성
2018년 조사 (만 40세~만 64세)	광의의 히키코모리 군 (n=47)	76.6	23.4
	히키코모리 군 이외 (n=3,201)	48.3	51.7
2015년 조사 (만 15세~만 39세)	광의의 히키코모리 군 (n=49)	63.3	36.7
	친화군 (n=150)	40.7	59.3
	일반군 (n=2,905)	48.0	52.0

자료: 内閣府. (2019).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 <https://www8.cao.go.jp/youth/kenkyu/life/h30/pdf/s2.pdf>. p.13. 에서 2021.10.10. 인출.

□ (연령) 히키코모리는 특정 연령에 집중되지 않고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냄.

〈표 4-9〉 히키코모리 성별 특징(2015년 조사·2018년 조사)

(단위: %)

조사 연도	히키코모리특성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2018년 조사 (만40세~ 만64세)	광의의 히키코모리 군 (n=47)	25.5	12.8	14.9	21.3	25.5
	히키코모리 군 이외 (n=3,201)	18.2	22.1	20.5	18.1	21.0
2015년 조사 (만15세~ 만39세)	광의의 히키코모리 군 (n=49)	10.2	24.5	24.5	20.4	20.4
	친화군 (n=150)	27.3	24.7	21.3	18.0	8.7
	일반군 (n=2,905)	18.1	16.8	17.2	22.0	25.8

자료: 内閣府. (2019).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 <https://www8.cao.go.jp/youth/kenkyu/life/h30/pdf/s2.pdf>. p.14. 에서 2021.10.10. 인출.

□ (동거자 수) 1인 가구의 비중은 크지 않으며 특히 청년층 중 1인 가구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0〉 히키코모리 동거자 수(2015년 조사·2018년 조사)

(단위: %)

조사 연도	히키코모리 특성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이상	평균
2018년 조사 (만40세~ 만64세)	광의의 히키코모리 군 (n=47)	10.6	25.5	31.9	23.4	8.5	-	-	2.94
	히키코모리 군 이외 (n=3,201)	7.3	24.4	27.1	24.1	11.1	4.1	1.8	3.28
2015년 조사 (만15세~ 만39세)	광의의 히키코모리 군 (n=49)	2.0	14.3	42.9	16.3	20.4	4.1	-	3.51
	친화군 (n=150)	8.7	9.3	24.7	30.7	17.3	6.0	3.3	3.71
	일반군 (n=2,905)	5.5	10.2	26.5	33.1	15.7	5.9	3.0	3.74

자료: 内閣府. (2019).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 <https://www8.cao.go.jp/youth/kenkyu/life/h30/pdf/s2.pdf>. p.18. 에서 2021.10.10. 인출.

□ (주생계자)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사람을 물어본 결과, 광의의 히키코모리 군은 일반군에 비해 ‘자신’보다 ‘부’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생계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1〉 히키코모리 주생계자(2015년 조사·2018년 조사)

(단위: %)

조사 연도	히키코모리 특성	본인	부	모	배우자	기타	무응답
2018년 조사 (만40세~ 만64세)	광의의 히키코모리 군 (n=47)	29.8	21.3	12.8	17.0	19.1	-
	히키코모리 군 이외 (n=3,201)	52.2	4.5	2.0	36.9	4.3	0.1
2015년 조사 (만15세~ 만39세)	광의의 히키코모리 군 (n=49)	2.0	65.3	22.4	2.0	6.1	2.0
	친화군 (n=150)	17.3	54.0	14.0	8.0	6.6	-
	일반군 (n=2,905)	24.7	45.3	7.9	19.8	2.2	0.1

자료: 内閣府. (2019).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 <https://www8.cao.go.jp/youth/kenkyu/life/h30/pdf/s2.pdf>. p.19. 에서 2021.10.10. 인출.

- (주관적 생활수준) 주관적 생활수준은 중장년의 경우에는 ‘하’라 응답한 경우가 31.8%로 히키코모리 이외 응답자의 16.6%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청년층은 ‘하’라 응답한 비율이 ‘광의의 히키코모리 군’ 22.5%, ‘친화군’ 22.6%, 일반군이 12.6%로, 중장년에 비해 차이는 크지 않으나 대체로 일반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냄.

〈표 4-12〉 히키코모리 주관적 생활수준(2015년 조사·2018년 조사)

(단위: %)

조사 연도	히키코모리특성	상			중			하			무응답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2018년 조사 (만40세~ 만64세)	광의의 히키코모리 군 (n=47)	-	2.1	-	8.5	34.0	23.4	10.6	10.6	10.6	-
	히키코모리 군 이외 (n=3,201)	0.3	1.2	3.2	20.0	40.7	17.5	7.7	5.9	3.0	0.5
2015년 조사 (만15세~ 만39세)	광의의 히키코모리 군 (n=49)	4.1	-	6.1	14.3	36.7	14.3	8.2	8.2	6.1	2.0
	친화군 (n=150)	3.3	0.7	4.0	20.0	30.7	18.7	9.3	10.0	3.3	-
	일반군 (n=2,905)	0.8	2.4	3.6	21.4	41.8	16.7	7.1	3.8	1.7	0.7

자료: 内閣府. (2019).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 <https://www8.cao.go.jp/youth/kenkyu/life/h30/pdf/s2.pdf>. p.21. 에서 2021.10.10. 인출.

- (히키코모리 기간) 중장년은 10년 이상도 36.1% 있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인 2년 이내도 21.3%를 나타내는 등 다양하게 분포하며, 청년은 7년 이상이 34.7%로 비교적 오랜 기간 히키코모리 상태인 비율이 높음.
- 중장년 히키코모리는 청년 히키코모리가 연장되기 보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표 4-13〉 히키코모리 기간(2018년 조사)

(단위: %)

조사 연도	구분	6개월~1년	1~2년	2~3년	3~5년	5~7년	7~10	10~15년	15~20년	20~25년	25~30년	30년 이상	무응답
2018년 조사 (만40세~만64세)	광의의 히키코모리군(n=47)	6.4	14.9	6.4	21.3	4.3	10.6	6.4	10.6	10.6	2.1	6.4	-
2015년 조사 (만15세~만39세)	광의의 히키코모리군(n=49)	12.2	-	12.2	28.6	12.2	34.71)	-	-	-	-	-	-

주: 1) 2015년 조사의 경우 히키코모리 기간이 7년 이상 된 청년의 비중임.

자료: 内閣府. (2019).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 <https://www8.cao.go.jp/youth/kenkyu/life/h30/pdf/s2.pdf>. p.21. 에서 2021.10.10. 인출.

□ (현재 직업·취학) 현재 직업 및 취학 상태는, 중장년 및 청년 모두 무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각각 76.6%, 67.3%).

○ 청년 중 히키코모리 친화군에는 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이며(32.0%), 정사원 비율도 상당히 높음(30.0%).

〈표 4-14〉 히키코모리의 현재 직업 및 취학상태

(단위: %)

구분	2018년 (만40세~만64세)		2015년 (만15세~만39세)		
	광의의 히키코모리군 (n=47)	히키코모리군 이외 (n=3,201)	광의의 히키코모리군 (n=49)	친화군 (n=150)	일반군 (n=2,905)
일하고 있다(정사원)	-	46.3	4.1	30.0	43.2
일하고 있다(계약사원, 파견사원 혹은 파트타임·아르바이트)	-	27.4	4.1	23.3	19.0
자영업·자유업	-	10.9	-	1.3	3.3
학생(재수학원 포함)	-	-	12.2	32.0	22.7
파견회사 등에 등록되어 있으나 지금은 일하지 않음	2.1	0.2	8.2	0.7	0.3
전업주부(主婦)·주부(主夫)	9.9	9.9	-	3.3	7.4
가사일을 거둬	6.4	0.3	문항 없음		
무직	76.6	3.2	67.3	9.3	3.1
기타	2.1	1.3	2.0	-	1.0
무응답	-	0.4	2.0	-	0.1

자료: 内閣府. (2019).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 <https://www8.cao.go.jp/youth/kenkyu/life/h30/pdf/s2.pdf>. pp.33-34. 에서 2021.10.10. 인출.

□ (처음 히키코모리 연령) 처음 히키코모리 상태가 된 연령에 관해 살펴보면, 중장년은 청년인 시기(40세 미만)에 시작한 경우가 38.3%이고 중장년이 된 이후가 61.7%로 나타났다.

○ 청년은 '20~24세'가 34.7%, '15~19세'가 30.6%를 차지하여, 15~24세에 히키코모리 상태가 시작된 경우가 2/3 정도를 차지함.

〈표 4-15〉 처음 히키코모리 상태가 된 연령(2015년 조사·2018년 조사)

(단위: %)

조사 연도	히키코모리 특성	14세 이하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40세	40~44세	45~50세	51~55세	56~60세	60~64세	무응답
2018년 (만40세~만64세)	광의의 히키코모리군 (n=47)	-	2.1	12.8	14.9	6.4	2.1	12.8	8.5	8.5	10.6	17.0	4.3
2015년 (만15세~만39세)	광의의 히키코모리군 (n=49)	12.2	30.6	34.7	8.2	4.1	10.2	-	-	-	-	-	-

자료: 内閣府. (2019).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 <https://www8.cao.go.jp/youth/kenkyu/life/h30/pdf/s2.pdf>. p.52. 에서 2021.10.10. 인출.

□ (히키코모리 계기) 히키코모리 계기는 중장년의 경우 퇴직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 인간관계, 질병, 직장에서의 이지메 순이었음.

○ 청년은 '기타'가 가장 많았으며, 부등교, 직장 부적응, 취업 어려움, 인간관계 순이었음.

〈표 4-16〉 히키코모리가 된 계기 상위 항목 (2015년 조사·2018년 조사)

(단위: 명)

구분	2018년 조사 (만40세~만64세)		2015년 조사 (만15세~만39세)	
1	퇴직	17명	부등교	9명
2	인간관계	10명	직장 부적응	9명
3	질병	10명	취업 어려움	8명
4	직장 부적응	9명	인간관계	8명
5	취업 어려움	3명	질병	7명

주: 중복 응답을 포함하여 2018년 조사는 응답자 수 47명, 응답 수 69명이며, 2015년 조사는 응답자 수 49명, 응답 수 62명임.

자료: 内閣府. (2019).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 p.55-56.에서 상위 항목 다섯 가지를 재정리 함.

3. 히키코모리에 대한 정부의 대응: 관계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 일본 정부정부는 후생노동성 장관의 정무관 밑에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계하는 각 부처 당국을 소집하고,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관계부처 횡단회의’(이하 ‘관계부처횡단회의’라 함)를 개최하고 있음.

○ 관계부처횡단회의에서는 각 부처 정책의 정보 공유, 선진 지자체 대응에 관한 청취를 실시하고, 지자체 관계기관의 효과적인 연계·협동을 위한 방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횡단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히키코모리 상태에 이르게 된 배경이나 현재 상황은 당사자나 그 가족에 따라 다양하며 당사자가 희망하는 사회참가의 방법도 또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당사자 상황에 맞는 밀착된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선택지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厚生労働省, 2021, p.2).

- 현재(2021년 10월 말 기준)까지 총 4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21년 10월 1일 자료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자료(厚生労働省, 2021)가 발표되었음.

- 이 자료에는 전반적으로 관계부처횡단회의 개요를 소개하면서 각 부처의 히키코모리 관계 지원 정책을 정리하면서, 각 사업별 2022년 예산(안)을 제출함.
- 또한 지자체의 대응 검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히키코모리 지원에 선진적 대응을 하는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 아래에서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관련 각 부처의 정책 사업이 망라되어 있는 이 정리 자료(厚生労働省, 2021)를 바탕으로 일본의 히키코모리 관련 정책을 각 부처별로 개괄함.

가. 히키코모리 관련 부처별 사업 개요 (2022년 예산안)

□ 히키코모리 관련 사업은 후생노동성을 포함하여 5개 부처, 13개 사업으로 2022년 예산(안)은 213.8억 엔 수준임.

○ 사업들은 후생노동성의 히키코모리 지원 관련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타 영역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히키코모리가 포함된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그 예산도 포함되어 있음.

- 연계 분야는 아동·청년 지원, 소비자 행정, 부등교, 정신보건복지, 취업지원, 농림수산 분야 등임.

〈표 4-17〉 2022년도 예산요구에서의 ‘히키코모리 지원’ 관련 시책 예산안

분야	주요 부처	사업명	예산	구분
히키코모리 지원	후생노동성	히키코모리 지원추진사업	29.8억 엔	직접 지원
		히키코모리에 관한 지역사회 보급개발 및 정보발신	1.5억 엔	
		히키코모리 지원실시기관지원력 향상연수	0.4억 엔	
아동·청년지원 분야 연계	내각부	아동·청년종합조사	0.6억 엔	연계 지원
		아동·청년지원체제 정비추진	0.5억 엔	
		아동·청년지원 관련 인재육성	0.3억 엔	
		아동·청년육성지원을 위한 지역연계추진	0.2억 엔	
소비자 행정 분야 연계	소비자청 지방협력과	지방 소비자 행정 강화교부금	28.5억 엔	연계 지원
		고독·고립에 기인하는 소비자피해 방지·회복추진사업	0.6억 엔	
부등교지원	문부과학성	부등교아동학생에 대한 지원추진사업	2.4억 엔	연계 지원
정신보건복지분야 연계	후생노동성	마음 건강만들기 대책사업	0.2억 엔	
취업지원분야 연계	후생노동성	지역청년서포터스테이션 사업	46.7억 엔	
농림수산분야 연계	농림수산성	농산어촌진흥교부금(농-복 연계대책) (농업연계지원사업, 농-복연계정비사업, 보급개발 등 추진대책사업, 유니버설 농원도입사업)	102.1억 엔	

자료: 厚生労働省. (2021). 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各府省の取組について. 第1回 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関係府省横断会議 資料2. p.6. 내용 발췌 후 저자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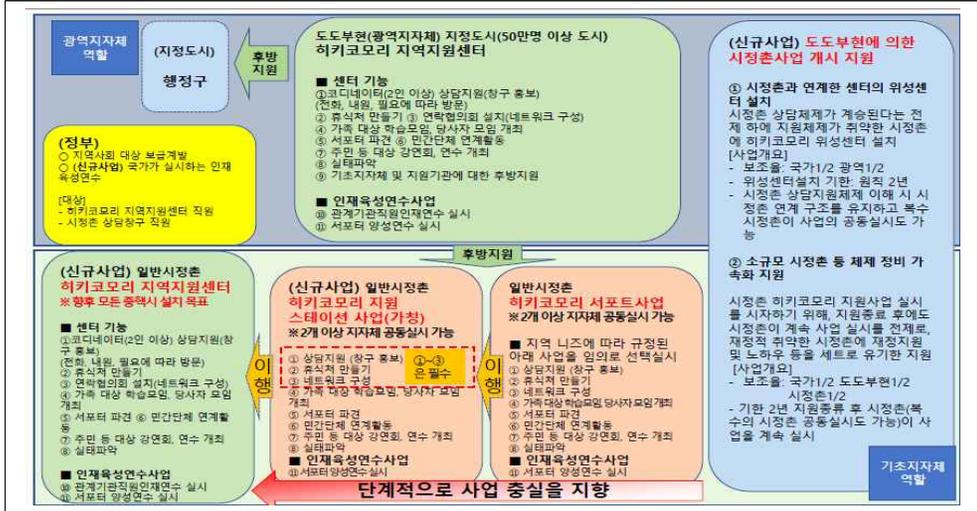
나. 후생노동성: 히키코모리 지원사업

□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는 히키코모리 지원사업은 히키코모리 지원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됨(정세정, 최권호, 최보라, 2021. p.140).

○ 첫째,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운영사업 (2009년부터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히키코모리 지역센터는 광역지자체 및 지정도시에 설치하며, 히키코모리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및 기초지자체와 시정업무 지원이 주요 업무임.

- 둘째, 히키코모리 지원 인재육성연수 제도(2013년부터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히키코모리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주요 내용이며, 히키코모리 지역센터에서 실시함.
 - 셋째, 히키코모리 서포트 사업(2018년부터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최근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초지자체가 실시하는 상담 및 기관 연계 사업이 주요 내용임.
 - 넷째, 생활곤궁자 지원제도(2015년부터, 기초지자체 중심)로, 히키코모리 뿐 아니라 저소득층 전반에 대한 지원 제도로 생활상 어려움 상담 및 지원을 하는 ‘자립상담지원사업’, 취업을 지원하는 ‘취로준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히키코모리 지원사업은 중앙정부(후생노동성), 도도부현 등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기초지자체의 활동에 대한 추가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지금까지 후생노동성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도도부현 등 광역지자체는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설치 및 광역 단위의 서비스 제공, 인재육성연수사업, 기초지자체의 히키코모리 서포트 사업을 통해 수행하는 것을 권장해 왔음.
 - 2022년부터는 기초지자체의 히키코모리 서포트 사업을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실행하려 하고 있음.
 - 아직 히키코모리 서포트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에게 광역 지자체의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의 위성센터 설치를 지원하거나, 센터 설립을 위해 재정지원 및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사업을 실시함.
 - 또한 기존 기초지자체(시정촌)에서 실시 중인 히키코모리 서포트 사업은 현재에는 여러 사업 중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① 상담지원 ② 휴식처 만들기 ③ 네트워크 구성을 필수사업으로 하는 “히키코모리 지원 스테이션 사업”(가칭)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다음에는 현재 광역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준의 센터 기능을 갖춘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로 이행을 촉진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상태임.

[그림 4-1]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체제도



자료: 厚生労働省. (2021). 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各府省の取組について. 第1回 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関係府省横断会議 資料2(2021.6.29). <https://www.mhlw.go.jp/content/12000000/000808501.pdf>. p.7 에서 2021.10.10. 인출.

다. 내각부: 아동·청년 지원 정책

□ 내각부는 아동·청년 대상 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히키코모리 정책과의 연계는 아동·청년 및 히키코모리 정책 연계의 형태로 나타남.

○ 내각부는 「아동·청년 육성지원추진법」에 근거하여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을 작성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을 총괄, 계획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아동·청년 종합상담센터 운영 등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¹²⁾

□ 내각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히키코모리 관련 주요 사업은 아동·청년 종합조사, 아동·청년지원체제 정비, 아동청년 지원 인재육성, 아동·청년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연계추진 등, 네 가지로 구성됨.

○ 첫째, 아동·청년종합조사로 내각부 정책총괄관에서는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를

12) 아동·청년육성지원법의 성립과 주요 내용,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의 주요 내용 등은 정세정 외 (2020). p.126-132 참조.

매년 실시하고 있음.

- 대상은 청소년이지만 조사에 따라서는 아동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도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 과정에 교수, 학계,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도 기획이나 평가 단계에 참여하며, 조사는 모두 민간조사업체가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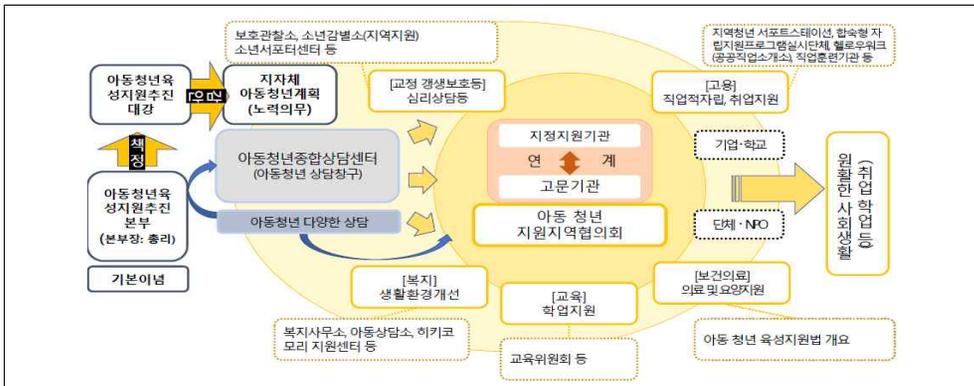
- 조사내용은 아동·청년 의식과 관련된 조사가 대략 2년에 1회 정도로 실시되고 있으며, 인터넷 환경 관련 조사, 히키코모리·니트 실태조사 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둘째, 아동·청년지원체제 정비로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을 근거로 히키코모리 등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아동·청년지원지역협의회’, 아동·청년 육성지원에 관한 상담에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 지방공공단체의 설치 지원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어드바이저 파견, 연수·회합의 개최, 모범 사례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각 지역의 협의회, 센터 간 연계에 의한 전국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림 4-2]는 아동·청년 지원 체제를 나타낸 구조도임.

[그림 4-2] 아동·청년육성지원법에 근거한 지원 체제



자료: 1) 厚生労働省. (2010. 4. 1.).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につい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s_gaiyo.pdf.에서 2020. 9. 15. 인출.
 2) 정세정 외.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 p.129의 그림 재인용.

- 셋째, 아동·청년지원체제 인재 육성임.
 - 히키코모리 등 어려운 상태에 있는 아동·청년 지원에 임하는 전문 인재 육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아웃리치(방문지원)이나 담당 업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넷째, 아동·청년육성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추진으로 지역에서 아동·청년 육성지원 활동을 하는 관민 관계자(청년을 포함)을 대상으로, 가정, 학교, 지역 등이 주체가 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수를 추진하는 사업임.

라. 소비자청: 고독·고립 소비자 지원

- 일본 소비자청에서는 고독·고립 소비자 지원으로 지방 소비자 행정 강화 교부금을 활용한 지원과 소비자 피해 방지·회복촉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방소비자행정강화교부금은 정부가 대응해야 할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공공단체를 지원하고, 소비자생활상담원, 소비자행정직원 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트러블 등에 관한 연수 참가에 필요한 필요를 지원하며,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수준 높은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 정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교부되는 지원금임(厚生労働省, 2021).
 - 2022년 주요 사업은 ① 디지털 기술 및 지자체 연계 활용 체제 강화 사업, ② 소비생활상담원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정비에 의한 상담기능 유지·충실, ③ 고독·고립된 소비자에 대한 지역 안부확인 강화 등 임.
 - 이 중 ③에 대해서는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에 대한 지원, 고독·고립된 소비자 안부확인이나 푸드뱅크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히키코모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 민간사업자 이용을 둘러싼 소비자 트러블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자 함(厚生労働省, 2021).
 -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이나 해약 등에 관해 트러블에 휘말린 경우, 소비자 핫라인(국번 없이 188)에서 상담을 접수하고,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단체 소비자 행정담당국 앞

으로 사무연락을 취함.

- 소비자청 웹사이트에서 주의 환기
- “히키코모리 지원을 목적으로 내건 민간사업자 이용을 둘러싼 소비자 트러블에 주의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코너를 마련하고 소비자용 정보제공을 실시 중임.

〈표 4-18〉 히키코모리 지원을 빙자한 사기 사례

<p>〈참고〉 이른바 “히키코모리 빼내기 비즈니스”로 민간사업자가 강제로 히키코모리 상태의 사람을 폭력 혹은 감금하거나 고액을 받고 사라지는 경우가 자주 보도됨.</p> <p>사례 1) 부모가 6년전부터 히키코모리인 장남(30)을 민간 자립지원사업자에 맡겼는데, 장남이 작년 실종되었고 시체로 발견됨.</p> <p>사례 2) 한 30대는 2018년 12월 실직 후 모친과 다툼을 계기로 시설에 감금되어 전화를 압수당하고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도 시설에서 관리, 3개월 만에 시설에서 탈출함. 유사한 경우로 2018년 여름, 시설 직원 3명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 연행되었으나 탈출했으며, 감시카메라가 있는 시설에서 직원 동반이 아니면 외출이 금지된 시설에서 생활함.</p>

자료: 사례 1) 御厨尚陽, 豊福幸子. (2020.7.2). ひきこもりの息子、業者頼った末…遺体で発見 自問自答続ける親. 西日本新聞. <https://www.nishinippon.co.jp/item/n/622211/> 에서 2021.10.10. 인출.

사례 2) 有馬知子. (2019.6.19). 両手両足つかまれ連行…強引な「ひきこもり支援施設」の実態を脱走者が証言. Business Insider. <https://www.businessinsider.jp/post-192893> 에서 2021.10.10. 인출.

○ 고독 고립에 기인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회복촉진사업은 소비자의 상담 및 교육 사업의 성격으로 실시됨.

- 고독·고립된 소비자는 정보 등 격차가 현저할 뿐 아니라 주변에 상담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해서, 일반 소비자에 비해 피해를 받기 쉽고, 스스로 회복하기도 어려움.
- 이 때문에 고독·고립된 소비자 피해의 방지 및 회복을 위해서 고독·고립한 소비자에 대한 중점적인 대응이 필요함.
- 사업 개요는 고독·고립을 지원하는 NPO 와 연계하여 온라인 상담회를 실시하고, 고독·고립에 기인한 소비자 피해 파악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피해의 방지 및 회복을 꾀함.
- 고독·고립에서 기인한 소비자 피해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온라인 발신)함으로써 고독·고립된 소비자 계발을 꾀함.

마. 문부과학성: 부등교아동학생에 대한 지원추진사업

□ 부등교 아동 학생 수는 7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약 18만 1천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2016년 12월 7일 ‘의무교육의 단계에서의 보통교육에 상당하는 교육 기회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 성립, 동법 제7조를 근거하여 2017년 3월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보통교육에 상당하는 교육 기회 확보 등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하여 부등교 아동학생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하려 함.

○ 히키코모리와 관련된 사업은 첫째, 스쿨 카운슬러·스쿨 소셜워커의 배치임.

- 스쿨 카운슬러 등 활용사업 및 스쿨 소셜워커 활용사업이며 각 학교에 상당 인원을 배치하여 교육상담체제를 갖추고 운영 비용을 보조함.

〈표 4-19〉 히키코모리 관련 스쿨 카운슬러 및 스쿨 소셜워커 활용사업 개요

구분		스쿨 카운슬러 등 활용사업	스쿨 소셜워커 등 활용사업
보조 제도	보조비율	정부 1/3,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 2/3	정부 1/3,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 2/3
	실시주체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 중핵도시
	보조대상경비	보수, 기말수당, 교통비 등	보수, 기말수당, 교통비 등
요구되는 능력 및 자격		아동학생 심리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있는 자 (아동 심리에 관한 지원에 종사) 공인심리사, 임상심리사 등	복지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등
기초 배치		전 국공립초등중등학교	전 중학교구에 배치 (10,000중학교구)
중점 배치 등	이지메 부등교	이지메 부등교 대책을 위한 중점 배치: 1,000교 교육지원센터 기능강화: 250개소	이지메 부등교 대책을 위한 중점 배치: 1,000교 교육지원센터 기능강화: 250개소
	학대 빈곤	학대대책 중점배치: 1,200교 빈곤대책을 위한 중점배치: 1,400교	학대대책 중점배치: 1,500교 빈곤대책을 위한 중점배치: 1,400교
	질 향상	슈퍼바이저 배치: 90명	슈퍼바이저 배치: 90명

자료: 文部科学省. (2020). 스텝카운슬러·스쿨소셜워커による教育相談体制の充実を 연구진이 재구성함.

○ 둘째, 지원 스태프 배치는 학력향상이 목적인 학교교육활동 지원으로 이지메나 부등교 등 대응을 위하여 교사 이외 추가적 지원 스태프가 학교 교육 활동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1/3,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가 2/3의 비율로 보조함.

- 셋째, 부등교 아동학생에 대한 대응활동을 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임. 이는 교육개혁추진특별경비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며 국공립학교에 지원되는 스쿨 카운셀러 및 스쿨 소셜 워커 활용사업과 동일한 사업에 대해 지원됨.

바. 후생노동성: 마음 건강 만들기 대책 사업

- 범죄·재해 등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PTSD 나 히키코모리, 가정 내 폭력, 부등교 등에 빠진 아동, 사춘기청소년 등에 대한 정신보건복지활동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 복지, 의료 등 업무종사자에 대해 양성연수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마음의 건강만들기에 관한 자질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포함되는 사업은 네 가지로 ① PTSD 대책전문연수 ② 마음의 케어상담 연수 ③ 사춘기 정신보건연수 ④ 마음 케어 상담지방 연수이며, 이 중 히키코모리와 관련된 사업으로 ③ 사춘기 정신보건연수를 들 수 있음.
- 이 중 사춘기 정신보건연수는 아동·청소년 중 사춘기의 정신보건에 대한 망라적 강의, 그룹 토론 등 실질적 연수를 진행하며, ‘히키코모리 평가·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연수를 진행함.
 - 대상은 의사, 간호사, 보건사, 정신보건복지사, 공인심리사, 사회복지사, 아동지도원 등이며, 실시 주체는 민간단체이며 정부가 정액으로 보조를 함.

사. 후생노동성: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취업지원)

-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은 주로 청년 니트(15~34세의 비노동력 인구 중 가사도 통학도 하지 않는 사람)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상담지원사업과 집중훈련 프로그램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일본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주로 니트를 대상으로 취업을 촉진하는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전국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현재 전국 17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34개소는 분소로 설치되어 있음.
 - 상담지원사업은 전문적 상담지원, 고졸 및 중퇴자 등 니즈에 맞는 아웃리치

상담, 인재부족 직종 등을 고려한 직장체험, 취직한 사람의 고용 유지 상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 상담, 복지기관 방문 상담 등임.

- 집중훈련 프로그램 사업은 청년 무업자 등을 주 대상으로 하며 취직활동이나 취업생활에 필요한 지식, 능력 획득을 위해 기숙사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집중적 훈련을 제공함.

○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청년 자립지원 중앙센터가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연수, 조사 및 연구, 정보수집 및 제공 등임.

아. 농림수산업: 농-복 연계대책

□ 농-복, 임-복, 수-복 연계를 한층 진전시키고 장애인 등 농림수산업에 관한 기술 습득, 장애인 등의 고용, 취업을 배려한 생산, 가공, 판매 시설의 정비, 전국적 전개를 위한 보급개발, 현장 과제에 입각한 도도부현의 활동, 다세대, 다속성의 교류, 참가의 장이 되는 유니버설 농원의 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4가지 사업이 진행 중임.

- 첫째, 농림연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등 농림수산업에 관한 기술 습득이나 작업공정 매뉴얼화 등을 지원함(사업기간은 2년이며 교부율은 정액 150만엔임).
- 둘째, 농림연계 정비사업으로 장애인 등 작업에 배려를 한 생산시설이나 안전, 위생 면에 필요한 부대시설 정비를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최대 2년, 교부율은 1/2임(상한 1천만 엔, 2천5백만 엔 등).
- 셋째, 보급개발등 추진대책사업으로 농-복, 임-복, 수-복 연계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전문 인재 육성, 농림어업자나 복지사업자등 현장 수준의 추진체제 강화 등을 지원함.
- 넷째, 유니버설 농업 도입 사업으로 다세대, 다 특성인 사람들이 농업을 통한 교류, 참가의 장으로 이용하고 삶의 보람이나 힐링 등 효과를 낳을 유니버설 농원 시행운용 및 개설에 필요한 시설 등 비용을 지원함.

4. 시사점

- 일본의 히키코모리는 ‘부등교’ 개념에서 시작하여 학령기를 벗어난 연령대에 고립이 장기화되는 현상을 나타낸 개념으로, 최근에는 청년 뿐 아니라 학령기에서 중장년까지의 전 연령대를 포괄하는 고독·고립한 상태를 의미함.
- 정신장애·질환, 이지메, 니트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 특성과 중첩된 개념이기도 하며, 본래 장애는 제외하고 있으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최근에는 포괄적 지원이 강조되고 있기도 함.
- 히키코모리 정책은 후생노동성이 관할 부서로 기본적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수립하고, 실제 지원은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가 창구 역할을 함.
-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예산은 국고보조-지자체보조 등 비율이 규정되어 있고 지역지원센터 역할도 규정되어 있음.
- 지역지원센터는 쉼 곳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하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함.
- 다양한 부처 간 히키코모리 지원 정책 연계를 위하여 관계부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내각부(아동청년지원), 소비자청(고독고립 소비자지원), 문부과학성(부등교 아동학생), 농림수산성(농복 연계대책) 등 타 관계부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그 외 후생노동성 내에서도 ‘마음건강 사업’ 및 ‘청년 취업지원’ 사업과도 상시적 연계를 하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대상) 히키코모리 정책 대상은 청년 중 정신장애가 없는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중장년 및 노년, 정신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까지 고립, 고

독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고립, 고독 문제의 양상이 연령별로 다르기 때문에 청년만의 대처도 필요하겠으나, 이 문제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발견’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만큼, 한국에서도 타 연령대와 공통된 문제라는 큰 틀의 인식 하에서 은둔 고립 청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정신장애, 발달장애가 있으나 사회적 접촉이 부족한 대상자는 은둔 고립 청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은둔 고립 청년 서비스 기관이 포괄적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보임.

○ (전달체계) 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예산, 역할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자율성과 의무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은 히키코모리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어 가장 핵심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일관성 있는 서비스 거점이 확보되고 있음.
- 청년 고립 문제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 인식된다면, 중앙정부가 은둔 청년을 우선 핵심 지원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 지원을 비롯한 지자체 지원으로 협업 하에 서비스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 및 가이드라인 제시, 지자체는 실제 거점 확보 및 시행을 담당하는 명확한 예산-역할 분담이 필요함.

○ (협업체계) 당사자 및 가족-정부부처-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이 필요함.

- 히키코모리 지원에는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을 비롯하여, 교육, 직업, 소비생활, 정신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주요 부처 뿐 아니라 타 부처 간, 부처 내 협업이 반드시 필요함.
- 일본은 이러한 협업의 주체는 후생노동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주된 소관 부처로서 기능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한국에서는 아직 은둔형 외톨이 문제 규모 등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실마리가 될 전국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일본에서는 추계를 위한 정기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서비스 필요성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에서도 현재 현황을 알 수 있는 체계적 조사가 필요함.
- 일본은 히키코모리 조사가 청년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가 최근 중장년까지 확대된 상황으로, 전체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가운데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는 조사를 하는 방안, 우선 청년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 조사 시 은둔 상태 조사를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완화되기보다 중장년으로 연장되고 있으므로 국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본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방) 일본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히키코모리가 양상되고 있음. 은둔을 선택하게 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적극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 (지원) 설계된 지원을 당사자에게 제공하여 정량적인 성과를 추구하기보다 은둔형 외톨이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사후관리) 히키코모리에 대한 지원 종료 이후 지원 은둔을 유발한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이전 환경으로 복귀했을 때 재발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해야 함.

제2절 핀란드의 사회적 배제 청년 지원

1. 핀란드 사회 배제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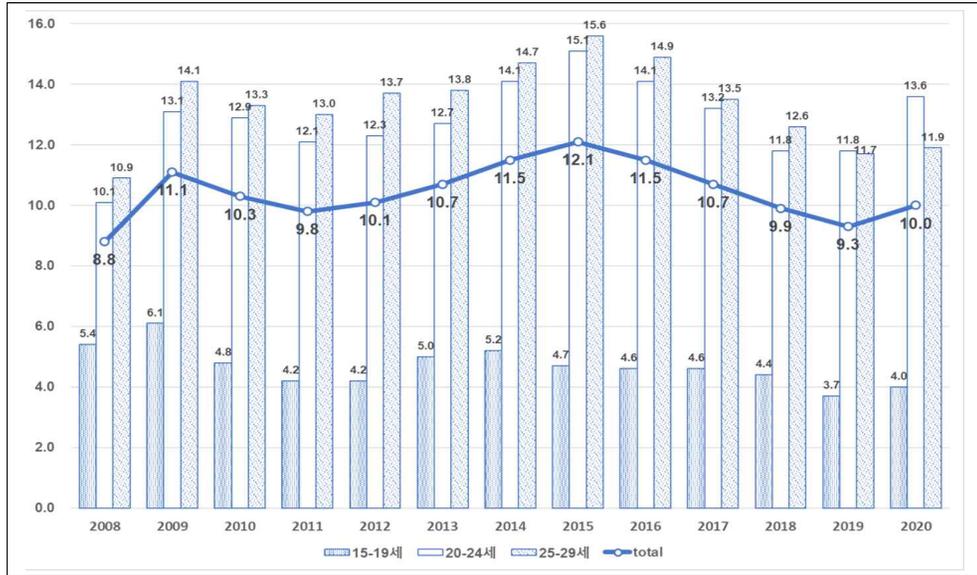
가. 개념

- 핀란드는 고립되어 있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청년 (socially excluded young people)’에 포함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원, 권리, 재화,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그 접근을 거부당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역에서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참여하는 일반적인 관계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함(Levitas et al., 2007).
- 생애 주기적 차원에서 청년 시기는 향후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학습과 경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시기에 청년들에게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배제될 위험이 커짐(Eurofound, 2014).
- 또한, 청년에 대한 투자 부족이나 지체의 장기화는 다차원적인 결핍을 심화시켜 영구적인 배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은 청년들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해 회원국들에 강력한 개입을 요청함(Eurofound, 2015).
- 핀란드 정부는 사회 배제 청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년의 사회적 배제 예방을 목표로 시행되는 아웃리치 청년사업(outreach youth work)은 “교육·훈련 또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동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29세 미만의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함(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of Finland, 2021; Into, 2021a).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핀란드에서 사회 배제 청년은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청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음.

나. 실태

- 정책적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 청년에 대한 개념 정의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만큼 핀란드 정부는 별도로 사회 배제 청년의 규모를 측정하지 않음.
- 대신 핀란드 정부는 사회적으로 배제될 개연성이 높은 청년 그룹의 규모를 집계하고 그 추이를 모니터링함.
 - 이를 위해 니트 청년 규모와 중학교 졸업 후 학업을 중단한 청년의 규모가 주로 활용됨.
- [그림 4-3]과 같이, 핀란드 니트 청년 규모는 2009년 이후 9~12%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2008년 핀란드 니트 청년 규모는 8.8%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11.1%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0년대 들어서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2015년에는 12.1%까지 늘었음.
 - 이후 2019년까지 꾸준히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다시 10%로 증가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5~19세 청년 가운데 니트 비율은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2009년 6.1%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20세 이상 청년 가운데 니트 비율은 평균을 상회함.
 - 2018년까지 20~24세 청년 니트 비율은 25~29세보다 낮았지만, 2019년 이후 두 집단의 수치가 역전되었음.

[그림 4-3] 핀란드 닛 청년 규모 추이(%)



자료: Statistics Finland. (2021).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15-29) in education and the labour market by Year, Sex, Age group and Information. Retrieved November 1, 2021, from https://pxnet2.stat.fi:443/PXWeb/api/v1/en/StatFin/tym/tyti/vv/statfin_tyti_pxt_11pq.px

□ 핀란드는 중학교 졸업 직후 고등학교(gymnasium) 또는 직업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학업을 중단한 청년들을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위험이 큰 집단으로 판단하고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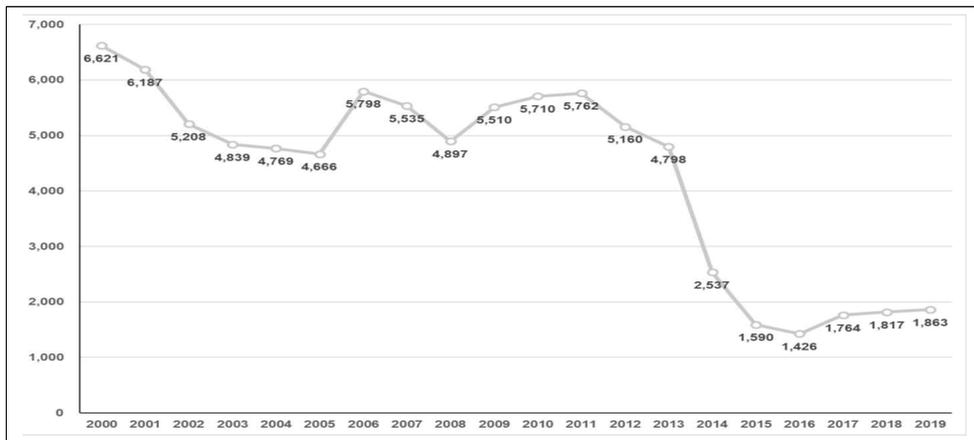
○ 현행 핀란드 청년법(Youth Act)은 중학교를 졸업하였지만 더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을 아웃리치 청년사업(outreach youth work)의 주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런 학생이 발생하면, 청년법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사는 지방정부의 아웃리치 청년사업 담당자에게 학생의 연락처와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2000년대 초반 핀란드에서 중학교 졸업 후 학업을 중단한 청년 수는 매년 6천 명이 넘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근에는 그 수치가 2천 명 아래로 감소하였음.

- 2011년 핀란드 정부는 “Child and Youth Policy Programme 2012-2015”을 통해 청년들에게 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동등한 기회 제공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학교 교육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음 (Höylä, 2012).
-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인해 2014년 이후 중학교 졸업 후 학업 중단 청년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음.

[그림 4-4] 중학교 졸업 직후 학업 중단 핀란드 청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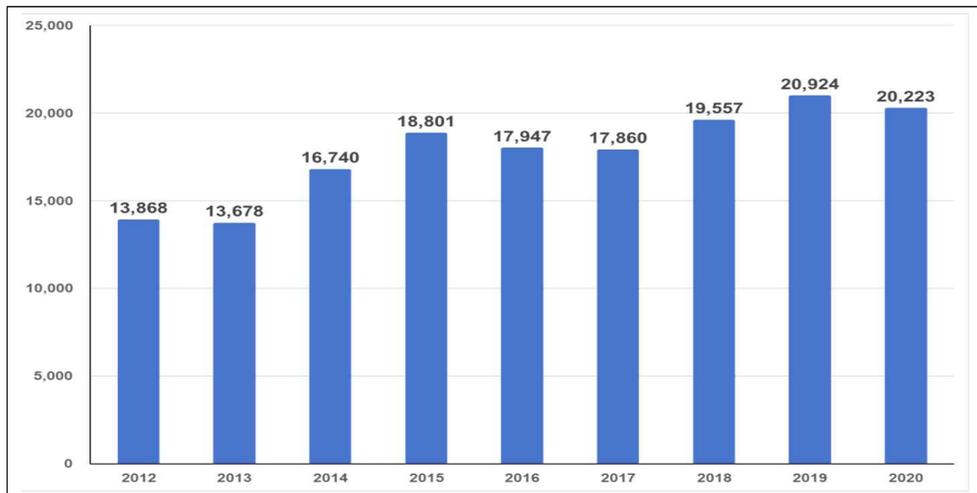


자료: Hyvinvointi-indikaattorit. (2021a). Koulutuksen ulkopuolelle jääneet. Retrieved November 28, 2021, from <https://indikaattorit.tietoanuorista.fi/koulutus/sijoittuminen-peruskoulun-jalkeen-3>

- 핀란드는 사회 배제 청년 규모를 추정하려는 노력보다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통해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청년을 직접 찾아 그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중점을 둠.
-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위해 90% 넘는 지방정부가 청년사업가(youth worker)를 고용하여 사회 배제 청년을 찾는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 매년 핀란드 국가청년위원회(The State Youth Council)는 지방정부들이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통해 접촉한 29세 미만 청년 수를 전국적으로 집계하고 발표함.
- 이 데이터가 사회 배제 청년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추정이 아닌 핀란드 정부가 직접 확인한 사례 수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접근을 통해 사례 확인과 동시에 해당 청년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규모를 추정하려는 노력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함.
- 아웃리치 청년사업 사례 수는 2012년 이후 2020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2년 사례 수는 13,868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19,500명을 넘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2만 명 이상을 기록했음([그림 4-5] 참조).

[그림 4-5] 핀란드 아웃리치 청년사업 사례 수(명)



자료: Hyvinvointi-indikaattorit. (2021b). Etsivä nuorisotyö. Retrieved November 28, 2021, from <https://indikaattorit.tietoanuorista.fi/arjenhallinta/etsiva-nuorisotyö>

2. 핀란드 청년사업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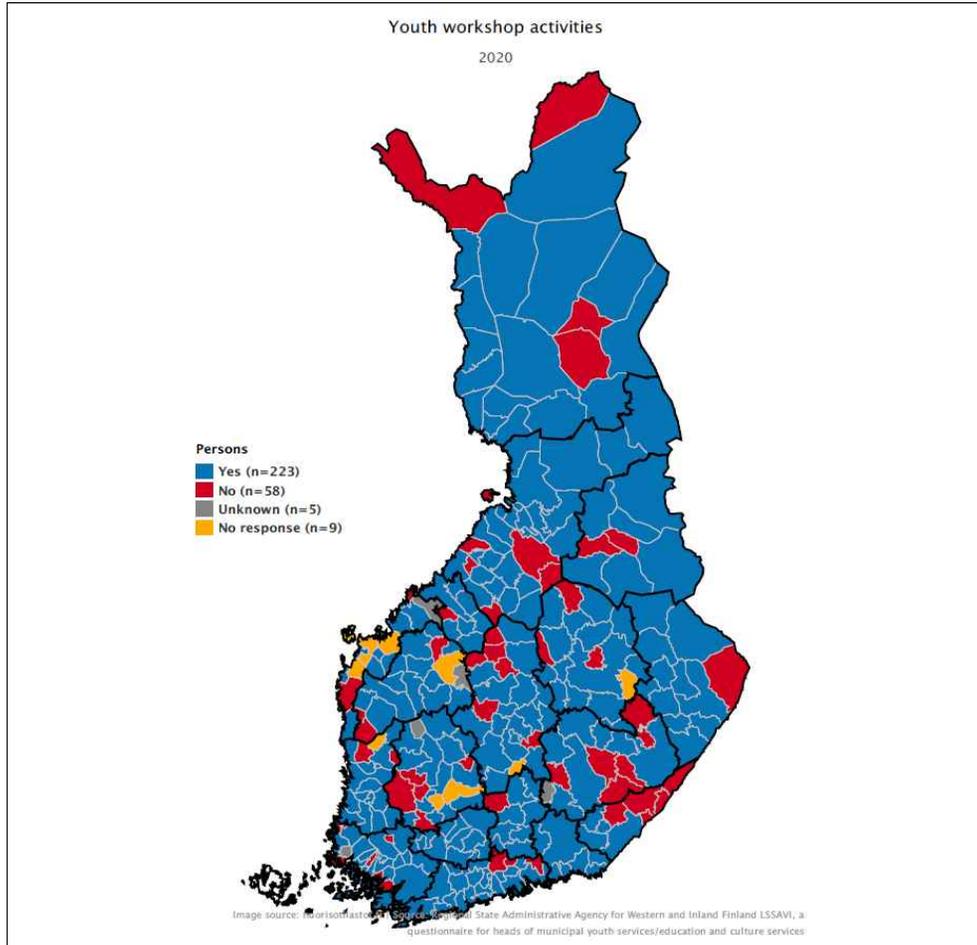
- 청년사업(youth work)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립과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뜻함.
- 19세기 말부터 핀란드의 청년사업은 자원 활동을 바탕으로 조직되기 시작하였고, 1940년대 이후 청년사업 활동이 전문화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 지방정부의 지원과 개입이 확대되었음(European Commission, 2021a).

- 청년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은 청년 대상 상담, 청년단체 지원, 아웃리치 청년사업, 청년워크숍(youth workshop) 활동 등으로 구성됨.
 - 이 가운데 아웃리치 청년사업과 청년워크숍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사회 배제 청년 지원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청년법의 규정에 따라 청년사업의 기획과 수행은 지방정부가 담당함.
 - 현재 핀란드에서 청년사업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는 지방정부에 제공 책임이 있음.
 - 2021년 현재 핀란드에는 309개 지방정부가 있음(Kuntaliitto, 2021).
 - 각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또는 청년사업가(youth worker)를 고용하여 지역 내 청년사업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수립·집행해야 함.

- 청년워크숍은 민간조직이지만 지방정부의 청년사업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사회 배제 청년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청년워크숍은 연령에 상관없이 직업훈련이나 대인관계를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10~30대가 주로 이용함.
 - 지방정부는 청년워크숍에 운영 예산을 지원함.
 - 일반 청년은 물론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통해 사회로 나온 청년들에게도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270곳 이상에 청년워크숍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는 500여 명의 청년사업가를 포함해 2,5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Into, 2021b).
 - 북극권에 속하는 라플란드(Lapland)지역, 러시아와 접하고 있는 동부지역,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중부지역 등 청년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청년워크숍이 운영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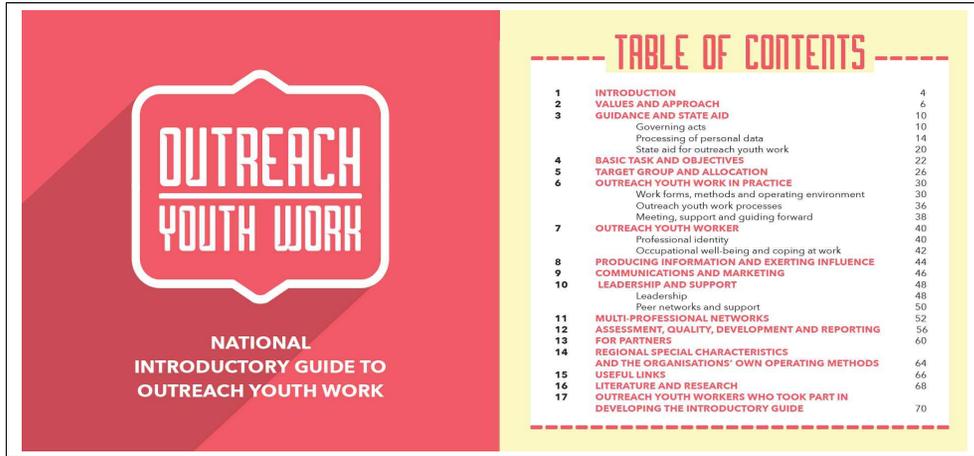
[그림 4-6] 핀란드 지방정부별 청년워크숍 활동 제공 현황



자료: Finnish Youth Work Statistics. (2021). Municipal youth work. Retrieved December 6, 2021 from <https://nuorisotilastot.fi/en/392/visualisoinnit-en/municipal-youth-work/>

- 핀란드아웃리치청년사업·워크숍활동연합회(Association for Outreach Youth Work and Workshop Activities; Into)는 지방정부와 청년워크숍의 청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함.
- 핀란드아웃리치청년사업·워크숍활동연합회는 전국의 청년워크숍과 청년사업가를 대변하는 전문가단체로 핀란드 중앙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청년정책과 청년사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

[그림 4-7] 핀란드아웃리치청년사업·워크숍활동연합회의 아웃리치 청년사업 핸드북(2018년)



자료: Into. (2021c). Etsivän nuorisotyön käsikirja. Retrieved December 5, 2021 from <https://www.intory.fi/materiaalipankki/etsivan-nuorisotyon-kasikirja/>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핀란드 교육문화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of Finland)와 광역지방행정청(Regional State Administrative Agencies; AVI)이 청년사업을 지원함.
- 핀란드는 공교육을 통한 평등한 기회 제공을 강조하며 공교육의 범주에서 청소년과 청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문화부가 청년사업 관련 정책을 전담하고 있음.
- 청년법에 따라 교육문화부는 4년마다 “국가청년사업·청년정책프로그램(The National Youth Work and Youth Policy Programme)”을 수립·추진해야 하고, 핀란드아웃리치청년사업·워크숍활동연합회의 활동과 각종 청년사업 관련 정책에 예산을 지원함.
- 핀란드 전역 6곳에 설치되어 있는 광역지방행정청은 청년사업부(Division of Youth Work)를 두어 중앙정부가 수립한 국가 차원의 청년사업 관련 전략이 담당 지역 내 지방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사업가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방정부의 청년사업을 평가함.

3. 핀란드 아웃리치 청년사업

가. 지방정부 중심의 아웃리치 청년사업

- 아웃리치 청년사업은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사회서비스나 복지급여도 받지 않고 있는 2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회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뜻함(Into, 2021d).
- 홀로 집에 은둔하는 청년 또는 범죄나 비행 집단에 가담하고 있는 청년이 아웃리치 청년사업의 주요 대상임.

- 핀란드 청년법은 지방정부가 아웃리치 청년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아웃리치 청년사업가로 채용해야 함으로 규정함.
- 주로 청년사업가, 사회복지사, 청년워크숍의 활동가 등이 지방정부에 고용되어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담당함.
 - 직업학교(vocational school), 응용과학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대학교(university) 등에서 청년사업 관련 교과과정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청년사업가나 청년워크숍의 활동가가 될 수 있음(Höylä, 2012).
 -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대표적으로 탐페레대학교(Tampere University)가 학사부터 박사과정까지 청년사업 관련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후막응용과학대학(Humak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남동핀란드응용과학대학(South-Eastern Finland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센프리아응용과학대학(Centr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디아콘응용과학대학(Deaco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등은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청년사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학위과정을 졸업하면 '공동체 교육가(community educator)'라는 자격을 받아 청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처리하지만, 아웃리치 청년사업가는 직접 현장에 나가 은둔 청년이나 범죄나 비행 가담 청년을 찾아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함.

□ 청년사업가는 주로 사회 배제 청년들의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해당 청년과의 만남을 시작하지만, 청년법의 규정에 따라 아웃리치 청년사업의 참여 여부는 청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

- 아웃리치 청년사업가는 사회 배제 청년을 찾아 접촉하고 청년사업 참여를 권유·독려할 수 있지만 청년의 의사를 강제할 수 없음.
- 사회 배제 청년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필요에 따라서는 청년의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함.

□ 청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조직의 담당자가 아웃리치 청년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년을 발견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아웃리치 청년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지방정부에 해당 청년의 신상정보와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음.

- 정보 제공은 청년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중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했지만, 고등학교나 직업학교의 교과과정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
 - 고등학교나 직업학교의 교과과정 참여를 중단한 청년
 - 직업훈련이나 고등학교 교과과정 참여를 중단한 청년
 - 군 복무 혹은 사회 복무 중 체력 부족을 이유로 복무를 면제받거나 자발적으로 복무 중단을 선택한 청년

○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긴급한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년을 발견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청년의 신상정보와 연락처를 지방정부 아웃리치 청년사업 담당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나. 청년워크숍의 사회 배제 청년 지원

- 아웃리치 청년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청년 대부분은 해당 지역의 청년워크숍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안내받거나 사회참여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강함.
 - 고립된 생활을 하던 청년들은 사회성 기술(social skill)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청년워크숍은 이들에게 사회생활을 위한 기술과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활용 가능한 사회서비스나 급여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각종 서비스와 급여의 이용 방법을 알려줌.
 - 청년워크숍의 프로그램은 청년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추어 그 내용과 일정 이 개별적으로 설계됨.

- 청년워크숍의 프로그램은 작업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여 청년들이 습득하고자 하는 직업기술에 따라 구분된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함.
 - 헬싱키(Helsinki)의 경우, 멀티미디어 제작, 웹 개발 및 디자인, 문예창작, 금속 가공, 자동차 정비, 섬유 인쇄 및 염색, 목공, 식음료서비스, 요리 등 다양한 직업기술을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Stadin AO, 2021).
 - 청년워크숍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은 워크숍에서 습득한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직업학교나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일부는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취업에 성공하기도 함.

- 2020년 전국에서 청년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12,456명이었고, 이 가운데 11%는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통해 청년워크숍을 이용하였음(Into, 2021e).
 -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94%가 사회적 역량 강화를 느꼈고, 83%가 학업이나 취업준비에 발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Into, 2021e).
 -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의 32%는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위해 교육과정에 진학했고, 21%는 다른 안내 프로그램 참여를 시작했으며 13%는 취업했음(Into, 2021e).

[그림 4-8] 반타(Vantaa)의 청년워크숍 건물



자료: City of Vantaa 홈페이지.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vantaa.fi/vapaa-aika/nuoret/monitoimitila_liito

[그림 4-9] 반타(Vantaa)의 청년워크숍 활동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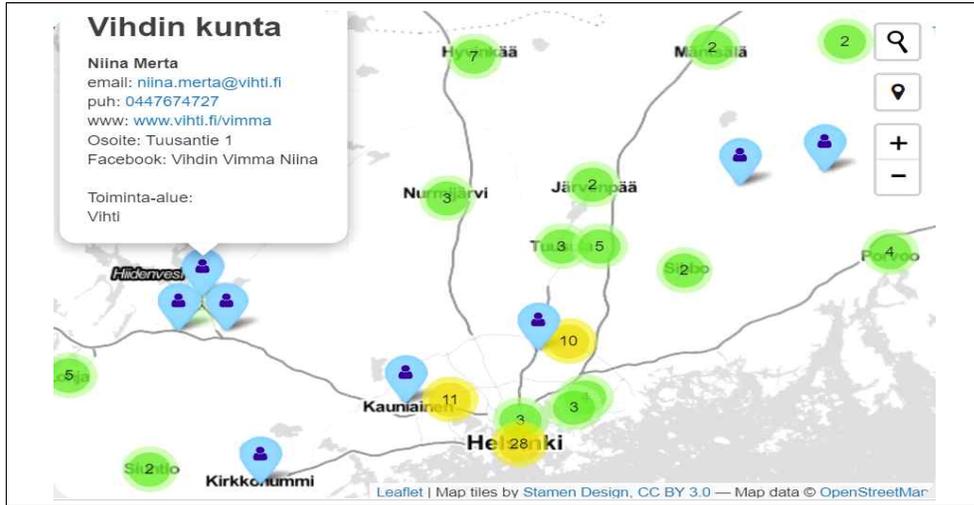


자료: Nuorten Vantaa(반타 청년워크숍) facebook.
https://www.facebook.com/NuortenVantaa/?ref=page_internal.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다. 중앙정부의 아웃리치 청년사업 지원

- 문화교육부는 지방정부의 아웃리치 청년사업과 청년워크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보조금을 지원함.
- 매년 중앙정부 청년사업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아웃리치 청년사업과 청년 워크숍 활동에 투입됨.
 - 2021년의 경우, 중앙정부 청년사업 전체 예산 62.9백만 유로 가운데 약 60%에 해당하는 37.3백만 유로가 아웃리치 청년사업과 청년워크숍 활동에 배정되었음(Valtion talousarvioesitykset, 2021).
 - 전체 예산 62.9백만 유로 가운데 39.8백만 유로는 복권과 슬롯머신 게임을 관리하는 공기업 Veikkaus(Finnish gaming company with a special mission)의 기금으로 조달되었고, 23.1백만 유로는 국비로 지원됐음.
- 광역지방행정청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지방정부에 전달하고,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력 양성 교육을 제공하며 청년사업 관련 전국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각 권역의 광역지방행정청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웃리치 청년사업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음
- 코디네이터는 관할 지역 내 지방정부의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함(Regional State Administrative Agencies, 2021).
- 광역지방행정청은 누구나 아웃리치 청년사업 담당자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의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했음.
- 인터넷 플랫폼(<https://www.entit.fi/>)에 접속하면 누구나 원하는 지역의 담당자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음.
- 이러한 플랫폼은 사회 배재 청년에 대한 아웃리치 청년사업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그림 4-10] 핀란드 전국 아웃리치 청년사업 담당자 연락처 검색 홈페이지



자료: 핀란드 아웃리치 청년 사업 담당자 연락처 검색 사이트. <https://www.entit.fi/> 에서 2021.10.27. 인출.

4. 시사점

- 핀란드는 지방정부와 민간조직인 청년워크숍을 중심으로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사회 배제 청년을 찾아 통합적인 서비스와 훈련을 제공함.
-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되고 발전된 청년사업 인프라가 사회 배제 청년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핀란드는 1993년 보건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에 독립적인 예산과 서비스 기획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역량이 강화되었음.
 - 핀란드 300여 지방정부는 지역 내 보건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들에게 19~21%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거두어 독자적으로 집행함.
- 청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조직이 사회 배제 위험이 높은 청년의 정보를 공유하여 이를 아웃리치 청년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사회 배제 청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함.

- 핀란드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문화부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청년정책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청년사업에 투입하고 있음.
 - 핀란드에서 청년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청년정책에 포함되지 않음.
- 중앙정부의 많은 예산이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방정부에 제공되지만, 지방정부와 청년워크숍은 중앙정부의 간섭이 없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함.
- 다양한 교육기관과 핀란드아웃리치청년사업·워크숍활동연합회는 자율적으로 아웃리치 청년사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역량 증진을 위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제공함.

제3절 영연방과 유럽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대처 전략

1. 영국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대처 전략

- 영국 정부는 2018년 이후 사회적 고립을 흡연·비만만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으로 노력하고 있음.
- 영국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대책은 영국 정부 차원의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외로움 대처 전략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음.
 - 영국의 외로움 책임 장관 제도와 관련 외로움 대처 정책(loneliness policy)은 '2014년 돌봄법(Care Act 2014)'에 근거함(legislation.gov.uk, 2014; 세계법제정보센터, 2014; 차현숙 외, 2020. p.47).
 - 특히, 2014년 돌봄법 중 '제1부 돌봄과 지원(PART 1. Care and support)'의 '제2절 돌봄과 지원에 대한 욕구 예방(Section 2. Preventing needs for care and support)'은 지방정부가 지역 내 교류가 없는 성인의 돌봄과 지원 욕구를 파악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차현숙 외, 2020. p.47).

- 영국 외로움 대처 전략에 대한 역사는 크게 4가지 보고서를 통해 정리할 수 있으며, 4가지 보고서는 아래와 같음.
 - 2017년 12월 ‘한 번에 하나의 대화로 고독에 대처하기(Combating loneliness one conversation at a time, 이하 Combating loneliness)’
 - 2018년 10월 ‘연결된 사회: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to tackling loneliness, 이하 A connected society)’
 - 2020년 1월 제1차년도 외로움 연례보고서(Loneliness Annual Report, 이하 LAR)
 - 2021년 1월 제2차년도 외로움 연례보고서(LAR)

- 영국 외로움 대처 전략의 역사는 ‘조 콕스 고독위원회(the Jo Cox Loneliness Commission, 이하 JCLC)¹³⁾가 2017년 12월 ‘한번에 하나의 대화로 고독에 대처하기(Combating loneliness)’라는 보고서에서 국가 리더십(national leadership), 성과측정(measuring progress), 그리고 행동촉진(catalysing action) 3가지 핵심 영역에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으로부터 시작함(JCLC, 2017, p.3; 윤혜준, 2018, p.15).
 - ‘한번에 하나의 대화로 고독에 대처하기(Combating loneliness)’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약한 사회적 관계가 매일 15개비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것임(JCLC, 2017, p.10).

13) 조 콕스 고독위원회는 고(故) 조 콕스(Jo Cox, 1973-2016) 노동당 의원의 이름을 딴 것이다(JCLC, 2017, p.3). 조 콕스 의원은 1974년 영국 웨스트 요크셔 지방의 배틀리(Batley)에서 공장노동자 출신 아버지를 둔 가정에서 태어났고,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한 후 그 스스로가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다(JCLC, 2017, p.3). 이 개인사에 근거하여 조 콕스 의원은 ‘외로움은 무차별적(loneliness doesn't discriminate)’이라고 언급했다(HM Government, 2018, p.3). 조 콕스 의원은 사회적 고립이 공공보건의 긴급한 위기 중 하나로서 아동기 비만과 정신적 복지만큼 중요한 ‘사회적 부정의’(social injustice)로 인식했다(HM Government, 2018, p.2). 조 콕스 의원은 ‘외로움 끝내기 캠페인’(the Campaign to End Loneliness)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영국 내 외로움 현상의 감소를 위해 노력했다(HM Government, 2018, p.11). 하지만 조 콕스 의원은 2016년 6월 16일 지역 유권자와의 면담(a constituency surgery)을 위해 버스톨 도서관(Birstall library)으로 가는 도중 그 도서관 앞에서 극우성향 남성 토마스 메이어(Thomas Mair)에게 피살되었다(BBC, 2016.10.14.).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활동을 계승하기 위해 조 콕스 고독위원회가 만들어졌다(JCLC, 2017, p.3).

- 또한 이 보고서는 영국 내 외로움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여러 추정치들을 제시했음(JCLC, 2017, pp.8-11).
 - 예컨대, 2017년 기준 영국 성인(16세 이상) 전체 인구의 18%(또는 9백만 명 이상)가 자주 또는 항상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했고, 아동지원센터(Action for Children)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년(17-25세) 중 43%가 외로움과 관련된 문제들을 경험한다고 응답했음(British Red Cross, 2016, p.17; JCLC, 2017, p.8).

- 영국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정부는 2017년 12월 ‘한 번에 하나의 대화로 고독에 대처하기(Combating loneliness)’라는 보고서의 권고를 수용하여 2018년 1월 고독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 MFL)을 신설했음.

- 즉, 2018년 1월 체육·시민사회부(Department for Sport and Civil Society, DSCS) 장관인 트레이시 크라우치(Tracey Crouch)가 고독부 장관(MFL)을 겸직하게 되었는데, 이는 세계 최초 외로움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 선언으로 평가됨(HM Government, 2018, p.6).

- 이후 테레사 메이 정부는 2018년 여름 1달 간(6월 22일~7월 20일) 외로움 행동 그룹(the Loneliness Action Group, LAG)과 함께 외로움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사를 시행했음(HM Government, 2018, p.6).

-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는 2018년 10월 ‘연결된 사회: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A connected society)’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범정부적 전략을 발표함(HM Government, 2018, p.6).

- 2018년 10월 ‘연결된 사회’ 보고서는 2017년 12월 조 콕스 고독위원회가 발간한 ‘한 번에 하나의 대화로 고독에 대처하기(Combating loneliness)’ 보고서의 권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천적 대응임(HM Government, 2018, p.12).

- ‘연결된 사회’ 보고서를 통해 영국 정부는 ‘좀 더 통합적이고 연결된 사회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외로움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3개의 목표를 설정했음(HM Government, 2018, p.7)
 - 외로움의 실태·원인·결과·해결책 제시를 위한 증거기반 개선(improving the evidence base)
 - 범정부적 정책결정에서 외로움 고려(embedding loneliness as a consideration across government policy)
 - 외로움에 대한 국민적 대화 조성, 그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외로움과 연결된 낙인 해결(building a national conversation on loneliness, raising awareness of its impacts, and helping tackle stigma)
 - 이 외로움 예방 전략은 펄만과 펄라우(Perlman & Peplau, 1981; 1998)의 분석틀에 근거함(HM Government, 2018, p.18).
- ‘연결된 사회’ 보고서의 3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5개 실천적 원칙은 아래와 같음(HM Government, 2018, p.14).
 - 기업·건강영역·지방정부·자원봉사 영역·시민사회와 파트너십 속에서 일하기,
 - 현존하는 증거 기반의 한계를 인식하고 외로움 해결전략을 지속적으로 검정·반복적용·학습할 의지를 갖기,
 - 외로움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위해 진정한 상호 교차적·범정부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확실히 하기,
 - 시민의 빈번한 외로움을 야기하는 ‘핵심적 유발점(the key trigger points)’에 집중하기
 - ‘핵심적 유발점’은 국가통계국(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의 지역사회생활조사(Community Life Survey, CLS) 자료 분석을 통해 외로움의 위험에 놓인 시민들을 식별할 수 있음(HM Government, 2018, p.14).
 - 외로움의 복합적·주관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화된 접근과 지역적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 ‘연결된 사회’ 보고서에서 정부의 핵심적 역할은 모든 시민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접촉’(meaningful social contact)의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것임(HM Government, 2018, p.7).
 - 외로움 예방 전략을 통한 정부의 최종목표는 ‘사회적 복지(social wellbeing)’, 즉 개인적 관계와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의 복원임(HM Government, 2018, p.7).
-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는 2018년 10월 ‘연결된 사회’ 보고서 이후 2020년 1월부터 정부의 성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외로움 연례보고서(LAR)를 발표했음(GOV.UK, 2020a).
- 2020년 1월 발간된 제1차년도 외로움 연례보고서의 목표는 외로움 대처를 위한 정부의 성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영국 정부의 미래 이동방향(future direction of travel)을 설정하는 것임(GOV.UK, 2020a).
 - 2020년 제1차년도 외로움 연례보고서를 통해 영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외로움 해결을 위한 공약들을 천명했음(HM Government, 2020, p.13).
 - 영국 시민사회부 장관(the Minister for Civil Society)은 ‘외로움 대처를 위한 범정부적 장관 그룹(cross-government Ministerial Group on Tackling Loneliness)’의 수장(lead minister) 역할을 함(HM Government, 2020, p.13).
 - 시민사회부는 2016년 7월부터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로 흡수되었고(GOV.UK, n.d.), 시민사회부 장관은 2018년 1월부터 고독부 장관을 겸임함(HM Government, 2020, p.3).
 - 2018년 1월 이후 고독부 장관을 겸임한 시민사회부 장관은 4명, 즉 ① 트레이시 크라우치(Tracey Crouch, 1975~, 재임기간: 2017년 6월 15일~2018년 11월 5일), ② 밌스 데이비스(Mims Davies, 1975~, 재임기간: 2018년 11월 5일~2019년 7월 25일), ③ 배러니스 배런(Baroness Barran, 1959~, 재임기간: 2019년 7월 26일~2021년 9월 17일), 그리고

④ 나이젤 허들스톤(Nigel Huddleston, 1970~, 재임기간: 2021년 9월 18일~현재)임(HM Government, 2018, p.3; HM Government, 2020, p.3; 윤혜준, 2018, p.155).

○ 2020년 제1차년도 외로움 연례보고서의 3개 목표는 아래와 같으며(HM Government, 2020, p.4), 이 3개 목표는 전술한 2018년 10월 ‘연결된 사회’ 보고서의 3개 목표(HM Government, 2018, p.7)와 우선순위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함.

- 첫째, 외로움에 대한 국민적 대화 구축을 통한 낙인 감소(reducing stigma by building the national conversation on loneliness)
- 둘째, 관계와 외로움이 정부정책결정에서 고려되도록 지속적인 변화 추구 (driving a lasting shift so that relationships and loneliness are considered in government policy-making)
- 셋째, 외로움에 대한 증거기반 개선을 위한 역할 수행(playing our part in improving the evidence base on loneliness)

○ 제1차년도 외로움 연례보고서에서 영국 정부는 3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었음 (HM Government, 2020, p.13).

- 외로움 감소를 위해 이용 가능한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소통이 필요
- 아동·청년의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표적화된 정책이 필요(특히 청년 집단은 타 집단보다 외로움과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보고하지만, 맞춤형 개입이 현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에 기반)
- 공간을 통해 외로움에 대처할 필요(지역사회 기반시설·자산 강화, 시민의 소속감 증진)

○ 제1차년도 외로움 연례보고서의 핵심은 9개 부처에 걸친 60개 신정책공약 (new policy commitments)임(GOV.UK, 2020a).

- 9개 부처는 다음의 부처들을 말함 (GOV.UK, 2020a)
 -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

- 경영·에너지·산업전략부(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
 - 교육부(the Department for Education, DFE)
 - 환경·식품·농림부(th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 건강·사회복지부(the Department for Health and Social Care, DHSC)
 - 교통부(the Department for Transport, DFT)
 - 노동연금부(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 ⑧ 내무부(the Home Office, HO)
 - 주거·지역사회·지방정부부(the Ministry for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MHCLG)
- 한편 영국 정부의 외로움 해결을 위한 60개 신정책공약의 내용은 <부표 1-1-1>과 같음(HM Government, 2020, pp.16-24).
- <부록 표 1-1>에서 보듯 60개 신정책공약은 첫 번째 국가통계국(ONS)이 권고한 측정도구를 정부가 활용(Government's use of the ONS recommended measurement package)부터 60번째 정책결정을 통한 외로움 고려(Considering loneliness through policy making) 공약을 포함함(HM Government, 2020, pp.16-24).
- 영국 정부의 60개 신정책공약 중 사회적 고립 청년을 표적화한 지원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공약은 다음의 7개임(HM Government, 2020, pp.16-24).
- 39번째 국민도제서비스(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
 - 40번째 직업연수(work placements)에 대한 최선의 실천 안내
 - 41번째 인식 제고 캠페인(Awareness Campaign)
 - 44번째 대학교 이상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청년(those starting higher education courses) 지원
 - 52번째 보호종료 청소년(care leavers)에 대한 지원

- 53번째 통합된 청소년 집단(uniformed youth groups)에 대한 연구
 - 55번째 '연결구축기금(Building Connections Fund, BCF)'에 대한 평가와 학습 공약
-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대책의 재원은 '연결구축기금'(BCF)에 근거함(GOV.UK, 2020a; HM Government, 2020, p.6).
- 연결구축기금(BCF)은 영국 정부, 국민복권공동체기금(the 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 NLCF), 그리고 협동조합재단(the Co-op Foundation, COF)의 파트너십으로 조성된 기금임(HM Government, 2020, p.6).
 - 연결구축기금(BCF)의 규모는 총 1천1백5십만 파운드(원파운드 환율 1,573원 적용시 한화 약 1천8백억 원)임(HM Government, 2018, p.53; HM Government, 2020, p.6).
 - 2018년 12월 기준 연결구축기금(BCF)의 지원대상은 총 126개 기관이고, 기관마다 각각 3~10만 파운드(한화로 약 4천7백만 원~1억5천8백만 원) 가량을 지원했음(HM Government, 2020, p.6).
 - 특히 연결구축기금(BCF)의 126개 수혜기관 중 22개 기관은 청년의 외로움 해결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했음(HM Government, 2020, p.6).
- 한편 연결구축기금(BCF)과 별개로 전체연령(사회적 고립 청년 포함)을 대상으로 외로움 해결을 위한 기금이 있음(HM Government, 2020, p.11).
- 예컨대, 영국 정부와 협동조합재단(COF)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2개 기금은 지역사회 공간개선 사업에 2백6십만 파운드(원파운드 환율 1,573원 적용시 한화 약 41억 원)를 지원했음(HM Government, 2020, p.11).
 - 영국 정부와 국민복권공동체기금(NLCF)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기금은 최일선 풀뿌리 기관들(frontline grassroots organisations)에게 4백만 파운드(원파운드 환율 1,573원 적용시 한화 약 63억원)를 지원했음(HM Government, 2020, p.11).

- 2020년 1월 이후 영국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Coronavirus disease crisis or COVID-19 pandemic, 이하 코로나19 팬데믹)로 인해 2020년 3월 23일~7월 19일까지 1차 국가봉쇄(national shutdown), 2020년 11월 5일~12월 2일까지 2차 국가봉쇄 조치를 단행했음(Institute for Government Analysis, 2021; 이우림, 2021.7.29.).
-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a comprehensive plan)’이라는 범정부적 추가공약을 발표했다(GOV.UK, 2020b; HM Government, 2021, p.3).
 - 이 포괄적 계획은 다음의 6가지 공약을 포함함(GOV.UK, 2020b; HM Government, 2021, p.3).
 - 문화부 장관인 올리버 다우덴(Oliver Dowden)이 ‘외로움을 말하자(Let’s Talk Loneliness)’라는 새로운 대중적 캠페인 전개
 - 외로움 문제를 7억5천만 파운드의 자선기금패키지(charity funding package)에서 우선순위 범주로 간주
 - 외로움 해결을 위한 9개 기관에게 5백만 파운드의 기금 지원
 - 스스로와 타인에 대한 안전한 지원활동에 대한 안내서 발간
 - Age UK(비영리 고령자단체) 등 자선단체들이 지역사회 내 국민건강서비스 자원봉사자들(NHS Volunteer Responders)과 협업하도록 지원
 - 민간·공공·자선 영역이 함께 ‘외로움 대처 네트워크(Tackling Loneliness Network, TLN)’를 만들고, 고립 위험(risk of isolation) 집단 지원
- 2021년 1월 발간된 제2차년도 외로움 연례보고서의 3개 목표는 2020년 1차년도 외로움 연례보고서의 목표와 같음(HM Government, 2021, p.3).
 - 외로움에 대한 국민적 대화 구축을 통한 사회적 낙인 감소(reducing stigma)
 - ‘낙인 감소’를 위해 영국 정부는 ‘외로움을 말하자(Let’s Talk Loneliness)’ 캠페인을 전개했고, 이 캠페인은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지역적·

전국적으로 외로움 대처를 위한 실천방법을 공유했음(HM Government, 2021, p.3).

- 영국 정부는 2020년 6월 15일~19일을 ‘외로움 인식 주간(Loneliness Awareness Week)’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 시민들이 소외된 친구·가족·이웃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하기를 촉구했음(GOV.UK, 2020c; HM Government, 2021, p.4).

○ 관계와 외로움이 정책결정시 고려되도록 지속적 변화 추구(driving a lasting shift)

- ‘지속적 변화 추구’를 위해 영국 정부는 기업, 자선단체, 공공기관들이 함께 외로움 대처 네트워크(TLN)를 만들도록 지원했음(HM Government, 2021, p.6).
- 이 네트워크(TLN)는 2021년 1월 기준 70개 이상의 기관을 포함함(HM Government, 2021, p.6).
- 외로움 대처 네트워크(TLN)의 4개 우선순위는 ① 청소년 외로움(Youth loneliness), ② 노인 외로움(Loneliness in older people), ③ 지역 및 장소-기반 접근(Local and place-based approaches), 그리고 ④ 디지털포용(Digital inclusion)임(HM Government, 2021, p.6).

○ 외로움에 대한 증거기반 개선(improving the evidence base)

- ‘외로움에 대한 증거기반 개선’을 위해 영국 정부는 외로움 측정도구를 개발했음(HM Government, 2021, p.8).
- 영국 정부가 내린 외로움 측정도구에 대한 결론은 외로움에 대한 1개의 직접 설문(The direct measure of loneliness)과 3개의 간접 설문(UCLA 3-item Loneliness Scale)을 적절히 사용하여 외로움을 겪는 시민의 규모와 심도를 가능한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임(ONS, 2018).
- 외로움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은 <표 4-20>과 같음(ONS, 2018).

〈표 4-20〉 성인(16세 이상)에 대한 외로움 측정도구

측정도구	설문내용	응답범주
직접측정(1개)	“귀하는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How often do you feel lonely?)	5개
UCLA 외로움척도(3개)	① “귀하는 얼마나 자주 동료애가 결핍되었다고 느끼십니까?” (How often do you feel that you lack companionship?)	3개
	② “귀하는 얼마나 자주 소외되었다고 느끼십니까?” (How often do you feel left out?)	
	③ “귀하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었다고 느끼십니까?” (How often do you feel isolated from others?)	

주: 1) UCLA 외로움 척도는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에서 개발한 3개 아이টে으로 이루어진 외로움 척도(three-item loneliness scale)를 의미함.

2) 5개 응답범주는 보통/자주, 때때로, 가끔, 거의 없음, 결코 없음(Often/always, Some of the time, Occasionally, Hardly ever, Never). 3개 응답 범주는 자주, 때때로, 거의 없거나 결코 없음(Often, Some of the time, Hardly ever or never). 즉, 3개 응답 범주는 5개 응답 범주의 마지막 2개 카테고리를 하나로 합친 것임.

자료: 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8.12. 5). Measuring loneliness: guidance for use of the national indicators on surveys. pp.3-4를 참고하여 작성.

- 〈표 4-20〉에서 UCLA 외로움 척도를 이용한 외로움 판정은 다음과 같음(ONS, 2018).

- 첫째, 3개 응답범주(자주=3점, 때때로=2점, 거의 없거나 결코 없음=1점)로부터 외로움 점수를 산출하고, 개인별 외로움 점수 총점의 분포는 최소 3점~최대 9점임(ONS, 2018).
- 둘째, 외로움을 판정하는 표준화된 기준(threshold)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총점 자체보다 전체 그리고 집단별 외로움 평균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음(ONS, 2018).

□ 소결하면, 영국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전체 연령층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해소 전략과 정책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고 있음.

○ 2018년 1월 고독부 장관 신설 이후 영국 정부의 외로움 대처 전략, 정책, 그리고 그 성과를 고려할 때, 영국 정부는 청년을 포함한 전체연령층에 대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외로움 측정도구를 활용한 양적 평가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 평가를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호주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대응 전략

- 2005년 기준 호주 성인(25-44세)의 16%가 종종 외로움을 경험할 만큼 호주의 사회적 고립 문제는 심각함(Flood, 2005, p.11). 이런 상황에서 호주 정부는 영국 정부의 외로움 대처를 위한 리더십 구축 노력에 자극을 받아 최근 국가차원의 외로움 대응 전략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음.
- 영국 정부가 2018년 1월 세계 최초 외로움 책임 장관(MFL) 임명했다는 소식은 호주에서 외로움 책임 장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킴.
 - 2018년 10월 호주 리즌당¹⁴(Reason Party)당수인 피오나 패튼(Fiona Patten, 1963-) 빅토리아(Victoria) 주 상원의원은 빅토리아 주 차원에서 건강·기반시설·사회정의·지역사회 포트폴리오들 간 협업을 주도할 외로움 책임 장관 도입 법안을 제출함(Wahlquist, 2018.10.18.).
 - 피오나 패튼 의원은 외로움 책임 장관을 통해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언급함(Wahlquist, 2018.10.18.).
 - 한편 2019년 호주 공공보건정책 전문가 사이먼 타츠(Simon Tatz)는 “어떤 이들은 외로움 또는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책임 장관과 같은 아이디어를 비웃을 수 있지만, 그것은 확실한 장점이 있다. 호주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훨씬 더 포괄적인 지역사회 초점(comprehensive community focus)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함(Saxena, 2019.12.19.).
- 하지만 2018년 1월 이전 호주에서도 영국처럼 민간 차원의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해결의 움직임이 있었음.
- 바로 2016년 외로움 대처를 위한 증거기반 행동(evidence-based action to tackle loneliness)을 목적으로 결성된 ‘외로움 함께 끝내기(Ending Loneliness Together, ELT) 네트워크임(Ending Loneliness Together, 2020a).

14) 마리화나 합법화 등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한 정당, 구(舊) Australian Sex Party

- 외로움 함께 끝내기(ELT) 네트워크는 외로움 해결을 위해 4개 초점영역, 즉, ① 증거(Evidence), ② 정보제공(Inform), ③ 영향(Influence), 그리고 ④ 인식(Awareness)을 설정함(Ending Loneliness Together, 2020b).
 - 첫째, ‘증거’ 영역은 외로움 측정을 위한 증거기반을 강화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찾는 것
 - 둘째, ‘정보제공’ 영역은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외로움과 그 예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것
 - 셋째, ‘영향’ 영역은 정부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
 - 넷째, ‘인식’ 영역은 외로움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과 행동을 촉구하는 것
- 2018년 이후 호주심리학협회(Australian Psychological Society, APS)와 다양한 비영리기관들은 여러 통계조사방법을 활용하여 호주의 외로움 실태를 보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왔음.
- 2018년 이후 호주 외로움 대처 전략에 대한 역사는 크게 6가지 보고서를 통해 정리할 수 있음(APS, 2018.10.8.; Ending Loneliness Together, 2020c, 2021; FFG, 2019; Relationships Australia, 2018.7.; VicHealth, 2019.9.).
- 2018년 9월 ‘호주는 외로움의 대유행을 경험하고 있는가(Is Australia experiencing an epidemic of loneliness)’
 - 2018년 9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비영리기관인 ‘관계 오스트레일리아(RA)’은 호주 가구소득·노동 역동성 조사(The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HILDA) 자료를 분석해 ‘호주는 외로움의 대유행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함(RA, 2018, p.7; Wahlquist, 2018.10.18.).
 -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 정서적 외로움(emotional loneliness)이 가장 높은 집단은 사별·이혼·별거 상태에 있는 호주 남성(45-64세)임(RA, 2018, p.18; Wahlquist, 2018.10.18.).

- 그 이유는 많은 남성이 그 배우자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배우자를 잃게 되면 사회적 연결망도 잃어버리기 때문임(Wahlquist, 2018.10.18.).

○ 2018년 11월 ‘호주 외로움 보고서(Australian Loneliness Report, 이하 ALR)’

- 2018년 11월 호주심리학협회(APS)와 스윈번공과대학(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SUT) 임상심리학자 미셸 림(Michelle H. Lim) 박사팀은 ‘호주 외로움 보고서(Australian loneliness report)’를 발간함(APS, 2018.10.8., p.2).
- 이 보고서(ALR)는 호주 외로움의 출현율과 그 외로움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 효과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로 평가됨(APS, 2018.10.8., p.2).
- 이 보고서(ALR)는 호주 성인(18세 이상)에 대한 온라인조사(N = 1,678)를 통해 호주 외로움 실태에 대한 11가지 연구결과를 보고했음(APS, 2018.10.8., p.27).
- 그 중 주목할 만한 3가지 결과는 ① 호주 성인(18세 이상)의 25%가 외로움을 경험, ② 호주 성인(18세 이상)의 25%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social interaction anxiety, SIA)’을 경험, ③ 청년층(18-35세)이 장년층(35세 이상)보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SIA)¹⁵⁾이 높다는 점임(APS, 2018.10.8., p.5).

○ 2019년 9월 ‘젊은 호주인 외로움 조사: 청소년기와 청년기 외로움에 대한 이해(The young Australian loneliness survey: Understanding loneliness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이하 YALS)’

- 스윈번공과대학(SUT) 임상심리학자 미셸 림(Michelle H. Lim) 박사팀은 호주 빅토리아 주 청소년(12-17세)과 청년(18-25세)에 대한 온라인조사(N

15)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SIA)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불안, 그리고 특히 타인에 의한 부정적 판단에 대한 두려움 또는 당황스러운 감정으로 정의됨(APS, 2018.10.8., p.27).

= 1,520)를 통해 호주 청소년·청년 집단의 외로움 경험비율과 그 외로움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요약함(VicHealth, 2019.9., p.2).

- 첫째, 청소년(12-17세)의 16% 그리고 청년(18-25세)의 33%가 심각한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함.
 - 둘째, 가족과 친구들과의 연락 빈도로 측정된 사회적 고립 위험(social isolation risk)의 관점에서 청소년·청년(12-25세)의 33%가 심각한 사회적 고립 위험을 경험함.
 - 셋째, 청소년·청년(12-25세)가 경험하는 외로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우울증과 사회적 불안 등)이 악화됨.
 - 넷째, 청년(18-25세)이 청소년(12-17세)에 비해 다양한 요인(우울증, 사회적 불안 등)에서 더 좋지 않은 상태에 있음.
 - 다섯째, 사회적 고립 위험, 정신건강 증상의 심도, 정동(affect,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감정 상태), 감정조절(emotion regulation)은 외로움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판단됨(VicHealth, 2019.9., p.3).
- 이 보고서는 호주 청년의 겪고 있는 심각한 수준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18세 이전에 좋은 '사회적 건강(social health)'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는 초기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함(VicHealth, 2019.9., p.3).

○ 2019년 '호주의 외로움: 연구, 맥락, 그리고 새로운 결과들(Loneliness in Australia: Research, Context and New Findings. 이하 LIA)'

- 2019년 외로움 예방 비영리단체인 '영원한 친구들(FFG, Friends for Good)'은 '호주의 외로움: 연구, 맥락, 그리고 새로운 결과들(LIA)'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음(FFG, 2019).
- 이 보고서는 호주 성인(18세 이상)에 대한 조사(N = 1,020)를 통해 6가지 결과를 보고했음(FFG, 2019, p.2).
- 그 중 주목할 만한 3가지 결과는 ① 호주 성인(18세 이상) 중 15%(약 300만 명)가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 ② 외로움은 성별·연령·지역과 관계없

이 무차별적으로 나타나고, ③ 외로움과 소득의 부적 상관관계(소득이 낮을수록 외로움 경험 확률이 증가)가 있다는 점임(FFG, 2019, p.2).

- 특히 이 보고서는 지역사회 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실체는 소득의 역할이 고려될 때 정확히 파악될 수 있음을 강조함(FFG, 2019, p.1).

○ 2020년 11월 ‘호주에서 외로움을 함께 끝내기(Ending Loneliness Together in Australia, 이하 ELTIA)’

- 2020년 11월 외로움 함께 끝내기(ELT) 네트워크는 호주 최초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한 획을 긋는 ‘호주에서 외로움을 함께 끝내기(ELTIA)’라는 백서(white paper)를 발간함(Ending Loneliness Together, 2020c).
- 이 보고서의 목적은 호주 외로움 문제의 심화와 그것이 지역사회 내 사회·건강·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었음(Ending Loneliness Together, 2020c, p.6).
-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호주 성인 2명 중 1명이 외로움을 경험함을 발견했고, 외로움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3가지를 권고함(Ending Loneliness Together, 2020c, p.6).
 - 외로움에 대한 전국자료 구축 등 호주적 맥락에 기반한 연구 투자와 정보 제공(Invest and be informed by Australian-based research)
 - 연구·산업·서비스 전달 부문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분석틀 개발과 적용(Develop and deliver system-wide frameworks)
 - 외로움 해결을 위한 시민들과의 연결 및 그 역량 강화(Connect and empower people to take action)

○ 2021년 1월 ‘외로움과 고독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A National Strategy to Address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이하 ANS)’

- 2021년 1월 외로움 함께 끝내기(ELT) 네트워크는 ‘당신은 괜찮습니까(R U OK?)’라는 자살예방을 위한 비영리기관과 호주심리학협회(AP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외로움과 고독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ANS)’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Ending Loneliness Together, 2021, p.3).

- 이 보고서(ANS)는 호주인구(12-89세)의 25%가 문제적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함을 발견했는데, 이는 호주 전체 외로움 수준이 시민의 건강과 복지, 생산성, 일상기능에 손상을 줄 정도로 심각함을 의미함(Ending Loneliness Together, 2021, p.5).
 - 이 보고서(ANS)가 진단한 호주 외로움 관련 대책의 문제점은 2가지임(Ending Loneliness Together, 2021, pp.12-19).
 - 지역사회 인식과 기술의 결핍(Lack of Community Awareness and Skills)
 - 지역사회와 정신건강 체계 내 통합된 기준들과 지침들의 부재(Absence of uniform standards and guidelines within community and mental health systems)
 - 이 보고서(ANS)가 정부에 제안하는 4가지 해결책은 아래와 같음(Ending Loneliness Together, 2021, pp.12-19).
 - 증거기반 국가차원의 지역사회 인식 캠페인에 대한 투자
 - 국가차원의 사회적 e-건강 포털 개발에 대한 투자
 - 외로움을 겪거나 그 위험에 놓인 개인들을 식별·평가·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외로움 사정·평가를 위한 국가차원의 표준 개발
 - 건강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제공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차원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 호주 외로움 함께 끝내기(ELT) 네트워크는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에게 호주 최초 ‘국가차원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대응 전략’ 실천을 위한 2021-22년 예산안을 <표 4-21>과 같이 제안했음(Ending Loneliness Together, 2021, p.7).
- 호주에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대응 전략의 예산 소요액은 향후 3개년 동안 5.23~6.54백만 호주달러(AUD)(원호주달러환율 826.94원 적용 시 한화로 약 43~54억 원)임(Ending Loneliness Together, 2021, p.7).

〈표 4-21〉 외로움·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 2021-22년 예산안

(단위: 백만 AUD)

구분	소요예산(기간)
① 국가차원의 지역사회 인식 캠페인에 대한 투자	2.44~3.05 (3개년)
② 국가차원의 사회적 e-건강 포털 개발에 대한 투자	1.43~1.79 (3개년)
③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도구 및 평가 틀 개발	1.36~1.70 (3개년)
④ 최일선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자료: Ending Loneliness Together. (2021). A National Strategy to Address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p.7를 참고하여 작성

- 소결하면, 호주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전체 연령층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해소 정책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고 있음.
- 호주는 아직까지 영국처럼 고독부 장관은 없지만 최근 빅토리아 주 또는 호주 연방정부 차원의 외로움 책임 장관을 신설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존재함 (Office of Fiona Patten, 2018.10.2.; Wahlquist, 2018.10.18.; Purcell, 2021.2.25.).
- 호주에서는 호주심리학협회(APS)와 비영리기관들이 호주 정부와 협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을 포함한 시민 전체의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유럽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대응 전략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은 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시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주는 해로움에 대한 증거기반 개선과 ②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한 이동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의도치 않게 심화시킬 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Baarck et al., 2021, p.3).

- 유럽연합(EU) 차원의 외로움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은 2020년 두브라브카 수이차(Dubravka Šuica, 1957~)¹⁶⁾ 유럽집행위원회(EC) 부의장으로부터 시작됨.
- 2020년 5월 그녀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외로움 형태에 대규모 도전을 부각시킨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외로움의 쓰린 감정은 많은 유럽인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동료가 되고 있다 ... 이(외로움)는 새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드러났고,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회적·경제적·건강적 함의를 가진다”고 언급함(Šuica, 2020).
- 두브라브카 수이차 유럽집행위원회 부의장은 유럽집행위원회의 협력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 줄리아 발크(Julia Baarck) 연구팀에 의뢰하여 유럽연합 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 증거 수집을 요청했음(European Commission, 2021b).
- 한편 2021년 7월 20일 그녀는 일본 최초 고독·고립부 장관(외로움 책임 장관)인 테츠시 사카모토(Tetsushi Sakamoto, 1950~, 재임기간: 2021년 2월 12일~10월 4일)을 만나 양측이 외로움에 대처할 증거와 조치들을 공유하기로 동의했음(European Commission, 2021b; Hendricks, 2021.2.24.; Kawaguchi, 2021.5.14.).
- 이런 논의의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EU)은 2021년 7월 26일 ‘유럽연합에서의 외로움: 조사 자료와 온라인 매체 자료로부터의 통찰(Loneliness in the EU: Insights from surveys and online media data, 이하 LIEU)’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음(Baarck et al., 2021, p.3).
- 2021년 7월 ‘유럽연합에서의 외로움(LIEU)’ 보고서는 유럽연합(EU) 내 외로움에 대한 증거기반을 개괄하기 위해 유로파운드(Eurofound) 조사와 온라인 자료를 활용해 외로움 실태를 분석했음(Baarck et al., 2021, p.3).

16) 중도우파 정당인 크로아티아 민주연합당(Croatian Democratic Union Party) 출신 의원으로 2019년 12월~현재 유럽집행위원회(EC) 부의장과 ‘민주주의와 인구통계를 위한 부의장(Vice-President for Democracy and Demography)’을 겸직 중임(Athens Democracy Forum, 2019).

- 즉, 유럽에서 외로움이 어떻게 팬데믹 전후로 증가했고, 외로움에 대한 공적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검토했음(European Commission, 2021b).
- 2021년 7월 두브라브카 수이차 유럽집행위원회(EC) 부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과 같은 문제를 표면화시켰다. 이 감정들은 이미 존재했으나 그에 대한 공적 인식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새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를 좀더 잘 이해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고령화에 대한 녹색(綠書)(the Green Paper on Ageing) 계획들과 함께, 우리는 더 복원력 있고, 통합된 사회 그리고 시민에게 더 친숙한 유럽연합을 건설할 방법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진다”고 언급했음(European Commission, 2021b).
- 이 보고서(LIEU)의 4가지 핵심결과는 아래와 같음(Baarck et al., 2021, pp.7-8).
 - 독신은 부부 또는 부부와 자녀 가구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외로움 경험 비율 증가량이 2배 이상 높음(2020년 4월~7월 외로움 출현율 증가량은 독신 22%p vs. 부부 또는 부부·자녀 9%p).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럽 전 지역에 외로움 경험비율이 증가함 (22%p~26%p).
 - 외로움에 대한 온라인 매체의 보도는 그 질적 측면(내용의 정서적·담화적 가치)에서 보도내용의 3분의 1은 외로움과 건강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고, 보도의 초점집단은 청년과 여성임.
 - 매체의 보도 태도와 외로움 인식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임.
- 세부적으로는 첫째, 유로파운드(Eurofound) 조사자료 분석은 유럽연합(EU)에서 외로움 수준(self-reported levels of loneliness)의 최근 추세와 팬데믹 전후 외로움 관련 사회경제적·지리적 특성들을 검토했음(Baarck et al., 2021, p.3).
 - 분석결과 유럽연합(EU) 시민의 25%가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음(Baarck et al., 2021, p.16).

- 이는 2016년 ‘유럽의 삶의 질(European Quality of Life)’ 조사 (Eurofound, 2017)에서 보고된 외로움 경험비율(12%)보다 2배 이상 높았음(Baarck et al., 2021, p.7).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가장 외로움을 많이 겪는 집단은 청년 (18-25세)이었고, 2020년 4월~7월 청년(18-25세)의 외로움 경험 비율은 2016년보다 4배 더 높았음(Baarck et al., 2021, p.7).

○ 둘째, 온라인 자료 분석은 유럽 최초로 2018년 1월~2021년 1월까지 온라인 매체가 보도하는 외로움의 내용·방식을 조사했음(Baarck et al., 2021, p.6).

- 분석결과, 외로움에 대한 보도량은 팬데믹 이전보다 팬데믹 기간에 2배 증가했고, 이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2020년 9월부터 증가해 2020년 12월~2021년 1월 그 정점에 도달했음(Baarck et al., 2021, p.8).
- 또한 외로움은 어떤 국가들(예: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웨덴)에서 논의의 핵심주제였지만, 다른 국가들에서 주변부 주제였음 (Baarck et al., 2021, p.8).

○ 한편 이 보고서(LIEU)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외로움 대처를 위한 개입 계획을 분석했음(Baarck et al., 2021, pp.48-51). 개입의 종류와 내용은 <표 4-22>과 같음.

<표 4-22>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외로움 대처를 위한 개입 계획들

개입의 초점	예시	범주	형태
① 기분 전환 (Changing mood)	선물 제공	단순	개인
② 인식 제고 (Awareness raising)	매체·예술을 통한 캠페인	전통적	혼합
③ 연결 생성 (Creating connections)	전화연결, 친구맺기, 가정방문계획, 자원봉사자들과 대화, 고립된 코비드19 확진자에게 태블릿PC 제공	전통적	개인
④ 전문적인 도움 (Professional help)	전문적 심리학자의 도움을 제공	전통적	혼합

개입의 초점	예시	범주	형태
⑤ 알람 네트워크 (Alarm network)	전화 또는 정보제공을 통해 외롭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식별하기	전통적	개인
⑥ 집단 행동 (Group activities)	하나의 활동(온라인플랫폼, 대면만남)에 함께 참여하기	전통적	집단
⑦ 기술적 해결책 (Technological solutions)	기술적 혁신에 기반한 해결책(로봇 등) 찾기	혁신적	개인
⑧ 구축된 환경 (Built environment)	사람 간 연결을 촉진하는 건물과 공공장소 마련	혁신적	혼합
⑨ 사회적 혁신 프로젝트 (Social innovation projects)	외로운 계층과 다른 소외된 집단들(이민자, 수감된 청년)에 대한 표적화	혁신적	혼합
⑩ 세대간 공동체 (international communities)	공유주거와 공유생활	전일적	집단
⑪ 낙인화에 저항 (fighting against stigmatisation)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웹페이지 또는 링크 제공	혁신적	혼합

주: 1) 2019년 12월~2021년 3월 기준임. 분석국가(10개)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그리스, 불가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루마니아, 그리고 헝가리임.
 2) 개입의 초점은 11개로 분류함(Baarck et al., 2021, p.50; Fakoya, McCorry, Donnelly, 2020, p.1).
 3) 개입의 범주는 단순(simple), 전통적(traditional), 혁신적(innovative), 전일적(holistic) 4가지로 구분함(Baarck et al., 2021, p.50). '단순' 개입은 장기적 변화를 목적하지 않은 개입(예: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을 말함. '전통적' 개입은 장기적 변화를 목적하지만 개인에 초점을 맞춤 개입(예: 사람들을 연결시키지만, 그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원치 않음)을 뜻함. '혁신적' 개입은 전통적 개입에 추가적 가치(예: 기술적 혁신 또는 사회적 혁신)가 부여될 때의 개입을 의미함. '전일적' 개입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해결로서 더 광범위한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입(예: 공동주거공동체 만들기)을 의미함.
 4) 개입의 형태는 개인(individual), 집단(group), 그리고 혼합(mixed) 3가지로 구분함.
 자료: Baarck et al.(2021). Loneliness in the EU. Insights from surveys and online media data. p.50.

□ 소결하면, 유럽연합(EU)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전체연령층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해소 정책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고 있음.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아직까지 영국이나 일본처럼 고독부 장관을 두고 있지 않지만, 최근 회원국 각국의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적 담론의 확산 수준에 따라 외로움 책임 장관을 신설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존재함(Baarck et al., 2021, p.49; Publications of the Finnish Government [PFG], 2019, pp.8-10).

○ 예컨대, 핀란드는 2019년 사나 마린(Sanna Marin) 정부가 '통합적이고 역량 있는 핀란드(Inclusive and Competent Finland)'라는 슬로건 하에 청소년과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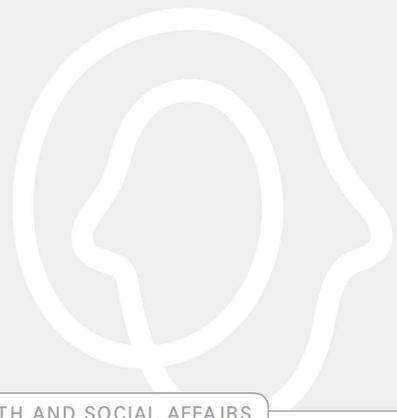
년들의 외로움에 대한 행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PFG, 2019, pp.8-10).

○ 또한 독일과 스웨덴은 외로움 대처 정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고, 일정 정도 공론화도 진행 중임(Baarck et al., 2021, p.49).

- 독일에서 외로움 책임 장관 임명 아이디어는 널리 논의되고 있고, 지방 정부들도 외로움담당관을 임명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Baarck et al., 2021, p.49).

- 스웨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노인의 외로움과 그 개입전략(도시 계획, 교통, 문화, 영리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공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음(Baarck et al., 2021, p.49).

□ 즉, 유럽연합(EU)은 각국 정부와 협력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계획을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을 포함한 시민 전체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전략, 개입, 실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제5장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삶과 정책 수요

제1절 자료 수집 개요

제2절 고립(은둔) 전 삶

제3절 고립(은둔)하는 삶

제4절 탈고립(은둔)을 위한 당사자의 욕구와 성공·저해 요인

제5절 탈고립(은둔)을 위한 정책 수요

제 5 장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삶과 정책 수요

제1절 자료 수집 개요

- 고립(은둔) 청년의 탈고립(은둔)의 삶 특성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립 청년과 은둔 청년, 그리고 은둔 자녀를 둔 부모와의 FGI를 수행하였음.
- 이들에 대해 고립(은둔)의 계기와 고립(은둔) 중 경험, 탈고립(은둔)의 계기와 고립(은둔)을 벗어나는 데에 성공적인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함.

[그림 5-1] 고립(은둔) 청년의 삶과 정책 수요 파악 단계



자료: 저자 작성

- <표 5-1>은 이 장에서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의 삶 경험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한 고립 청년과 은둔 청년, 그리고 은둔 자녀를 둔 부모와의 FGI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을 요약하고 있음.
- 그렇지만 고립(은둔) 상태에 현재 머물러 있는 고립(은둔) 청년들을 접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로, 그들의 목소리와 경험은 담지 못하였음.

〈표 5-1〉 당사자 FGI 참가자 특성

구분	면담자	성별	만 나이	고립 기간
고립 청년 1차 FGI (2021.11.24.)	고립 청년 1	남	26세	17년
	고립 청년 2	남	33세	2년
	고립 청년 3	여	31세	1년 이상
	고립 청년 4	여	23세	4년
고립 청년 2차 FGI (2021.11.24.)	고립 청년 5	남	35세	3~4년
	고립 청년 6	여	34세	13년
	고립 청년 7	여	29세	1년 6개월
	고립 청년 8	여	31세	5개월
은둔 청년 FGI (2021.11.25.)	은둔 청년 1	여	29세	8년
	은둔 청년 2	여	27세	3년
	은둔 청년 3	여	31세	1년
	은둔 청년 4	여	31세	10년(반복 포함, 완전 고립 3년 6개월)
	은둔 청년 5	남	37세	12년
	은둔 청년 6	남	28세	5년

자료: 저자 작성

〈표 5-2〉 부모 FGI 참가자 및 자녀 특성

구분	면담자	성별	자녀의 성별	자녀의 나이	자녀의 고립(은둔) 기간
부모 FGI (2021.11.26.)	부모 1	여	남	20대 초반	4년
	부모 2	여	남	26세	2년 6개월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고립(은둔) 전 삶

□ 여기에서는 당사자와 부모 FGI를 통해 도출한 청년의 고립 및 은둔의 계기를 〈표 5-3〉과 같이 구조화하고자 함. 상세한 내용은 후술함.

〈표 5-3〉 고립(은둔)의 계기

구분	내용
개인적 요인	심리 정서적 요인, 아동기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 판정 등
학교 부적응	이사, 왕따 등 학교생활의 부적응, 학업 스트레스, 대학에서 적응의 어려움
이행과정	대학 입시실패, 대학교에서의 적응 문제, 취업 실패
군대 부적응	폭력 피해, 부적응 등
역기능적 가족	부모의 갈등, 이혼, 가정불화, 가정폭력 등
가족 돌봄 부담	가족 돌봄 부담을 책임지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물리적 기회 박탈
경제적 문제	저소득 빈곤과 생계유지 부담
사회적 지지체계 부재	지지를 받을 만한 이들의 부재하거나 상실
소속감 상실	대학 진학이나 취업 실패로 공식적인 소속감 상실

자료: 저자 작성

□ 요인 1: 심리 정서적 요인

○ 청소년기부터 남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고, 자살, 자해 시도를 반복했던 경우

청소년기 때는 일단은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받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듣는 척을 하고는 있지만 집에 와서 그때는 ‘나와 잘 맞지 않는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다니기는 했었는데 집에 와서는 막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중학교 때는 자해도 했었던 것 같고 [은둔 청년 2]

○ 개인의 거식증, 우울증, 무력감, 의욕상실, 대인공포증 등의 경우

고립된 경험은 저는 20살 때부터 되게 오랫동안 우울증이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회관계가 다 단절됐던 것 같아요. [고립 청년 6]

○ 아동기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 판정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은둔하면서 많은 친구들의 특징 중에 약간 ADHD적인 어떤 경계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은둔 청년 6]

저희 아이는 이제 중학교 때 그때 이제, 아, 참 말씀을 드리면 어릴 때 ADHD 치료를 받았어요. 심하지는 않았는데 산만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약물치료를 한 2년, 2년 좀 넘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약물 좀 부작용도 있고 밥도 안 먹고 그런 게 있어서 끊었거든요. 그리고 그 끊은 이후에도 한 중학교 2학년 그때까지는 잘 다녔어요. 아무런 이상 없이 학교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은둔 청년 부모 1]

□ 요인 2: 학교생활의 어려움

- 아동기 혹은 청소년시기에 전학을 가거나, 학급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또래들과의 친구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워 은둔(고립) 생활이 시작되기도 함(임형문 외, 2020).

어렸을 때부터 쪽 혼자 지내워서 고립 전이든 중이든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은 고립 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히 어렸을 때 되게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왕따 당해보기도 하고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되게 뭔가 좀 불편한 게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립 청년 1]

- 학업 스트레스 역시 고립(은둔) 생활의 계기가 되기도 함.
 - 2020년 광주광역시에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12.5%가 학업능력이나 성적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라고 답함.
- 대학에서 적응의 어려움으로 고립(은둔) 생활로 빠지는 경우도 있음.

□ 요인 3: 이행과정 중 실패경험 - 취업, 대학 입시실패, 대학교에서의 적응 문제

- 고등학교 진학 이후, 장학금을 받지 못해 꿈의 좌절

그래서 집에서는 뜯어말리는 공고에 가서 내가 장학금을 받아서 집에다가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내가 그렇게 다니겠다. 나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리고 딱 나가, 큰 소리 팡팡 치고 나가, 고등학교를 이제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시험성적도 높았어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꽤 괜찮은, 평균이 95였나 92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당연히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교무실에 찾아가 가지고 "선생님 실례합니다." 가가지고 장학금 얘기를 딱 꺼냈더니 "야 너 아깝다. 7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 5등까지는 장학금을 지원해준다는데, 그런데 그때 뭔가 덜컥 했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집에다는 큰 소리 평평 쳤는데, 망했네.' [은둔 청년 5]

- 대학입시인 수능의 연이은 실패 후, 대학진학에 실패거나 원래 지망한 학교가 아닌 대학교에 진학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20살 이후에 그때 뵈가 저의, 항상 그런, 저는 항상 좀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그게 힘들었는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참았던 게 20살 이후로 그게 터졌던 것 같아요. 그게 입시 실패로, 재수를, 대학교를 다니는 그거를 실패하면서 재수를 하면서 [고립 청년 2]

이제 그래도 수능을 봐서 집 근처에 전문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더라고요. 전문대 진학했는데 한 그것도 너무 힘들어져서 2년차쯤에 재적을 당했어요, 출석 못해가지고. 출석을 못해서 재적을 당하고 그 이후로 쪽 은둔했죠. [은둔 청년 1]

○ 대학교 진학 후, 성적 문제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이제 트리거가 됐던 거는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실패감이 되게 컸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제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기대 받고 엄마는 당연히 내가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당연히 나는 1등 해야 되는 애고 그랬는데 대학교를 좋은 데를 가니까 내가 낙제까지는 아닌데 열등생이 된 거예요. 엄마가 그거를 못 받아들였어요. 저 스스로도 더 이상 나는 뭐 우수하지 않고 뭐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고 여기 있는 애들 보니까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것 때문에 무력감이 많이 생겼어요. [은둔 청년 4]

○ 장기간의 취업 실패 및 구직 생활이 고립(은둔)의 요인이 되기도 함.

저는 대학교를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대학교도 그만두고 따로 아르바이트 외에는 사회생활이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활동하는 범위라든지 생활패턴이 너무 단조로워지고 ‘아, 이런 게 고립되어 가고 있는 거구나.’ [고립 청년 4]

고립의 경험이 제가 솔직히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좀 인생에 실패가 취업준비기간 한 5년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좀 고립을 많이 했다고 느끼고 그때 좀 많은 정보가 없었고 트렌드에 못 따라갔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좀 고립의 경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고립 청년 8]

□ 요인 4: 군대에서의 부적응

- 학창시절부터 겪어온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군대의 특수한 환경 안에서는 더욱 증폭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음. 이런 가운데, 군부대 안에서 적응의 어려움으로 탈영하거나 자해하는 동기들을 목격하면서 매우 힘들게 버텨냄.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저희 많이 맞았던 세대죠.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제가 많이 탈영하거나 자해하는 애들을 많이 봤고, 자살은 애들은 못 봤지만 군대가 얼마나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다 보니까 [고립 청년 5]

□ 요인 5: 역기능적 가족

- 부모의 갈등, 이혼, 가정불화, 가정폭력, 조손 가정 등 가족 내의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저는 은둔을 시작한 나이가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7살 때쯤이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가정폭력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그때도 굉장히 심했었어요. [은둔 청년 1]

- 부모의 폭언, 부적절한 양육태도나 행동방식, 부모님과의 소통 부재, 부모님의 경계선 성격장애 등

남자는 이래야 한다. 이래야 한다. 이래야 한다 해서, 그런데 제가 낮가림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고난 거였는데 굉장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억압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고립 청년 5]

저희 집은 엄마가 문제였어요. 엄마가 좀 저랑 비슷했거든요, 성격이. 제가 지금 경계성 성격장애가 있는데 엄마는 그 진단만 안 받았지 비슷한 증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그것을 아직까지 인정할 못하고 계시고, 그게 저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좀 성격이 이렇게 뒤틀린 것 같은데, 엄마는 그랬어요. [은둔 청년 4]

어떻게 자살할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그냥 스쿠버다이빙을 아파하고 배웠어요, 스쿠버다이빙을. 그래서 물 40m로 들어가면 살아야겠다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소중함, 살아야겠다는 욕구를 거기에서 배워야 된다고 해서 아빠가 일부러 이제 스쿠버다이빙을 같이 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러고는 본인이 가기 싫은데 보냈어요. [은둔 청년 부모2]

- 성취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완벽주의가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완벽주의 성향을 갖게 되는 당사자는 1등이 아닌 상황이나 사소한 실패에 과도하게 좌절함.

학교에서 사실 잘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뭘 못하면 24시간 동안 자책을 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안 돼.’ 그러니까 되게 쓸데없는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미칠 것 같아요. [은둔 청년 6]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실패감이 되게 컸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제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기대 받고 엄마는 당연히 내가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당연히 나는 1등 해야 되는 애고 그랬는데 대학교를 좋은 데를 가니까 내가 낙제까지는 아닌데 열등생이 된 거예요. 엄마가 그거를 못 받아들였어요. 저 스스로도 더 이상 나는 뭐 우수하지 않고 뭐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고 여기 있는 애들 보니까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것 때문에 무력감이 많이 생겼어요. [은둔 청년 4]

□ 요인 6: 가족 돌봄 책임

- 가족 구성원의 돌봄 책임을 맡게 되면서 관계를 형성할 시간과 정서적인 여력, 기회가 전무하여 결국 고립됨.
 -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최근 이슈가 되는 ‘청년 돌봄자(Young Carer)’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나타남.

살고 있는데 할머니 간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손가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중간, 윗세대라고 하나요? 아버지 세대가 좀 공백인 상태 그때 좀 많이 바뀌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좀 바뀌려고 했는데 올해 8월에 할머니께서 폐암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가족들이 언니가 뭐 회사를 관둘 수 없고 하니까 그냥 제가, 쉬고 있는 제가 이어서 간병을 전담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이제 제 생활비는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아르바이트를 다시 하고 있고요. [고립 청년 3]

□ 요인 7: 경제적 문제

- 집안 경제의 어려움, 특히 국민기초생활제도 수급자로, 학비지원은 되었지만, 생활비 지원이 되지 않아 열심히 살다가 지지체계를 형성할 여력이 없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음.

가정형편이 좀 안 좋아서 수급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학비는 지원되는데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 되고 연년생인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재수하고 동시에 이제 둘 다 대학을 가게 되면서 좀 저희 둘 다 타의에 의한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돼서 그때부터 그냥 학업이랑 알바 병행해서 그냥 되게 바쁘게 살았어요. 그리고 대학졸업 이후도 어떻게든 공백기 안 만들고 취업하려고 이제 취업하고 그냥 바쁘게 살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퇴사를 했고 청년수당 받고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질병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좀 장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니까 정말 거기에서 이제 제 모든 게 다 드러난 거예요. '아, 나는 친구도 없었구나.' 그 동안 바쁘게 살았는데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게 거기에서 다 드러나 가지고 [고립 청년 3]

□ 요인 8: 사회적 지지체계 부재 및 상실

- 주변에 지지를 받을 만한 이들의 부재하거나, 지인 혹은 가족 내에서 많이 의지한 삼촌, 할아버지 등 가족 구성원의 상실과 죽음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집, 학교, 집, 학교였으니까 친구도 없었고, 그래서 친구한테 지지 받는 법도 몰랐던 거죠. [은둔 청년 4]

할머니를 되게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뭔가 죽음이라는 거를 제가, 우울함이나 죽음을 생각했지만 그거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거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확실시해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많이 집에서 못 나오고 혼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립 청년 6]

□ 요인 9: 공적인 소속감 상실

- 공적으로 소속감이 부여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에 실패하거나 취업에 실패하면서 공식적인 소속감을 상실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립된 상태에 놓이게 됨.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좀 인생에 실패가 있었다면 그때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은 걸 포기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그때 한, 약간 취업준비기간 한 5년은 났던 것 같아요. 그때 좀 고립을 많이 했다고 느끼고 그때 좀 많은 정보가 없었고 트렌드에 못 따라갔어요. [고립 청년 4]

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공무원이 되면 이제 최고인데 안 되면 이제 굉장히 이게 뭐랄까, 세상과는 완전히 좀 동떨어진, 세상은 엄청 바쁜 데 제 생활일과표가 이제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안 되니까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고립 청년 5]

□ 종합해보면 위에서는 각 요인별로 설명하였지만, 실제로는 위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최종적으로 고립(은둔) 상태로 도달하게 됨.

뭘 좀 잔뜩 써놨는데, 목록(은둔하게 된 계기)인데 목록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약속을 어겼던 룬 때, 진짜 꿈이 엄마 때문에 좌절된 것, 섭식장애,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정서적인 학대를 했던 것, 괴롭힘, 동기들한테서 괴롭힘 당한 것, 따돌림 당한 것, 무력감, 실패감, 우울증, 성격장애 이렇게 써놨어요. [은둔 청년 4]

10년 전에 대학교 들어가는 거를 실패하고 나서 그때 가족 간에, 가족 아빠가 약간 도박이랑 그리고 어머니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부터 가족 간에 전체적인 문제랑 그 다음에 오빠의 은둔이 겹쳐서 더 이상 무언가 노력을 하는 게 좀 그 당시에는 제가 10대이기도 했고 그리고 20대로 넘어가는 그 혼돈기여서 막 무언가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가족 간에 문제가 합쳐져서 은둔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은둔 청년 3]

제3절 고립(은둔)하는 삶

1.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의 경험

□ 본 연구 결과, 고립(은둔)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등 개인별로 다양했음.

○ 고립(은둔) 상태를 한 번에 벗어나기보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잠시 은둔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은둔 상태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세미 고립(은둔)’ 상태에 머물러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대략적으로는 1년에서 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기간 동안 은둔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왔는데 약간 은둔을 지속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중간 중간 실패하거나 아니면 뭐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을 때는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저도 10년간에 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래프처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은둔 기간은 1년이지만 그게 꼭 1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좀 지금으로서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은둔 청년 3]

□ 생활공간 및 패턴

○ 다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가족과 분리된 공간에서 지내기도 함.

○ 유형 1-1 : 집에 '내 방'이 있는 경우

- 외출을 삼가고 본인의 방에서 게임에 몰두하거나, 잠을 자는 등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
- 남성은 주로 집 안에서 게임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음.

..... 거의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 편한 그 게임 폐인 있잖아요. 게임 폐인 모습이었어요. [은둔 청년 5]

○ 유형 1-2: 집에 '내 방'이 없는 경우

- 내 방이 부재하고, 집안 내 공간을 가족과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부모님이나 기타 가족이 있지 않을 때 최대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짐.

저는 사실 단칸방이라서 어디 뭐 계속 방 안에 틀어박혀있고 이런 건 못 했어요. 이제 그나마 부모님이 맞벌이해서 가지고 두 분이 일하시는 동안 집 안에 있을 수 있었는데. [은둔 청년 1]

○ 유형 2: 독립된 주거

- 부모님과 독립된 공간에서 지내거나 다른 지역에서 자취생활

저는 다행이었던 게 옥탑방에 따로 방을 그냥 해가지고 살았었거든요. 다행히도 화장실이 가까운 데 있었고 가족들이랑 털 마주칠 수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싫어서 대부분 가족들 잘 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은둔 청년 5]

□ 고립(은둔) 상태의 특징

○ 고립(은둔) 청년은 자신의 방에서 머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았음.

○ 학생의 경우, 학교 수업 외에는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외부 사람과 접촉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도서관 등에 가끔씩 들름.

저는 고립 중에 좀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고 좀 사람 보는 것도 두려워서 대학교 다닐 때 항상 정문으로 못 다니고 항상 후문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눈을 마주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 정도로 되게 대인기피하고 우울증이 심했고, 그래서 대학교도 중퇴했고, 그래서 그런 적응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고립 청년 6]

이제 뭐 도서관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도서관에는 갔었고, [은둔 청년 1]

-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고, 수면 패턴도 불규칙하며, 샤워도 잘 하지 않음. 잠을 많이 자는 등 주로 집안에서 불규칙한 생활을 함.

..... 그냥 밖에 나가서 가족을 마주치면 되는데 뭔가 한 소리 들을 것 같은 느낌, 그 갈등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에 씻지도 않게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은둔 청년 6]

저는 은둔했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잠을 잤어요. 사람마다 성향 차이가 있겠지만. 이미 나는 정신적으로나 뭐나 살아는 있는데 죽어있는 상태 같은데 그런데 계속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배고프면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또 자고, 약간 이런 게 저의 주된 패턴이었어요. [은둔 청년 3]

- 집안에서 가족과 대화는 물론 같이 식사하려고 하지도 않거나 할아버지 제사 등 중요한 가족 행사 참여도 드문드문함.

연락 다 끊고 지냈던 것 같고요. 가끔 정말 어쩔 수 없는 뭐 진짜 할아버지 제사 정도 그럴 때 저 아무렇지 않은 척 참석하기도 했지만, 점차 그런 것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은둔 청년 6]

- 친구 등 지인과의 만남을 최소화하거나,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을 친구가 마땅히 없는 경우도 있음.

저는 그냥 힘들 때 제가 좀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모를 때가 가끔 있거든요. 가족에게는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친구나 뭐 지인에게 말을 하고 싶는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 조금 많이 '아, 정말 내가 힘들 때 말할 사람이 없구나.' 그럴 때 좀 많이 고립됐다고 느꼈어요. [고립 청년 3]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이 다 이제 한 동네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거기 집 위치가 또 길목이예요, 하필. 그러면 오다가다 들르는 거예요. 그냥 찾아와서 "야 뭐 하나?" 그리고 괜히 그냥 제 방이 아지트처럼 그냥 담배 한 대 피우고 가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은둔 청년 5]

- 한정된 공간, 주로 본인의 방에서 지내다 보니 체력 관리가 어렵고, 체중관리도 잘 되지 않음.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푸는 방법이 먹는 걸로 주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이 늘니다. 이제 체중이 느는 거 갖고 또 스트레스예요. 거기에서 이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볼품이 없어진다고 느끼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뭔가 바깥생활을 하기가 싫어지고 그런 데에서 오는 게 계속 돌면서 이제 뭔가 그런 악순환을 스스로 심화시키게 된 그런 것들이 뭔가 고립에 대한 경험을 좀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립 청년 2]

- 반복적인 실패와 좌절감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무기력한 증상을 보임.

되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뭘 집 밖을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면 사람 눈을 맞추는 것조차 못하니까 그거를,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집을 더 안 나갔겠죠. [고립 청년 2]

나 자신이 우울하니까 어떤 일을 할 기력조차 안 나고 뭔가, 저는 고립이라는 게 사회구성원으로 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 그런 걸로도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생산성 없이 살다 가는 나중에는 진짜 내가 더 벗어나고 싶어도 아예 못 벗어나, 내 의지대로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겠다. [고립 청년 4]

- 우울증, 불안에 대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래서 그때 약간 좀 많이 제가 후유증이 많아가지고 워낙 우울증이 좀 심해서 지금도 몸이 힘들 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좀 남들한테 좀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고립 청년 8]

- 심지어는 자살/ 자해 시도를 하기도 함.

그리고 되게 그때는 좀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고립 청년 6]

제가 한 23살 때쯤에 계속 방에만 있으니까 아빠가 이제 맨날 맨날 폭언을 하시다가 그날은 또 유독 너무 심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그때 자살 시도를 했어요, [은둔 청년 1]

2. 고립(은둔) 청년을 둔 부모의 경험

□ 부모가 이전에 접하지 못한 특이한 개념 및 현상이라, 자녀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림.

.... 특별히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이런 걱정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제 집에 오면 이제 검색하는 게 일어났죠. 여기저기 알아보고 실제로 또 상담도 다녀보고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어느 그 웹사이트인가에서 이제 이런 단어를 접하고 거기에 나오는 몇 가지 특징들 뭐 밤낮이 바뀌어있 다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다거나 뭐 이런, 이게 이제 그런 쪽인가 하고 이제 그때 비로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런 개념을 제가 잘 몰랐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은둔 청년 부모 1]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가?' 우리 아이한테 왜 이런 일이 있고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뭐 다들 방법을 몰라서 [은둔 청년 부모 2]

□ 자녀의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되면서,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됨. 한동안은 주변 가족 및 지인에게 거의 말도 하지 못하고, 부부가 속으로 끙끙 앓음.

네, 이제 뭐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 아이가 이렇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았고요. 뭐 직장에 와서는 저도, 그리고 똑같이 그냥 생활했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참 괴롭죠, 속으로는. 그리고 이런 일을 겪었다. 뭐 어디 크게 말하고 다니지도 않았고요. [은둔 청년 부모 1]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이제 동일시하잖아요. 자식의 성공하고 부모의 성공하고 동일시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를 안 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매일 그냥 거의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울고 지내고, [은둔 청년 부모 2]

○ 이런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녀의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도와주려는 태도가 아닌 무관심 혹은 비협조적인 태도는 기존의 불편한 부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심지어는 이혼으로 귀결되기도 하는 등 고립(은둔) 자녀를 둔 가족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됨.

그게 결정적인 계기였죠. 약간 비협조, 아빠의 비협조, 전에도 좀 양육방식이 다른 스타일은 있었는데 학교를 안 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이었고 이제 아빠는 그 거에 별 이제 개입을 안 하고 그렇게 두는 게 저는 가장 제가 태어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자식의 일에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나, 뭐 그 전에도 물론 뭐 아주 그렇게 많이 크게 뭐 이렇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은둔 청년 부모 1]

제4절 탈고립(은둔)을 위한 당사자의 욕구와 성공·저해 요인

1. 고립(은둔)을 벗어나기 위한 당사자의 욕구와 계기

□ 이번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고립(은둔) 상태에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음.

○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과 의지를 뚫고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좌절을 겪기도 함.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했던 경험에 대한 상처로 인해 주저하기도 함.

고립을 벗어나는 데는 사실 아직까지 성공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고립 청년 4]

□ 고립(은둔)을 벗어난 계기는 여러 세월 다양한 요인들이 쌓여서 작용함.

○ 혹은 아래와 같이, 특정 사건으로 인해 생활패턴의 변화가 찾아오기도 함.

방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새벽시간에 물을 가지러 갔어요. 주방에 이제 물을 가지러 갔는데 어머니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손에는 물컵이 딱 들려져 있었는데 주방 찬장 밑에 검은색 봉투 안에 초록색 병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엄마랑은 좀 시간을 다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방문 열고 나와서 밥 먹고 어머니랑 커피 한 잔 하고 드라마도 좀 보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가족들이랑 다시 지냈던 것 같아요. [은둔 청년 5]

○ 나이에 대한 압박과 다른 사람들처럼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고립(은둔) 상태를 벗어나려고 시도함.

순전히 이거는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굉장한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기감만 느끼지 사실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이제 그런 동기부여는 공포에 의한 동기부여죠.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안 나가면 이제 약간 뭐 이제 더 방법이 없게, 사실 지금도 조금 쉽지는 않지만, [고립 청년 5]

- 특히 남자들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 고립(은둔) 생활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함.

최초에 은둔할 때는 군대 가기 전날까지 은둔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군대가 약간 계기였어요. ‘아, 여기 가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가서 뭐 이렇게 원만하게 잘 지내기는 했지만 돌아와서도 근본적인 어떤 가족의 소통이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또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은둔 청년 6]

-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되는 등 공공에 의한 지원을 받아 은둔을 벗어나기도 함.

첫 직장생활에 실패하고 나서 그때부터 은둔을 했어요.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긴급복지라는 제도가 있어서 긴급하게 긴급을 제공해주는데요, 위기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저를 찾아내더라고요. 3개월 요금이 밀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스가 끊겼네, 전기가 끊겼네, 그런 걸 포착해서 주민센터에서 저를 찾아오셔서 긴급복지지원을 해주셨어요. 저는 아무 곳에도 안 나가고 집하고 연락도 끊기고 그런 상황에서 이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기도 했는데 생활적인 지원을 받았고요. 그렇게 나아진 상황에서 우연히 청년재단의 링크를 보게 되어서 일 경험을 할 수 있구나, 참여해보자라고... [청년재단 “도란도란 라운드 테이블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한 시간’”참여자]

2. 고립(은둔) 상태를 벗어나기에 도움이 되는 요인

-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고립(은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병행하였음.

- 노력 1: 상담센터나 정신의학과 방문

한 1년 반 동안 정신과 다니고 상담받고 뭐 그렇게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그렇게 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거든요. [고립 청년 7]

○ 노력 2: 취업 시도

- 주위 친구 및 지인들의 도움으로 여러 번 면접을 보기도 함.

이제 지네들 뭐 일한다고 그러면 한 자리 남으니까 막 강제로 씻겨가지고, 화장실에 처박은 다음에 막 강제로 씻겨가지고 머리예다 샴푸 뿌리고 막, 지들 돈 사비 털어가지고 미용실 가서 애 머리 좀 잘라주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접 보러 갔는데 거기 면접에서 또 떨어지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은둔 청년 5]

○ 노력 3: 지원기관 방문

- 버스 정류장, 페이스북, 신문 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센터의 존재를 접하게 됨. 혹은 다른 센터의 직원을 통해 소개받게 됨. 혹은 청년 사업 참여의 경험으로 인해 관련 센터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됨.

카카오톡에 정보풍풍이라고 청년지원정책 다양한 걸 보내주는 소식 플러스 [고립 청년 4]

저는 평소에 도움 될 만한 정보들 찾는 게 습관인데 이쪽에서 서울청년 포털에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좀 계속 눈팅하다가 이음센터 공고 올라왔길래 신청했습니다. [고립 청년 1]

작년에는 이 생명의 전화 복지관에서 일을 할 경험이 돼 가지고, [고립 청년 6]

저도 청년수당을 받았는데요,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청년 ... 그거 보는 그거 한 번씩 보거든요. ... 신청하자 해서, 그런데 노량진 ... 도시락 주는 사업도 있어요. [고립 청년 5]

어쩌다가 뭐 검색창에 뭐 은둔형 외톨이 뭐 이런 걸 쳤어요. 그때 무슨 페이스북인가 그 페이지를 보게 됐었어요. 고립청년지원, 모집대상자 보니까 '웬지 나 같은데' 이래 가지고 그때 바로 신청했던 것 같아요. [고립 청년 7]

저는 처음에 버스 타다가 현수막 보고 지원을 했어요. [고립 청년 8]

○ 노력 4: 민간단체 지원사업 참여

- 고립(은둔)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공동생활 등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밖으로 한 발짝 나아가려고 노력함.

저기 K2에서 잠깐 다른 청년들이랑 그런, 애초에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내가 이런 걸 느껴도 이상하지 않구나.' 뭐 그런 조금 다른 청년들이랑 있었을 때보다는 좀 편안한 감이 있었고 그런 덕분에 약간 불편감은 좀 줄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립 청년 1]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름대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K2라는 단체 홈페이지를 처음 들어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다시는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가 어쩌면 다시 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자취하고 있던 방을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빨리 빼고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청년재단 "도란도란 라운드 테이블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한 시간' 참여자·은둔 청년 6]

- 프로그램 경험 및 만족도: 고립(은둔) 청년의 만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이고 매우 만족스러워 하였으나, 오랜 고립(은둔) 생활로 인한 관계적 어려움으로 기관 및 제공자와의 갈등을 겪기도 함.

이번 올해 서울시에서 청년일자리 그 사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통해서 XXX라고 잠깐 인턴으로 들어갔었는데.... 거기가 사회적 기업이고 좀 이해해주려고 많이 맞춰주려고는 하셨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쪽 있어왔던 사람들이랑 그 잘 맞지 않는 게 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푹푹한, 거기 계신 분들이 푹푹한 사람을 찾으시기도 하고 좀 자꾸 저도 힘들고 거기 계신 분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렇게 나왔죠. [고립 청년 1]

청년이음 프로그램이었어요. 다행히 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래도 좋은 복지사 선생님하고 친구들 만나서 지금까지 집단 프로그램 끝난 이후에도 그 모임 소모임 식으로 하면서 잘 이어오고 있어서, 그 동안 했던 스스로의 치유랑 좋은 프로그램이 만나가지고 좀 고립 벗어나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고립 청년 7]

- 노력 5: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주변인에게 털어놓으며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통해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낌

상담센터에 연락하기 전 주변에 털어놓았던 것이 가장 큰 시작이었어요. 그때 털어놓을 때 심정이 그랬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나랑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은둔 생활을 하면서 거짓말이 늘어나고, 학교도 자꾸 안 나가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잘 들어줬습니다. 생각보다 이걸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인식을 개선해줬어요. 이렇게 다시 사회의 원 안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청년재단 "도란도란 라운드 테이블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한 시간' 참여자·은둔 청년 6]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점이 되게 커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생각이 바뀌게 나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XXX님이 만드신 “은둔도 스펙이다.”라는 그 문구가 저한테 너무 꽂혀가지고 ‘내 은둔을 갖다 쓰으면 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둔 청년 5]

3. 고립(은둔)을 벗어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요인

□ 요인 1: 혼자 노력하는 어려움과 탈고립(은둔) 실패 경험 누적

-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개인적으로 노력하지만 방법을 알지 못하고 가족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체계가 부재하여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함.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름대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극적인 자료들을 공개했는데, 쓰레기장이 된 제 방을 보셨을 거예요. 그 상태를 깨끗이 치웠다가 반복했다가 깨끗이 치웠다가 반복했다가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상담센터를 찾아가 보고 연쇄적으로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찾아가 보고 그래도 잘 안됐어요. 혼자 주인공들은 어떻게 해결하나 영화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구글에서 자동 번역된 일본 논문을 찾아보고 구글에 한국의 히키코모리 지원을 쳐보니까 K2라는 단체가 나왔어요. 마침 K2에 전화기가 고장나서, 일주일 정도 좌절을 했어요. [청년재단 “도란도란 라운드 테이블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한 시간’”참여자·은둔 청년 6]

□ 요인 2: 탈은둔을 위한 정신의학과 치료 효과성 문제

- 정신의학과에서 제공하는 치료가 본인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않았음.

타의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너무 집에 있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정신과를 끌고 갔거든요. 끌리다시피 가 가지고 갔는데 너무 거기에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고립 청년 5]

□ 요인 3: 부모님의 편견과 통제

- 자녀는 치료를 위해 상담센터나 정신의학과에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부모님의 정신의학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자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함.

집에서는 제가 뭐 어디 가서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님은 또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니까 정신과나 막 이런 데 가는 걸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진짜 정신 이상한 사람들, 정말 그렇게 소위 말해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이 가는 데다 생각하니까 뜯어말리시고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아예 그냥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반복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은둔 청년 2]

□ 요인 4: 고립(은둔) 기간 동안 너무 빨리 변해버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함.

- 한 청년의 경우, 알바를 구하던 방식이 고립(은둔) 전과 후가 매우 달라져, 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함. 또한, 이러한 변화한 방식을 알려주고 지도해 줄 주변의 자원 부족했음.

미성년일 때는 그냥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그냥 “사람 구함” 뭐 그러면 들어가서 “여기 사람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구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였어요, 진짜. [은둔 청년 5]

□ 요인 5: 모든 게 무섭고 두려운 마음

-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움.

혼자서 이렇게 뭔가 이거를 의지, 논리도 하고 원리, 그러니까 원리도 알고 어떤 걸 하면 뭐가 바뀌겠다는 것도 대충 경험적으로 아는데 실천이 안 되거든요. [고립 청년 2]

어려운 점은 생각이 패턴화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느껴요. 계속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상담도 많이 받아봤는데 그 생각하는 뇌의 길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그 같은 생각을 반복하더라고요, 안 좋은 쪽으로. 자책하는 말도 많이 한다고 또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차라리 좀 도전을 할 누군가를 사귀고 싶으면 정말 그렇게 막 그냥 정말 나가서 사귀어보면 되는데 또 무서워서 뒷걸음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고립 청년 3]

□ 요인 6: 부정적 사회생활 및 노동시장의 경험 축적

- 갖은 용기를 내서 방 밖으로, 집 밖으로 나왔으나, 사회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집 안, 특히 방 안이 안전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은둔생활로 접어들.

사회에 많이 나가봤었어요. 시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운이 안 맞아 주는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일을 해서 돈을 제대로 준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나가 봐야 뭐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실하게 일하면 되겠지 했는데 뭐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 게 낫지 않아? 이거는 내가 한 만큼 벌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은둔 청년 5]

□ 요인 7: 은둔 기간의 경력, 학력 공백 발생

- 취업을 위한 면접 시, 경력 및 이력의 공백 발생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이러한 공백이 취업시장에서 장애물로 작용함.

왜냐면 은둔을 한다는 거는 그동안 보통은 스펙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을. "그 기간에 뭐 했어?" 아니면 공부라도 했든가 어학을 쌓았든가 자격증을 땀든가 이게 아닌데, 그 사람은 마음이 아파서 집에 있든가 아니면 문제가, 무언가에 문제가 있어서 그 집에 있었는데 1차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은둔 청년 3]

지금 사회가 경력을 요구해요. 뭘 하려고 하면 경력을 다 달라고 해요. 하다못해 알바 하나 하는데도 경력자를 원하는데, 그런데 고립 청년들은 경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증명할 게 없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같이 경쟁을 해야겠지만 그게 같은 시기에 같은 실력이 됐는데 다만 경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고립 청년들을 떨어뜨린다면 저는 그것도 좀 차별이라고.... [고립 청년 5]

4. 자녀의 고립(은둔) 극복을 위한 부모의 노력

-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은둔 상태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노력을 총동원함.

- 노력 1: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에 가는 등 주변의 자원을 모두 활용

하야튼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뭐 한의원도 데려갔었고 상담도 받아보자, 상담도 몇 번 안 갔지만 데리고도 갔었고, 해외에 자기는 이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거기도 보냈었어요, K2 XX에. 거기도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아이가 완전히 이제 안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래도 좀 따라줬었던 것이 있었고 저도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데는 다 갔었던 것 같아요. ... [은둔 청년 부모 1]

저희 아는 분이 가족상담소를 하세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제가 가서 얘기를 했고요, 저희 남편이 가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분이 살고 싶어서 계임을 하는 거다. 개는 지금 살고자 발악을 하는 거니까 계임하는 거 지지해주고 계임할 수 있도록 그냥 편안하게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알게 되니까, 뭔가를 이렇게 알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힘이 생긴다 할까요? 길을 보는 것 같은, 그게 굉장히 힘이 됐고, [은둔 청년 부모 2]

- 노력 2: 민간단체(예를 들어, K2인터내셔널코리아)를 알게 됨에 따라, 자녀는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부모는 여기서 알게 된 부모 모임에 참여하게 됨.

K2에 아이를 이제 보냈던 분들이 적은 수치만 2명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거기에서 열쇠방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한동안 하다가 이제 청년재단하고 K2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K2에 관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청년재단에서 이제 부모 교류회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 나 혼자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의외로 굉장히 많구나.'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같은 처지라는 거가 굉장히 힘이 많이 됐었어요. [은둔 청년 부모1]

그 모임을 하면서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이 같은, 저는요 이런 부모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이런 부모님들과 함께 모이니까 아, 이제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과 만나는 자체가 위로가 되고 '아, 이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게 공유가 되어지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저희 아이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은둔 청년 부모 2]

- 노력 3: 은둔 자녀의 상태를 숨기기보다는 주변에 알려 도움과 양해를 구하고, 이웃을 지지체계로 만들.

저는요 이것을 다 알렸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이 상황을 다 알도록.... 이분들이 다 나의 지원체계가 되도록.... [은둔 청년 부모 2]

제5절 탈고립(은둔)을 위한 정책 수요

1.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를 위한 지원

□ 첫째, 고립(은둔)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 고립(은둔) 기간별, 수준 및 상태별, 그리고 연령별로 다양하고도 차별화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10대는 10대의 필요들이 다르고 20대는 20대의 필요들이 다르고 또 그 이후에는 또 다르기 때문에 좀 연령별로, 그리고 은둔 기간별로 좀 세분화하는 그런 대책이 있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요. [은둔 청년 부모 1]

은둔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좀 범위가 다양하잖아요. 저처럼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아니면 진짜 그런 문제가 아주 심해서 그런 아예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는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사회 도움을 받아서 극복을 했다, 아니면 좀 도움을 받아서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고립 청년 1]

- 또한, 고립(은둔) 청년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편해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되, 언제든지 고립(은둔) 밖에 벗어나고자 할 때는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그러니까 정말 혼자 있는 게 좋은 청년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정말 나서고 싶은 사람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 단어를 보면서 계속 동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듯이 누구나 이제 거기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립 청년 3]

□ 둘째, 심리 및 관계형성 프로그램 지원

- 고립(은둔) 청년의 외로움과 동시에 과거에 겪은 여러 상처와 실패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을 통제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함.
- 고립(은둔) 청년은 장기간 고립(은둔)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여러 취약성이 있음. 하여, 사회에 나가기 전, 이들을 위한 대인관계 및 사회성을 회복 및 향상할 수 있는 맞춤 지원이 필요함.

참여기회? 이런 청년이음센터에서 예를 들면 하는 관계형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심리적 정서 차원으로 상담이랑 연결해주는 이런 것도 다 제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내 역량을 알아보고 심리상담 지원을 받으면서 '아,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뒤돌아보고 뭔가 좀 행동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고립 청년 4]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 "대인관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인관계에 관한 모임을 이렇게 저희가 솔직히 못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 만드셔서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고립 청년 6]

사회성이나 갈등 해결 능력 이 부분은 참 아직도 아쉬워요. 그냥 정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학교생활을 하고 친구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뭐 이리면서 갈등 관계, 갈등관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못 배우는 경우도 있죠. [은둔 청년 부모 1]

□ 셋째, 성장기 자녀의 신체 발달 지원

- 10대 성장기에 고립(은둔)을 시작하는 이들은 불규칙한 생활,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인하여, 신체 발달 및 성장이 아주 더디거나 어렵거나 등의 문제가 있음.

10대 후반을 아이가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또 별걱정이 다 있었는데 아이가 아직 성장기잖아요, 성장기. 그런데 그런 걱정도 했었어요. '저렇게 맨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먹는 것도 부실하면 키도 안 클 텐데'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러니까 신체 성장적인 면, [은둔 청년 부모 1]

□ 넷째, 고립(은둔) 청년만을 위한 별도의 일 경험 사업 마련

- 일반 청년과 달리, 고립(은둔) 청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 경험 프로그램을 따로 분리해서 개설할 필요가 있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 경험이 그냥 똑같은 그냥 평범한 청년들이랑 하면 안 되고 고립청년을 대상으로, ... 왜냐면 고립청년이 이렇게 청년이음센터에 지원하는 것도 솔직히 엄청 용기를 내고 힘들게 지원한 거거든요. 저.... 뭔가 일머리 교육 같은 것도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회 경험을 이렇게 좀 초기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같이 쌓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고립 청년 6]

- 특정 산업 혹은 직종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일 경험에 대한 지원 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취업을 할 생각도 없어서 프리랜서로 준비 좀 하려고 지금 막 아등바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 거기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정보를 얻고 싶은데 무조건 다 자기 탐색은 다 취업 진로고 참여형 보면 뭐 마케팅, 광고기획, 사무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미 해서 실패를 했던 건데, 창작 그런 쪽에 좀 뭔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MZ세대라고 해서 이 세대는 정말 회사에 그렇게 미련이 없는 세대인데 왜 아직도 무슨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취업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고립 청년 3]

○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인큐베이팅 일자리 사업 마련

- 일반청년과 달리 고립(은둔) 청년은 고립 기간 경력에 있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일반청년과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하여, 이들의 공백 기간을 상쇄할 만한 경력을 형성하고, 사회에 나갈 때 대인관계 등 사회성을 배양하기 위한 수련 기회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일반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는 서비스직이 많더라고요, 주로. 그래서 진짜 계속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맞지 않는 것 같고, 재택 일이라든가 아니면 조금씩 ... 만나서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은둔 청년 3]

- 고립(은둔) 청년이 사회에 바로 나오기 전, 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 등의 일자리 공간을 마련하여, 여기서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일 경험을 쌓도록 한 후, 사회로 내보내는 과정이 고려되어야 함.

조금 드는 생각이 어떤 거를 그냥 1차원적으로 뭐 6개월 뭐 해주고 3개월 일 해주는 게 아니라 약간 그들만의 라운드에서 좀, 거기에서 사람을 뽑아서 1차적으로 한 다음에 그 사람 다음에 또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되면 좀 어떤 곳으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사회로 나올 수 있게 이런 단계 별로의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은둔 청년 3]

약간 인큐베이팅 시스템처럼 이렇게 아직 사회에 나갈 준비, 은둔을 기존에 경험했던 사람들끼리 어떤 뭐 조금씩 창업이라도 준비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왜 스타트업도 다양한 인큐베이팅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 그들 안에서 어떤 그렇게 돼서 조금씩 사회에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줘야 된다는 생각 들고, [은둔 청년 2]

- 고립(은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규직과 같은 일자리 경험뿐 아니라 파트타임 일자리와 같이 단시간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이 필요함.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보통 사람들보다 좀 그런 거 대인관계 하는 걸 좀 더 힘들어하는 편이다 보니까 일자리라고 하면 요즘에 공공일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거 공공일자리 통해서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하루에 2~3시간 일하더라도, 하루에 2~3시간씩 일하고 돈은 많이, 한 달에 뭐 3~40밖에 못 벌더라도 내가 그래도 최소한 여기 사회인으로서 뭔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배우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공일자리 같은 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립 청년 1]

사실 저 같은 경우도 ADHD랑 조울증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근무를 오래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고립 청년 2]

- 다섯째, 고립(은둔) 경험이 발현되는 청년의 연령대를 중심으로 연령 연속성 확보

- 청년 법정 연령의 나이에 속한 자들만이 고립(은둔)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함. 그 외 지원이 필요로 한 이들은 몇 살 차이로 인해 나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원 자격에서 원천 봉쇄되기도 함.

또 나이를 좀 넓혀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도 그런 나이가 많으신데 못하시는 분도 알고 있어 가지고, [고립 청년 6]

-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최소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프로그램이 필요

일 경험은 단기적으로, 왜냐면... 그런데 제가 보면 그게 단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지속,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이어야 돼서... [고립 청년 5]

- 여섯째, 고립(은둔) 프로그램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

-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하지만, 내년에 지속되지 않거나, 사업이 중간에 중단 혹은 종료되는 등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함. 그나마 얻은 지지체계를 재상실하는 경험일 수 있음.

어려운 점은 이게 프로그램이 올해까지라고, 제가 12월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 너무 그게 걱정한 거예요. [고립 청년 7]

사업들이 이게 아무래도 1년 단위 집행이 되다 보니까 특히 연말 사업 같은, 연말 프로그램 같은 거에 참여하다 보면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서 뭔가 조금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거랑 별개로 프로그램 같은 거는 조금 연속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립 청년 2]

이제 12월에 모든 게 끝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재단에서 하는 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은둔 청년 3]

2. 고립(은둔) 청년 가족을 위한 지원

□ 고립(은둔) 청년을 둔 부모,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보제공 창구, 교육 제공

- 부모들은 자녀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러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양육해야 하는지, 자녀에게 과연 어떤 것이 최선인지 등에 대한 정보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해, 관련 전문가로부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더 나아가 교육 및 상담을 받고 싶어 함.

부모들은 이제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나 뭐 이런 하야트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 교류회 이런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전문가가 없어 보여요. [은둔 청년 부모 1]

... 이제 부모들이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제 이런 사실을 이렇게 꺼리시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이렇다, 뭐 저렇다, 꺼리시는데 그 반면에 또 굉장히 알고 싶은 욕구, '어떻게 해야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목말라 하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저도 좀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심리 정서적으로 잘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하야트 좀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은둔 청년 부모 2]

3.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사회적 여건 마련

□ 첫째, 기존 지원 및 프로그램의 접근성 제고

-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당사자가 이를 아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주변인이나 센터 등을 통해 알게 됨. 하여, 직접 당사자에게 찾아가거나 당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 통로 마련이 필요함.

지금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 종류나 이런 거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고립 청년들한테 닿기까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잘 찾아보지 않으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 복지사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공공사업은 많이 있는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좀 더 청년들한테 찾아가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립 청년 7]

우연히 (서울로) 올라왔는데 우연히 은둔고수가 있었어요. 마침 성북구, K2 10분 거리, [은둔 청년 1]

□ 둘째, 고립(은둔) 청년 발굴에 많은 자원 투입

- 고립(은둔) 청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들을 식별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작업임. 향후, 이를 위한 다양한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발굴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저도 나이가 저는, 저도 사업 마지막 나이예요. 그래서 지원한 건데, 그런데 이게 진짜 나이, 저는 만약에 20대 때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제가 더 빨리 이런 고립의 단계에서 탈출을 했을 텐데 그거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저 30대 돼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걸 되게 발굴을 많이 해주시고 [고립 청년 6]

□ 셋째, 공공에서 제공하는 무료 혹은 저렴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부모들은 자녀의 상태 호전을 위하여, 갖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지만, 때로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비용적 측면이 부담이 되어 선뜻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또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이제 참가료가 너무 비싼 그런 곳도 있고, 굉장히 비싸요. 몇십만 원씩 해요. 그리고 몇 회기 뭐 이렇게 하고, 뭐 무슨 심리센터, 또 무슨 협회 뭐 이러면서 하는데 이런 돈이 좀 개입되지 않은, [은둔 청년 부모 1]

□ 넷째, 공공에서 제공하는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의 자격조건 완화

- 관련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함. 때로는 이러한 요건들이 신청하는 의지를 꺾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고립해 있거나 이제 심리적으로 에너지가 없다 보니 그런 걸 참여하고 그러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신청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못 받아먹는 거죠... [고립 청년 1]

무슨 뭐 청년 뭐 수당 있고 뭐, 있기는 한데 그거를 우울하면 찾아보기 힘들어요. 의지가 안 생기니까, 그리고 뭔가 있어도 뭔가를 항상 증명해야 돼요. 자산을 증명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증명해야 되고, 너무 거기까지 닿기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고립 청년 7]

- 공공 및 민간의 지원은 제한된 예산과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관계의 단절은 경제력과 무관한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므로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대상자로 포괄할 필요가 있음.

저는 처음에 민간 지원이나 공공 지원도 잘 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가족의 소득 단위로 묶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돈을 좀 잘 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랑은 친하지 않아서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재단의 지원은 소득도 안 따지고, 그래서 제가 더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상태의 나도 누가 도와주는구나... 이런 지원을 못 받았다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 지원이 있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것과 융합해서 포텐셜이 터졌던 거지 혼자서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청년재단 “도란도란 라운드 테이블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한 시간’” 참여자·은둔 청년 6]

- 정부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은 중복 수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비교하며 선택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함. 이런 인지적 제한은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사업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함.

이런 게 굉장히 조건이 많았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최대한 어떤 걸 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하고 골라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많이 어려움도 겪고 '아, 이거를 받으면 이것도 못 받으니까 이거 받으면 나중에 이것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소득이어도 그런 중복수급의 제한 이런 게 좀 완화되고 좀 받는데 부담이 덜해지면 좋지 않을까. [고립 청년 4]

□ 다섯째, 차등적 경제적 지원

- 고립(은둔) 청년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탈고립(은둔)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함.

그냥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은 정말 돈으로 결정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되게, 그러니까 아직 답을 못 내리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저도 요즘 정치권에서 말하는 기본소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저생계비는 유지를 하면서 좀 안정적인 생활과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것. [고립 청년 3]

- 하지만 경제적 지원이 은둔 청년의 은둔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함.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그냥 그 아이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그 가족들을 위한 연장. 양육비 같아... [광주광역시 2020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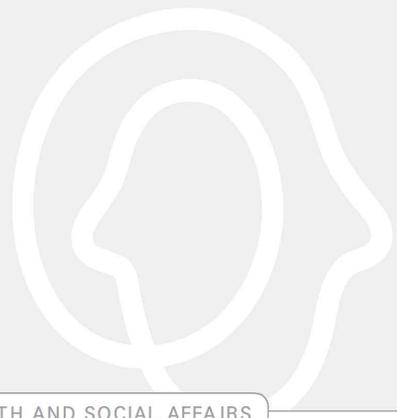
□ 여섯째,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와 그들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 사회에서 고립(은둔)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태도)의 전환이 필요

요즘에도 막 병 같은 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상한 사람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상한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이 아니라 뭔가 '그냥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접목시키는 것도 그 사람들을 앞으로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은둔 청년 3]

- 당사자 또한 고립되거나 은둔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탈고립(은둔)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므로, 고립(은둔) 경험을 인지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 함.

처음에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은둔형 외톨이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 단어가 있는 줄도 몰랐고요,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가 어느 때처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무 살부터 재단을 알게 되는 스물일곱 살 무렵까지 은둔했어요. [청년재단 “도란도란 라운드 테이블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한 시간’” 참여자·은둔 청년 6]



제6장

국내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실태와 방안

제1절 민간 영역의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실태

제2절 지자체의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실태

제3절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제 6 장

국내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실태와 방안

제1절 민간 영역의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실태

- 일본의 히키코모리 현상을 인지하게 되고, 국내 은둔형 외톨이를 발견하고 사회적 관심이 발생하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체계가 마련됨.
- K2인터내셔널코리아는 등교 거부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일본의 비영리기관 K2인터내셔널 그룹의 한국 지부로서, 등교 거부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니트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청년재단은 비영리 공익재단으로서 2018년부터 ‘청년체인지업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 고립된 청년에게 관계를 맺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존감 회복과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부모교류회를 운영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은둔형 외톨이는 정신과적 치료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정신과 및 심리적 접근 기반의 민간 상담센터에서 일부 사례를 다루고 있음.
- 2020년 11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첫 연대 조직인 “한국은둔형외톨이 지원연대”가 발족했으며,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정서 지원, 관계 역량 지원, 직업 역량 교육, 전용 공간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의 회원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함.
 - 민간 기관은 당사자와 현장의 필요로 생겨났지만 예산 규모도 작고 인력이 소진되는 등 불안정하여 공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 절에서는 은둔 청년과 고립 청년에 대한 민간 지원 사례로서 청년재단의 체인지업 지원사업과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주관 고립 청년 지원사업의 사례를 검토함.

1. 은둔 청년 지원: 청년재단 체인지업 지원사업

□ 청년재단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에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어 2016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부터 기업 채용박람회, 신생 벤처기업과 청년 인재 매칭지원, 모바일게임 기획자 등 인력 양성, 면접비용 지급 사업 등의 일자리지원사업에 주력해왔음.

○ 사업을 진행하면서 은둔 청년을 발견하게 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년 체인지업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소속감과 안정감 없이 고립된 청년의 자존감과 근로의욕 고취를 목표로 아래와 같이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음. 여기에서는 체인지업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함.

[그림 6-1] 2018~2020년 청년재단 체인지업 지원사업 추진 과정



자료: 청년재단. (2021a).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내부자료)

가. 사업목적 및 대상

□ (사업목적) 은둔형 외톨이 성향의 고립된 청년들에게 새로운 관계 맺음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사회적응 및 자립이 어려워 고립된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미

취업 청년으로, 6개월 이상 가족 외 인간관계 및 사회접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존감 및 의욕 결여 등으로 고립된 상태로서 고용 및 복지 등 사회적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연간 최대 당사자 50명과 참여자의 가족 지원을 목표로 하며, 사례관리자는 2명(팀장 및 실무자)임.

나. 지원내용

- 다음 그림은 청년재단 체인지업 지원사업의 추진 절차임. 참여자 발굴부터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두고 초기 면담과 공동생활 및 1:1 지원, 부모 지원 등 개별 맞춤형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사후관리를 통해 사례를 추적 관리함.

[그림 6-2] 청년재단 체인지업 지원사업 추진절차



자료: 청년재단. (2020.12.13.).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내부자료)

- 단계별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여자 발굴) 고립(은둔) 청년 발굴

- 월 1회 개최하는 부모교류회 및 네이버 카페 등 당사자 및 가족을 통한 참여자 발굴
- 활동기관, 유관기관, 지역사회 추천 등 관련 네트워크 활용

- (초기면담) 참여자와 가족에 대한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당사자 상태 및 정도 파악 후 적합한 프로그램 참여 유도
- (심리상담) 심리상담, 정서 치유,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존감 및 삶의 의지 회복 지원
 - 참여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수평적 안전망 확보
 - 참여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과 안정적인 가족관계 재구축 지원
- (공동생활) 생활변화를 지원하고 자조모임을 통해 지지체계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도모함.
 - 비슷한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새로운 공간과 환경의 셰어하우스에서 규칙적으로 공동생활하며 함께 생활하는 법과 변화하는 법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지원함.
 - 강한 불안감에 활동량이 적고 사회성이 낮으며 가족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함.
- (관계형성) 당사자별 자립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강화를 1:1로 지원
 - 지원 담당자와 참여자 간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개별 사례에 적합한 맞춤형 해결방안을 모색
 - 소규모 그룹 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한 신뢰 관계망 확장을 도모함.
- (자립경험) 은둔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 경험처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연계하여 사회 진입 및 정착을 지원
 - 일 경험처 외부에 전담 멘토를 배치하여 업무환경 적응 지원 및 일머리 등 개인 맞춤형 코칭 지원
 - 당사자 급여 최저임금 수준 월 183만 원 및 운영비 월 30만 원을 최대 9개월 간 지원
- (부모교류회) 사회적 고립 청년의 부모를 위한 교육과 자조모임 진행
 - 월 1회 정기적 부모 모임과 세미나 진행

- 사회적 인식 제고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고 정책 제안을 추진
- 사례 공유를 통한 연대의식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후관리) 사회 재진입에 실패해도 돌아와서 의지할 수 있는 관계 마련
 - 고립 상태를 극복한 청년들의 연대 도모
 - 고립 경험 청년이 고립 청년을 지원하도록 선순환 구조 구축
- (지원 기반) 실태조사 실시, 관련 기관과의 협업, 사회적 공론화 도모
 - (2019년 질적 사례 실태조사 진행) 당사자 47명 및 부모 34명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고립의 계기, 고립 중 경험, 은둔을 벗어나고자 한 계기와 주변 요인 등을 파악
 - (관련 기관과의 협업) 한일 청년지원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하는 청년지원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 공론화) 언론사 대응

[그림 6-3] 청년재단 체인지업 지원사업 지원내용

공동생활	1:1지원	심리안정
생활변화지원 신뢰바탕의 사회관계망 형성	신뢰할 수 있는 관계망 형성 및 개별 자립목표설정	마음챙김, 감정강화 등을 통한 심리안정 및 자존감 고취
		
부모교류회	사후관리	
정기적 교류 및 연대를 통한 고립청년 가족의 심리적 안정 지원	사회 재진입에 실패해도 돌아와서 의지할 수 있는 관계 마련	
		

자료: 청년재단. (2020). 청년재단 2020 연차보고서.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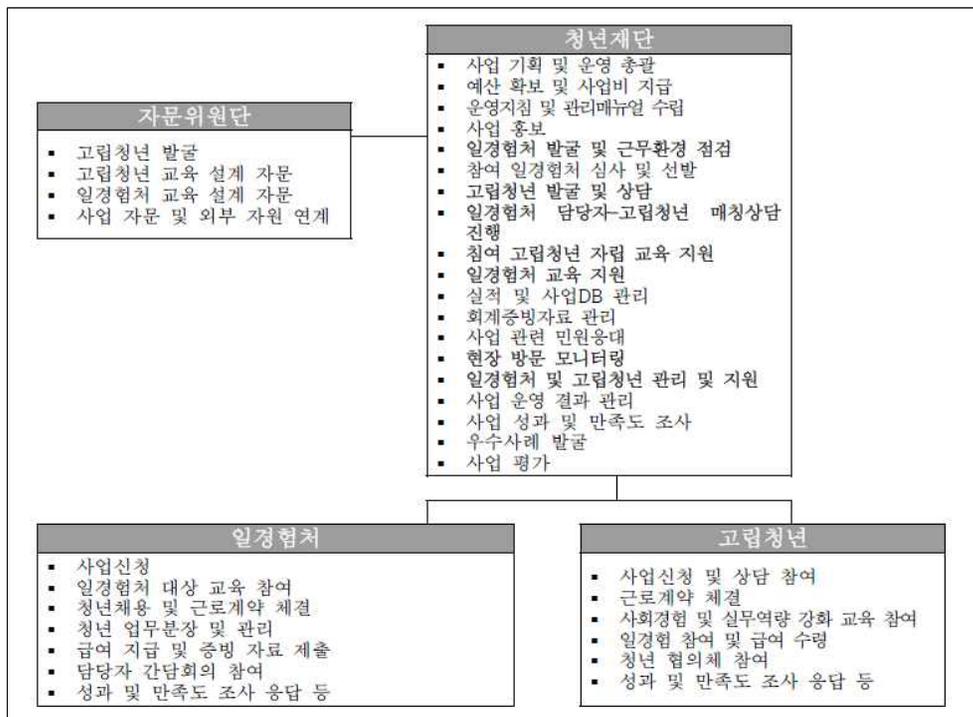
□ 2020년 사업에 100명이 지원하여 40명이 참여하였고, 그 중에서 취업 지원한 청년이 3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5명, 학업에 복귀한 청년이 7명, 기타 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며 연장지원 등을 희망한 청년이 25명임(청년재단, 2020, p.38).

○ 지원자 중 참여자 본인의 의지가 없거나 부모만 면담 신청한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함.

다. 전달체계

□ 청년재단 체인지업 지원사업은 청년재단 내 지원팀(팀장 1명, 실무자 2명)이 주축이 되어 참여자 사례관리 단일화 및 운영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관리함.

[그림 6-4] 청년재단 체인지업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청년재단. (2021b). 2021년 고립청년 자립경험 프로젝트 세부계획(안)(내부자료).

- 다음 표와 같이 청년재단은 주관기관으로서 당사자와 가족을 발굴하고 당사자의 욕구와 현 상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사례관리 주체로 기능함.
 - (역할) ① 당사자: 사업 안내 및 참여자 발굴 → 사업운영 및 운영기관 관리 → 지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 / ② 가족: 부모교류회 운영 / ③ 사회적 인식 개선
-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당사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기관은 지원 형태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주체로 기능
 - (역할) 체계적인 참여자 관리 및 맞춤형 지원, 사업운영 경과 공유

〈표 6-1〉 2020~2021년 청년재단 체인지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현황

주관기관		비고	
청년재단		비영리 공익법인	
↓			
연도	운영기관	지원내용	대상자 특성
2020년	K2인터내셔널코리아(사회적 기업)	공동생활	부모와의 관계 악화, 무기력, 삶의 목표 부재
	나들목바나나하우스		
	이아당심리상담센터	1:1 지원	대인공포, 무기력, 삶의 목표 부재
	사단법인 공감인	심리안정	낮은 자존감, 심리적 무기력
2021년	K2인터내셔널코리아	공동생활	부모와의 관계 악화, 무기력, 삶의 목표 부재
	리커버리센터(구 나들목바나나하우스)		
	이아당심리상담센터	1:1 지원	대인공포, 무기력, 삶의 목표 부재
	사단법인 공감인	심리안정	낮은 자존감, 심리적 무기력
	스탠드랩	심리안정 및 진로고민	낮은 자존감, 심리적 무기력, 일 의지
커리어투어	일경험 지원	사회기술 낮음, 일 의지	

주: 2018년 2개 기관, 2019년 3개 기관임.
 자료: 청년재단. (2020.12.13.).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내부자료); 청년재단. (2021a).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다음은 2021년 기준 운영기관에서 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의 내용임.

- K2인터내셔널코리아는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민간 지원기관인 K2에 원류를 두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여 은둔 청년의 생활환경 변화를 통해 탈 은둔을 지원함.
 - 이 과정에서 은둔 청년 당사자와 가족을 발굴하고 자조모임을 통해 정서 지원을 도모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생활 중 활동을 유인하고, 일하기 체험으로 자립을 지원함.

[그림 6-5] K2인터내셔널코리아 지원사업



자료: K2인터내셔널코리아 홈페이지. <https://k2-kr.com> 에서 2021.12.14. 인출.

- 리커버리센터(구 나들목바나나하우스)는 K2인터내셔널코리아와 유사하게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함.
 - 공동생활을 통해 아침에 일어나기 등의 규칙적인 일상의 루틴과 습관을 회복하고 대인관계를 재연습하며 신체활동, 예술창작 활동 등을 통해 일상을 매우도록 지원함.

〈표 6-2〉 2021년 리커버리센터 지원사업

공동생활훈련	신체건강
- 규칙적인 일상의 루틴과 건강한 습관 재형성 - 소통하며 대인관계 형성, 갈등 다루기,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수용하기, 용납하기 연습	- 외부활동을 통해 정서적 환기와 신체 단련
	
정서건강	관계건강
- 예술창작 활동을 통해 잠재력 발견, 정서안정, 공감, 자기표현, 격려	- 건강한 대인관계형성, 의사소통, 협업, 배려, 상호존중 훈련
	

자료: 청년재단. (2021c). '도란도란 라운드테이블: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한 시간' 발표 자료(2021.12.2.).

○ 이아당의 심리상담센터는 다른 운영기관에 비해 난이도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응했으며, 2021년에는 정신과적 문제, 지적 장애, 의사소통의 극심한 어려움, 매우 심한 우울 수준, 부모의 협조가 어려운 3명, 참여에 적극적이거나 정서적 어려움이 큰 대상자 5명과 참여에 적극적이고 기능 수준이 높은 대상자 2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였음.

- 리커버리센터와의 협업을 진행하였으며, 관계형성 등을 위해 타 기관과 협업의 효과성 확인
- 2020~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 특별활동을 실시하였는데, Zoom 또는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였음. 그 결과, 대면 프로그램에서 할 수 없는 감정이나 행동을 표현하는 데에 용이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표 6-3〉 2021년 이아당 심리상담센터 지원사업

심리상담	집단상담	소모임
이야기할 기회 이용, 인형극 등을 통해 감정 해소, 대화 방법 학습, 긍정적 자기 이해 등	이아당 심리상담센터와 리커버리센터 협업	음악소모임, 글쓰기소모임

자료: 청년재단. (2021c). '도란도란 라운드테이블: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한 시간' 발표 자료(2021.12.2.).

○ 공감인은 2021년 2019~2020년 지원을 받은 청년과 2021년 신규 청년 10명을 대상으로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음.

- 이 과정에서 은둔 청년의 자기 이해와 정서적 회복을 도모하였음.

[그림 6-6] 2021년 공감인 지원사업

구분	프로그램(차시)	내용
매개를 이용한 나 확장하기	사전워크숍 (1)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생각과 기대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
	그림책 워크숍 (2)	그림책으로 내 마음 깊이 바라보기
	영화 워크숍 (3)	영화의 장면들을 통해 내 안에 감정 만나기
개별적 존재로서 나 만나기	마음 온 나편 (4~7)	'나'에 대한 단계적인 질문들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고 타인과 공감하기
매개를 이용한 나 확장하기	예술워크숍 (8~10)	예술적 장치를 통해 나를 새롭게 표현하기
	일상공감자 과정 (11)	일상공감 치유키트 활용, 일상 나누기
나에게서 우리로 나아가기	커뮤니티모임 (12~14)	참여기간 관계 다지기과 다양한 야외 활동
	속마음산책 (15)	숲을 거닐며 공감자에게 속마음 털어놓기
	치유워크숍 (16)	나의 조각: 내가 가진 감정 찾기
되찾은 나 확인하기	예술워크숍 (17)	색채의 위로: 내 몸의 이야기 듣기
	매듭파티 (18)	프로젝트 기간 나의 변화 확인하기

자료: 청년재단. (2021c). '도란도란 라운드테이블: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한 시간' 발표 자료(2021.12.2.).

○ 스탠드랩은 담임코치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그룹을 운영하여 은둔 청년의 심리적 회복과 관계 형성을 연습하도록 지원하면서 청년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자립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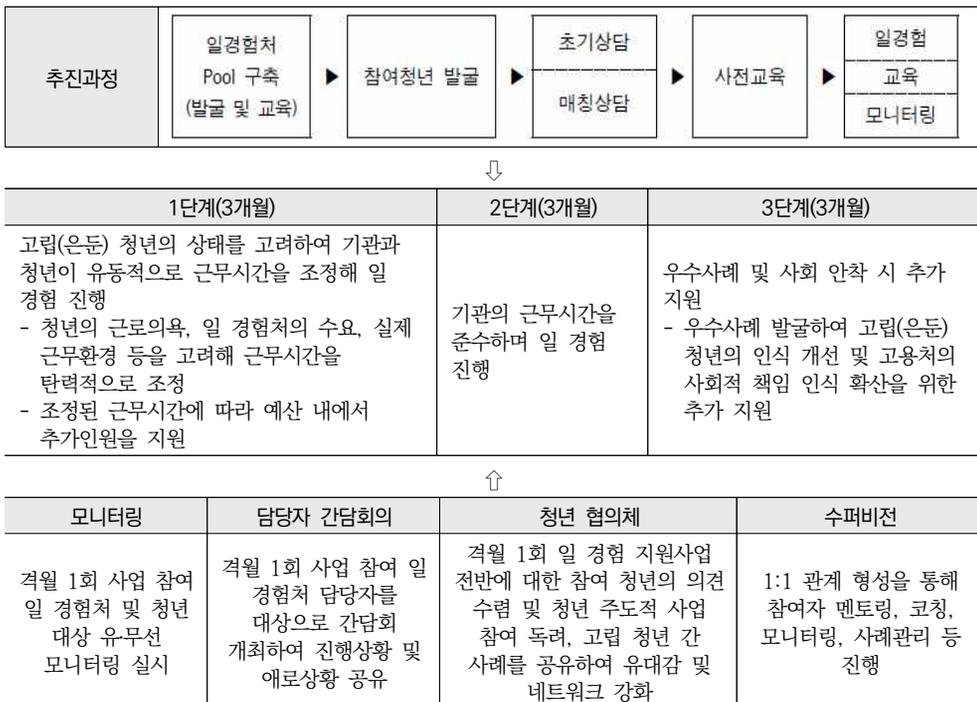
〈표 6-4〉 2021년 스탠드랩 지원사업

담임코치 배정	소규모 커뮤니티 운영	자립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코치를 배정하여 밀착 케어링 - 심리 에너지 증진(마음에너지발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명 단위 소그룹 그룹 코칭을 통한 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이해, 방법 찾기, 선택과 확산, 장애물 넘기, 목표 재설정, 장기계획 수립 등 - 진로 코칭 프로그램 (진로고민캠퍼스)

자료: 청년재단. (2021c). '도란도란 라운드테이블: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한 시간' 발표 자료(2021.12.2.).

- 탈고립을 원하지만 심신의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은둔 청년의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고립(은둔) 청년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일 경험처를 발굴하고 청년을 매칭하여 사전교육과 일 경험 중 모니터링 등 전체 과정을 사례관리함.
 - 일 경험하고 있는 청년의 사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유대감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음.

〈표 6-5〉 일 경험 지원사업



자료: 청년재단. (2021b). 2021년 고립청년 자립경험 프로젝트 세부계획(안)(내부자료).

라. 재정

- 체인지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인 청년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써, 법인 출연금과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 재정 중 해당 사업비용을 운영기관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질을 관리함.

〈표 6-6〉 체인지업 지원사업을 위한 청년재단 및 운영기관 재정 흐름

구분	청년재단	운영기관
수입	법인 출연금, 보조금, 기타 사업 수익 등	출연금, 보조금 , 후원금 등
지출	사업비용 , 관리비용 등	사업비용, 관리비용 등

자료: 청년재단. (2020). 청년재단 2020 연차보고서. p.95의 내용 및 실무자 인터뷰 결과를 저자가 정리

2. 고립 청년 사업: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의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사업

-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에 법적 근거를 두어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민간 기관임.
-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2020년 7월부터 지역 기반 고립 청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가. 사업목적 및 대상

- (사업목적)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 청년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의 사회진입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에 대해 상태와 욕구에 따라 대상을 범주화하고, 종합적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각지대 없는 청년의 사회진입을 지원
- 특히 청년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기반 지원사업을 기획하였음.

[그림 6-7] 서울시 지역기반 사각지대 고립 청년 지원기관 및 범위



자료: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0).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연구보고. p.2.

□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사각지대 고립 청년으로 다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사회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거나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여 사회로의 이행을 포기한 청년

-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이거나 진로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 개인의 기질 및 부정적 경험으로 집단과 조직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 가족 등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거나 사회적인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청년

○ 지원서비스 제공 측에서는 청년의 자각 상태를 사회부적응 유형, 정보부족 유형, 생계 유형, 건강불균형 유형으로 구분하고, 에너지 수준을 고립 정도와 진로역량, 취·창업 준비, 그리고 집중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0, pp.3-4).

- 청년의 자각 상태 중 사회부적응유형은 학창시설 교우관계의 어려움, 개인의 기질 상 문제, 무기력 등으로 인해 집단에 참여하기 곤란하거나 관계 형

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임.

- 정보부족 유형은 성적에 맞추거나 부모의 강권과 권유에 의해 진로를 선택했던 청년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시절을 무의미하게 보내면서 미래 준비를 하지 못하고 방황한 청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 경험이 부족한 청년임.
 - 생계 유형은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신의 진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관심분야가 있더라도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단기적 아르바이트만 반복하면서 20대를 보내고 있는 청년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탈락을 우려하여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려는 청년임.
 - 건강불균형 유형은 고도비만, 만성질환, 심각한 저체중 등의 건강상의 문제로 사회적 편견 및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부적응 상황에 놓이거나 사회로 이행하더라도 중도 탈락하는 청년임.
- 에너지 수준 중 고립 정도에 대해서는 진로 미결정 대상이면서 사회적 에너지가 낮은 은둔형으로 사회적 에너지 수준을 높여 진로에 개입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진로역량과 관련한 대상자는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에너지 수준이 있으나 진로와 관련하여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을 가지고 있으며 좋아하는 관심분야가 있으나 진로와 연결이 되지 않는 대상자나 대학 졸업 후 진로와의 연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임.
 - 취·창업 준비와 관련한 대상자는 취·창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훈련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나 자신이 목표를 설정하고 시도하였으나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스펙 관리 등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임.
 - 집중대상자는 심리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응, 진로탐색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거나 집중적 관리를 통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임.

[그림 6-8] 서울시 지역기반 사각지대 고립 청년 참여자 유형

1차 유형 \ 2차 유형		에너지 수준 낮음 ← → 높음						총계	
		고립 下	고립 上	진로 下	진로 中	진로 上	취업 下		취업 上
1	사회부적응	4	6	2					12
2	정보부족			12	10	9	6	9	46
3	생계			1	3	3		4	12
4	건강불균형			1	1				2
총 계		4	6	16	14	12	6	13	72

주: 표의 수치는 자료원에 의한 2020년 지원 대상자 중 조사 대상자 규모임.

자료: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0).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연구보고. p.3.

- 대상자 규모는 2020년 102명이고(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0, p.26), 2021년에는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200명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500명 정도 지원하여 그 중 3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음(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인터뷰 결과).

나. 지원내용

-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한 서울시 지역기반 사각지대 고립 청년 지원사업의 지원 체계는 다음과 같음.
 - 1단계에서는 사업의 기반과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컨소시엄 기관 선정 등 전달체계와 사업홍보 및 발굴체계 조성, 선정과정 체계화 등의 지원 프로세스를 설정함.
 - 2단계에서는 지역사회 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달 체계로서 청년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참여 청년을 선정했으며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함.
 - 3단계에서는 운영체계를 안정화하고 지속화하기 위해 지원사업 경과를 평가하는 등 연구 활동을 수행함.

[그림 6-9] 서울시 지역기반 사각지대 고립 청년 지원사업 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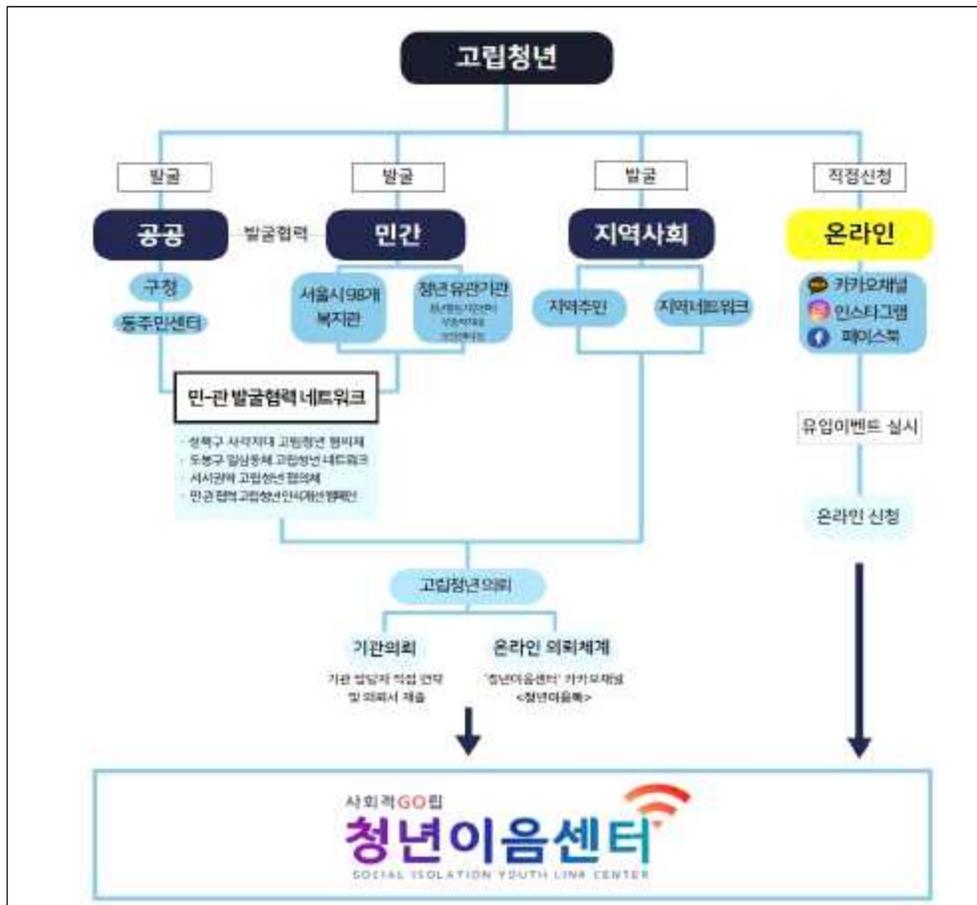
단계	중점과업	수행내용
[1단계] 사업기반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	· 전달 및 운영체계 구축	· 사업설명회 · 컨소시엄기관 선정, 운영기반조성 · 초기 컨설팅 및 업무지원
	· 사업홍보 · 발굴체계 조성 · 선정과정 체계화	[홍보 및 발굴체계 구축] · 사업홍보 및 발굴추천 의뢰 (공공, 민간, 지역사회 등) · 홍보 및 참여신청 온라인DB 구축 ·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구축 · 온라인기반 발굴 및 제보체계 구축 [신청 및 선정과정 체계화] · 신청 및 선정관련 기준안 마련 · 신청양식 및 선정기준표 제작
[2단계] 지역사회 협조체계 구축 / 사업활성화	· 발굴체계 구축 · 지역사회 기반조성	[청년이음센터 운영] · 청년이음센터 4곳(성북, 은평, 중랑, 양천) · 네트워크기관 3곳(도봉, 서대문, 양천) [참여청년 선정] · 접수-신청-초기상담(사전검사 포함) · 참여청년 선정회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 고립청년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 · 고립청년 지원 인프라 확충 · 인식조성, 사회적 연대 조성
	·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고립청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지원] · 고립청년 유형분류 · 유형별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맞춤형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3단계] 운영체계 안정화 및 지속화	· 연구활동 · 지속가능 정책마련	[고립청년지원사업 연구] · 참여청년 변화 및 운영성과 분석 · 청년이음센터 성과확산 및 모델화 · 제도적 정착 방안 · 연구보고서 발간

자료: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0).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연구보고. p.27.

□ (발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지역사회와 온라인을 통한 고립 청년 상시 발굴과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이음센터로 유입되도록 경로를 설정하였음.

- 다음 [그림 6-10]은 고립 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구청 및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관, 청년 지원 기관 등 민간,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 등의 오프라인 발굴 경로와 온라인 비대면 발굴 경로를 도식화하고 있음.
- <표 6-7>은 발굴기관별 역할을 구조화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간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발굴체계 전반의 구조는 청년이음센터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6-10]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발굴 체계



자료: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0).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연구보고. p.31.

〈표 6-7〉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발굴기관별 역할

구분	내용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서울시 25개구 - 구청 청년 담당자 확인(청년청 협조) -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안내 공문 발송 - 유선 및 방문 사업 설명 실시 - 사업 참여 저조지역 확인 및 구청 홍보 진행 사항 모니터링을 통한 업무 연락 및 방문
민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서울시 98개 종합사회복지관 및 청년기관 - 고립청년 특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 공문 발송 - 온라인 사업설명회 실시 및 유무선 사업 안내 전화 - 공문 및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회의 실시 - 네트워크 회의를 통한 프로그램 교류 및 고립청년 서비스 의뢰 연계
지역사회 발굴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청년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 고립청년 인식개선 캠페인 - 마을 및 지역주민 회의 등 지역 네트워크 참여 - 지역주민의 고립청년 추천 유도
온라인 비대면 상시 발굴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톡 기반 온라인 의뢰체계(민-관 기관 청년 실무자에게 카카오톡 기반 고립청년 의뢰채널 홍보, 카카오톡 청년이음센터 채널 가입을 통한 간편 의뢰 시스템 구축) - 카카오톡 기반 온라인 신청체계(고립감 테스트, 구직성향 테스트 등 청년층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카카오톡 테스트를 통한 고립청년 사업 노출 및 유입 유인, 테스트 중 고립정도 및 유형에 대한 관련 질문을 배치하여 고립감이 높은 청년을 선별하고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유입 유인)

자료: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0).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연구보고. pp.32-33

□ (당사자 지원) [그림 6-11]은 서울시 고립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구조임. [그림 6-12]에 의한 고립 청년의 유형을 고려하여 자기탐색, 관계형성과 소그룹의 관계기술 재학습, 자기계발과 진로재탐색의 진로 역량 강화, 일머리교육과 기초교육 등 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사례관리, 진로컨설팅, 심리정서지원 등의 개별 맞춤 지원을 제공함.

○ 이 지원체계에 따른 고립 청년 지원은 물리적인 공간에 머무르며 은둔하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제한적임.

[그림 6-11]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맞춤형 지원 구조



자료: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0).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연구보고. p.45.

[그림 6-12]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구조

			욕구기반 청년 고립원인 및 욕구유형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개발	취업준비
고립 정도 및 사 회 성	↑ 높음	활동형 고립	개별맞춤지원 개방형		자기 개발, 진로재탐색	취업방향설정 취업역량강화 현직자만남
		활동제한형 고립	자기인식·이해 또래·사회교류 진로컨설팅	자기 개발, 진로재탐색		
	↓ 낮음	은둔형 고립	종합심리검사 개별심리상담	자기인식·이해 또래·사회교류 진로컨설팅	개별맞춤지원 개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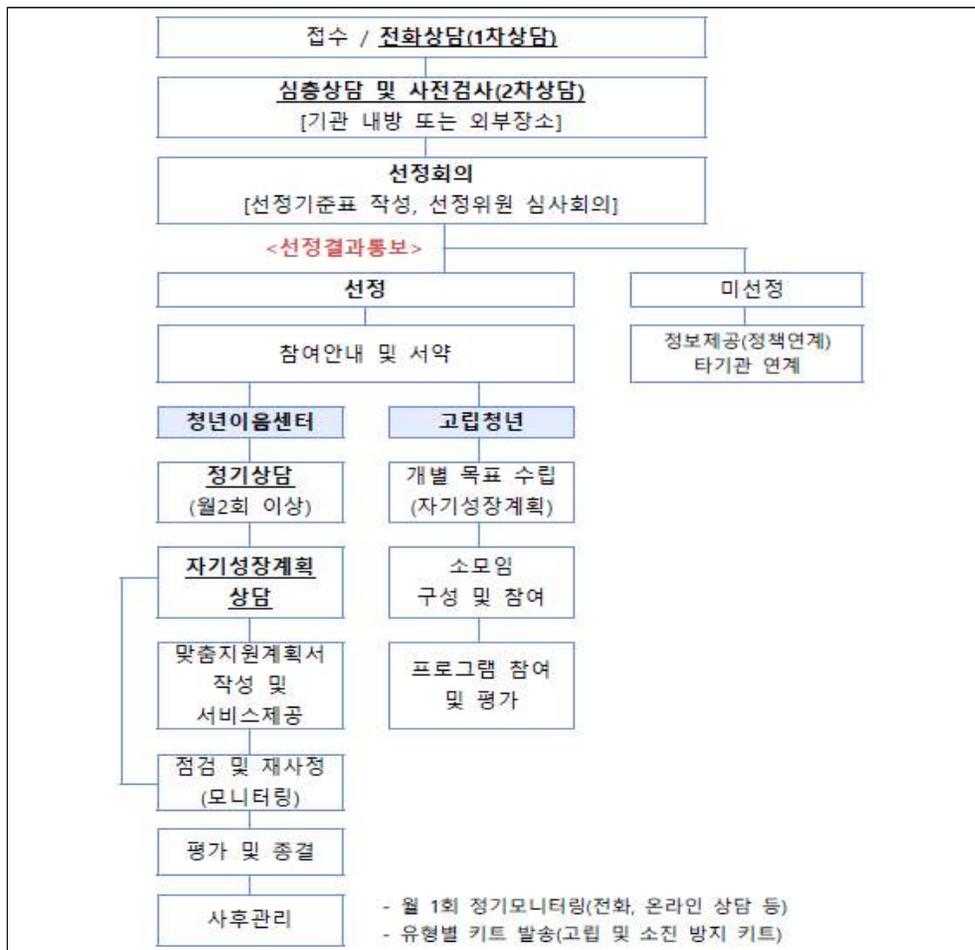
자료: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0).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연구보고. p.45.

○ [그림 6-13]은 고립 청년 개인 단위의 밀착지원 사례관리 프로세스임. 당사자가 접수를 하면 1차 상담을 하고, 청년이음센터나 외부 장소에서 사전검사 등 심층상담을 한 이후, 선정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함.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당사자는 자신의 개별 목표를 수립하고 소모임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함.

-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이음센터는 정기상담과 당사자가 개별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를 재점검하며 목표를 달성하거나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종결한 사례에 대해 사후 관리함.
- 대상으로 미선정된 청년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 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함.

[그림 6-13]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밀착지원 사례관리 프로세스



자료: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0).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연구보고. p.52.

- 다음 <표 6-8>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당사자에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이음센터 이외 서비스 분야별 관련 지원기관임. 심리정서지원, 직업교육 및 훈련 지원, 진로 지원, 일 경험 지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표 6-8>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지원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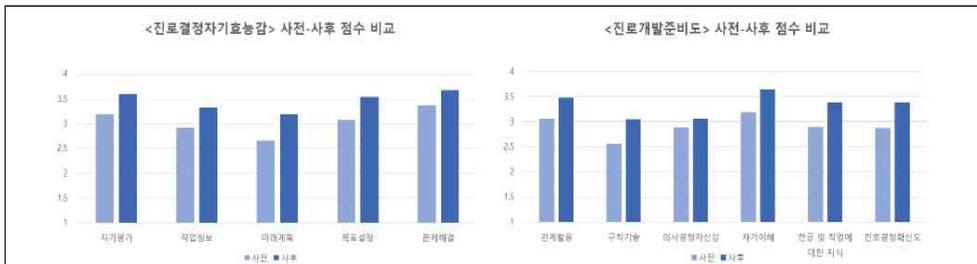
구분	내용
심리정서 지원	- 고립청년 심리정서 문제 지원을 위한 고립청년 상담 노하우가 있는 기관 MOU (협력기관: 엠브레스마인드, 나사랑심리상담센터, 마음샘심리상담센터, 개인상담사 등)
직업교육 및 훈련 지원	- 진로 교육·훈련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고립청년 맞춤형 교육 지원 연계 (협력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연극치료협회, ㈜위버스마인드, CLASS101 등)
진로 지원	- 고립청년의 상황과 고립정도에 따른 1:1 개별 진로컨설팅 및 집단 진로프로그램 MOU (협력기관: ㈜스탠드랩 프로진로고민러, 아이엠인재교육개발원, 재능과마음, 개별 강사 등)
일경험 지원	- 고립청년의 진로관련 전문 일 경험 지원 (협력기관: YBS진로컨텐츠, 엘마드레, ㈜투플러스, 민족문제연구소, 일일재단, SK뉴스쿨 등)

자료: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0).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연구보고. p.37. 저자 재구성

- (지원성과) 정해진 지원 구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개인의 고립 정도와 상태, 목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당사자는 자신을 위한 지원을 체감하게 되고 공급자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됨.

- 지원사업 참여 전과 후 당사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개발준비도 등의 척도 값 변화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원 종결 이후 장기적인 성과 추적은 어려움.

[그림 6-14]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지원 성과



자료: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0).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연구보고. p.101. 그림의 일부를 발췌

□ (기반 조성 및 사회적 인식 확산) 그 외에도 고립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부정적인 인식은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과 캠페인 등을 수행함.

〈표 6-9〉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지원 기반 조성

구분	내용
청년활동 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청년활동가로 양성하여 고립청년 지원 정책에 청년의 의견이 반영되는 활동 지원 - (참여자) 서울특별시 강동길 시의원,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가, 고립청년사업 참여청년, 서울시 청년희망일자리 매니저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청년 지원 기술, 전문적인 청년 지식 습득, 사례공유를 통해 청년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청년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 - 교육을 통해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확장 - (참여기관) 청년이음센터 컨소시움 기관 6개소

자료: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0).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연구보고, p.38. 표 재구성

〈표 6-10〉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사회적 인식 확산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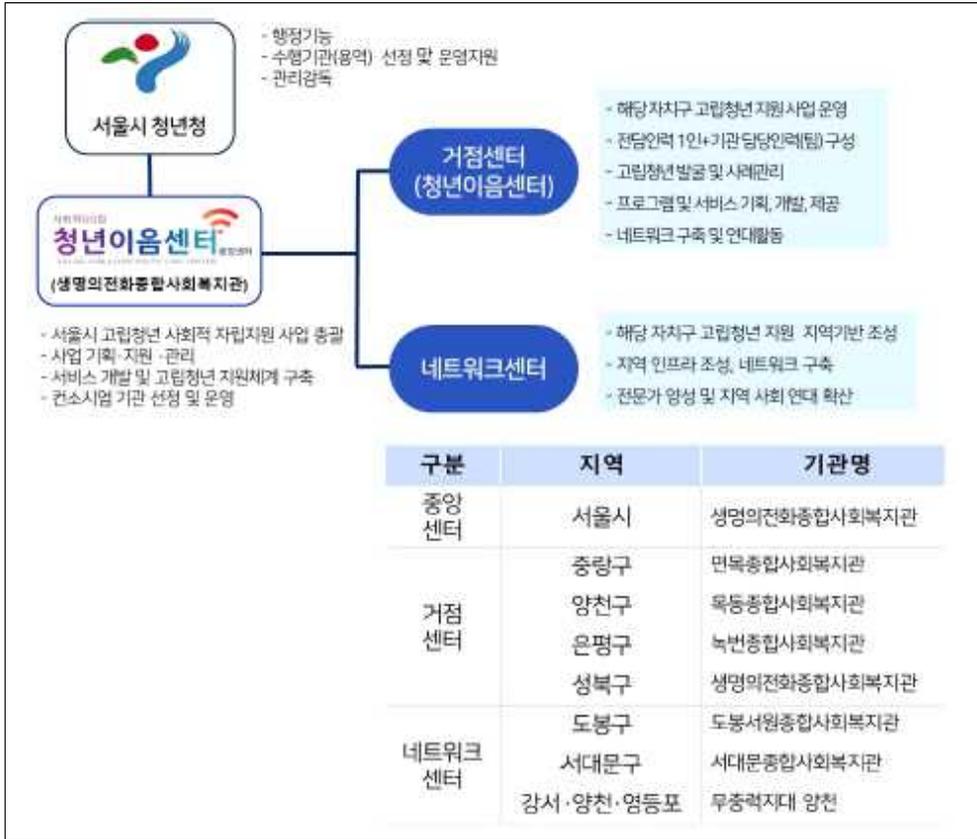
구분	내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유관기관 및 청년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여 고립청년의 특성 및 사각지대 청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에게 고립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하여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인적 인프라 형성 - (교육주제) 고립청년 지원의 필요성과 성과, 고립청년 특성과 상담기술, 청년의 우울과 자살, 청년 정책과 활용 - (협력기관) Haja 센터, 무중력지대 양친, 마음성장학교, 함께하는 연구 등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청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립청년에 대한 이해와 인식확산 활동 진행 - 고립청년의 의미와 개념을 알려 지역사회 내 고립청년 발굴 협조 - (협력기관) 무중력지대,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가 등
사업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청년 지원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민간기관들의 고립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증진 - (참여기관)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청년유관기관 24개 기관 총 44명 참여

자료: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0).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연구보고, p.38. 표 재구성

다. 전달체계

□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고립 청년 지원사업은 물리적으로 서울시를 포괄하기 위해 거점센터와 네트워크센터를 두고 있으며 전반적인 체계의 구조 및 역할과 기능은 [그림 6-15] 과 같음.

[그림 6-15]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지원사업 체계



자료: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0).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연구보고. p.30.

제2절 지자체의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실태

1. 지자체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관련 조례

가. 지자체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현황

□ 은둔, 고립, 외로움 등 사회적 관계 단절 현상이 사회문제로 환원되면서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2019년 10월에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음.
 - 이후 2021년에 은둔형 외톨이를 키워드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2021년 5월에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7월에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9월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와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그리고 11월에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가 제정되었음.
- 고립을 키워드로 하는 조례는 서울 양천구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0월에 최초 제정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5월에 제정되었음.
 -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21년 10월에 발의하였음.
- 외로움의 정서적 경험을 키워드로 하는 조례도 있는데,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이 2019년 5월에 제정되었고, 강원도 「횡성군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가 2020년 12월에 제정된 바 있음.
- 여기에서 조례의 목적이나 정의 등에서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조례는 제외하였음에도, 2019년 광주광역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이후 2020년부터 지역주민의 은둔과 고립, 외로움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고립을 키워드로 하여 청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와 서울 양천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를 제외하고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주민의 외로움에 대응하고자 하는 조례는 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고려하지는 않음.

〈표 6-11〉 은둔, 고립, 외로움의 키워드별 조례 및 조례안

키워드	사도	시·군·구	조례 명칭
은둔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제5282호, 2019. 10. 15., 제정)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453호, 2021. 3. 24., 제정)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6427호, 2021. 7. 14., 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450호, 2021. 9. 30., 제정)
	전라남도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전라남도조례 제5392호, 2021. 9. 30., 제정)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326호, 2021. 11. 4., 제정)
고립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 10월 14일 발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21호, 2020. 10. 2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04호, 2021. 5. 20., 제정)
외로움	부산광역시	-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5925호, 2019. 5. 29., 제정)
	강원도	횡성군	「횡성군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519호, 2020. 12. 30., 제정)

주: 고독사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자치조례는 검색 결과에서 제외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은둔/ 고립/ 외로움 검색결과. <https://www.law.go.kr/LSW/main.html> 에서 2021.12.12. 인출.

나.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형 외톨이 대상자 범위

□ 2021년 12월 1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고독’, ‘고립’, ‘외로움’. ‘은둔’으로 검색된 현행 자치조례는 218건임(중복 건 제외). 검색 결과 내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립 가구”, “사회적 고립 청년” 등 고립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조례는 87건임.

○ “사회적 고립가구”와 “사회적 고립”은 주로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나 상태로 정의됨.

- 예를 들어,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경상남도 거제시조례 제1733호, 2020. 2. 13., 제정) 제2조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함.

-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05호, 2020. 4. 13., 전부개정) 제2조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것을 말함.

〈표 6-12〉 자치 조례 및 조례안 내 사회적 고립 청년 정의(예시)

광역·도	시·군·구	사회적 고립 청년 정의
서울특별시 ¹⁾	-	“사회적 고립청년”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함.
서울특별시 ²⁾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함.
제주특별자치도 ¹⁾	-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함.

주: 1)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39세 이하에 해당함.

2) 해당 조례 내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34세 이하에 해당함.

자료: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 10월 14일 발의)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21호, 2020. 10. 29., 제정)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04호, 2021. 5. 20., 제정)

□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6개 조례 모두에서 대상자로서의 은둔형 외톨이를 연령 구분이 없이 ①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②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③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 있어 ④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와 광주 동구, 서울 은평구, 광주 남구의 조례에서는 ⑤ 일정 기간 이상의 시간적 범위도 함께 제한하고 있음.

〈표 6-13〉 지자체 자치법규 내 은둔형 외톨이 정의

시·도	시·군·구	은둔 정의
광주광역시	-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함.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함.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함.
부산광역시	-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함.
전라남도	-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함.

자료: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450호, 2021. 9. 30., 제정)
 2)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282호, 2019. 10. 15., 제정)
 3)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326호, 2021. 11. 4., 제정)
 4)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453호, 2021. 3. 24., 제정)
 5)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427호, 2021. 7. 14., 제정)
 6)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전라남도조례 제5392호, 2021. 9. 30., 제정)

다. 자치법규에 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내용

□ 다음 〈표 6-14〉는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자치법규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련 지원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회활동 참여와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제안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조모임과 네트워크 구축,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서울 양천시는 의료와 주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평생교육과 가족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에 따라 고려하고 있는 지원 내용의 편차가 다소 존재하며, 이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 있지만 고립 청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적 지원의 체계적으로 제안할 필요함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음.

〈표 6-14〉 자치법규에 의한 사회적 고립 관련 지원 내용

광역·도	시·군·구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	① 고립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②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사업 ③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④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⑤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⑥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①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②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③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사업 ④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⑤ 주거 지원사업 ⑥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① 자립지원 -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② 평생교육 지원 ③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④ 자조모임 등 활동단체 지원 ⑤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자료: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 10월 14일 발의)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21호, 2020. 10. 29., 제정)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04호, 2021. 5. 20., 제정)

□ 다음은 자치법규에 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내용을 비교하고 있음. 공통적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직업 훈련 및 취업 관련 지원, 상담 및 활력 조성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와 광주 남구, 부산광역시에서는 실태조사를,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원센터를, 광주광역시와 광주 동구에서는 평생 교육 등을 추가 제안하고 있음.
- 부모 지원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울 은평구, 전라남도, 광주 남구에서 제안하고 있음.
- 타 지자체의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선례를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최초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의 조례에 의한 지원 내용이 가장 다채로움.

〈표 6-15〉 지자체별 자치법규에 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내용

사도	사군구	기본 계획 수립	실태 조사	위원회 설치 ¹⁾	지원 센터 설치	직업훈련 및 취업 관련 지원 ²⁾	평생교육 지원	상담 및 활력 조성 등 ³⁾	기타 지원 ⁴⁾	부모 지원
광주광역시	-	○	○	○	○	○	○	○	○	○
광주광역시	동구	○	○	○	-	○	○	○	○	○
부산광역시	-	○	○	○	-	○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	○	-	○	○	○
전라남도	-	○		-	-	○	-	○	○	○
광주광역시	남구	○		○	-	○	-	○	○	○

- 주: 1) 위원회 설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은둔형 외톨이 지원 위원회 등에 해당함.
 2) 직업 훈련 및 취업 관련 지원은 직업 적성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직업제휴 및 훈련프로그램, 취업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에 해당함.
 3) 상담 및 활력조성 등 지원은 심리상담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자조모임,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 서비스 지원, 활력 조성 프로그램 등에 해당함.
 4) 기타 지원은 은둔형 외톨이 발굴, 조사, 연구 사업, 복지서비스 개발,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업,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해당함.
- 자료: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450호, 2021. 9. 30., 제정)
 2)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282호, 2019. 10. 15., 제정)
 3)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326호, 2021. 11. 4., 제정)
 4)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453호, 2021. 3. 24., 제정)
 5)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427호, 2021. 7. 14., 제정)
 6)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전라남도조례 제5392호, 2021. 9. 30., 제정)

2.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022~2026)」

□ 광주광역시에서는 조례에 의해 2020년에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2022~2026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 2020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임형문 외, 2020)

○ 조사대상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은둔형 외톨이 가족을 포함함.

-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는 현재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와 과거 은둔 생활을 했던 당사자를 포함함.
- 현재 은둔형 외톨이는 3개월 이상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을 하되, 은둔생활의 계기가 신체적인 질병 또는 장애,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가 아닌 자로 함.

- 주로 자신의 방에서만 생활하며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음.
 -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며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음.
 -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지만 가끔 근처 편의점 등에 외출함.
 -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지만 취미활동을 할 때만 외출함.
- 과거 은둔형 외톨이는 과거에 상기의 기준에 해당하는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한 사람임.
-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은 은둔형 외톨이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임.

○ 조사방법 및 데이터 클리닝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조사표 배포) 광주시 내 아파트 거주 세대의 20%에 해당하는 10만 세대에 안내문 발송 후 조사대상자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광주시 청년 및 청소년 상담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광주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구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심리건강연구소 등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배포한 후 다음의 클리닝을 거쳐 최종 유효 표본을 확보함.
- (1차 클리닝) 최종 1,095부 수집 후 아이피 중복에 따른 26부, 조사 종료 이후 재응답한 33부, 은둔형 외톨이 대상자가 아닌 262부, 총 321부 제외
- (2차 클리닝) 당사자 스크리닝 문항에 의한 166부 및 가족 스크리닝 문항에 의한 65부, 총 231부 제외
- (3차 클리닝) 당사자 응답 문항 간 논리적 오류로 인한 12부 제외
- (4차 클리닝) 당사자 응답 부실과 응답자 특성 미기재로 인한 114부 및 가족 응답 부실과 특성 미기재로 인한 49부, 총 163부 제외
- (5차 클리닝) 당사자 나이 대비 은둔 기간 등 논리적 오류에 의한 15부, 가족 나이 대비 은둔 기간 등 논리적 오류에 의한 4부, 총 19부 제외
- (최종 유효표본) 당사자 237부, 가족 112부

○ 모집단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대상자를 찾아나서는 유의표집 방법을 활용함.

- 조사내용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에 대하여 외출, 은둔 기간, 계기 등 은둔 생활을 하게 된 배경, 은둔 중 일상생활과 어려움, 은둔 생활을 벗어난 계기, 지원 욕구 등을 질문함.
 - 가족에 대해서는 은둔하고 있는 가족이 은둔 생활을 하게 된 배경, 은둔 중 가족의 일상생활과 어려움, 가족의 상담 및 활동 욕구,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욕구 등을 질문함.
- 가정에 발송된 안내문, 방송 및 신문을 통해 심층면접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심층면접을 수행함.
 - 심층면접 내용은 은둔 생활을 하게 된 배경, 현재 심리 및 사회적 상황, 미래 희망 및 지원 욕구

□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¹⁷⁾ 개요

- (공간적 범위) 광주광역시
- (시간적 범위) 2022~2026년
- (주관기관) 광주광역시의회(신수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의 의뢰로 광주전남연구원(복지정책 분야 박사)가 주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 조례에 의한 지원 범위 내에서 2020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및 실무자 FGI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구성함.
 - 2022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민간기관 및 학계 협업 체계 구축함.
 -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등 지역 내 지원기관, (주)폴인사이트 등 지역 내 조사기관,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등 전국 단위 협조기관 등

17) 광주광역시. (2021.12.9.).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2~'26)(내부자료). 참고하여 작성

□ 기본계획 내용

- 기본계획은 “공감과 연결로 사회적 고립 없는 광주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함.
- 조례에 근거를 두어, 지원 내용의 분야를 지원기반 설치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발생 예방 강화로 구성하였음.

[그림 6-16] 2022~2026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비전과 추진전략



자료: 광주광역시. (2021.12.9.).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2~'26)(내부자료).

- 지원 분야별 각각 전략을 두고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6-16> 2022~2026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전략별 추진과제 개요

전략	전략별 과제	세부추진과제
전략1. 은둔형 외톨이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1-1. 은둔형 외톨이 발굴	1-1-1. 전화, 내방자 확대 전략 수립
		1-1-2.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1-2. 종합지원체계 구축	1-2-1.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2-2. 비대면 지원 플랫폼 구축
	1-3. 전문상담 및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1-3-1.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제도 운영
		1-3-2. 방문지원서비스 제공
1-3-3. 사례관리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전략	전략별 과제	세부추진과제
전략2. 은둔형 외톨이 전문교육과정 운영	2-1. 은둔형 외톨이 전문상담가 양성	2-1-1. 은둔형 외톨이 전문상담가 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2-1-2. 은둔형 외톨이 전문상담가 교육 과정 운영
	2-2. 은둔형 외톨이 서포터즈 양성	2-2-1. 은둔형 외톨이 서포터즈 양성 교육 및 활동 지원
전략3. 은둔형 외톨이 지원 네트워크 구축	3-1.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관 거버넌스 구축	3-1-1. 은둔형 외톨이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1-2. 전문기관 발굴 및 기관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3-2. 은둔형 외톨이 교류 강화	3-2-1. 은둔형 외톨이 포럼 개최
전략4. 은둔형 외톨이 회복력 강화 기반 구축	4-1.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활동 기반 구축	4-1-1.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역량 강화 지원 4-1-2. 당사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 4-1-3. 은둔형 외톨이 활동 공간 지원
	4-2. 은둔형 외톨이 친화형 일자리 양성	4-2-1. 은둔형 외톨이 취업 인큐베이팅 지원 4-2-2. 은둔형 외톨이 친화 사업장 발굴 및 운영
	4-3. 은둔형 외톨이 독립생활 지원	4-3-1. 은둔형 외톨이 주거 독립 공간 운영
전략5. 은둔형 외톨이 수용성 확대	5-1. 은둔형 외톨이 인식 개선 확대	5-1-1. 은둔형 외톨이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보급 5-1-2. 은둔형 외톨이 인식개선 활동 강화

자료: 광주광역시. (2021.12.9).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2~'26)(내부자료).

- 광주광역시의 사례는 조례 제정부터 실태조사 실시와 기본계획 수립 등 은둔하고 있는 취약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현하고자 한 전국 최초 시도로서의 함의가 큼.
-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보이지 않고, 지자체에서 민간기관 위탁을 통해 제안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제3절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방에 있거나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랬던 게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인생의 많은 굴곡들이 있어요... 누구나 고립될 시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재단 “도란도란 라운드 테이블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한 시간’” 참여자]

정말 혼자 있는 게 좋은 청년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정말 나서고 싶은 사람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듯이 누구나 이제 거기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존중해주되 자기가 원할 때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고립 청년 3]

1.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 제2장에서 현세대 19~34세 사회적 고립 청년은 전체 청년의 약 3.1%(약 34만 명)로 추산한 바 있음.

○ 여기에서 ‘고립 청년’은 ① 비동거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타인과의 교류가 부재하고 ② 생활, 경제적, 정서적 곤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년으로 정의함.

○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은 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생(生)의 활력을 반영하는바, 고립된 인구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전체 인구에 미치지 못하여 행복하지 않은 삶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음.

○ 더욱이 [그림 6-17]과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립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여 13세 이상 인구의 4.7%가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세대 고립 청년의 존재는 중장년과 노인의 고립 문제뿐 아니라 미래 한국에서 고립 인구 문제가 악화될 것을 암시함.

○ 사회관계의 단절은 사적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곤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결핍되어 있다면 공적 체계가 개입해야 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6-17] 사회적 고립 인구의 규모와 삶의 만족



주: 1) 고립 인구는 비동거 가족 친척을 포함한 타인과 교류가 부재하고, 생활·경제·정서적 곤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인구임.

2) 삶에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한다는 리커트 척도의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삶에 만족함.

자료: 통계청. (2019b). 2019년 사회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이태진, 김성아 외, 2021, p. 327의 그림을 보임)

- 이 중에서 방이나 집 등 제한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는 ‘은둔 청년(은둔형 외톨이)’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됨.
- ‘은둔형 외톨이’는 1990년대 말 일본을 강타한 사회현상이며, ‘히키코모리’를 한국어로 순화한 단어임.
- 일본의 ‘히키코모리’는 가족 이외의 사람과 친밀한 인간관계가 없으면서 6개월 동안 사회참여를 하지 않고 방안이나 집에서 나오지 않으며 지내는 사람을 말함.
 - 김혜원 외(2021)는 ① 일정 기간 이상 ② 자신의 방이나 집 안에만 머무르면서, ③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 외 대인관계가 없으면서, ④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있지 않은 경우를 은둔형 외톨이로 보았음.
-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철퇴, 제한적인 인간관계, 가족과의 미약한 정서적 유대감 등으로 이들의 생활방식이 가족을 제외한 타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개인 단위의 문제가 악화된 이후 등교거부나 은둔, 자살, 범죄 등 극단적인 부적응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로 가시화되어서야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므로 발굴과 예방이 필수적임.
- 청소년기 은둔형 외톨이는 학교 체계 내에서 일부 발굴과 대처가 가능하지만, 청년기 이후부터는 지역사회로 흩어져 당사자나 주변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사실상 기존 체계 내에서의 발굴과 지원이 불가능하며, 기존 공적 제도가 비어 있는 완전 사각지대임.
-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생산력 저하와 공공부조 개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소모하게 됨.
- 일본에서는 한 히키코모리 청년이 일하기보다 은둔을 선택했을 때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즉 일을 통해 사회에 진입했을 때 부담하는 세금과 보험료에서 생활보호수급액¹⁸⁾을 고려하면 1인당 약 16억 원 정도의 재정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¹⁹⁾

18)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는 공공부조 제도에 의한 생계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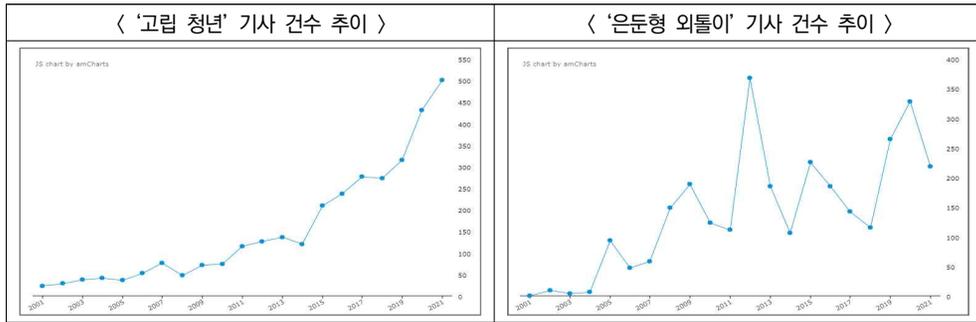
19) 김태희. (2021.9.8.). ‘은둔 청년’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는 사이, 37만명 추산. 경향신문. <https://m.kh>

- 또한 2018년 기준 40~64세 히키코모리가 약 61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청년기 고립과 은둔 문제가 중장년기까지 누적되는 현상이 실현되고 있음.

○ 사회적 고립 청년과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극단적인 형태인 은둔 청년 중 1/3 정도가 우울과 같은 정서적 곤란을 겪으며 자신 혹은 가족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경험이 보고되고 있어²⁰⁾ 사회적 영향을 미침.

- 다음 그림은 2000년대 이후 ‘고립 청년’과 ‘은둔형 외톨이’를 키워드로 한 기사 건수의 추이임. ‘은둔형 외톨이’의 기사 건수가 높은 2013년에는 은둔형 외톨이의 울산 슈퍼 여주인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고, 2015년에는 김군이 IS에 가담한 사건이 있었음. 모든 은둔 청년이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소수의 사례가 사회적 충격을 야기하고 있음.

[그림 6-18] 고립 청년과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신문기사량 추이



자료: 빅카인즈. 고립 청년/ 은둔형 외톨이 검색 결과. bigkins.or.kr 에서 2021.11.8. 인출.

○ 또한, 청년의 고립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선택으로,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의 생애 선택을 하지 않게 되어 저출산 문제가 미래에 더욱 심화될 것을 예견하는 것이기도 함.

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080600001#c2b 에서 2021.11.8. 인출.
 20) 김혜원 외, (2021). 은둔형 외톨이: 가족, 사회, 자신을 위한 희망안내서. 학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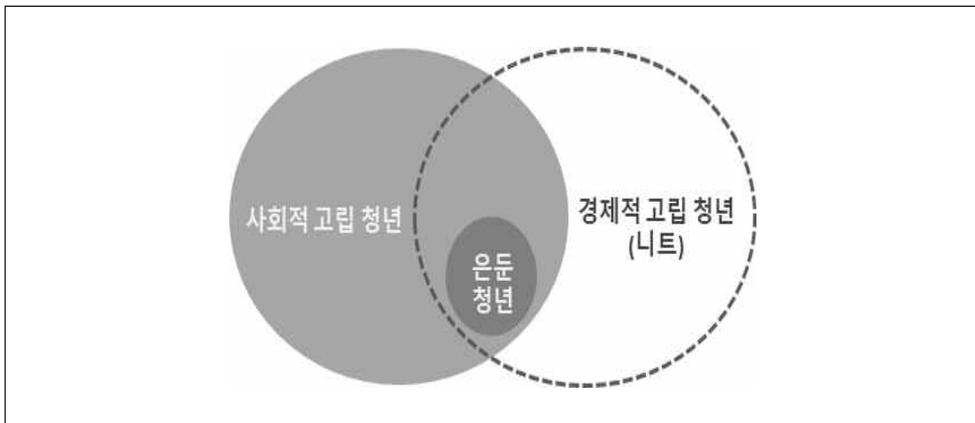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명에서 2018년 0.92명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0.84명으로 추계됨.
- 더욱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은 34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2020년 출생아 수는 약 27만 명으로 한 해에 태어나는 출생아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타인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있는 것임.

□ 정책 대상으로서 사회적 고립 청년, 특히 은둔형 외톨이는 니트와 혼용되지만 최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니트는 고용이나 교육,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으나, 사회적 고립 청년은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유의한 사회적 관계가 부재하고, 은둔형 외톨이는 관계 형성 자체를 어려워하며 회피함.

- 정책 대상으로서 니트는 일을 통한 미래 설계와 취업 지원이 필요한 반면, 사회적 고립 청년은 사회적 관계와 지지체계를 통한 사회통합이,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일상생활 관리, 사회기술 연습 등이 필요함.

[그림 6-19] 정책 대상으로서의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범위



자료: 저자 작성

○ 은둔형 외톨이는 말 그대로 필수 행위를 제외하고 방과 같은 한정된 은둔지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로 방 밖에서 접촉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회적 고립 청년을 주 지원 대상으로 하되, 고립 청년 지원 체계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당사자가 탈 은둔을 원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함.

□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이 전무함.

○ 유사한 맥락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172호)이 2020년 3월 31일 제정된 바 있음. 하지만 제2조(정의)에 의해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는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데에 그쳐, 최종적으로 고독사에 이르는 ‘고립’이라는 생애 경험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 고용 등 일부 정책 영역에서 니트와 같은 특정한 유형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유관 제도가 존재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제17866호, 2021.1.5., 일부개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의해 정부가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 “개인별 심층 상담을 통한 직업 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 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여기서 니트(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NEET)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대통령령에 따라 저학력 실업자나 장기 실업자 이외에도 고용이나 교육, 훈련 등의 상태를 말하고, 이들이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021.3.3.)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의욕 고취를 통하여 취·창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로의 연계를 목표로 부산, 인천 등 14개 지자체가 청년센터와 협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관계 부재라는 고립 혹은 은둔 청년의 탈고립을 위한 접근과는 상이함.

- 결국 구직단념청년에 비해 취·창업률 성과 달성이 어려운 은둔 청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잔존함.
- 청년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청년에게 공간과 정책을 연계·지원하는 체계로서 현재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음.

□ 더욱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산발적인 지원이 대응하고 있으나, 고립 청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2차 자료 이외 실질적으로 이들이 누구인지, 실제로 얼마나 어디에 존재하는지,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등 전국 단위의 고립 청년 삶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 서울(청년재단)²¹⁾과 광주광역시²²⁾에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개한 바 있으나, 조사 방법이나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일반화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 원인과 생활 실태, 탈 은둔 정책 방안 마련에 대한 단서를 확인하는 실마리가 됨.

□ 종합하면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 고립 청년의 존재와 이들의 회복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그동안 민간과 일부 지자체의 지원 이외에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은 전무하였음.

○ 사회적 고립 청년이 대한 정부 지원의 정책적 완전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 한 명 한 명이 생기 있게 살아가는 미래 한국의 토대를 마련할 시점임.

2.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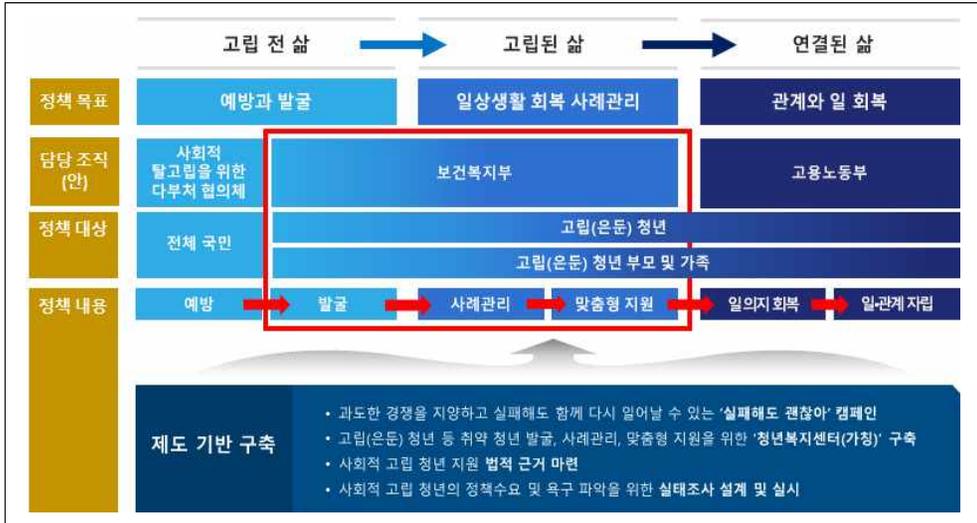
□ 청년이 고립 혹은 은둔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일상생활과 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입구와 경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함.

21) 파이교육그룹. (2020). 고립청년(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청년재단.

22) 임형문 외. (2020). 2020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광주광역시.

- 고립 청년 한 명 한 명이 경험한 은둔의 원인과 실패의 경험,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와 탈고립에의 의지 차이를 고려해 인내심을 갖고 개별 사례를 입체적으로 파악, 필요한 지원을 매칭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접근이 유효함.
 - 은둔은 생애 한 시점에서 경험하는 에피소드로서,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은둔형 외톨이’로서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심리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은둔 청년이 문을 열고 방을 벗어나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한 지역 중심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임.
- (지원 방안 체계(안)) 결국 사회적 고립 청년이 은둔 생활로부터 탈출해 사회로 재진입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당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① 고립 전에는 예방과 발굴을, ② 발굴한 고립 청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내에서 초기상담을 통해 상태를 판정하고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일상생활을 관리함으로써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결국 ③ 관계와 일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세심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립 청년의 탈고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④ 기반으로 고립 전 실패의 경험을 극복할 수 있고 은둔 경험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고립 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 사례관리,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를 구축하며, 관련 법제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고립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통해 근거 기반 정책 발굴이 필요함.

[그림 6-20]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프레임(안)



주: 저자 작성

3.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가. (고립 전 삶: 예방) “사회적 탈고립을 위한 다부처 협의체(기안)” 조직 및 운영

□ 사회적 고립(은둔)의 원인은 개개인의 개별적인 생애 경험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바, 정부 지원은 현재 고립(은둔)의 상태에 주목하되 고립(은둔)의 발생 원인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공간 및 기관의 관련 부처에 의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선제적 예방 체계를 구축·운영함.

<표 6-17> 사회적 고립(은둔) 발생 원인 및 관련 부처

다양한 사회적 고립(은둔) 발생 원인(안)	관련 공간 및 기관	관련 부처
학교생활부적응 및 폭력 피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부
진학 실패		
군대생활 부적응 및 폭력 피해	군대	국방부
취창업 실패	경제활동 현장	고용노동부
가족의 역기능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성가족부
가족기능의 부재 (자립준비청년, 저소득 빈곤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체계	보건복지부

자료: 저자 작성

나. (고립된 삶: 발굴1) “사회적 탈고립 전문요원” 육성 및 배치

□ ‘사회적 탈고립 전문요원’ 및 ‘사회적 탈고립 지원요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탈고립 전문팀” 배치 및 운영

○ ‘사회적 탈고립 전문요원(가안)’은 은둔 경험이 있고 탈은둔에 성공한 ‘은둔고수’*로 배치함으로써, 전문요원 본인은 ① 일경험 및 경력을 쌓고, ② 직업적 관계를 형성하며, ③ 소득을 얻는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 기반을 쌓을 수 있고, 은둔 청년 당사자는 ① 지원 체계로의 접근 시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고, ② 은둔고수인 전문요원을 롤모델로 인식하여 탈은둔 의지를 확고하게 하여 종합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현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회적 기업인 K2인터내셔널코리아에서 ‘은둔고수’를 양성하고 있으며, 2020년에 5명, 2021년 현재 17명이 참여하고 있어 이를 통한 인력은 수도권에 약 20명 정도 존재함.

○ ‘사회적 탈고립 지원요원(가안)’은 탈은둔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취약한 ① ‘사회적 탈고립 전문요원’에게 직업생활 적응에 대한 지지와 일에 대한 수퍼비전을 제공하고, ② 전문요원 간 협업을 도모하여 ‘사회적 탈고립 전문팀’을 운영하는 팀장의 역할을 수행함.

○ 실제로 아래 박스와 같이 현재 다부처 및 민간에서 또래 혹은 동료에 의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정책적 실현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함.

- 또래 지원 프로그램의 사례는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서울형 뉴딜 일자리 “4S일자리코디”, 서울청년센터 오랑 또래상담 등이 있고, 동료 지원 프로그램의 사례는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에 의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등이 있음.

○ ‘사회적 탈고립 전문팀’은 시·도 단위에서 조직하되, 희망복지지원단 등 사례 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존 서비스 체계 내의 전문팀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함.

〈표 6-18〉 주요 또래 및 동료 지원 프로그램 사례

〈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				
○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역 청년이 해당 지역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신체, 정신건강 분야)를 개발·제공하도록 하여 청년 수요자의 건강 개선 및 청년 공급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청년 수요자) 만19-39세 청년층*				
*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청년 공급자) 지역대학, 대학·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법인 등 시·도별 1개씩 사업단을 선정하되, 제공인력은 만19-34세 청년층**				
**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관련분야 전공자 우대 채용				
〈참고 표〉 시도별 “청년 사회서비스 사업단” 운영 현황				
시도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제공 프로그램
서울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중구 필동로1길 30	02-2260-8982	맞춤운동, 심리분석상담 등
부산	동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164	051-208-3221	맞춤상담, 운동소통미술PG
대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대구 달서구 중흥로4길 83	053-634-4113	맞춤PT, 심리검사상담
인천	경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 미추홀구 숙굴로 113(도화동)	032-770-8258	심리지원, 운동치로 등
광주	광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 북구 필문대로 55(봉황동)	062-520-4331	토닥토닥 심리, 운동치로
대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 동구 대학로 62	042-280-4812	맞춤형 운동처방, 청년우울 해소
울산	CAREER&CARE참살 진로집중 상담센터	울산 중구 중가로 651번길 굿프라이 2동 302호	052-272-5518	식생활 개선, 정서심리지원
세종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세종 세종로 2511	044-860-1944	비만자세관리, 심리지원
경기	늘푸른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수원 팔달구 정조로 651	0507-1318-5179	심리운동, 신체건강개선
강원	상지영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원주 상지대길 84	033-734-5705	영양관리, 공감 의사소통
충북	㈜보듬	청주 흥덕구 진재로 30	1600-4256	푸드테라피서비스, 심리상담
충남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041-550-1420	운동치로, 정서심리지원 등
전북	㈜휴먼제이앤씨	전주 팔달로 354	063-246-7589	청년두발라이프, 심리지원
전남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목포 영산로 413-1	061-278-6334	운동치로, 식생활 개선 중독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경북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천시 대학로 214	054-420-4113	스피치, 호신술 자기방어
경남	가말하우스	김해 구산로 5번길 49-47	055-312-1703	진로상담, 운동치로
제주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 516로 2870(영평동)	064-754-0409	운동치로, 식생활 개선, 정서 심리지원중독예방프로그램 등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청년사회서비스사업.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203&PAGE=4&topTitle= 에서 2021.11.7. 인출.

〈 서울형 뉴딜 일자리 “청년 4S 일자리 코드” 〉

○ 서울특별시에서 2020 서울형 뉴딜 일자리의 일환으로 “청년 4S* 일자리 코드”를 채용하여 청년이 청년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4S는 Sense(청년의 마음을 헤아리며 같은 눈높이를 유지), Style(청년 라이프 스타일 방식에 맞춤), Story(청년 자신의 이야기가 탄생하도록 지원), Speed(원하는 일자리를 빠르게 얻도록 원스톱화)의 약어

- 청년 4S일자리 코드의 업무는 (1) 진로설계, 취업상담 및 청년주거·법률상담, 공시생 진로전환 등 청년 종합상담 창구 운영, (2) 이력서 컨설팅, 직무멘토링, 소규모 청년채용박람회 이력서 사진촬영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3) SNS 홍보, 찾아가는 현장홍보, 홍보콘텐츠 발굴 및 제작, 청년사업 수요조사, (4) 노량진 장수생을 고용하여 고시식당 모바일 식권, 수험생활 노하우 공유, 자기관리 시스템 등 온라인 종합 플랫폼 구축 지원

- 참여 대상: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 및 취업정보업체 근무자 우대)

- 근로조건 및 급여: 주5일, 1일 6시간, 시급 10,150원

〈 서울청년센터 오랑 또래 상담 〉

○ 서울청년센터 ‘오랑’에서는 스트레스, 우울,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 청년들이나 진로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래 및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

○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제활동상태로 전이를 지원

- 동료지원가 운영에 발생한 인건비성 경비*를 수행기관에 지급

* 동료지원가 인건비(1인당 80만원, 월 60시간 기준) 및 참여자가 동료지원활동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공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취업으로 연계된 경우 연계수당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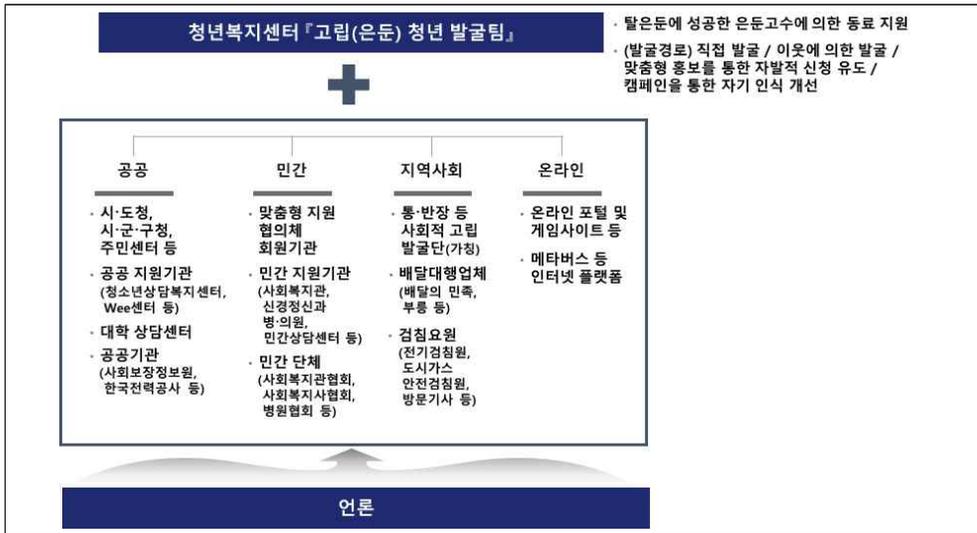
- 지원 절차



다. (고립된 삶: 발굴2) 지역 내 ‘사회적 고립(은둔) 발굴단’ 구축

- 지역 내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체계와 연계하는 ‘사회적 고립 발굴위원’ 교육 및 위촉장 수여하여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체 구축
- 잠정적인 범위는 공공(국조실, 복지부 등 관련 부처,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민간기업체(인터넷 포털사, 통신업체, 배달대행업체 등), 민간단체, 청년 지원 기관 및 취약청년 당사자가 될 수 있음.
 - (사회적 고립 발굴위원(가칭)) 배달대행업체(배달의 민족, 부릉 등), 통반장, 전기검침원, 도시가스안전점검원, 방문기사, 대학 상담센터 등

[그림 6-21]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발굴체계 연구진안



자료: 저자 작성

- 참고로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위험에 처한 사례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서는 법률에 의해 지역의 발굴, 신고 의무자를 지정함.

※ (참고)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에 의하여 공·사적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로 인해 생계곤란의 상황에 처한 자를 발굴, 신고하도록 함

라. (고립된 삶: 사례관리) “사회적 탈고립 전문 사례관리사”에 의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 설계 및 관리

□ 고립(은둔) 청년은 일상생활 관리부터 자립 기반 지원부터 복합적인 욕구를 경험하고 있는 바, 당사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초기 상담과 입체적인 사례 판정을 통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매칭

○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의 복합 욕구 범주는 고립의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 관리, 사회기술 재학습, 공동생활 경험, 사회관계 형성, 일 의지 회복, 취업 기술 교육, 취창업 지원, 그리고 개인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경제적 곤란 지원, 자립 기반 지원 등으로 볼 수 있음.

○ “사회적 탈고립 전문 사례관리사”는 당사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한 상담과 사례 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면서도, 청년의 고립과 은둔 경험 자체와 당사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노하우, 복합 욕구에 대응하는 단계적 맞춤형 지원 방법 등을 숙지하여 고립 및 은둔 청년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들은 당사자에 대한 사례관리 노하우와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기관 조직화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

- 또한 복합 욕구를 갖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에게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당사자 개인계좌를 관리함.

- 개인계좌(personal budget, 혹은 개인예산)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 중에서도 예산 사용에 있어 대상자의 욕구 평가에 근거를 두어 개별적으로 지원예산을 설계, 배당 집행하는 제도임(이한나 외, 2019, p.12).

-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일환으로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받은 개인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한 후 내일배움카드로 경비를 처리하게 됨.

- 복합 욕구에 대응하여 고립의 정도를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적합

- ‘사회적 탈고립 전문 지원팀’은 팀장과 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발굴을 위한 탈고립 지원요원 및 전문과의 협업체계임.

〈표 6-19〉 사회적 탈고립 전문 지원팀 구성(안)

구분	고용 형태	역할
센터장/팀장	전일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센터 및 팀 업무 총괄
사례관리사		고립(은둔) 청년 사례관리, 고립(은둔) 청년 개인계좌 관리, 발굴팀 협업, 맞춤형 지원 협의체 구축 및 운영
탈고립 지원요원	시간제 민간전문가	전문요원 수퍼비전 및 팀장
탈고립 전문요원		은둔 청년 발굴 및 캠페인 기획

자료: 저자 작성

- 사회적 탈고립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는 시도 단위에서 우선 조직하고 최종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확장하여 지역성을 확보하되, 기존 서비스 체계 내의 전문팀으로 배치하는 다음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1안) (지자체 청년활동지원센터) 시도 단위 청년센터에 ‘사회적 탈고립 전문팀’ 배치
 - 이 경우, ① 청년센터 자체의 안정성 확보와 ② 맞춤형 지원 체계와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임.
- (2안) (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① 시·도에 ‘사회적 탈고립 전문팀’ 신설하고 ② 시·군·구 단위 희망복지지원단에 ‘사회적 탈고립 전문 사례관리사’ 양성 후 배치하여 맞춤형 지원까지 협업 프로세스 구축
 - 이 경우, ① 청년 당사자 접근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탈고립 전문팀’ 업무 공간을 지자체 청년센터에 확보하고, ② 시·군·구 단위 ‘사회적 탈고립 전문 사례관리사(가칭)’ 양성해야 하며, ③ 향후 ‘청년복지센터(가칭)’ 신설 시 발굴 전문팀 및 맞춤형 지원팀을 센터 내 ‘고립(은둔)청년 지원팀’으로 재배치가 가능함.
- (3안) (“청년복지센터(가칭)” 신설) ①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신설 후, ② 센터 내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계층 청

년 유형별 발굴 전문팀 구성, ③ 센터 내 취약계층 청년 맞춤형 지원 사례관리사 배치하여 발굴 전문팀과 협업프로세스 구축

- 이 경우, ① 취약계층 청년 다(多)유형을 포괄하는 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② 17개 시·도에 센터 우선 신설 후 시·군·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③ ‘사회적 탈고립 전문 사례관리사(가칭)’ 양성 및 배치해야 하고, ④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전문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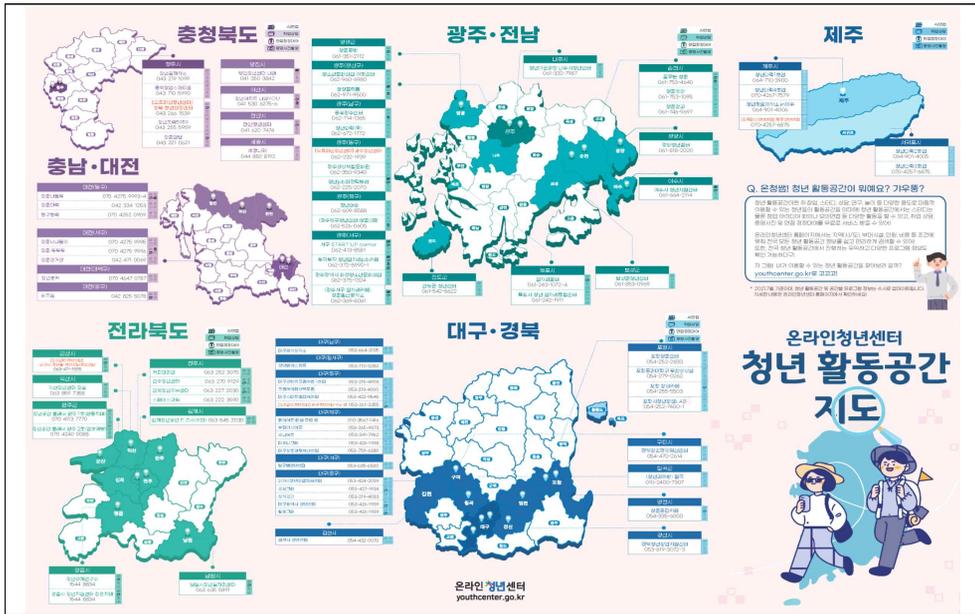
〈표 6-20〉 고립(은둔) 청년 지원 수행체계 비교

구분	(1안) 지자체 청년활동지원센터 활용	(2안) 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활용	(3안) “청년복지센터” 신설
청년 당사자 접근성	높음	낮음	높음
청년 대상자 이해도	높음	낮음	높음
취약청년 맞춤형 지원 노하우	낮음	높음	높음
취약청년 맞춤형 지원 효과성	낮음	높음	높음
연령 연속성	낮음	높음	중간
즉시 실현가능성	중간	높음	낮음

자료: 저자 작성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수행체계는 ① 생애 취약 경험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 당사자를 사회보장체계에서 포용하되, 청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② 청년 당사자가 심리적 낙인감이나 불편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입구(gateway)로 기능하는 동시에 ③ 복합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함.

- 따라서 [그림 6-22]와 같이 맞춤형 지원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내 “청년복지센터(가칭)” 신설을 최종 모델로 하되, 청년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청년활동지원센터 내에 물리적 사무공간을 마련할 수 있음([그림 6-23] 참조).



자료: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에서 2021.12.15. 인출.

마. (고립된 삶: 맞춤형 지원)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지원

- 애초 고립과 은둔을 선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미 고립된 청년에 대한 공적 지원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고립으로부터 탈출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립(은둔) 청년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욕구 범주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포트폴리오에 따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되, 일상생활 관리나 사회기술 재학습 등 공공에 의한 지원 중 비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민간과의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
-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및 공공의 지원 기관을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협의체’로 구성하여,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회원기관의 자격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6-21〉 고립(은둔) 청년의 복합 욕구 범주 및 관련 지원 프로그램(안)

단계	고립(은둔) 정도	고립(은둔)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	대응방안
1	심함 ↑ ↓	심리상담과 자기이해	개인 단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양성 (심리상담센터 등 민간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보건센터,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원 등)
2		일상생활 관리 (기상, 세안 등 자기 관리)	
3		사회기술 재학습 (아이컨택, 대화하기 등)	
4		유사한 경험을 한 동료들과의 자조모임	
5		환경 변화를 위한 공동생활	
6		일반 청년과 섞이는 관계 형성 지원	
7		일 의지 회복 및 일 경험 (은둔 청년 특성 고려)	※ 당사자 및 가족 경제력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화
8	약함	취·창업 기술 교육 및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으로 연계
9	별도 지원	경제적 곤란에 대한 생계비 지원 (※ 당사자 및 가족의 경제력에 따라 별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연계
10		주거 등 자립 기반 지원 (※ 당사자 및 가족의 경제력에 따라 별도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및 공공주택 연계

자료: 저자 작성

바. (고립된 삶: 맞춤형 지원) 지역별 고립(은둔) 청년 지원 협의체 구축

□ 고립(은둔) 청년이 경험하는 단계별 욕구 범주를 고려에 따른 민간 및 공공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주체에 의한 “지역별 고립(은둔) 청년 지원 협의체” 구축 및 운영 필요

○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데에 ① 비어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발견·신설하고, ②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에게 입체적인 지원 패키지를 지원하며, ③ 협의체 내 지원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음.

사. (고립된 삶: 가족 지원) 고립(은둔) 청년 가족 및 부모에 대한 전문 상담 실시

□ 고립 청년 중에서도 극단적 상태인 은둔 청년이 은둔을 선택하기까지 실패 경험의 누적과 가족 등 대처 기제가 미작동하여 가족의 역기능을 치료할 필요와 함께

탈은둔에 성공하기까지 가족의 역할이 요구되는 바,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 특히 부모에 대한 전문 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함.

- ① 부모의 과잉기대나 방임 등 가족의 역기능을 치료하고, ② 은둔 청년과의 소통을 시도하여 탈은둔 의지를 갖게 하며, ③ 탈은둔을 도모하는 청년에게 적절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언어 및 비언어적 대화 기술을 교육하고, ④ 가족과 부모가 가지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직접 상담을 실시함.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여성가족부 산하)에서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족유형별 교육 내용에 “고립(은둔) 청년 가구 부모교육”은 부재함.

〈표 6-22〉 현행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강의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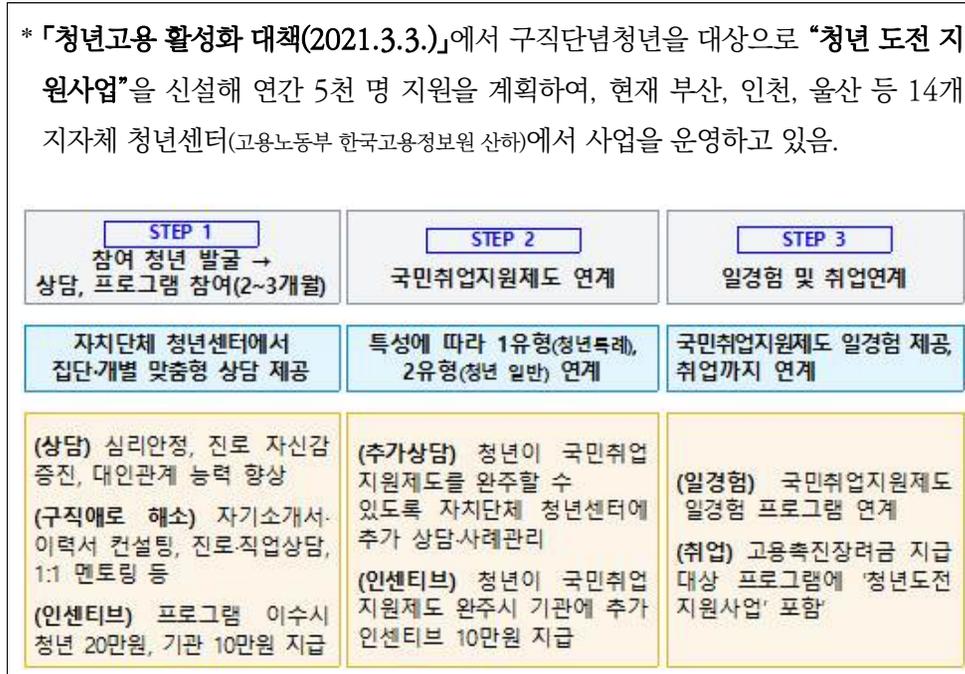
구분	예비부모교육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가족유형별 부모교육
내용	중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대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성인 대상 예비부모교육(군인, 직장인 등)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아동기(초등) 자녀를 둔 부모교육, 청소년기(중·고등) 자녀를 둔 부모교육	한부모 가족 부모교육,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 조손 가족 부모교육, 재혼 가족 부모교육, 비동거 가족 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372C380/contents.do> 에서 2021.11.8. 인출.

아. (연결된 삶: 자립 지원) 일 의지 회복 및 취창업 지원

- 일 의지를 회복하고 취·창업을 희망하는 고립(은둔) 청년은 구직단념청년(니트) 지원사업으로 연계함.
- 취·창업 과정에서 새로운 실패를 경험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 바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체계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지체계로서 사후 관리함.

[그림 6-24] 고용노동부의 구직단념청년(니트) 지원사업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1.3.3.).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_View.do?news_seq=11999. p.15 에서 2021.12.7. 인출.

자. (연결된 삶: (관계 맺기) ‘고립(은둔) 청년 자조모임’ 지원

-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자조모임을 형성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연습·유지의 장(場)으로 기능
- 또한 현재 고립(은둔) 청년의 탈고립을 응원하는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차. (기반 구축) “실패해도 괜찮아” 캠페인

- 한 두 번의 실패로 인생이 몰락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매년 10월 13일은 “세계 실패의 날”로, 2021년 행안부와 중기부에서 ‘세계재 도전포럼’을 개최함.
 - 핀란드에서 노키아의 하락세,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12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이야기, 빌게이츠의 첫 회사 실패담 등 경제적 셀럽들이 경험을 공개하며 2010년 10월 13일 핀란드에서 최초의 ‘실패의 날’을 개최함.
 - ‘실패해도 괜찮고’, 몰락하기보다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등 누적된 실패 경험에 취약한 잠재적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탈고립 이후 과거의 고립(은둔) 경험 자체가 당사자나 사회로 하여금 또 다른 실패 경험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

카. (기반 구축)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센터 구축

- 시·도, 시·군·구 등 지자체에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 설치·운영
- 기존 지자체별 복지 지원체계를 우선 활용하여 추진하되, 향후 고립 등 다(多) 유형 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 구축

타. (기반 구축) 고립(은둔) 청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고립(은둔) 청년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함.
- 현재 광주, 부산, 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에서 2020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을 세 가지로 제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6-23〉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

구분	장점	단점
(1안) 「청년기본법」에 지원 근거 마련	상대적으로 법 개정 용이	기본법이므로 지원 방안 구체성 확보 어려움
(2안) 복지부 등 관련 부처 법률에 마련	상대적으로 법 개정 용이	기존 법률의 목적과 범위와 상이하여 법률 내 일관성 확보 어려움
(3안) 「청년복지법(가칭)」 제정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한 취약청년 다(多)유형을 포괄하고, 필요에 의한 법적 근거 마련 가능	새로운 법률 제정 어려움

자료: 저자 작성

파. (기반 구축) 근거 기반 정책을 위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실시

- 현재 전국 고립 청년을 34만 명(3.1%)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차 자료를 활용한 추정치이므로 고립(은둔) 청년의 전국적 규모를 추정하고 삶 실태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자료는 전무함.
- 「청년기본법」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에 의하여 “청년 삶 실태조사”는 현재 전국 10,000~15,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2022년에 조사를 시행할 예정임.
 - 그렇다면 고립 청년은 300~450명(3.1%), 은둔 청년은 180~270명 정도일 것으로 산술적으로 예측되나, 고립(은둔) 청년은 일반 조사 대상과 달리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 전체 청년 대상 조사에서 식별되는 대상 규모와 실제 대상 규모 간 차이 또한 현저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고립(은둔) 청년을 표적하여 세밀한 접근 전략을 세우면서 이들이 가지는 고유한 삶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도입 전략

- 상기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안)』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여,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안함.

- 0단계에서는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도모하고, 1단계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제도를 우선 도입하며, 2단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 제도를 확장해 정착하도록 함.

〈표 6-24〉 단계별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도입 방안

단계	내용			
0단계 제도 기반 마련	0-1 “사회적 탈고립을 위한 다부처 협의체(가안)” 조직			
	다양한 사회적 고립(은둔) 발생 원인(안)	관련 공간 및 기관	관련 부처	
	학교생활부적응 및 폭력 피해 진학 실패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부	
	군대생활 부적응 및 폭력 피해			군대
	취창업 실패	경제활동 현장	고용노동부	
	가족의 역기능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	
	가족기능의 부재 (자립준비청년, 저소득 빈곤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체계	보건복지부	
	0-2 1단계 사회적 탈고립 전문가 양성 : ① 사회적 탈고립 전문요원 및 ② 지원요원, ③ 고립 청년 전문 사례관리사			
	- 전문가 구분 및 규모 (※참고: 시군구당 고립 청년 1,400명 추정)			
	구분	역할	자격요건	목표 인원(명)
	① 사회적 탈고립 전문요원	은둔 청년 발굴 및 캠페인 기획	은둔 후 탈은둔 경험자	17개 시도×2명=34명
	② 사회적 탈고립 지원요원	전문요원 수퍼비전 및 팀장	은둔 청년 지원 경험자	17개 시도×1명=17명
	③ 고립 청년 전문 사례관리사	고립(은둔) 청년 사례관리, 발굴팀 협업, 지원협의체 구축 및 운영	사회복지사	17개 시도×2명=34명
	- ① 전문요원 및 ② 지원요원 교육			
	프로그램	내용		
① 사회적 고립(은둔)의 이해	고립 및 은둔 전문가 강의			
②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및 가족 경험 공유	교육 당사자 및 가족			
③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의 복합적 욕구 이해	고립 및 은둔 전문가 강의			
④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법 학습	고립 및 은둔 청년 지원 실무자 강의			
⑤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방안 논의	교육 당사자			
- ③ 사례관리사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① 사회적 고립(은둔)의 이해	고립 및 은둔 전문가 강의			
②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및 가족 경험 청취	당사자 및 가족 강의			
③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의 복합적 욕구 이해	고립 및 은둔 전문가 강의			
④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법 학습	고립 및 은둔 청년 지원 실무자 강의			

단계	내용			
	0-3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시범사업 실시 - 시도 혹은 시군구 선정하여 고립(은둔) 청년 “발굴-사례관리-맞춤형 지원” 시범사업 실시 -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평가 및 개선 방안 도출하여 지원 모델 구체화			
	0-4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실시 - 모집단에 근거를 둔 확률표집이 불가능하므로 규모파악은 불가능 - 고립(은둔) 청년 실태 및 복합 욕구 파악에 활용			
	0-5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내용) 목적, 대상으로서의 취약 청년 유형, 지원 방향, 사회적 탈고립을 위한 다부처 협의체, 맞춤형 지원 협의체, 청년복지센터 설립 등			
	0-6 연결된 사회를 위한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대상 공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 다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개선 방안 모색 -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및 대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유도			
	1-1 “사회적 탈고립을 위한 다부처 협의체(가안)” 운영			
	1-2 시도 단위 광역 청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 0단계 시범사업 모델 평가 결과를 반영해 시도 단위 고립(은둔) 청년 “발굴-사례관리-맞춤형 지원” 사업 실시			
1단계 시도 단위 제도 도입	1-3 2단계 사회적 탈고립 전문가 양성 - 전문가 구분 및 규모 (※참고: 시군구당 고립 청년 1,400명 추정)			
	구분	역할	자격요건	목표 인원(명)
	① 사회적 탈고립 전문요원	은둔 청년 발굴 및 캠페인 기획	은둔 후 탈은둔 경험자	230개 시군구×2명 =460명
	② 사회적 탈고립 지원요원	전문요원 수퍼비전 및 팀장	은둔 청년 지원 경험자	230개 시군구×1명 =120명
	③ 고립 청년 전문 사례관리사	고립(은둔) 청년 사례관리, 발굴팀 협업, 지원협의체 구축 및 운영	사회복지사	230개 시군구×2명 =460명
	- ① 전문요원 및 ② 지원요원 교육			
	프로그램		내용	
	① 사회적 고립(은둔)의 이해		고립 및 은둔 전문가 강의	
	②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및 가족 경험 공유		교육 당사자 및 가족	
	③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의 복합적 욕구 이해		고립 및 은둔 전문가 강의	
④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법 학습		고립 및 은둔 청년 지원 실무자 강의		
⑤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방안 논의		교육 당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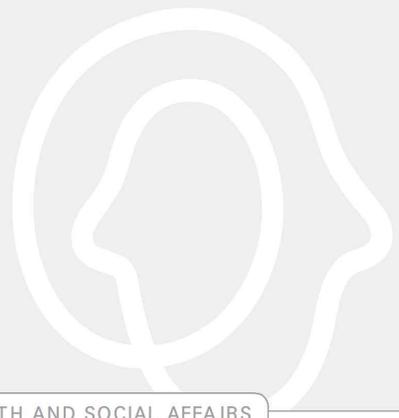
단계	내용			
2단계 사군구 단위 확대 및 제도 정착	- ③ 사례관리사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① 사회적 고립(은둔)의 이해	고립 및 은둔 전문가 강의		
	②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및 가족 경험 청취	당사자 및 가족 강의		
	③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의 복합적 욕구 이해	고립 및 은둔 전문가 강의		
	④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법 학습	고립 및 은둔 청년 지원 실무자 강의		
	1-4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도출			
	- 0단계 시범사업 경과 및 참여자와 실무자 FGI를 통한 평가 및 개선 방안 도출			
	1-5 “청년 삶 실태조사” 부가조사 실시			
	- 모집단에 근거를 둔 확률표집으로 규모파악이 가능 - 전체 조사대상 중 고립(은둔) 청년의 유효표본 크기를 확보하지 못할 시, 삶 실태 및 욕구 파악 불가능			
2-1 “사회적 탈고립을 위한 다부처 협의체(가안)” 지속 운영				
2-2 시군구 단위 광역 청년복지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				
- 1단계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시·군·구 단위 고립(은둔) 청년 “발굴-사례관리-맞춤형 지원” 사업 실시				
2-3 2단계 사회적 탈고립 전문가 보수교육				
- 전문가 구분 및 규모 (※참고: 시군구당 고립 청년 1,400명 추정)				
구분	역할	자격요건	목표 인원(명)	
① 사회적 탈고립 전문요원	은둔 청년 발굴 및 캠페인 기획	은둔 후 탈은둔 경험자	230개 시·군·구×2명 =460명	
② 사회적 탈고립 지원요원	전문요원 수퍼비전 및 팀장	은둔 청년 지원 경험자	230개 시·군·구×1명 =120명	
③ 고립 청년 전문 사례관리사	고립(은둔) 청년 사례관리, 발굴팀 협업, 지원협의체 구축 및 운영	사회복지사	230개 시·군·구×2명 =460명	
- 교육 장소: 보건복지인력개발원(오송) 등				
2-4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 방안 도출				
- 고립(은둔) 청년 실태 및 복합 욕구 파악에 활용 - 0~1단계 사업 실시 후 인식 변화 파악 가능				

자료: 저자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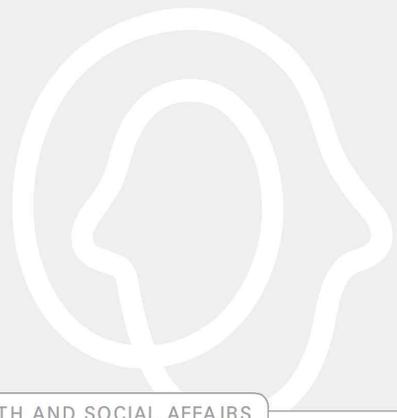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부

정책 제언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취약계층 청년 지원 방향

제2절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제3절 취약계층 청년 지원 기반 구축 방안

제 7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취약계층 청년 지원 방향

1. 취약계층 청년의 복합 욕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다양한 요인과 복합적 욕구에 대한 포용) 청년기에 발현되는 취약성에 주목한다면 청소년기 경험에 의한 원인에 주목하기보다 취약한 현재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은 탄생 이후 사망까지 전 생애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존재로 취약 경험은 아동-청소년기의 여건과 경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므로, 첫째, 청소년 지원 단계에서는 청년기 취약성을 사전 예방하고 둘째, 현재 취약한 청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취약한 경험을 유발한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취약계층 청년 유형의 중복 가능성) 취약한 청년이 곤란을 경험하는 삶의 영역이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유형의 중복과 집중 지원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개별법보다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다문화 가족 자녀 청년이(이주배경청년) 가구 내 돌봄을 부담하게 되어(청년돌봄자=영케어러) 고립될 수 있고(고립 청년), 이 경우 장기간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장기/비자발적 실업 청년, 니트 청년) 저소득 빈곤 상태에 처할 수 있으며(저소득 빈곤 청년), 동시에 생계유지를 위한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부채 부담 청년). 각 유형별 접근이 배타적이고 집중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지원 체계의 칸막이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함.

2. 사전적 잠재적 사각지대 예방

- (하방경직성에 대한 사전 대응) 공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된 이후에는 주기적인 성과 평가와 개선 방안 도출을 통한 미세 조정(fine-tuning)이 가능하지만 대대적인 개편은 사실상 비현실적이므로, 계획 단계에서 중장기적 비전에 따른 단계적 실현 방안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청년정책과의 유기적 역할분담) 취약계층 청년 또한 청년이라는 점에서 청년 일반에 대한 지원체계와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예를 들어,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센터(가칭 “청년복지센터”)는 청년 중앙지원기관(가칭 “한국청년진흥원”) 신설 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 유기적 역할분담 가능함.
- (연령연속성)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의 법적 연령은 19~34세이지만, 취약한 생애 경험은 연령 분절적이지 않음. 다시 말해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잠정적으로 연령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고립 청년은 2019년 기준 19~34세 청년의 3.1%로 추산하고 있지만, 34~49세 장년은 4.6%, 50~64세 중년은 5.7%, 65세 이상 노인은 7.5%로 연령이 높을수록 규모도 늘고 삶의 만족도도 감소함. 더욱이 고립이 고착화되어 생애 마지막을 맞는 고독사 현상은 중장년과 노인을 중심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그림 6-17] 참조).

3. 미래세대로서의 청년 접근성 확보

- (물리적 접근성) 청년은 아동-청소년기에 비해 비교적 독립적인 이동이 가능하지만 자차를 이용하거나 도시 경계를 넘나들기 위해 높은 교통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한 단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네 혹은 온라인 및 읍면동 혹은 시·군·구 단위의 지역 내에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함.

□ (심리적 접근성) 정부 지원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인 취약성을 타인에게 노출하는 것은 심리적 비용을 요하는 일임. 곤란을 겪을 때 공적 지원을 받는 것은 권리로서 합당한 동시에 당사자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와 취약 청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주민센터의 경우 일반 행정 섹터와 복지지원 섹터의 사무공간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외부인에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공적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복지지원 센터로 방문한다면 공무원들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한 주민 등 익명의 타인들에게 자신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임. 따라서 충분하지 않은 지원과 자신의 존엄성을 심리적으로 비교하여 결국 지원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발생함.

- 이런 맥락에서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 청년활동공간을 취약계층 청년의 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인지적 접근성) 취약한 청년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고 진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동시에 필요한 지원을 검색하고 인지하고 신청하기에도 한계가 있음.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매칭하고 정책 용어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입원을 하게 되어 돌봄 부담을 전담해야 하는 청년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확한 제도 명으로 검색하는 것도 어렵고 검색했다고 하더라도 제도에 의한 소득인정액이나 자산 산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아니면 사실상 어려우며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제도 신청을 포기할 수 있음.

4. 당사자 중심의 지원 실효성 확보 및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 형성 유인

- 공적 지원은 무엇보다 당사자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어야 함. 동시에 취약계층 청년이 어려움을 겪는 고유한 취약 경험과 삶의 영역이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이 전체 체계를 관리하되 유연한 접근이 가능한 민간 지원 서비스 시장 형성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당사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지원기관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질 관리 및 비용 지급 체계를 고안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 병·의원 및 민간 심리상담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기관, 민간 영리기관 등
- 또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집중 지원의 지향이 이후 자립한 삶에서 청년기 취약 경험으로 인한 차별 없이 양질의 삶을 누리는 시민의 모습이라면, 단순한 지원 서비스 제공을 넘어 대상자 발굴과 실태조사 지원, 캠페인 수행, 대상자 일 경험처 지원 등을 내용으로 “취약 청년과 함께 하는 민·관 협의체”를 고려할 수 있음.
- 잠재적인 범위는 공공(국조실, 복지부 등 관련 부처,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민간기업체(인터넷 포털사, 통신업체, 배달대행업체 등), 민간단체, 청년 지원 기관 및 취약청년 당사자가 될 수 있음.

제2절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 이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① 취약한 삶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삶의 영역에 대한 ② 공적 지원의 대상자 포괄성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현행 취약계층 청년 정책을 유형화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자 하였음. 단, 공적 지원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이번 연구의 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첫째, 취약계층 청년에게 필요하고 청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장”되는 정책 영역 이외에도,

- 둘째, 존재하고 청년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청년의 이용 정도가 낮은 영역을 “**가려진 정책**”으로 분류하여 기존 정책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거나,
 - 셋째, 존재하지만 정책 설계에 의해 청년이 배제되거나 부분적으로 포괄하는 정책 영역을 “**정책적 부분 사각지대**”로 분류하여 기존 정책이 청년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
 - 넷째, 취약계층 청년에게 필요하지만 비어 있는 정책 영역을 “**정책적 완전 사각지대**”로 발굴하여 신규 정책을 제안할 필요를 제기하고자 하였음.
- 이에 따라 제2장에서 제안한 취약계층 청년 유형과 관련 공적 지원을 매칭하면 <표 7-1>과 같음.
- 제2장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의 원칙에서 논한 것과 같이, 인적 속성이나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에 의해 식별되는 청년 중 사적 대응기제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은 공적 지원 대상으로 범주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력 수준과 결합하여 취약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표 7-1>은 이 연구에서 검토한 취약계층 청년 유형과 관련 공적 지원의 대상자 포괄성을 비교하여 정책 수요와 공급의 정합성을 평가한 결과임.
- 이에 따라 ‘보장’ 영역은 사업 수행 실적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일자리 특성과 관련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3월에 발표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제도를 미세 개선(fine-tuning)해나갈 수 있음.
 - ‘가려진 정책’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를 확인함.
 - 예를 들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책임지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 청년 당사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해당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이들을 정책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하여 지원 대상자에서 누락할 수 있음.

- '부분 사각지대'는 해당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공적 지원의 법적 근거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제도에 의한 대상자 포괄성을 확대할 수 있는 종합 지원 패키지를 도출해야 함.
 - 예로 이주배경 청년 중 24세 이하 청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대상이나, 연령이 초과한 청년은 공적 지원에서 배제됨.
 - 또한 과도한 부채 상환 부담을 지는 청년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득 수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이 일부 가능하지만 부채 등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무지하여 취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 가족 등 사적 체계로부터 지식을 전수받지 못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 '완전 사각지대'는 새롭게 발견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을 공적 체계에서 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야 함.
 - 이 연구에서 완전 사각지대로 발견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핵심 취약계층 청년으로 분류하여, 제3부에서 이르기까지 국내외 지원 사례와 당사자 및 가족의 정책 수요를 파악한 근거를 바탕으로 종합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음.

〈표 7-1〉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정책 수요 및 공급 정합성 평가

취약계층 청년 유형		정책 수요			정책 공급			수요 대비 공급 정합성 평가
		추정 규모 (천명, %)	조작적 정의	자료원	지원제도	대상자 포괄성	접근성	
인적 속성 *	장애 청년	156 (1.4)	등록장애 청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20.12.)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지원	지원	있음 (주민센터 등)	부분 사각지대
		181 (1.7)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청년	2015년 인구총조사(표본)	-	일부 지원		
	이주배경 청년	100 (0.9)	출생지가 북한 또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재한동포 및 재외동포 제외)	2015년 인구총조사(표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 의한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등	일부 지원	부분적 (재외동포재단, 하나센터 등)	부분 사각지대
		X	다문화 가족 자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하여 24세까지 지원	일부 지원	제한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부분 사각지대
관계 특성 *	경제적 부양 청년	285 (2.6)	가구주나 배우자가 아닌데, 본인의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가구 총 경상소득의 75% 이상인 청년	제15차 한국복지패널 (20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근로소득 공제	일부 지원	있음 (주민센터 등)	부분 사각지대
		158 (1.5)	한부모가정의 부모인 청년	2020년 인구총조사(전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지원	있음 (한부모가족지원 센터)	보장
	청년 부양자	X	돌봄이 필요한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구원을 돌보고 있는 청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한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가사간병방문지원,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의료비 지원 등	일부 지원	제한적	부분 사각지대 & 가려진 정책
	고립 청년	339 (3.1)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	-	없음	없음	완전 사각지대

302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취약계층 청년 유형			정책 수요			정책 공급			수요 대비 공급 정합성 평가
			추정 규모 (천명, %)	조직적 정의	자료원	지원제도	대상자 포괄성	접근성	
일자리 특성 *	미취업 청년	니트 청년	1,969 (19.4)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 훈련 상태에 있지도 않은 청년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3)」 등	지원	있음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등)	보장
		장기/ 비자발적 실업 청년	453 (4.5)	장기실업자 또는 비자발적 실업 청년					
	취업 청년	저임금 근로 청년	1,039 (10.9)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청년					
		불안정 고용 청년	1,290 (12.7)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임시, 일용 종사자와 1인 자영업 종사자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	790 (7.8)	주 50시간 초과 근로청년과 불안전취업(단시간 근로) 청년					
경제력 수준	저소득 빈곤 청년		842 (7.8)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중위 50% 미만인 저소득 빈곤 가구의 청년 가구원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등	일부 지원	있음 (주민센터 등)	부분 사각지대
	과도한 부채 부담 청년		X	경제력 대비 본인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부담이 과도한 청년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득 수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지원 등	일부 지원	없음	부분 사각지대 & 가려진 정책

주: *표시한 인적 속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은 경제력 수준과 상호작용하여 공적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청년 인구 대비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비율은 (1) 자료원이 인구총조사 및 행정자료인 경우 인구총조사의 모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2) 자료원이 인구총조사가 아닌 경우 각 자료원에 의한 시점 기준 비율을 산출한 인구총조사에 의한 모수를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함. (2)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함. 정책 공급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수준을 고려함.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취약계층 청년 지원 기반 구축 방안

1.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가. 취약계층 청년 유형 삶 실태 모니터링 및 새로운 유형 발굴

-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대상자 규모 추정 및 새로운 유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는 실태조사(e.g. 「청년기본법」제11조에 의한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는 정책 입안이 가능함.
- 첫째,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규모 및 추세를 추정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에 의하여 2022년 실시 예정인 “청년 삶 실태조사”에 포함할 수 있는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식별 문항 세트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이 연구에서 검토한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을 식별하고 일반 청년과의 삶 실태 비교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음.
 - 2022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취약계층 청년의 삶 실태를 심층 파악하기 위해서는 2022년 조사대상자 중 취약계층 청년으로 확인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청년 삶 실태”에 대한 수시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향후 전문가 및 사회적 합의에 의해 문항은 수정될 수 있음.

〈표 7-2〉 취약계층 청년 식별문항(안)

□ 인적 속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식별 문항

○ **장애 청년(등록 장애 청년, 활동제한 청년)**

(등록장애청년) (Q가-1-1)에서 ②~⑮를 선택한 청년
 (활동장애청년) (Q가-1-2) 문항 세트 중 하나라도 ①을 선택한 청년

Q가-1-1) 귀하는 아래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으셨습니까?

① 비해당(비장애인)	⑧ 심장장애
② 지체장애	⑨ 간장애
③ 뇌병변장애	⑩ 호흡기장애
④ 시각장애	⑪ 장루·요루장애
⑤ 청각장애	⑫ 뇌전증장애
⑥ 언어장애	⑬ 지적장애
⑦ 안면장애	⑭ 자폐성장애
⑧ 신장장애	⑮ 정신장애

Q가-1-2) 건강 문제로 다음의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1) 안경을 써도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①그렇다 ②아니다
- (2) 보청기를 사용해도 듣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①그렇다 ②아니다
- (3)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①그렇다 ②아니다
- (4) 기억하거나 집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①그렇다 ②아니다
- (5) 스스로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등이 상당히 어려움 ①그렇다 ②아니다
- (6)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①그렇다 ②아니다

○ **이주배경 청년(이주배경 청년, 다문화가족 자녀 청년)**

(이주배경청년) (Q가-2-1)에서 ②~③을 선택했고, (Q가-2-2)가 ②이며, (Q가-2-2a)가 ②인 청년
 (다문화가족 자녀 청년) (Q가-2-4)가 ②이거나, (Q가-2-4)가 ①이지만 (Q가-2-4)가 ①인 청년

Q가-2-1) 귀하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습니까? ①대한민국 ②북한 ③그 외 외국()

Q가-2-2) 귀하의 현재 국적은 무엇입니까?

- ① 대한민국(→Q가-2-2a로 이동)
- ② 그 외 외국() ③국적이 없음

Q가-2-2a) 한국으로 귀화했습니까?

- ① 그렇다(귀하하였음)
- ② 아니다(태어났을 때부터 한국 국적임)

Q가-2-3) 귀하 부모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습니까? ①대한민국 ②북한 ③그 외 외국()

Q가-2-4) 귀하 부모님의 현재 국적은 무엇입니까?

- ① 대한민국(→Q가-2-5a로 이동)
- ② 그 외 외국() ③국적이 없음

Q가-2-5a) 귀하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귀화했습니까?

- ① 네(귀하하였음)
- ② 아니오(태어났을 때부터 한국 국적임)

□ 관계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식별 문항

○ 경제적 부양 청년

(응답자 개인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가구 총 경상소득×100 > 75

Q다-1-1) 지난 1년 동안 귀 가구의 총 소득과 귀하의 소득은 월평균은 얼마였습니까?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1) 가구 총 소득	지난 1년 동안 귀 가구의 월평균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경상소득 기준) ※ 경상소득= 근로소득(임금)+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사업소득은 순소득(총소득-경비)으로 계산 ※ 재산소득은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 이전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공적이전소득과 부모·자녀 또는 민간부문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을 포함	천	백	십	일	만원
(1) 응답자 (개인) 총 소득	지난 1년 동안 귀하 본인의 월평균 총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 근로소득=임금	천	백	십	일	만원
	지난 1년 동안 귀하 본인의 월평균 총 사업소득은 얼마입니까? ※ 사업소득은 순소득(총소득-경비)으로 계산	천	백	십	일	만원
	지난 1년 동안 귀하 본인의 월평균 총 재산소득은 얼마입니까? ※ 재산소득은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천	백	십	일	만원

○ 한부모 청년

(Q나-2-1)에서 ①을 선택하고, (Q나-2-2)에서 ②를 선택한 청년

Q나-2-1) 귀하와 가구주와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 ① 가구주 본인
- ② 배우자
- ③ 자녀
- ④...

Q나-2-2)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에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1인 가구
- ② 한부모가구(부 혹은 모와 18세 미만 혹은 취학 중인 경우 만22세 미만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 ③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정
- ④ 기타(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 청년 돌봄자

(Q나-3-2)에서 ②~④를 선택하고, (Q나-3-2)에서 ①을 선택한 청년

Q나-3-1) 귀 가구에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있습니까?

- ① 없음(비해당)
- ① 돌봄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고령자(→Q나-3-2로 이동)
- ② 돌봄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 아동(→Q나-3-2로 이동)
- ③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질환(의심환자) 등의 이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구원(→Q나-3-2로 이동)
- ④ 그 외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구원() (→Q나-3-2로 이동)

Q나-3-2) 귀하는 귀 가구에서 만성화된 신체 및 정신적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Q나-4-4a) 위에 해당하는 가구원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 ③ 1년 이상~3년 미만
- ④ 3년 이상~5년 미만
- ⑤ 5년 이상~7년 미만
- ⑥ 7년 이상

Q나-4-4b) 위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 ⑥ 기타()

□ 일자리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식별 문항

○ 저임금 근로 청년

임금근로자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임금 중위값의 2/3 이하인 청년

Q다-1)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는 얼마였습니까?

○ 불안정 고용 청년

(Q다-2-1)에서 직장에서의 지위가 ②, ③이면서 (Q다-2-2)에서 ②를 선택한 청년 및 (Q다-2-1)에서 ④인 청년

Q다-2-1) 지난주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상용근로자
- ② 임시근로자
- ③ 일용근로자
- ④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

Q다-2-2) 지난 주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

(Q다-3-1)에서 총 근로시간이 주당 50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Q다-3-2)에서 ②, ③, ④를 선택하거나 (Q다-3-3)에서 ①을 선택한 청년

Q다-3-1) 지난 주 총 얼마나 근로하셨습니다? _____ 시간

Q다-3-2) 지난주 실제 몇 시간 일하셨습니다?

- ① 지난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②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 ③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 ④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으로 바꾸고 싶음
- ⑤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Q다-3-1) 지난주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 장기/비자발적 실업 청년

(장기 실업 청년) (Q다-4-1)에서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청년
 (비자발적 실업 청년) (Q다-4-2)에서 ⑤, ⑥, ⑦, ⑧을 선택한 청년

Q다-4-1) 직장(일)을 구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얼마동안 계속 해왔습니까?

Q다-4-2) 이전 직장(일)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개인, 가족적 이유
- ② 육아 및 가사
- ③ 심신장애
- ④ 직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
- ⑤ 직장의 휴업, 폐업
- ⑥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 ⑦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 ⑧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Q다-4-3) 최근 1년 동안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일을 섰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니트 청년

(Q다-5-1)에서 ②, ③를 선택하고, (Q다-5-2)에서 ③, ④, ⑤가 아니고, 교육상태가 ①, ③, ⑤를 선택한 청년

Q다-5-1)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 ① 취업자
- ② 실업자(지난 5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 ③ 비경제활동인구

Q다-5-2)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다습니까?

- ① 육아
- ② 가사
- ③ 정규교육기관 통학
- ④ 입시학원 통학
- ⑤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 ⑥ 취업준비
- ⑦ 진학준비
- ⑧ 연로
- ⑨ 심신장애
- ⑩ 군입대 대기
- ⑪ 쉬었음
- ⑫ 기타()

Q다-5-3) 현재 교육 기관의 수학 상태

- ① 졸업
- ② 재학
- ③ 중퇴
- ④ 휴학
- ⑤ 수료

□ 경제력 수준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식별 문항

○ 소득 빈곤 청년

가구원수의 루트값으로 가구 처분가능소득(=가구 총소득-(세금+사회보장부담금)이 중위 처분가능소득의 50% 이하인 청년

Q라-1-1)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_____ 명)

Q라-1-2) 지난 1년 동안 귀 가구의 총 소득과 귀하의 소득은 월평균은 얼마였습니까?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1) 가구 총 소득	지난 1년 동안 귀 가구의 월평균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경상소득 기준) ※ 경상소득= 근로소득(임금)+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사업소득은 순소득(총소득-경비)으로 계산 ※ 재산소득은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 이전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공적이전소득과 부모·자녀 또는 민간부문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을 포함	천	백	십	일	만원
(2) 세금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세금은 얼마를 지출하셨습니다?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분담금, 주민세, 취득등록세 등의 연간 총납세액을 12로 나눈 값(단, 법인세 등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하고, 소득공제 환급시 더 낸 세금은 포함)	천	백	십	일	만원
(3) 사회 보장 부담금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사회보장부담금은 얼마를 지출하셨습니다? ※ 가족 모두의 국민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환산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업장이나 제3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외) ※ 사보험료(암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	천	백	십	일	만원

○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는 청년

전체 인구의 부채 부담 및 청년 개인의 경제력 대비 부채 부담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청년

Q라-2-1) 명목과 상관없이 귀하가 책임을 지고 상환해야 하는 다음의 부채는 얼마입니까?

※미린 월세, 교통안전공단지원대부금 등은 기타부채에 포함

※카드 할부구매는 카드빚에, 현금 할부 구매는 기타부채에 포함

※주거부채, 영농부채도 포함

※사회보험 연체금은 기타부채에 포함

※친인척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자가 있으면 일반사채에, 이자가 없으면 기타부채에 포함함

(1)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미상환금 포함) _____ 만원

(2) 일반사채 _____ 만원

(3) 카드빚 _____ 만원

(4) 전세(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 _____ 만원

(5) 외상이나 미리 탄 깃돈 중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 _____ 만원

(6) 휴대폰 등 내구재 구매 후 현금으로 받아 향후 상환해야 하는 금액 _____ 만원

(7) 기타부채

- 둘째,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수용성 변화 등에 따라 시의성 있는 새로운 취약 계층 유형(e.g. 경계선 지능 청년 등)을 발견하거나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이 일반 청년에 비해 취약한 삶의 영역과 취약성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음.
- 당사자의 곤란이 존재하지만 사적 체계로 대응하기 어렵고 공적 지원의 대상 자로서 식별이 가능한 청년 세대 새로운 취약계층 유형은 전통적인 취약계층 유형의 범주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잠재적 취약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리지표로서 <표 7-3>에서 제시하고 있는 낮은 행복 수준,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정서적 지표에서 취약한 집단을 발견하고 이들의 특성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 유형을 발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① 행복 수준이 과도하게 낮거나 우울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집단이나, ②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과도하게 부족한 집단이나, ③ 바라는 삶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집단 등임.
- 고유한 취약 경험을 확인하거나 지원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실태 파악은 어려운 한계를 내포함.

<표 7-3> 「청년 삶 실태조사」 미래설계 문항(연구진안)

대분류	개념		문항	척도
	중분류	소분류		
미래 설계	바라는 미래	교육 수준, 경제활동, 경제력, 관계 형성, 사회참여 등 바라는 삶의 요소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귀하의 삶에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바라고 계십니까? : 연애, 결혼, 자녀 출산과 양육, 높은 학력수준, 취업 혹은 창업, 내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 많은 자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 기여, 명예, 권력	4점
		바라는 미래 실현가능성	귀하께서는 귀하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점

개념			문항	척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바라는 미래 실현을 위한 여건	16개 여건에 대한 중요성	귀하가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다음이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인맥, 나의 교육수준, 내가 타고난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성실함, 나의 사교성, 창의적 사고, 글로벌 역량, 선택의 자유, 운, 뇌물을 주는 것, 롤모델이나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정책 지원, 성별	4점
		16개 여건의 실태	귀하가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다음의 항목을 얼마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인맥, 나의 교육수준, 내가 타고난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성실함, 나의 사교성, 창의적 사고, 글로벌 역량, 선택의 자유, 운, 뇌물을 주는 것, 롤모델이나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정책 지원, 성별	4점
주관적 웰빙(행복)		삶의 평가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귀하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귀하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귀하는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점
		삶의 만족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1점
		행복감	귀하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까?	11점
		삶의 가치 평가	귀하는 귀하가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점
		선택의 자유	귀하는 귀하의 삶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11점

자료: 정세정 외. (발간 예정).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 연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삶 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

□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취약한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가 상이한 바, 대상자를 표적하는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고립 청년의 극단적인 형태인 은둔 청년은 타인과의 접촉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실태조사에 의한 확률표집이 불가능함. 은둔 청년의 삶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과 민간, 지역사회 및 온라인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적극적인 발굴과 접촉이 필요함.

2. 청년 친화적 전달체계 구축

□ (행정적 전달체계) 공적 지원체제로 청년이 진입할 수 있는 입구(gateway)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물리적 전달체계) 청년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의 청년활동공간 등 청년 친화적 공간 이용할 수 있음.
- (인적 전달체계) ① 청년 일반 및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특성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으며, ② 공적 지원체계를 이해하고, ③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의 지원기관의 네트워크를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함.

3. 법적 근거 마련

- 합리적 취약계층 청년 지원 정책의 도구로서 국가의 역할과 실천전략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생애주기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등이 있는데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는 법적 근거는 부재함.

〈표 7-4〉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지원 법률

구분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법 위상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별법	「청소년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별법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별법
연령범위	0-18세 미만	9-24세	65세 이상
주요 지원내용	아동복지정책 수립, 보호서비스, 아동학대 예방, 안전 및 건강지원, 자립 및 자산형성지원, 돌봄 지원, 아동복지시설	건강지원, 통합지원체계(심의위원회 등),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등) 지원, 청소년 부모 지원, 청소년 보호, 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전용주거시설, 노인사회참여(일자리지원), 경로우대, 독거노인지원,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체계	아동복지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기본계획 여부	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실태조사 여부	아동종합실태조사(3년 주기)	청소년종합실태조사(3년 주기)	노인실태조사(3년 주기)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자료: 저자 작성

□ 취약계층 청년 지원 법률의 위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기본법 vs. 개별법)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의 방향 및 전략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취약계층 청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전달체계에 대한 정책 내용은 「청년기본법」제8조제3항에 의한 개별법으로 제정하되, 공적 사회보장체계에서 포용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제21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와의 관련성을 명시할 필요함.

- (참고)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청소년기본법」제49조제4항에 의해 청소년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법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 의한 개별법으로 기능함.

○ (일반법 vs. 특별법) 특별법의 난립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존재하지만, 일반법에 비해 특별법의 제·개정 가능성이 용이하여 시의성을 상실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을 법제화하는 수단으로서 용이할 수 있음.

- 하지만 국민의 관심을 해소하기 위해 선언적인 내용에 그칠 개연성 또한 존재하므로, 잠정적인 정책 방안을 우선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법 내용 범위) 취약계층 청년 지원 법률은 ① 취약계층 청년의 복합적 욕구를 포용하여 정책 수요자인 대상자 범위 및 정책 공급자인 소관부처 분류가 배타적이지 않고, ② 잠재적 사각지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확보하며, ③ 취약한 청년이 존엄성을 지키며 공적 지원체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 정책 방향 및 방안을 고려한 잠재적인 법 내용의 안은 다음과 같음.

- (기본이념)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유로 생애 취약한 경험을 하는 청년의 귀속적 특성과 초기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취약한 집단에 지원을 집중하여 결국 모두가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정의) 취약계층 청년 다(多)유형 포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는 발굴 및 실질적인 전달체계로 기능
- (조사 및 계획)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규모추정 및 삶 실태·정책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거 기반 지원 계획 수립
 - ①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규모추정은 「청년기본법」제11조에 의한 청년 실태조사를 이용하되 유형별 별도 실태조사 필요
 - ②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지원 계획은 「청년기본법」제8조에 의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
- (지원체계) 취약계층 청년 유형 및 당사자성을 고려한 민관위원회 및 지원 기관
- (지원기관) 취약계층 청년 지원 전담센터 (가칭 “청년복지센터”) 및 전문 인력 자격 및 양성
- (지원내용) “예방-발굴-사례관리-맞춤형 지원-사후관리”의 단계 및 취약성의 심도를 고려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 및 필요에 따라 기존 제도의 특례 근거 마련
- (지원 성과 평가 및 제도 개선)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하는 보장 영역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 평가와 개선 방안 도출을 통한 제도의 미세조정 (fine-tuning)
- (예산) 보조금 편성 (e.g.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금 운용(e.g.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근거
- (소관부처) 관리부처(국무조정실) 및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수행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 국내 문헌

- 광주광역시. (2021.12.9.).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2~'26)(내부자료).
- 권수빈. (2020). 청년-질적연구하기의 위기와 성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편, 청년학 교과서: 청년연구자 되기, 378-409.
- 김규혜, 이승윤, 박성준. (2020). '취업'과 '실업' 사이에서: 청년이직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 28(4), 49-85.
-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청년 니트 (NEET).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문길, 김기태, 정세정, 김성아, 김기현. (2020).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취약계층 청년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서울: 청와대비서실,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 김미곤, 김태완, 최민정, 이세미. (2015). 청년근로빈곤층 사례연구. 세종: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 김성아, 전광희, 조준모, 김병권, 한겨레. (2021). 청년층 삶의 환경변화 진단과 사회보장제도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 김태완, 여유진, 김미곤, 임완섭, 황도경, 정해식, ... 송치호. (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2021). 불평등, 지표로 보는 10년. 보건복지 Issue & Focus, 409, 1-15.
- 김영아, Bonneuil. (2019). 불안정 고용의 동태적 분석: 주관적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유빈, 최충. (2017).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와 정책 과제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종욱. (2017). 최근 청년층 니트(NEET)의 특징과 변화. 월간노동리뷰, 2017(4), 97-110.
- 김지영. (2017).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 서울: 헌법재판연구원.
- 김태완, 최준영. (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244, 6-19.
- 김혜원, 조현주, 김연옥, 김진희, 윤진희, 차예린, 한원진. (2021). 은둔형 외톨이: 가족, 사회, 자신을 위한 희망안내서. 서울: 학지사.
- 남재량, 이철인. (2012). 경경기변동과청년실업: 실직구직의 경기변동상 특성분석.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23, 312-338.

- 남재량. (2008).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박성준. (2005). 청년 실업의 현황과 원인분석.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방하남, 강신욱. (2012). 취약계층의 객관적 정의 및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방안. 서울: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변금선. (2021). 청년의 삶,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미나 발표 자료.
-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생명의종합사회복지관. (2020).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연구보고. 서울: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 신동균. (2004). 실직이 임금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 : 실직 횟수인가 누적실업기간인가?. 노동경제논집, 27(3), 75-111.
- 양계민, 정윤미, 장윤선. (2021).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서보람. (2020).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제도적 지원의 정립.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 방안 발표자료(2020.8.25.).
- 윤혜준. (2018). '외로움'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접근과 정책적 함의. THE HRD REVIEW, 2018(12). 152-167.
- 이명진. (2019). 유럽의 1인 가구 관련 정책 동향: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11), 16-26.
- 이용호, 이원익. (2020). 청년의 부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47(3), 225-251.
- 이준섭, 이진국. (2012).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정비 연구. 세종: 법제처, 수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태진, 김성아, 이병재, 엄다원, 정해식, 최준영, Shun Wang, ... 채상원. (202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한나, 김윤영, 이민경, 김동기, 김용진, 이정기, 전지혜. (2019).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에 관한 기초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형문, 김석용, 박순영, 이세라, 최상희, 김영지, ... 장경철. (2020). 2020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광주: 광주광역시.
- 정세정, 임덕영, 김문길, 임완섭, 이상림, 류진아, ... 신영규.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세정, 최권호, 최보라. (2021). 불리의 경험과 취약 청년의 삶. 비판사회정책, 70, 293-334.
- 정세정 외. (발간 예정).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 연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기현, (2019). 아버의 아버가 됐다. 서울: 이매진.
- 차현숙, 강현철, 장원규, 류지성, 오주현, 임주왕. (202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수립지원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청년재단. (2020). 청년재단 2020 연차보고서. 서울: 청년재단.
- 청년재단. (2020.12.13.).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내부자료).
- 청년재단. (2021a).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내부자료).
- 청년재단. (2021b). 2021년 고립청년 자립경험 프로젝트 세부계획(안)(내부자료).
- 청년재단. (2021c). '도란도란 라운드테이블: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한 시간' 발표 자료 (2021.12.2.).
- 파이교육그룹. (2020). 고립청년(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서울: 청년재단.
- 하광경, 심혜원, 김강희, 박신아. (2020). 청년가구의 부채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0(4), 295-331.
- 함선유. (발간 예정). 코로나19의 확산과 이행기 청년의 고용변화. 산업노동연구, 28(1), 69-101.
- 황진영, 이선호. (2015). 가계부채의 소비와 소득에 대한 영향. 재정정책논집, 17(2), 127-153.

2. 인터넷 자료

- '공평 공정'을 검색어로 한 인터넷 검색자료. https://www.google.com/search?q=%EA%B3%B5%ED%8F%89%EA%B3%B5%EC%A0%95&sxsrf=APq-WBuMN6zhaBxovPRArINR6DF8Gxx_SQ:1647785828685&source=lnms&tbn=isch&sa=X&ved=2ahUKewib8-_H8NT2AhWLxYsBHbVYBYYQ_AUoAXoECAEQAw&biw=1920&bih=912&dpr=1에서 2021.10.7. 인출.
- e-나라지표. (2021a). 가계부채비율(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54> 에서 2021.12.2. 인출.
- e-나라지표. (2021b). 상대적 빈곤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56> 에서 2021.12.12. 인출.
- K2인터넷서널코리아 홈페이지. <https://k2-kr.com> 에서 2021.12.14. 인출.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372C380/contents.do> 에서 2021.11.8. 인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2 에서 2021.11.7. 인출.

- 관계기관합동. (202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https://www.2030.go.kr/board/1/boardView?nttId=1345> 에서 2021.12.7. 인출.
- 관계기관합동. (2021.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http://www.fsc.go.kr:8300/v/pX9T6s5UAuZ> 에서 2021.11.8. 인출.
- 관계기관합동. (2021.7.13.).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원강화 방안.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720> 에서 2021.12.7. 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21.3.3.).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999 에서 2021.12.7. 인출.
- 관계부처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Id=1090> 에서 2021.12.7. 인출.
- 관계부처합동. (2021.8.26.). 청년특별대책.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109599> 에서 2021.12.7.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은둔/ 고립/ 외로움 검색결과. <https://www.law.go.kr/LSW/main.html> 에서 2021.12.12. 인출.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한부모 가족' 검색 결과. 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696569&viewType=confirm 에서 2021.12.7. 인출.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빈곤' 검색 결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에서 2021.12.7. 인출.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장애' 검색 결과.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에서 2021.12.7. 인출.
- 금융위원회. (2021.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file:///C:/Users/%ED%98%84%EB%93%80/Downloads/210429_\(%EA%B3%BC%EC%A0%9C%EB%B3%84%20%EC%84%B8%EB%B6%80%EB%82%B4%EC%9A%A9\)%EA%B0%80%EA%B3%84%EB%B6%80%EC%B1%84%20%EA%B4%80%EB%A6%AC%EB%B0%A9%EC%95%88_%EB%B8%8C%EB%A6%AC%ED%95%91%EC%9A%A9%20\(2\).pdf](file:///C:/Users/%ED%98%84%EB%93%80/Downloads/210429_(%EA%B3%BC%EC%A0%9C%EB%B3%84%20%EC%84%B8%EB%B6%80%EB%82%B4%EC%9A%A9)%EA%B0%80%EA%B3%84%EB%B6%80%EC%B1%84%20%EA%B4%80%EB%A6%AC%EB%B0%A9%EC%95%88_%EB%B8%8C%EB%A6%AC%ED%95%91%EC%9A%A9%20(2).pdf) 에서 2021.11.8. 인출.
- 김태희. (2021.9.8.). '은둔 청년'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는 사이, 37만명 추산. 경향신문. <http://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080600001#c2b> 에서 2021.11.8. 인출.
- 빅카인즈. 고립 청년/ 은둔형 외톨이 검색 결과. bigkins.or.kr 에서 2021.11.8. 인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청년사회서비스사업.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203&PAGE=4&topTitle= 에서 2021.11.7. 인출.

- 세계법제정보센터. (2014). 2014 보살핌법(Care Act 2014).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ssionid=z41tXG07kP0jIa4tWGOycQUR0kluMmkNvSbsODqi89Dt1uJ90EOu0RIISNaYMuC1.eduweb_servlet_engine6?1=1&searchPageRowCnt=50&A=A&AST_SEQ=2041&searchType=all&CTS_SEQ=35022&pageIndex=23&ETC=1103&searchTy=4 에서 2021.11.27. 인출.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에서 2021.12.15. 인출.
- 이우림. (2021.7.29.). 봉쇄 풀 영국 vs 마스크 다시 쓰는 미국…한국이 가야할 길은.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7158#home> 에서 2021.11.27. 인출.
- 정교진. (2020.4.2.). ‘고립청년’ 30만 명, 방지하면 사회적 비용 감당 안돼. 오마이뉴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628413 에서 2021.11.27. 인출.
- 통계청. (2019a). 2019년 사회조사표(가구원). <https://www.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101018> 에서 2021.9.16. 인출.
- 통계청. (2021.7.20).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90712 에서 2021.12.12. 인출.
- 통계청. (2021a). 인구총조사: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 - 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I1601&conn_path=I3 에서 2021.9.16. 인출.
- 통계청. (2021b).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https://www.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930001> 에서 2021.9.16. 인출.
- 핀란드 아웃리치 청년 사업 담당자 연락처 검색 사이트. <https://www.entit.fi/> 에서 2021.10.27. 인출.

3. 법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2호, 2020. 3. 31., 제정)
-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326호, 2021. 11. 4., 제정)
-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453호, 2021. 3. 24., 제정)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282호, 2019. 10. 15., 제정)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68호, 2021. 7. 27., 일부개정)

-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8327호, 2021. 7. 27., 일부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36호, 2021. 12. 21., 일부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8328호, 2021. 7. 27., 일부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37호, 2021. 4. 20.,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427호, 2021. 7. 14., 제정)
-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5925호, 2019. 5. 29., 제정)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05호, 2020. 5. 26., 제정)
-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8618호, 2021. 12. 21., 일부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16호, 2021. 6. 8.,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 10월 14일 발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21호, 2020. 10. 29., 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450호, 2021. 9. 30., 제정)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6733호, 2019.12.3., 일부개정)
-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17307호, 2020. 5. 26., 일부개정)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전라남도조례 제5392호, 2021. 9. 30.,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04호, 2021. 5. 20., 제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제17866호, 2021.1.5., 일부개정)
- 「청년기본법」(법률 제16956호, 2020.2.4., 제정)
-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17285호, 2020.5.19., 일부개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7973호, 2021.3.23., 일부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7540호, 2020.10.20., 일부개정)
- 「횡성군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강원도횡성군조례 제2519호, 2020. 12. 30., 제정)

4. 데이터

통계청. (2016).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원자료.

통계청. (2019b). 2019년 사회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0).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가구원) 원자료.

- 통계청. (2021).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원자료.
- 통계청. (2021c).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고용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20). 한국노동패널 23차 조사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15차 원자료.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 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등록현황(2020년 12월 말 기준) 원자료.

5. 해외 문헌

- Achterbergh, L., Pitman, A., Birken, M., Pearce, E., Sno, H., & Johnson, S. (2020).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among young people with depression: a qualitative meta-synthesis of the literature. *BMC Psychiatry*, 20(1), 1-23.
- AIHW. (2017). *Australia's welfare 2017*. Australian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aihw.gov.au/getmedia/088848dc-906d-4a8b-aa09-79df0f943984/aihw-aus-214-aw17.pdf.aspx?inline=true>
- Anker, R., Chernyshev, I., Egger, P., & Mehran, F. (2003).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Int'l Lab. Rev.*, 142, 147.
- Athens Democracy Forum. (2019). *Dubravka Šuica: Vice President for Democracy and Demography*.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athensdemocracyforum.com/dubravka-suica>
- Australian Psychological Society(APS). (2018.10.8.). *Australian loneliness report*.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apo.org.au/node/202286>
- Baarck, J., Balahur-Dobrescu, A., Cassio, L.G., D'hombres, B., Pasztor, Z., & Tintori, G. (2021). *Loneliness in the EU. Insights from surveys and online media data*.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BBC. (2016.10.14). *Labour MP Jo Cox 'murdered for political cause'*. Retrieved November 29, 2021, from <https://www.bbc.com/news/uk-37978582>
- Bell, D. N. and D. G. Blanchflower. (2011). Young people and the Great Recession.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7(2), 241-267.

- British Red Cross. (2016). *Trapped in a bubble: An investigation into triggers for loneliness in the UK*.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redcross.org.uk/about-us/what-we-do/action-on-loneliness>
- Carer gateway 홈페이지. Retrieved December 13, 2021, from https://www.carergateway.gov.au/help-advice/looking-after-yourself?utm_source=google&utm_medium=paid-search&utm_campaign=14921025742&utm_adgroup=129982271722&utm_term=young%20carer&gclid=Cj0KCCQiA2NaNbDvARIsAEw55hiKQUR4EO4ujQ42Hw7ZWVsXx1kCSy_yadNt3EajIPiTH-xDbEzERe0aAmTVEALw_wcB#a4
- Cazes, S., A. Hijzen and A. Saint-Martin. (2015). Measuring and Assessing Job Quality: The OECD Job Quality Framework.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74, 1-52.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doi.org/10.1787/5jrp02kpw1mr-en>.
- Chacaltana, J., Elder, S., & Lee, M. (2019). *Youth transitions and lifetime trajectory*.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Employment Policy Department.
- City of Vantaa 홈페이지.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vantaa.fi/vapaa-aika/nuoret/monitoimitila_liito
- Coplan, R. J., Bowker, J. C., & Nelson, L. J. (2021). Alone Again: Revisiting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olitude. *The Handbook of Solitud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Isolation, Social Withdrawal, and Being Alone*, 1-15.
- Ending Loneliness Together. (2020a). *Who we are*.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endingloneliness.com.au/>
- Ending Loneliness Together. (2020b). *How we're making change: Our key areas of focus*.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endingloneliness.com.au/>
- Ending Loneliness Together. (2020c). *Ending Loneliness Together in Australia: White Paper*.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endingloneliness.com.au/resources/whitepaper/ending-loneliness-together-in-australia>
- Ending Loneliness Together. (2021). *A National Strategy to Address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21-05/171663_ending_loneliness_together.pdf
- Eurofound. (2014). *Mapping youth transitions in Europe*.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

- ww.eurofound.europa.eu/publications/report/2014/labour-market/mapping-youth-transitions-in-europe
- Eurofound. (2015). *Youth entrepreneurship - Values, attitudes, policie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eurofound.europa.eu/publications/report/2015/labour-market/youth-entrepreneurship-in-europe-values-attitudes-policies>
- Eurofound. (2017). *Quality of life, quality of public services, and quality of society*.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ecommons.cornell.edu/handle/1813/87445>
- European Commission. (2021a). *Youth Wiki-Finland-Youth Work-General Context -Historical developments*. Retrieved December 3, 2021 from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finland/101-general-context>
- European Commission. (2021b). *New report: Loneliness doubles in Europe during the pandemic*.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ec.europa.eu/jrc/en/news/new-report-loneliness-doubles-europe-during-pandemic>
- Fakoya, O. A., McCorry, N. K., & Donnelly, M. (2020).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interventions for older adults: a scoping review of reviews. *BMC public health*, 20(1), 1-14.
- Fergusson, R. and N. Yeates. (2021). *Global Youth Unemployment: History, Governance and Policy*.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 Finnish Youth Work Statistics. (2021). *Municipal youth work*. Retrieved December 6, 2021 from <https://nuorisotilastot.fi/en/392/visualisoinnit-en/municipal-youth-work/>
- Flood, M. (2005). *Mapping Loneliness in Australia*. Canberra: The Australian Institute.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Michael-Flood-4/publication/237751379_Mapping_Loneliness_in_Australia/links/004635202df85d465c000000/Mapping-Loneliness-in-Australia.pdf
- Friends for Good[FFG]. (2019). *Loneliness in Australia: Research, Context and New Findings*.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friendsforgood.org.au/assets/downloads/FriendsForGood-ResearchReport-LonelinessInAustralia.pdf>

- GOV.UK. (2020a). *Loneliness annual report: The first year*.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oneliness-annual-report-the-first-year>
- GOV.UK. (2020b). *Government launches plan to tackle loneliness during coronavirus lockdown*.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launches-plan-to-tackle-loneliness-during-coronavirus-lockdown>
- GOV.UK. (2020c). *Loneliness Minister: Write letters to people isolating at home*.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gov.uk/government/news/loneliness-minister-write-letters-to-people-isolating-at-home>
- GOV.UK. (n.d.). *Office for Civil Society*.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office-for-civil-society>
- Green, F. (2009). Subjective employment insecurity around the world. *Economy and Society*, 2(3), 343-363.
- Hendricks, S. (2021.2.24.). *Japanese government appoints new "Minister of Loneliness"*. BigThink.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bigthink.com/the-present/japan-loneliness-minister/>
- HM Government. (2018).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lay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 London: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connected-society-a-strategy-for-tackling-loneliness>
- HM Government. (2020). *Loneliness annual report January 2020*. London: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oneliness-annual-report-the-first-year/loneliness-annual-report-january-2020--2>
- HM Government. (2021). *Loneliness annual report January 2021*. London: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London, England: Crown copyright.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oneliness-annual-report-the-second-year>
- Holzer, H. J. (2007). The economic impact of affirmative action in the US. *Swedish Economic Policy Review*, 14, 41-71.

- Höylä, S. (2012). Youth Work in Finland. In Krappe, J., Parkkinen, T., Anna, T.(eds.) *2012 Moving In! Art-based Approaches to Work with the Youth*(pp. 13-32). Retrieved November 28, 2021, from <https://julkaisut.turkuamk.fi/isbn9789522162267.pdf#page=14>
- Hyvinvointi-indikaattorit. (2021a). *Koulutuksen ulkopuolelle jääneet*. Retrieved November 28, 2021, from <https://indikaattorit.tietoanuorista.fi/koulutus/sijoittuminen-peruskoulun-jalkeen-3>
- Hyvinvointi-indikaattorit. (2021b). *Etsivä nuorisotyö*. Retrieved November 28, 2021, from <https://indikaattorit.tietoanuorista.fi/arjenhallinta/etsiva-nuorisotyö>
- ILO. (2020).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20: Technology and the future of job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Institute for Government Analysis. (2021). *Timeline of UK government coronavirus lockdowns*.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charts/uk-government-coronavirus-lockdowns>
- Into. (2021a). *Etsivä nuorisotyö*. Retrieved November 15, 2021, from <https://www.intory.fi/etsiva-nuorisotyö/>
- Into. (2021b). *Into - Association for Outreach Youth Work and Workshop Activities*. Retrieved December 5, 2021 from <https://www.intory.fi/briefly-in-english/>
- Into. (2021c). *Etsivän nuorisotyön käsikirja*. Retrieved December 5, 2021 from <http://www.intory.fi/materiaalipankki/etsivan-nuorisotyön-käsikirja/>
- Into. (2021d). *Mitä on etsivä nuorisotyö?*. <https://www.intory.fi/etsiva-nuorisotyö/mita-on-etsiva-nuorisotyö/> 에서 2021.12.6. 인출
- Into. (2021e). *Workshop activities 2020*. Retrieved December 5, 2021 https://www.intory.fi/app/uploads/2021/09/TP_infograafi_2021_ENG_web.pdf
- JCLC(The Jo Cox Loneliness Commission). (2017). *Combatting loneliness one conversation at a time: A call to action*. England and Wales: The Author.
- Kawaguchi, S. (2021.5.14.). *Japan's 'minister of loneliness' in global spotlight as media seek interviews*. Mainichi Japan.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20210514/p2a/00m/0na/051000c>
- Kuntaliitto. (2021). *Kuntanumerot ja kuntapohjaiset aluejaot*. Retrieved November 29, 2021, from <https://www.kuntaliitto.fi/tilastot-ja-julkaisut/kaupunkien-ja-kuntien-lukumaarat-ja-vaestotiedot/kuntanumerot-ja-kuntapohjaiset-aluejaot>

- Lasgaard, M., Friis, K., & Shevlin, M. (2016). "Where are all the lonely people?" A population-based study of high-risk groups across the life spa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1(10), 1373-1384.
- legislation.gov.uk. (2014). *Care Act 2014*.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4/23/contents/enacted>
- Levitas, R., Pantazis, C., Fahmy, E., Gordon, D., Lloyd, E., & Patsios, D. (2007).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ondon: Social Exclusion Task Force.
- Lim, M. H., Rodebaugh, T. L., Zyphur, M. J., & Gleeson, J. F. (2016). Loneliness over time: The crucial role of social anxie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5(5), 620.
- Luo, Y., Hawkey, L. C., Waite, L. J., & Cacioppo, J. T. (2012). Loneliness, health, and mortality in old age: A national longitudinal study. *Social Science & Medicine*, 74(6), 907-914.
- Nelson, L. J., & Millet, M. A. (2021). Social Withdrawal During Emerging Adulthood. In R. J. Coplan, J. C. Bowker, & L. J. Nelson (Eds.), *The Handbook of Solitude, 2nd ed.* (pp. 146-162).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NHS 홈페이지. Retrieved December 13, 2021, from <https://www.nhs.uk/conditions/social-care-and-support-guide/support-and-benefits-for-carers/being-a-young-carer-your-rights/>
- Nuorten Vantaa(반타 청년워크숍) facebook. https://www.facebook.com/NuortenVantaa/?ref=page_internal. Retrieved December 12, 2021, from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 OECD.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in Korea*. Retrieved December 12, 2021, from <https://www.oecd.org/els/OECD2015-In-It-Together-Highlights-Korea.pdf>
- OECD. (2021). *Poverty rate (indicator)*. Retrieved December 12, 2021, from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 Office of Fiona Patten. (2018.10.2.). *Victoria needs a Minister for Loneliness*.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fionapatten.com.au/news/victoria-needs-minister-loneliness/>

- 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8.12. 5). *Measuring loneliness: guidance for use of the national indicators on surveys*.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wellbeing/methodologies/measuringlonelinessguidanceforuseofthenationalindicatorsonsurveys>
- Perlman, D., & Peplau, L. A. (1981).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loneliness. *Personal relationships*, 3, 31-56.
- Perlman, D., & Peplau, L. A. (1998). Loneliness. *Encyclopedia of mental health*, 2, 571-581.
- Publications of the Finnish Government. (2019). *Inclusive and competent Finland: A socially, economically and ecologically sustainable society*. Helsinki : The Author.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julkaisut.valtioneuvosto.fi/bitstream/handle/10024/161935/VN_2019_33.pdf?sequence=1%26isAllowed=y
- Purcell, C. (2021.2.25.). *Why we need a minister for loneliness*. *The Sydney Morning Herald*.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smh.com.au/national/why-we-need-a-minister-for-loneliness-20210224-p575ej.html>
- Regional State Administrative Agencies. (2021). *Outreach youth work*. Retrieved December 1, 2021, from <https://avi.fi/en/about-us/our-services/education-and-culture/youth-work/outreach-youth-work>
- Relationships Australia. (2018. 7.). *Is Australia experiencing an epidemic of loneliness?: Findings from 16 waves of the Household Income and Labor Dynamics of Australia Survey*.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relationships.org.au/wp-content/uploads/An-epidemic-of-loneliness-2001-2017.pdf>
- Saxena, H. (2019.12.19.). *Ministry of Loneliness needed to tackle isolation*. Pharmacy News.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ausdoc.com.au/news/ministry-loneliness-needed-tackle-isolation-0>
- Stadin AO. (2021). *Nuorten työpajat*. Retrieved December 6, 2021, from <https://stadinao.fi/nuorten-tyopajat/>
- Statistics Finland. (2021).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15-29) in education and the labour market by Year, Sex, Age group and Information*. Retrieved November 1, 2021, from https://pxnet2.stat.fi:443/PXWeb/api/v1/en/StatFin/tym/t_yti/vv/statfin_tyti_pxt_11pq.px

- Šuica, D. (2020). *'Blog - Vice-President Dubravka Šuica*.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ec.europa.eu/commission/commissioners/2019-2024/suica/blog/blog-vice-president-dubravka-suica-2nd-edition-may-2020_en
- Teo, A.R., Stufflebam, K.W., & Kato, T.A. (2014). The intersection of culture and solitude. *SOLITUDE*, 445-460.
-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of Finland. (2021). *Youth workshops and outreach youth work*. Retrieved November 10, 2021, from <https://okm.fi/en/workshop-activities-and-outreach-youth-work>
- United Nations. (2012.8.).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ptimal Protocol(장애인권리협약)*. Retrieved December 6, 2021, from <https://www.un.org/disabilities/documents/convention/convoptprot-e.pdf>
- Valtion talousarvioesityskset. (2021). *91. Nuorisotyö*. Retrieved December 6, 2021, from <https://budjetti.vm.fi/indox/sisalto.jsp?year=2021&lang=fi&maindoc=/2021/tae/valtiovarainministerionKanta/valtiovarainministerionKanta.xml&opennode=0:1:239:663:799>:
- VicHealth. (2019.9.). *The young Australian loneliness survey: Understanding loneliness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vichealth.vic.gov.au/-/media/ResourceCentre/PublicationsandResources/Social-connection/The-young-Australian-loneliness-survey-Report.pdf?la=en&hash=94F3B075524F419C67901C4E5741F2DF9D29BF2A>
- Wahlquist, C. (2018.10.18.). *'Loneliness minister' proposed to tackle Australian social isolation*. The Guardian.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8/oct/19/loneliness-minister-proposed-to-tackle-australian-social-isolation>
- Wong, P. W., & Li, T. M. (2021). Hikikomori: Risks and Consequences of Extreme Self-imposed Social Marginalization. *The Handbook of Solitud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Isolation, Social Withdrawal, and Being Alone*, 378-389.
- Young Caregivers Association(캐나다 영케어러협회) 홈페이지. Retrieved December 13, 2021, from <https://youngcaregivers.ca/>

- 根本匠. (2018). ひきこもりの状態にある方やそのご家族への支援に向けて.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hikikomori/index.html 에서 2021.10.10. 인출.
- 埼玉県 홈페이지, 埼玉県ケアラー支援条例. <https://www.pref.saitama.lg.jp/a0609/chiikihoukatukea/jourei.html> 에서 2021.12.13. 인출.
- 内閣府. (2016). 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 <https://www8.cao.go.jp/youth/kenkyu/hikikomori/h27/pdf/teigi.pdf> 에서 2021.10.10. 인출.
- 内閣府. (2019).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 <https://www8.cao.go.jp/youth/kenkyu/life/h30/pdf/s2.pdf> 에서 2021.10.10. 인출.
- 内閣府. (2010). 若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ひきこもりに関する実態調査). https://www8.cao.go.jp/youth/kenkyu/hikikomori/pdf_index.html 에서 2021.10.10. 인출.
- 東京都. (2008). ひきこもり等の若者を支援する団体の実態調査研究. 東京: 東京都
- 文部科学省. (2020). 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スクールソーシャルワーカーによる教育相談体制の充実. https://www.mext.go.jp/content/20200205-mxt_kyoiku01-000004708_14.pdf 에서 2021.10.10. 인출.
- 文部省. (1996). 生徒指導上の諸問題の現状と文部省の施策について. 東京: 文部省
- 森田洋司. (2010). いじめとは何か-教室の問題, 社会の問題. 東京: 中央公論新社
- 石川良子 (2007). ひきこもりの〈ゴール〉—「就職」でも「対人関係」でもなく. 東京: 青弓社
- 小山明日香, 三宅由子, 立森久照, 竹島正, 川上憲人. (2006). 地域疫学調査による「ひきこもり」の実態と精神医学的診断について—平成14年度~平成17年度のまとめ—. 平成18年度厚生労働科学研究費補助金(こころの健康科学研究事業) こころの健康についての疫学調査に関する研究協力報告書.
- 御厨尚陽, 豊福幸子. (2020.7.2). 引きこもりの息子、業者頼った末…遺体で発見 自問自答続ける親. 西日本新聞. <https://www.nishinippon.co.jp/item/n/622211/> 에서 2021.10.10. 인출.
- 塩倉裕. (2000). 引きこもり. 東京: ビレッジセンター出版局.
- 有馬知子. (2019.6.19). 両手両足つかまれ連行…強引な「ひきこもり支援施設」の実態を脱走者が証言. Business Insider. <https://www.businessinsider.jp/post-192893> 에서 2021.10.10. 인출.
- 一般社団法人ひきこもりUX会議. (2019.5.31.). 川崎殺傷事件の報道について (声明文). <http://blog.livedoor.jp/uxkaigi/archives/1074749357.html> 에서 2021. 12. 6. 인출
- 斎藤環. (1998). 社会的ひきこもり 終わらない思春期. 東京: PHP 研究所.

- 齊藤万比古, 中島豊爾, 伊藤 順一郎, 皆川邦直, 皆川邦直, 近藤直司, ... 堀口逸子. (2010). ひきこもりの評価・支援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厚生労働科学研究「思春期のひきこもりをもたらす精神科疾患の実態把握と精神医学的治療・援助システムの構築に関する研究」報告書. <https://www.mhlw.go.jp/content/12000000/000807675.pdf> 에서 2021.10.10. 인출.
- 村澤和多里. (2017). 「ひきこもり」概念の成立過程について—不登校との関係を中心に—. 札幌学院大学人文学会紀要, 102, 111-135.
- 厚生労働省. (2003). 10代・20代を中心とした「ひきこもり」をめぐる地域精神保健活動のガイドライン. 精神保健福祉センター・保健所・市町村でどのように対応するか・援助するか.
- 厚生労働省. (2010. 4. 1.).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につい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s_gaiyo.pdf. 에서 2020. 9. 15. 인출.
- 厚生労働省. (2018). 平成30年版厚生労働白書. <https://www.mhlw.go.jp/stf/wp/hakusyo/kousei/18/index.html> 에서 2021.10.10. 인출.
- 厚生労働省. (2021). 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各府省の取組について. 第1回 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関係府省横断会議 資料2(2021.6.29.). <https://www.mhlw.go.jp/content/12000000/000808501.pdf> 에서 2021.10.10. 인출.
- 厚生省. (1991). ひきこもり・不登校児童対策モデル事業の実施について. 東京: 厚生省



[부록 1] 영국의 외로움 대처전략

영국 정부의 외로움 대처전략 이행을 위한 60가지 신정책공약과 그 세부 내용은 <부록 표 1-1>과 같다.

<부록 표 1-1> 외로움 대처전략 이행을 위한 영국 정부의 60가지 신 정책공약

구분	신 정책공약	세부 내용
1	국가통계국(ONS)이 권고한 측정도구를 정부가 활용 (Government's use of the ONS recommended measurement package)	정부는 외로움을 측정하는 표준적 방식으로 국가통계국(ONS)이 추천한 측정도구들을 활용하기로 약속함. 자료는 잉글랜드를 위한 건강조사(the Health Survey for England), 활동적 삶들(Active Lives), 참여조사(Taking Part), 영국주택조사(the English Housing Survey), 가족의 지속적 태도조사(Families Continuous Attitude Survey), 지역사회의 삶 조사(the Community Life Survey), 그리고 국민여행조사(the National Travel Survey)로부터 수집함.
2	지속적 증거 구축 (Continuing evidence building)	정부는 2019년 봄 일련의 워크숍 개최를 통해 정부가 외로움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했음.
3	2023년까지 지역 건강·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처방 커넥터 제도를 제공 (By 2023, local health & care systems to provide Social Prescribing Connector Schemes)	1차적 돌봄 네트워크 내부에 1,000명 이상 추가적인 사회적 처방 연계 노동자의 역할들이 2021년 4월까지 배치될 수 있도록 기금이 조성됨.
4	사회적 처방을 위한 공통의 결과 분석 틀 발간 (Publish a Common Outcomes Framework for social prescribing)	2019년 1월 국민건강서비스(NHS)는 사회적 처방 요약 안내서(Social Prescribing Summary Guide)의 일부로서 사회적 처방을 위한 공통의 결과 분석 틀(Common Outcomes Framework)을 발간함.
5	잉글랜드 전역에 걸쳐 모든 사회적 처방 커넥터 제도들의 지도 만들기 (Mapping all social prescribing connector schemes across England)	국민건강서비스 잉글랜드와 국민건강서비스 개선(NHS England and NHS Improvement)은 잉글랜드 전역에 걸쳐 지역별 사회적 처방 연계 계획들에 대한 전국적 자료 구축을 위해 지역 파트너들 및 협력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음.
6	사회적 처방에 대한 최선의 실천 안내서 (Best practice guide to social prescribing)	2019년 국민건강서비스 잉글랜드와 국민건강서비스 개선(NHS England and NHS Improvement)은 3개 출판물(사회적 처방 요약 안내서, 보편적이고 개별화된 돌봄, 그리고 1차적 돌봄 네트워크 참고 안내서)을 생산함. 이 3가지 출판물들은 외로움 대처를 위한 사회적 처방의 역할을 강조함.
7	온라인 사회적 처방 플랫폼 (Online social prescribing platform)	국민건강서비스 잉글랜드와 국민건강서비스 개선(NHS England and NHS Improvement)은 무료 온라인 커뮤니티를 설치함. 해당 온라인 플랫폼은 사회적 처방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1,6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됨.

구분	신 정책공약	세부 내용
8	사회적 처방 연결 노동자들을 위한 새롭게 인증된 학습 프로그램들을 시범 운용 (Piloting new accredited learning programmes for social prescribing link workers)	2가지 학습 프로그램(3단계 사회적 처방 자격증 그리고 사회적 처방 연결 노동자들을 위한 모듈식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2019년 내 설치됨. 또한 정기적으로 2주마다 웹 세미나를 제공함. 온라인 이러닝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 중이며, 입문 모듈이 이용 가능함.
9	지역별 사회적 처방 운영위원회 설립 (Establishing regional social prescribing steering groups)	지역별 사회적 처방 촉진자들은 사회적 처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잉글랜드 각 지역에 걸쳐 여러 파트너들과 일하고 있음. 이 네트워크들은 사회적 처방을 위한 지원을 조율하고, 외로움 대처에 초점을 둔 최선의 실천을 공유함.
10	다양한 기관들과 서비스들이 현재 개인들을 사회적 처방 계획들로 어떻게 안내하는지 평가 (Assess how a variety of organisations and services currently refer individuals into social prescribing schemes)	평가는 국민건강서비스(NHS), 잡센터플러스(Jobcentre Plus), 협회들과 제약업체,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관들에 걸쳐 있음. 그 평가는 건강기관, 지역 관공서, 그리고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부문과 일하는 기타 기관 간 효과적인 지역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함. 이것은 스태프들이 서비스 신청자들에게 그 스스로의 감정적·육체적 욕구들에 대한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파트너들로부터 서비스 위탁을 주고받는 것을 지원함. 이러한 위탁들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지역 공간들에서 일 단위로 발생함.
11	‘안전하고 연결됨’이라는 혁신적 디지털 해결책을 시도 (Trial an innovative digital solution ‘Safe and Connected’)	내무부(The Home Office)는 왕립우정국(Royal Mail)과 지역 관공서들과 일하면서, 혁신적인 계획을 시도함. 예컨대, 우체국 직원들이 65세 이상 참여자들을 1주일에 2번 방문하여,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시켜 줌. 그 계획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고, 시범 운영 파트너들은 그 서비스를 확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12	공공건강 결과 분석틀 수정에 대한 협의 과정에 외로움 측정 도구를 포함 (Include loneliness measure in consultation on revising the 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	공공건강 결과 분석틀은 갱신되고 있고, 외로움 측정 도구를 포함할 것임.
13	‘우리에게 한번 말해줘’ 계획을 향상시키기 (Enhance ‘Tell us Once’ initiative)	노동연금부(DWP)는 정부에게 사별을 알리기 위해 ‘우리에게 한번 말해줘’ 서비스를 이용한 사별을 경험한 시민에게 발행되는 그 편지를 수정함. 따라서 그 편지는 현재 외로움 대처를 위한 지원 자원들에 대한 제안사항들을 포함함.
14	이동센터 시범운영 (Mobility Centre pilots)	잉글랜드에서 13개 이동센터 중 7개 이동센터는 이동센터 허브(운전할 수 없거나 더는 운전할 수 없는 개인들이 대중교통에 접근하는 것을 지원함)라고 불리는 서비스의 확대를 시범운영하고 있음. 이 시범운영의 일환으로 이동센터 스태프는 고객들 중에서 외로움의 징후를 식별하고 그에 대한 행동을 취하려 시도할 것임.
15	국민거래기준 사기 보안관 계획 (National Trading Standards Scam Marshal scheme)	내무부(The Home Office)는 외롭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이 사기, 금융사기, 재정적 착취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의 복원력(resilience) 향상을 목적으로 하나의 계획을 의뢰해왔음. 그 계획은 2019년 1,000명 이상의 신규 참여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시행됨.

구분	신 정책공약	세부 내용
16	열린 자료 시범운영 (Open Data pilots)	지방정부협회와 디지털 전문가들과의 파트너 십을 통해,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와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MHCLG)는 어떤 활동과 서비스가 외로움을 다루기 위해 지역적으로 이용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하고 있음. 이 방법은 다양한 부분들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이 자료를 파악하고 그것을 업데이트하도록 동기 부여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포함함. 그 시범운영은 엘름브리지 지방자치구 의회(Elmbridge District Council), 허일 시의회(Hull City Council), 그리고 블랙번위드다던 의회(Blackburn with Darwen Council)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미 다른 잉글랜드 지자체 의회들에 걸쳐 관심을 받고 있음. 자료와 학습은 2020년 3월 말에 출간될 예정임.
17	지역 관공서의 모범실천 공유 (Sharing Local Authority's good practice)	지방정부협회(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와 전국지자체의회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Local Councils)는 '연락해'(Reaching Out)라고 불리는 포괄적인 안내서를 개발해오고 있음. 이 안내서는 어떻게 주요한지, 그리고 지역적인 지자체의회들이 외로움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또는 외로움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확한 구조와 조건을 만들 수 있는지 그 개요를 제시함. 그 안내서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프린트물로 이용 가능함.
18	외로움 대처에 대한 고용주 네트워크 (Employer network on tackling loneliness)	고용주 리더십 그룹(The Employer Leadership Group, ELG)은 2018년 11월에 설립되었고, '외로움 끝내기 캠페인'(the Campaign to End Loneliness)을 주최하고, 경영·에너지·산업전략부(BEIS)의 지원을 받음. 고용주 리더십 그룹(ELG)은 수많은 기업체, 기업대표들, 그리고 제 3섹터 조직들로 구성됨. ELG는 고용주의 청원(고용주들로 하여금 그들의 피고용인의 사회적 복지를 지원하고, 작업장 내 외로움에 대처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함)을 지지하고, 최선의 실천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일하고 있음. ELG는 3번 만나왔음. 기업체들은 그들의 피고용인들과 더 넓은 지역사회 둘 다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음. 최선의 실천사례 안내서(a good practice guide)는 2020년 봄에 출간될 예정임.
19	지역사회 내 기업의 모범 실천사례 발굴 (Capture business good practice in communities)	18번 과제인 최선의 실천사례 안내서(a good practice guide)의 일부는 어떻게 고용주들이 그들의 피고용인들 간 그리고 더 넓은 지역사회에서 연결을 증진하고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취해오고 있는지에 대한 예시들을 강조할 것임.
20	잡 센터(Jobcentres)로부터 모범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훈련 제공 (Sharing good practice from Jobcentres and providing training)	잡센터플러스(Jobcentre Plus)는 사회적 연결, 고립,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 훈련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음. 이를 통해 잡센터플러스는 스태프들이 실업수당신청자들(claimants) 내 외로움의 징후들을 식별해 낼 수 있도록 돕고, 그들에게 지역의 특별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이 훈련은 실업수당 신청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모든 구직상담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현재 시행 중임.

구분	신 정책공약	세부 내용
21	사회복지사들 간 지식 공유를 향상 (Improve knowledge sharing among social workers)	사회복지 맥락에서 외로움을 식별하고 대처하는데 있어 증거와 모범 실천사례를 검토한 결과(2019년 6월 완료)에 따르면, 건강·사회복지부(DHSC)는 성인 주요 사회복지사 네트워크(the Adult Principal Social Worker Network)와 함께 일 해왔고,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접근들과 개입의 예시들을 강조하고, 이를 사회복지사를 위한 보고서에 포함함. '증거 범위: 외로움과 사회복지'(Evidence Scope: Loneliness and Social Work)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1차년도 고독연례보고서 출간 직후 곧 출간될 것임.
22	지역사회 공간 기금 (Community Spaces Funding)	정부는 협동조합재단(the Co-op Foundation)과 협업해서, 180만 파운드를 지역사회 공간 프로젝트에 할당했음. 이것은 다음 단계를 거침. 첫째, 초기 정부자금의 100만 파운드는 공동설계를 통해 청년 외로움(youth loneliness)에 대처하기 위한 112개의 단기적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것임. 둘째, 이어서 정부와 협동조합재단이 공동 출자하는 160만 파운드의 '연결하기 위한 공간 기금'(Space to Connect Fund)이 사람들이 연결되어 협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간들을 개선하는 일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임.
23	학교들이 그들의 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지도 (Guidance for schools on use of their premises)	교육부(DFE)는 학교들이 학교부지(외로움을 고려하는 구역을 포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학교들로 하여금 상업적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지침서를 개발해오고 있음. 2020년에 이 지침서가 출간되길 희망함.
24	학교들의 부지 사용에 대한 자료 수집 (Collect data on school using their premises)	얼마나 많은 학교가 이미 지역사회 공간들로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현재 수집 중임. 교육부(DFE)는 '일관된 재정보고'(Consistent Financial Reporting, CFR) 틀에 하나의 질문을 추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학교들이 이미 지역사회 공간들로서 사용되는지에 대해 평가할 것임. 2019/20년 자료 수집 결과들은 2020/21년에 출간될 것임.
25	불충분하게 이용되는 철도자산의 활용을 지원 (Support use of underused railway property)	교통부(DFT)는 자원봉사와 사회적 통합에 대한 훈련활동(training sessions)을 진행해왔고, 어떻게 지역사회 철도가 더 넓은 집단들에게 역-기반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모형을 제시함. 이를 통해 교통부(DFT)는 다양한 집단들에게 혜택을 주고, 배제를 극복하려고 시도함.
26	노동연금부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모범 실천사례 (Good practice on using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space)	잡센터 내 계속 진행 중인 다양한 종류의 지역 계획들(local initiatives)이 있음. 이 계획들은 다른 배경을 가진 실업수당 신청자들을 소집시켜 서로 간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연결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7	지역사회를 위해 그들의 공간을 활용하는 기업들 (Businesses using their space for communities)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외로움에 대처하는 고용주들을 위해 모범 실천사례를 식별하기 위한 작업의 일부로서, 경영·에너지·산업전략부(BEIS)와 '외로움 끝내기 캠페인'(the Campaign to End Loneliness)은 고용주 집단들이 자신의 공간을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수많은 기관과 사례 연구들을 식별해왔음. 이것은 경영·에너지·산업전략부(BEIS)와 '외로움 끝내기 캠페인'의 다른 결과들과 함께 2020년 출간될 것임.

구분	신 정책공약	세부 내용
28	환경·식품·농림부 기금을 활용하여 외로움을 표적화하는 '잉글랜드 농촌 지역사회와의 행동' (ACRE targeting loneliness using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funding)	'잉글랜드 농촌 지역사회와의 행동'(ACRE) 네트워크는 영국 전역에 걸쳐 38개의 농촌 지자체 의회로 구성됨. 이 네트워크(ACRE)는 환경·식품·농림부(DEFRA)의 기금을 활용해서 그 전략적 우선순위 영역들에 걸쳐 외로움을 다루려고 함. 이 활동은 마을회관들(village halls)의 개보수하는데 드는 300만 파운드의 기금과 함께함.
29	농촌지역 원탁회의 (Rural roundtable)	가디너 경(Lord Gardiner)은 2개의 원탁회의를 열어왔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서 외로움을 어떻게 최선으로 다룰지를 논의했음. 이 원탁회의는 '잉글랜드 농촌 지역사회와의 행동'(ACRE) 네트워크, 전국농민조합(NFU), 영국국교회(COE), 농업 지역사회네트워크(FCN)로부터의 참석자들과 함께 진행됨. 환경·식품·농림부(DEFRA)는 '농촌 외로움(rural loneliness)에 대한 대책을 개발하기 위한 원탁회의들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임.
30	지역사회 교통 운전자들의 자격을 위한 기금 (Funding for Community Transport drivers' qualifications)	교통부(DfT)는 지역사회교통협회(CTA)에 기금을 제공하여, 현존 미니버스 운전자 의식 계획(Minibus Driver Awareness Scheme, MiDAS)이 전문적인 미니밴과 버스 운전자들을 위한 자격 기준의 일부로 인정될 것임.
31	교통제공자들과의 파트너십 (Partnerships with transport providers)	정부는 교통부문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이를 통해 외로움 문제를 강조하고 교통부문이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함. 버스회사들은 지역 교통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1년간 다양한 계획들을 시범 운영해 오고 있음.
32	도시지역 이동전략의 미래 (The Future of Urban Mobility Strategy)	2019년 3월 출간된 '도시지역 이동전략의 미래' 보고서에서 정부는 교통에 대한 접근의 격차들을 다루고, 떠오르는 혁신적 이동 서비스와 기술(설계에 의해 접근할 수 있고 포용적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선제적 접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33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주거와 공동주거 해결책들의 영향에 대한 연구 (Research into the impact of community-led housing and co-housing solutions)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MHCLG)는 12만 5천 파운드의 기금을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한 주거해결책 연구에 할당했음.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MHCLG)는 돈의 가치와 외로움에 대한 주거개입의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주거와 공동주거사업이 전 연령대에 걸쳐 외로움을 감소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사회적 응집을 촉진하는 주거 계획들에서 최선의 실천 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범 연구에 착수함. 최종보고서는 2020년 7월에 보고될 것임.
34	일련의 산업체 행사들, 학술대회들, 세미나들을 개최하고, 사례연구들과 증거를 출판 (Run a series of industry events, conferences and seminars and publish case studies and evidence)	2019년 2월 버밍엄(Birmingham)에서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MHCLG)의 전국 설계 품질 학술대회(national design quality conference)는 '외로움에 대처하기'라는 주제를 주된 주제(a guiding theme)로 다룸. 해당 학술대회는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해온 주택설계에서 좋은 실천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을 포함함. 이 사례연구들은 또한 2019년 6월 맨체스터에서 열린 '주거 2019 학술대회'(the Housing 2019 conference)에서도 소개되었음.

구분	신 정책공약	세부 내용
35	설계의 질과 지역사회 응집의 측정도구로서 외로움을 정원공동체 평가와 지원 시 포함 (Loneliness as a measure of design quality and community cohesion is included in garden communities assessment and support)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MHCLG)는 새로운 주택의 계획과 분양에 건강과 복지의 원칙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 잉글랜드(Homes England)와 국민건강서비스 잉글랜드(NHS England)와 함께 작업하고 있음. 정원 지역사회 입찰(Garden Communities bids)은 '건강한 공간들'(healthy places)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 설계기준을 이용하여 평가됨. '건강한 공간들'은 국민건강서비스 잉글랜드(NHS England)의 '건강을 공간에 담기' 지침이 '사람들과 지역사회들을 연결·참여·역량 강화하는' 접근을 포함한 이후 모형화됨.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MHCLG)는 사업 소개서에 제시된 기준이 해당 프로젝트 이행 속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성공적인 지원자들과 일할 것임.
36	디지털 통합 혁신 기금 (Digital Inclusion Innovation Fund)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의 디지털 통합 혁신 기금은 노인과 장애인의 외로움을 줄이는 것을 돕는 디지털 통합(digital inclusion)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3개의 프로젝트들에 대해 4십만 파운드를 수여했음. 예컨대, 스마트 홈 프로젝트는 기금을 할당받아서 노인들이 그들의 집에서 '스마트 기술(Smart Tech)'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런 다음 비공식적인 사회적 행사들을 통해 노인들이 그 동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동료들에게 이 새 기술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함.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 디지털동료들(digital buddies)과 나이가 어린 '디지털원주민들'(digital natives)이 그 프로그램 속에 포함됨.
37	인터넷 안전에 대한 백서 (White paper on internet safety)	정부는 'the Online Harms White Paper'를 발간해옴. 이 백서는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개인들이 온라인 위험들을 관리하고 온라인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임.
38	기술기업들과의 원탁회의 (Roundtable with technology companies)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을 돕는 디지털 도구들의 사용에 대한 원탁회의는 2018년 11월에 체육·시민사회부 장관(the Minister for Sport and Civil Society)과 디지털부 장관(the Minister for Digital)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아 진행되었음. 그 회의에는 Facebook, Twitter, Snap, Mumsnet and Mush 등 여러 기업이 참석했음.
39	국민도제서비스 (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	교육부(DFE)는 고용주들이 '특별한 교육적 욕구 또는 장애'(SEND)를 가진 청년에 대해 직업연수와 도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국민도제서비스(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와 협력해왔음. 현재까지 국민도제서비스는 학습 또는 발달 장애(learning 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LDD)를 가진 도제의 비율을 2018/19년 첫 3분기 동안 20%만큼 증가시켜 옴.
40	직업연수에 대한 최선의 실천 안내 (Best practice guidance on work placements)	'유효하게 작동한 노동 경험'(Work experience that works)이란 보고서가 출간됨. 이 보고서는 고용주들과 교육 제공자들이 '특별한 교육적 욕구 또는 장애'(SEND)를 가진 청년에게 의미 있는 직업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용적인 최선의 실천사례를 담은 안내서임.

구분	신 정책공약	세부 내용
41	인식 제고 캠페인 (Awareness Campaign)	‘외로움을 말하자 캠페인 (#LetsTalkLoneliness campaign)’이 2019년 6월 외로움 인식 주간(Loneliness Awareness Week) 동안 시작되었으며, 외로움이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캠페인 웹사이트는 자원들의 도구 일체(a tool kit of resources)를 저장하고 있음. 이 자원들의 도구 일체는 300개 이상의 네트워크와 공유되고 있으며, 잉글랜드 예술협회(ACE),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 연결 구축 기금 수혜자들(Building Connections Fund grant holders), 그리고 외로움 행동 그룹 회원들(LAG) 등을 포함한 단체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음. 이 외로움 대처를 위한 자원들의 도구 일체는 출시 이후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300개 이상의 조직이 요청하고 있음.
42	정신건강 캠페인(Mental Health Campaign)	공공건강 잉글랜드(Public Health England)는 ‘모든 정신이 중요하다(Every Mind Matters)’는 사회적 마케팅 정신건강 캠페인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연결과 외로움에 대한 자료들을 꿰어 잇고 있음. 이 계획은 2019년 10월 잉글랜드 전역에 걸쳐 시작되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맞춤형 정신건강행동 계획들(tailored mental health action plans)을 만들 수 있도록 함. 현재까지 80만 명 넘는 사람들에게 관련 내용이 제공됨.
43	초등학생에 대한 관계 교육, 중·고등학생에 대한 관계·성 교육,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모두에 대한 건강 교육 (Relationships education (primary), 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secondary) and health education (all phases))	교육부(DFE)는 초등 대상 관계 교육, 중고등 대상 관계·성 교육,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건강 교육이라는 새로운 과목들에 대한 법적 지침을 발행함. 이 안내서들은 초·중등교육을 받는 아동들이 관련 영역들(긍정적 친구관계 맺기, 정신적 복지 지지하기)과 함께 외로움에 대해 배워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이 교육과정은 2020년 9월부터 잉글랜드에 있는 모든 학교들에서 의무화될 것임. 교육부(DFE)는 학교가 새로운 커리큘럼의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패키지를 설계하기 위해 학교, 노동조합, 다학제 신탁과 교구들(multi-academy trusts and dioceses)을 포함한 교육제공자들, 그리고 전문가 기관들(예컨대, 각 과목별 협회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음.
44	대학교 이상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청년 지원 (Support for those starting higher education courses)	교육부(DFE)는 교육이행네트워크(the Education Transitions Network)를 설치하고, 대학교육 이상을 받는 학생의 복지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돕는 예방적이고 초기 개입적인 조치 마련을 추진함. 2019년 3월에 시작된 그 그룹은 자원·민간·공공부문에서 20개 이상의 기관들로 구성됨. 이 기관들은 공동으로 대학교 교육에서 청년의 복지에 핵심적인 위험들에 대처하는데 ‘무엇이 유효하게 작용하는지’(what works)에 기반한 접근을 발전시키고 있음. 이 접근은 독립적 생활, 독립적 학업 그리고 건강한 관계 맺기와 관련된 외로움과 도전들을 포함함.

구분	신 정책공약	세부 내용
45	유연한 자원봉사 시범사업 (Flexible volunteering pilots)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는 '고령친화적이고 통합적인 자원봉사 기금'(the Age-Friendly and Inclusive Volunteering Fund)을 만들. 이 기금은 '더 잘 나이 들기 센터(the Centre for Ageing Better)'와 파트너십을 통해 전달되는 매칭방식의 보조금임. 5개의 성공적인 기금수혜기관들은 새로운 방법들을 시험하고 개발할 것임. 이를 통해 해당 기금수혜기관들은 노인으로 하여금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들의 삶의 상황들 때문에 자원봉사의 혜택을 놓칠는지 모르는 '접근이 어려운(hard-to-reach)'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돕고, 그들을 참여시킬 것임.
46	5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스포츠와 신체활동 (Sport and physical activity for people over 55)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는 활동적이지만 외로운 무급 돌봄자들이 직면한 욕구·태도·동기·장애물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돌봄자 영국(Carers UK)과 새 파트너십을 맺어 음. 10만 파운드의 기금이 외로운 무급 돌봄자들이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해 스포츠와 신체적 활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 더불어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는 브리티쉬 적십자(British Red Cross)와 함께 현재 위기로부터 이행하고 있는 나이 들고, 외롭고, 비활동적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회들을 관찰하고 있음.
47	사회적 처방의 일부로서 문화적 프로그램들 (Cultural programmes as part of social prescribing)	사회적 처방을 위한 국립과학원(The National Academy for Social Prescribing)은 사회적 처방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 그리고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활동들과 지원의 범위와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임.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 잉글랜드예술협회(ACE), 그리고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는 건강·사회복지부(DHSC)와 국민건강서비스 잉글랜드(NHS England)와 협력하여, 스포츠와 다른 부문들 그리고 예술, 문화, 박물관, 도서관들이 이 새 계획의 진전에 따라 건강부문과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실히 할 것임.
48	외로움을 다루는데 예술과 문화가 할 수 있는 역할 (Role that arts and culture can play in addressing loneliness)	2019년 6월 발간한 잉글랜드예술협회(ACE)의 10개년 전략 보고서(draft 10 year strategy)는 외로움에 대처하는 것을 포함한 정신적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창의성, 문화, 박물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그 신념을 재 강조했음. 이 10개년 전략보고서에서 잉글랜드예술협회 (ACE)는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건강서비스(NHS)와 건강·사회복지부(DHSC)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헌신해왔음. 잉글랜드예술협회(ACE)는 2020년 초에 그 최종 전략을 출간할 것임.
49	관련된 프로젝트들과 프로그램들에 걸쳐 외로움 측정도구를 활용 (Utilise the loneliness measure across relevant projects and programmes)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와 잉글랜드예술협회(ACE)는 '복지를 위해 무엇이 잘 작동하는지 찾는 센터'(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에 대한 투자를 통해 외로움 측정에 대한 발전을 지원해옴. 두 기관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다루는 기금수혜기관들과 프로젝트들이 다른 관련된 도구 및 분석들과 함께 외로움 측정도구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법을 탐색하고 있음.

구분	신 정책공약	세부 내용
50	외로움을 줄이는데 도서관 서비스들이 미치는 영향들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상급세미나들 (Masterclasses on measuring the impact of library services in reducing loneliness)	4개의 상급세미나들 중 2개의 세트(‘영향 만들기’ 그리고 ‘평가: 개념해체와 방법론’)가 2018년 8월 그리고 2019년 3월에 잉글랜드 전역의 도서관들에서 운영됨. ‘영향 만들기’는 도서관들이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수업을 포함하고, 영향분석틀에 대한 작업은 수많은 도서관 서비스들이 이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지역에 맞게 적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어짐.
51	외로움을 포함하는 2018년 도서관 주간(2018 Libraries Week to include loneliness)	2018년 도서관 주간(Libraries Week 2018)은 그 복지 주제(its wellbeing theme)의 일부로서 외로움을 포함했음
52	보호종료청소년들에 대한 지원(Support for care leavers)	‘보호종료청소년들(care leavers)’이 돌봄에서 독립으로 성공적인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부가 해야 될 하나의 우선순위임. 보호종료청소년 전략(The care leaver strategy)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결과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임. 2019년 10월 교육부(DFE)는 2020/21년에 추가로 1천 9백만 파운드의 투자를 발표했음. 투자 내용은 ① ‘머무르기(Staying Put)’ 확대에 1천만 파운드 투자를 통해 더 많은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이전의 가정위탁 보호 돌봄자들과 함께 21세까지 살 수 있도록 함. ② ‘곁에 두기(Staying Close)’ 시행에 6백만 파운드 투자를 통해 보육시설보호(residential care)를 떠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제공함. 그리고 ③ 대학교 이상 교육을 받는 보호종료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향상시키는 것임. 또한 교육부(DFE)는 범정부부처 간 장관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보호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향상을 위해 무엇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 교육부(DFE)는 2022년까지 보호종료청소년들에 대한 1000개의 공공부문인턴십(public sector internships)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움.
53	통합된 청소년 집단에 대한 연구(Research on uniformed youth groups)	정부는 5백만 파운드를 통합청소년기금(Uniformed Youth Fund)에 투자했음. 이 기금은 전국 박탈지역에 있는 수천 명의 불리한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정신건강, 삶의 기술들에서의 결과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임. 사회행동 지향의 활동들(social action-oriented activities)은 세대 간 관계들을 개선했고, 민족적 소수집단의 아동과 장애아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아동과 청년에게 그 활동들은 접근가능하고 매력적임이 밝혀짐.
54	‘나는 할 것이다’ 캠페인(#iwill campaign)	환경·식품·농림부(DEFFRA)는 청소년 사회행동에 대한 환경적 초점을 발전시키기 위한 ‘나는 할 것이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그 프로그램은 연례조사 진행을 포함함. 2018년도 조사는 외로움에 대한 직접설문항을 포함했음. 현재까지, 조사결과들에 따르면, 행위자의 감정과 외로움 간 관계가 있고, 행위자의 감정은 의미 있는 사회적 행동에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짐
55	연결구축기금에 대한 평가와 학습(Evaluation and learning of Building Connections Fund)	새로운 자선자본(New Philanthropy Capital)이 이끄는 연결구축기금(the Building Connections Fund)에 대한 독립적 평가 및 학습 컨소시엄은 외로움에 대처하는데 맞춤형 자원들을 발전시켜움. 더불어 협동조합재단(the Co-op Foundation)은 영국청소년(UK Youth) 기관으로 하여금 학습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일을 맡기고, 전국 청소년 파트너십(National Youth Partnership)으로 하여금 청년들 내 외로움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김.

340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구분	신 정책공약	세부 내용
56	영국정부 기관 간 그룹을 지도하는 시민사회부 장관 (Minister for Civil Society to lead cross-Whitehall group)	2018년에 걸쳐, 영국정부는 외로움 대처에 대한 작업을 이끄는 세계 최초 장관을 임명했음. 배러니스 배런 (Baroness Barran)은 시민사회부 장관(the Minister for Civil Society)으로서 2019년 7월에 정부기관 간 프로그램에 대한 수석장관(lead minister)으로 임명됨.
57	장관급 그룹과 외로움 행동 그룹을 지속하기 (Continue ministerial group and Loneliness Action Group)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한 장관급 그룹(The Ministerial Group on Tackling Loneliness)은 정부의 전체 작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독함. 총리의 변동에 따라 장관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임명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장관들은 이 그룹에 참여하고 있음. 정부 관료들과 시민사회부 장관(the Minister for Civil Society)은 영국적십자와 협동조합당(the British Red Cross and Co-op)에 의해 소집된 외로움 행동그룹(the Loneliness Action Group)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58	확장된 장관의 포트폴리오들 (Extended ministerial portfolios)	3개의 핵심 정부부처들의 장관들은 광범위한 정책영역에 걸쳐 외로움 대처 의제의 중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의 포트폴리오들에 외로움을 포함하는 쪽으로 확장하고 있음. 3개 핵심부처는 교통부(DFT), 경영·에너지·산업전략부(BEIS), 그리고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MHCLG)임. 돌봄 포트폴리오(Care's portfolios)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부 장관과 국무장관은 이미 외로움을 포함했음.
59	개별 부처 계획들 (Single Departmental Plans)	9개 협력부처 중 7개 부처들은 2019/20년 전체 개별부처계획들(full Single Departmental Plans)의 일부로 외로움을 포함할 수 있음. 2개 부처는 온라인으로 발간된 계획들의 요약본에서 외로움을 언급했음
60	정책결정을 통한 외로움 고려 (Considering loneliness through policy making)	노동연금부(DWP)의 갱신된 가족검사안내서(Family Test guidance)는 2020년 초에 영국정부웹사이트(gov.uk)에 발간될 것임. 가족검사안내서는 정책결정자들이 외로움을 고려하도록 촉구함. 정부부처 간 외로움 대처 팀(The cross-government Tackling Loneliness team)은 광범위하게 정책결정자들 간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주: 1) ONS = 국가통계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 DWP =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3) DCMS =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4) MHCLG =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5) BEIS = 경영·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6) DHSC = 건강·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7) DFE =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T =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8) DEFRA = 환경·식품·농림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9) ACRE = 잉글랜드 농촌 지역사회와의 행동(The Action with Communities in Rural England).
 10) NFU = 전국농민조합(National Farmers' Union).
 11) FCN = 농업 지역사회네트워크(Farming Community Network).
 12) CTA = 지역사회교통협회(Community Transport Association).
 13) ACE = 잉글랜드예술협회 (Arts Council England)
 14) SEND = 특별한 교육적 욕구 또는 장애(Special Educational Needs or Disabilities)

자료: HM Government. (2020).Loneliness annual report January 2020. pp.16-24.

[부록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

〈부록 표 2-1〉 지방자치단체 조례 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 내용

광역시·도	시·군·구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①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광주광역시	-	①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통계 및 관련 연구 - 은둔형 외톨이의 치유를 위한 미술, 음악, 도시농업 등의 교육 -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③ 평생교육 지원 ④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⑤ 지역사회 거주 및 치유·자립 등 통합 지원 ⑥ 주민의 자원 활동 등 지원 ⑦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⑧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광주광역시	남구	①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광주광역시	동구	①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② 평생교육 지원 ③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④ 지역사회 거주 및 치유·자립 등 통합 지원 ⑤ 주민의 자원 활동 등 지원 ⑥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⑦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342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광역·도	시·군·구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	①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사업 ②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사업 ③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학습 및 훈련 지원사업 ④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사업 ⑤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연구 사업 ⑥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⑦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	①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②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 ③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④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⑤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지원 ⑥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⑦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자료: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450호, 2021. 9. 30., 제정)
 2)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282호, 2019. 10. 15., 제정)
 3)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326호, 2021. 11. 4., 제정)
 4)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453호, 2021. 3. 24., 제정)
 5)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427호, 2021. 7. 14., 제정)
 6)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전라남도조례 제5392호, 2021. 9. 30., 제정)